

캘리포니아 총선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



정확성 증명서

캘리포니아주 주무장관 Debra Bowen은 여기에 수록된
법안이 2012년 11월 6일 총선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에게
제출될 것이며, 본 지침이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주무장관 서명 및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직인, 2012년 8월 13일.

선거 당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Debra Bowen
주무장관



주무장관

캘리포니아 유권자 여러분:

투표 등록을 하시면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정을 도와드리고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본 안내서를 통해 투표 용지의 내용과 투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후보자와 법안에 대한 내용은 카운티 투표 용지 견본 안내 책자에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 투표 장소, 우편 투표 용지의 수신 여부 등을 포함한 투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sos.ca.gov/elections를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유권자 핫라인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투표는 간단하며 등록된 모든 유권자는 우편 또는 현지 투표소 중에서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소에 우편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방법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선거 당일 투표 관리인이 되어, 모든 유자격 유권자가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선거 관리원이 투표 용지를 계수할 때까지 투표 용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전화, 브로셔, 포스터를 통해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과 투표권에 대해 홍보해 주십시오.
- 친구, 가족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토론에 참여하거나 토론 그룹을 구성하여 후보자와 이슈에 대해 다른 유권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 안내서에는 법무장관 Kamala D. Harris가 발의한 주 선거 법안에 대한 명칭과 개요, 입법분석관 Mac Tayler가 작성한 선거 법안과 납세자에 대한 잠재적 비용의 공정한 분석, 옹호론자와 반대론자가 작성한 선거 법안에 대한 찬반론, 법제실 자문위원 Diane F. Boyer-Vine가 작성 및 교정한 법률안 전문 및 기타 유용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인쇄는 주정부 인쇄 담당자 Kevin P. Hannah의 감독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을 갖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경선은 실제로 불과 몇 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서 각 후보자 및 투표 법안에 대해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유권자 여러분의 투표권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고 의견을 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용 참조서	5
----------------	----------

발의안

30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세. 지역 공공안전을 위한 자금 제공 보장.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12
31 주정부 예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20
32 급여 공제에 의한 정치 기부금. 입후보자에 대한 기부금. 주민발의 법안.	28
33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32
34 사형. 주민발의 법안.	36
35 인신매매. 처벌. 주민발의 법안.	42
36 삼진법. 반복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처벌. 주민발의 법안.	48
37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라벨 부착. 주민발의 법안.	54
38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58
39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68
40 선거구 재조정. 주 상원 선거구. 주민투표.	74

미국 상원 후보자 성명서	79
----------------------	-----------

법률안 전문	80
---------------	-----------

유권자 기본 권리 선언	143
---------------------	------------

정보 페이지

투표 방법	4
온라인 리소스	10
투표 찬반론 정보.....	10
캘리포니아의 선거	11
미국 대통령 후보.....	78
입법 및 의회 후보	78
대형 인쇄본 및 음성 버전의 유권자 안내서.....	142
투표 관리인으로 일하기	142
유권자 등록.....	142
주정부 및 연방정부 유권자 신원증명 요건.....	142

투표 방법

투표 시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운티 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용지의 모든 경선에 대해 투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표한 각 경선에 대해 투표권이 집계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선거 당일 전에 몇몇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선거일 몇 주 전에 가정으로 우송되는 카운티 투표 용지 견본 안내 책자의 뒷 표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투표 용지 견본 안내 책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카운티 선거 관리소에 문의하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을 방문하거나 주무장관실 수신자부담 유권자 핫라인인 (866) 575-1558로 전화하여 투표소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 관리인이 이름을 묻고 해당 투표소의 공식 등록 유권자 명부를 확인합니다. 명부에 기재된 이름 옆에 서명하면 선거 관리인이 해당 카운티의 투표 시스템에 따라 투표 용지, 고유 암호 또는 컴퓨터 메모리카드를 드립니다. 개별 부스로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투표 관리인이 유권자에게 투표 과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투표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투표 관리인에게 투표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 법률 및 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유권자는 비밀리에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투표 장소마다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유권자가 보조를 받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투표 기계를 하나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투표 기계는 유권자가 투표 시 선택한 내용을 비밀리에 독립적으로 확인한 후 실수가 있다면 최종 투표를 하기 전에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영구 우편 투표 유권자(이전에는 부재자 투표자라고 함)가 아닐 경우 이번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투표 용지 견본 안내 책자에는 우편 투표 용지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소에 우편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우편 투표 용지에 선택 사항을 표시한 후 카운티 선거 관리소에서 제공한 공식 봉투에 넣고 봉인합니다. 지침에 따라 봉투 겉면에 서명하십시오. 다음 방법을 통해 투표한 우편 투표 용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카운티 선거 관리소로 우편을 통해서 반환하거나,
- 선거 당일에 카운티 내 투표소 또는 선거 관리소로 본인이 직접 반환하거나,
-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3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형제, 자매 또는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동거인)가 선거 당일에 카운티 내 선거 관리소나 투표소로 본인을 대신해서 투표 용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소에 도착해야 하므로, 선거 당일 몇일 전에 우편 투표 용지를 우송하도록 하십시오.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았더라도 원한다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우편 투표 용지를 지참하여 선거 관리인에게 제출하고 투표소에 있는 투표 용지로 교환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가 없는 경우 잠정 투표 용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잠정 투표 용지

해당 투표소의 유권자 명부에 본인 이름이 없을 경우 투표 등록을 한 카운티의 모든 투표소에서 잠정 투표 용지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잠정 투표 용지는 다음과 같은 유권자를 위한 투표 용지입니다.

- 공식 유권자 등록 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투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
- 공식 유권자 등록 명부에 자신의 정당 선호도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
- 우편으로 투표해야 하지만 우편 투표 용지를 찾을 수 없어서 투표 장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유권자

카운티 선거관리원이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한 선거에 대해 다른 곳에서 투표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이후에 잠정 투표 용지가 집계됩니다.

후대용 참조서

발의안 제30호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세. 지역 공공 안전을 위한 자금 제공 보장.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학교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25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7년 간 인상하고, 판매세를 4년 간 ¼센트 인상합니다. 공공안전 이관에 대한 자금 제공을 보장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2018-19년까지 주정부의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향후 몇 년 동안 매년 평균 약 60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입은 주정부 예산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12-13년에는 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된 지출 삭감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에서 7년 동안 고소득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를 늘리고, 4년 동안 판매세를 늘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은 주 예산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찬반론

찬성 학교와 공공 안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지 수년이 흘렀으며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할 때입니다. 발의안 제30호에서는 심각한 학교 예산 삭감을 방지하고,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교육 자금을 제공하며, 지역의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주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esOnProp30.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추가 정보

찬성
Ace Smith
발의안 제30호에 찬성
2633 Telegraph Avenue #317
Oakland, CA 94612
(510) 628-0202
YesOnProp30@TakeAStandCA.com
YesOnProp30.com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에서 개인 소득세나 판매세를 늘리지 않습니다. 주 지출 삭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삭감)은 2012-13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 제30호에 반대—판매세 및 소득세 측면에서 5백억 달러가 증가하지만 학교에 지원되는 위한 추가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학교, 연금을 개혁하거나 낭비와 관료주의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자, 소규모 기업 및 납세자 그룹은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반대
제30호에 반대—세금이 아닌 개혁 및 일자리 문제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925 University Avenue
Sacramento, CA 95825
(866) 955-5508
info@stopprop30.com
www.stopprop30.com

발의안 제31호 주정부 예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주정부의 예산을 2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신규 지출을 상쇄하고, 재정 비상사태일 때 주지사가 예산을 삭감하는 규칙을 제정합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 판매세 수입이 매년 약 2억 감소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제공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공무원들의 향후 결정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의 예산에 보다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예산과 지방 예산 수립 및 감독 절차를 포함하여 의회 및 주지사의 재정적 책임이 바뀝니다. 서비스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만든 지방 정부는 주에서 자금을 받고 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고유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찬반론

찬성 발의안 제31호에 찬성표를 던지면 정치인들이 캘리포니아 정부 활동과 관련하여 더 이상 불투명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에서 예산을 비공개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인이 부족한 주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며, 주에서 비용을 사용하기 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찬성
정부 책임 문제를 지지하는 납세자들
(916) 572-7111
info@accountableca.org
www.accountableca.org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예산과 지방 예산 수립 및 감독 절차를 포함하여 의회 및 주지사의 재정적 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에게는 (1) 서비스 조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자금이나 (2) 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대 발의안 제31호는 헌법에 충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주민발의로서 소송, 혼란 및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공중 위생 및 환경을 위협하고, 학교 자금의 향후 증대를 막고, 감세를 차단합니다. 교사, 경찰, 보수주의자, 세금 개혁가는 발의안 제31호에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반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후대용 참조서

발의안 **제32호** 급여 공제에 의한 정치 기부금. 입후보자에 대한 기부금. 주민발의 법안.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노동조합이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업 또는 정부 계약업자에 의한 급여 공제(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이 입후보자와 그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부 계약업자가 선출된 공무원이나 그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이 법안의 요건을 시행 및 집행하기 위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이 증가합니다(매년 100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노조 및 기업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조, 기업 및 정부 계약업자는 추가 선거자금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노조 및 기업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하는 기존 법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노조, 기업 및 정부 계약업자는 기존 선거자금 법률의 적용을 계속 받습니다.

찬반론

찬성 발의안 제32호는 특수 이해 집단과 정치인 간의 금전적 유착을 헌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타파합니다. 기업 및 노조가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정부 계약업자의 기부를 금지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여를 유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법률상 허점이 없다면 면제도 없습니다.** 새크라멘토의 부패를 근절하려면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반대 발의안 제32호는 개혁이 아닙니다. 슈퍼팩(Super PAC) 기업과 수천 개의 대기업은 이 규정으로부터 면제되고, 동시에 근로자와 노조에게는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평하고, 불균형적이며, 정치 집단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여성 유권자 연합회에서는 반대 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제32호에 찬성— 이제 특정 이해집단의 기부금을 차단합니다. 이 발의안은 소규모 기업 소유자, 농부, 교육자 및 납세자가 후원합니다. (800) 793-6522 info@yesprop32.com www.yesprop32.com

반대 Chris Dombrowski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선거자금 규정에서 특별 면제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교육자, 소방관, 학교 직원,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 경찰 공무원 및 노동 조직에서 후원하는 발의안 제32호에 반대합니다. 1510 J Street, Suite 210 Sacramento, CA 95814 (916) 443-7817 info@VoteNoOn32.com www.VoteNoOn32.com

발의안 **제33호**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운전자가 이전에 어떤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현행법을 변경합니다. 운전자에게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이력에 비례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보험을 계속 유지한 이력이 없는 운전자에 대해 비용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아마도 주정부의 보험료세 세입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보험 회사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이전 5년의 연수로 기반으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할인을 신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보험업자는 자신의 장기 자동차 보험 고객에게 계속해서 할인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보험업자로부터 전환한 신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계속 금지됩니다.

찬반론

찬성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법을 준수할 경우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바꿀 경우 할인을 못 받게 됩니다. 발의안 제33호에서는 마에대로 보험 회사를 변경하고 할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발의안 제33호에서는 보험 회사가 경쟁하도록 하여 보험요율을 낮추고, 운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 발의안 제33호는 기본적인 보험 회사의 속임수입니다. 보험 회사는 동일한 법률을 2010년에도 통과시키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썼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무산시켰습니다. 발의안 제33호를 통해 자동차 보험업자들은 책임 있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천 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로 운전 중지를 운전자에게는 불공정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발의안 제33호의 반대를 지지합니다.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제33호에 찬성—2012 자동차 보험 할인 법 1415 L Street, Suite 410 Sacramento, CA 95814 (916) 448-3444 info@yesprop33.com www.yesprop33.com

반대 소비자 감시 운동 (310) 392-0522 VoteNo@StopProp33.org www.StopProp33.org

휴대용 참조서

발의안 사형, 주민발의 법안. 제34호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합니다. 기존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합니다. 살인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법집행기관에 1억 달러를 전용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와 카운티는 수년 내에 매년 약 1억 3,000만 달러의 형사 사법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약하고, 이 금액에는 수천만 달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법집행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정부에 1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법률에 따라 어떤 범죄자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재선고됩니다. 주에서는 총 1억 달러를 향후 4년 동안 지방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캘리포니아 범죄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주에서는 지역 법집행기관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반론

찬성 제34호는 캘리포니아의 붕괴된 사형제를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해줍니다. 이 법률에서는 살인자가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령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4호에서는 낭비되는 세금을 절약하여 강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1억 달러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반대 캘리포니아의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발의안 제34호는 납세자에게 사년간 1억 달러를 부담시키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납세자는 어린이, 경찰관, 어머니, 아버지를 고문, 강간, 살인한 살인자가 종신형을 살아가는 동안 의료 서비스 및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5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 검사, 보안관 및 경찰서장은 반대 표를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 정보

찬성
Steve Smith
법안 34에 찬성. 안전한 캘리포니아 만들기 운동
237 Kearny Street #334
San Francisco, CA 94108
(415) 525-9000
info@safecalifornia.org
www.YesOn34.org

반대
공정성 및 공공 안전을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시민들
455 Capitol Mall, Suite 600
Sacramento, CA 95814
www.waitingforjustice.net

발의안 인신매매, 처벌, 주민발의 법안. 제35호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인신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강화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인신매매 범죄자는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성범죄자들은 인터넷 활동과 신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인신매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한 금액의 연간 벌금 세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자금은 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긴 수감 기간과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기존의 형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찬반론

찬성 발의안 제35호에 찬성하여 인신매매를 방지합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지합니다. 인신매매법은 여성이나 아동으로 하여금 거리나 인터넷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만듭니다. 발의안 제35호는 더 엄중한 선고로 강력히 맞서고, 희생자를 지원하며, 온라인 상에서 아동을 보호해 줍니다. 아동과 희생자들을 옹호하는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표를 던지라고 주창합니다.

반대 발의안 제35호는 실제로 많은 무고한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군대에 복무한 후 지금 대학에 다니는 제 아들의 경우, 제가 성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다면 인신매매범이라는 딱지가 붙고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axine Doogan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추가 정보

찬성
Kristine Kil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P.O. Box 7057
Fremont, CA 94537
(510) 473-7283
info@VoteYesOn35.com
www.VoteYesOn35.com

반대
Maxine Doogan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 Inc.
2261 Market Street #548
San Francisco, CA 94114
(415) 265-3302
noonprop35@gmail.com
http://esplerp.org/

후대용 참조서

발의안 제36호 **삼진법. 반복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처벌.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7호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라벨 부착. 주민발의 법안.**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새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경우에 한해 중신형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이 아닌 경우, 재선고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교도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약 7,000만 달러 절약되고, 향후 이십삼 년간 더 많은 금액(최대 매년 9,000만 달러)이 절약됩니다. 이러한 절약 금액은 주정부의 향후 조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범죄자가 심각하지 않거나 비폭력적인 중죄를 저지른 경우 주 교도소에서 더 짧은 기간 수감되도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 유죄판결이 있는 일부 범죄자가 현재 심각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많은 중죄 유죄판결로 인해 중신형을 선고받은 경우 더 짧은 수감 기간으로 다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중죄를 저지른 경우 계속해서 중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두 번의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현재 심각하지 않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중죄로 중신형을 살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남은 중신형 기간 동안 수감하게 됩니다.

찬반론

찬성 폭력적인 범죄자에게 중점을 둔 삼진법의 원래 의도를 복원합니다.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범죄의 상습 범죄자는 중신형을 선고 받습니다. 비폭력 범죄자는 일반 수감 선고의 두 배를 받습니다.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고, 강간범, 살인범 및 기타 위험한 범죄자는 중신형을 선고합니다.

반대 발의안 제36호는 누적된 전과 기록 때문에 중신형을 선고받은 위험한 범죄자를 감옥에서 출소시킬 것입니다. 이 주민발의의 결함으로 인해 이 흉악범들을 아무런 감시없이 석방시켜줄 것입니다. 발의안 제36호에 반대 표를 던지는 캘리포니아의 보안관, 경찰, 검사, 범죄 희생자 그룹과 그 뜻을 함께해 주십시오.

추가 정보

찬성
Pedro Rosado
삼진법 개혁 위원회
(415) 617-9360
pedro@FixThreeStrikes.org
www.FixThreeStrikes.org

반대
Miike Reynolds
삼진법을 구합니다.
P.O. Box 4163
Fresno, CA 93744
SaveThreeStrikes.com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특정한 방법으로 유전자 형질이 변경된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제조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에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식품이나 다른 가공 식품을 "자연" 식품이라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외 식품을 규정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라벨 부착을 규제하기 위해 주정부의 연간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 사이로 증가합니다. 이 법안을 위반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금액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유전자 가공 음식물은 유전자가공이 되었음을 명시한 특정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유전자 가공 음식물은 계속해서 특정한 라벨 부착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찬반론

찬성 발의안 제37호는 우리가족이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단순히 유전자 가공을 사용하여 생산된 음식물의 라벨만 부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제품을 구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 발의안 제37호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있는 기반적인 음식물 라벨 부착 제도로서 특정 이익집단의 면제와 법률상 허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의안 제37호는 납세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관료주의 행태를 만들어낼 것이고, 농부와 소규모 기업에게 과도한 비용을 강탈해가는 소송의 발생을 묵인하게 될 것이며, 매년 가계의 식비를 수백 달러 이상 인상시킬 것입니다.
www.NoProp37.com

추가 정보

찬성
Gary Ruskin
California Right to Know
5940 College Avenue
Oakland, CA 94618
(213) 784-5656
GaryR@CARightToKnow.org
www.CARightToKnow.org

반대
발의안 제37호에 반대하여 기반적인 음식물 라벨 부착 제도를 중단합니다.
(800) 331-0850
info@NoProp37.com
www.NoProp37.com

휴대용 참조서

발의안 제38호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차등제를 사용하여 12년 간 인상합니다. 세금 수입은 K-12 학교와 유아 프로그램, 그리고 4년 간 주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해 배정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세금 수입이 12년 간 증가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에는 매년 대략 100억 달러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 자금은 학교, 보육, 유아원, 그리고 주정부의 부채 상환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2년 동안 주 소득세가 인상될 것입니다. 추가 세입은 학교, 보육, 유아원 및 주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주 소득세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추가 자금을 학교, 보육, 유아원 및 주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찬반론

찬성 제38호는 다시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발의안은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고 교육적 결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한 명당 지원되는 새로운 자금이 모든 지방 공립학교로 전달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서는 새크라멘토 정치인이 해당 자문에 손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결정이 지역사회 내의 독립적 감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책임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대 발의안 제38호에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매년 17,346 달러의 과세 소득을 벌어들인다면 세금이 인상될 것입니다. 총 1천2백억 달러의 세금이 인상됩니다. 학생 성적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12년 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사기일 뿐입니다. 소규모 기업에 피해를 줍니다. 일자리를 없앱니다. 교육자, 납세자 및 기업은 발의안 제38호에 반대 표를 던집니다.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제38호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323) 426-6263
info@prop38forlocalschools.org
www.prop38forlocalschools.org

반대 Jason Kinney
중산층 소득세 대폭 인상을 중지시키기 위해 발의안 제38호에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980 9th Street, Suite 2000
Sacramento, CA 95814
(916) 806-2719

발의안 제39호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다주(multistate)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정/효율적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세입으로부터 5년 간 자금을 지출합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정부의 세입이 매년 10억 달러 증가하고, 그 세입 중 절반은 향후 5년간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지출될 것입니다. 나머지 세입 중 상당한 부분은 학교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주 기업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주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일부 다주 기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법인세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늘어난 세입의 절반 정도는 에너지 효율성 및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다주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계속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찬반론

찬성 발의안 제39호에 찬성 표를 던지면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있는 기업이 주 외부에 일자리를 유지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과세 허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허점을 막음으로써 지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캘리포니아주에 10억 달러의 세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고용 창출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와 적자 감축에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발의안 제39호에 찬성 표를 던져서 법적인 허점을 막아 봅시다.

반대 발의안 제39호는 중산층 근로자 수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10억 달러라는 과도한 세금 인상을 가져옵니다. 이는 낭비와 부패가 뒤범벅된 것으로, 새크라멘토 정치인에게 실질적인 책임도 없이 수십억 달러를 쓸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부채는 수십억 달러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이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제39호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캘리포니아 주민은 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법인세의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www.cleanenergyjobsact.com

반대 캘리포니아 제조업자 및 기술 협회
1115 11th Street
Sacramento, CA 95814
info@stop39.com
www.stop39.com

휴대용 참조서

발의안 제40호 선거구 재조정. 주 상원 선거구. 주민투표.

요약 **청원서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회부**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설정한 새 주 상원 선거구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면 승인되고 "반대" 투표를 하면 거부됩니다. 선거구가 거부되면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감독을 받아 조정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영향: 주민투표에서 승인되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주민투표에서 거부되면 주정부와 카운티에 약 100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에서 인정한 주 상원 선거구를 계속 사용합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새로운 주 상원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위원을 지명합니다.

찬반론

찬성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표를 던질 경우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적인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에서 작성한 주 상원 선거구 지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표를 던질 경우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인에게 책임감을 부과하려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의지가 지켜질 것입니다. 양심적인 정부 그룹, 고령자, 기업 및 납세자는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을 추천합니다.

반대 발의안 제40호의 후원자로서 우리의 의도는 2012년 위원회의 주 상원 선거구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 선거구를 유지하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우리는 선거 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더 이상 반대 투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찬성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정치인이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1215 K Street, Suite 2260
Sacramento, CA 95814
(866) 408-4527

Info@HoldPoliticiansAccountable.org
www.HoldPoliticiansAccountable.org

반대 FAIRDISTRICTS2012.com

주무장관실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 선거 운동 기부금 및 로비 활동 조사
<http://cal-access.sos.ca.gov>
- 다른 언어로 된 유권자 안내서 보기
www.voterguide.sos.ca.gov
- 투표소 확인
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
- 우편 투표 용지 정보 보기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htm
- 신규 투표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보기
www.sos.ca.gov/elections/new-voter
- 선거일에 투표 마감 후 실시간 투표 결과 보기
<http://vote.sos.ca.gov>

투표 찬반론 정보

주무장관은 투표 찬반론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투표 법안에 대한 찬반론은 투표 법안의 옹호론자와 반대자들이 제공한 것입니다. 제출된 찬반론 언어는 해당 언어를 변경하라는 법원의 지시가 없는 한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안내서의 14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선거

2011년 1월 1일 발효된 상위 두 명의 후보자 공개 예비선거법은 유권자 공천 공직의 모든 후보자가 동일한 투표 용지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당파적 공직이라고 기존에 알려진 유권자 공천 공직은 주의 입법 공직, 미국 주의회 공직 및 주 헌법 공직입니다. 정당 선호도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은 두 명의 후보자만 총 투표수와 상관없이 총선에 출마합니다.

유권자 공천 공직의 기명투표 후보자는 예비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명투표 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수를 득표한 상위 두 명 중 한 명일 경우에는 총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공천 절차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공개 예비선거제도는 미국 대통령, 카운티 중앙 위원회 또는 지역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다음 정보를 본 안내문에 인쇄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당 공천/당파적 공직

정당은 공식적으로 예비선거에서 정당 공천/당파적 공직에 대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습니다. 공천된 후보자는 총선에서 특정 공직에 대한 공식 후보자로 해당 정당을 대표하며 투표 용지에 공식적인 지명이 반영됩니다. 예비선거에서 각 정당의 투표수가 가장 많은 상위 한 명이 총선에 출마합니다.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카운티 중앙 위원회의 공무원을 선출합니다.

유권자는 투표 등록 시 선호도를 공개한 정당의 예비선거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정당 선호도 공개를 거부한 주민도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공천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시 유권자 공천 공직에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습니다. 예비선거시 유권자 공천 공직에 공천된 후보자는 총선 시 주민의 공천자가 되고 정당의 공직 공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 공천 공직의 공천 후보자는 자신의 정당 선호도 여부를 투표 용지에 기재해야 하지만, 정당 선호도 지정은 전적으로 후보자가 선택하고 유권자 정보를 위해서만 표시됩니다. 이는 후보자가, 지정된 정당으로부터 공천되거나 후원을 받거나 정당과 후보자 간에 제휴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권자가 공천한 후보자는 정당의 공식 공천 후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카운티 투표 용지 견본 안내 책자에서 정당은 정당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은 유권자 공천 공직 후보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공천 공직 후보자에 대해, 해당 공직에 투표하는데 필요한 다른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수를 득표한 상위 두 명은 동일한 정당 선호도를 지정했다라도 유권자 공천 공직의 총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수를 득표한 상위 두 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은 자신의 정당 선호도를 가진 후보자를 총선에 출마시킬 수 없습니다.

초당파적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초당파적 공직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예비선거의 후보자는 총선에서 특정 공직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공천자가 아닙니다. 초당파적 공직의 공천 후보자는 투표 용지에 자신의 정당 선호도 여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투표수를 득표한 상위 두 명이 초당파적 공직의 총선에 출마합니다.

제30호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세.
지역 공공안전을 위한 자금 제공 보장.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장관 작성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세. 지역 공공안전을 위한 자금 제공 보장.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 25만 달러가 넘는 연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7년 간 인상합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를 4년 간 ¼센트 인상합니다.
- 임시세 수입의 89%를 K-12 학교에, 그리고 11%를 커뮤니티 칼리지에 배정합니다.
- 이 자금을 행정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나,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을 공개 회의에서 결정하는 재량권을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공하며, 이 자문에 대해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공공안전 서비스에 대한 자금 제공을 보장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운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정부는 2012-13년부터 2016-17년까지 매년 약 60억 달러의 추가 세금 수입을 얻습니다. 2011-12년, 2017-18년 및 2018-19년에는 보다 적은 금액의 추가 수입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이러한 추가 수입은 주정부 예산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012-13년에는 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약 60억 달러의 지출 삭감이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개요

이 법안은 모든 납세자에 대한 주 판매세, 그리고 상위 계층 소득 납세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PIT)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러한 임시 세금 인상을 통해 주 예산 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추가 세입이 확보될 것입니다. 2012년 6월 입법부와 주지사가 승인한 주정부의 2012-13 예산안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유권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대비해, ("자동 예산 삭감(trigger cuts)"이라고 불리는) 지출 감축이 필요한 대안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최근 일부 주정부 프로그램의 책임인 지방정부 이전과 관련한 특정 조건들을 주 헌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은 이 발의안의 주요 조항을 요약해 보여 주고 있으며, 아래에 각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

발의안 제30호 개요

주 세금 및 세입

- 4년 간, 판매세율을 1달러 당 25센트씩 인상합니다.
- 7년 간, 상위 소득 계층 납세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합니다.
- 2012-13년부터 2016-17년까지 연간 주 세입이 추가로 약 60억 달러가 늘어나고, 2011-12년, 2017-18년, 2018-19년에는 이보다 낮은 금액이 늘어납니다.

주 지출

- 유권자들이 찬성할 경우, 추가 세입이 발생해 2018-19년까지 주의 균형 예산 달성에 이용할 재원이 확보됩니다.
- 유권자들이 거부할 경우 2012-13년 예산은 60억 달러 감소됩니다. 주 세입은 2018-19년까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지방정부 프로그램

- 2011년 주에서 이관 받은 프로그램 시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연단위로 조세 수입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주 세금 및 세입

배경

일반 기금(General Fund)은 주의 주요 운용 계정입니다. 2010-11 회계연도(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일반 기금의 총 세입액은 930억 달러였습니다. 일반 기금의 3대 세입원은 PIT, 판매세, 그리고 법인세입니다.

판매세.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세율은 지방별로 다릅니다. 현재 평균 판매세율은 8퍼센트를 약간 넘습니다. 판매세 세입의 일부분은 주정부에 할당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할당됩니다. 2010-11 회계연도 동안 주 일반 기금을 통해 받은 판매세 세입은 270억 달러였습니다.

개인소득세(PIT). PIT는 개인 및 가족의 임금, 사업, 투자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 PIT 세율은 각 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소득 부분에 대해 1퍼센트부터 9.3퍼센트 사이입니다. (이를 한계 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오를수록 더 높은 한계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에서 창출되는 조세 수입(2010-11 회계연도 동안 총 494억 달러)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1퍼센트의 세금이 적용됩니다(관련 세입은 전액 정신 건강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제안 사항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세율을 인상합니다. 이 법안은 주 전체에 걸쳐 한시적으로, 구입하는 상품 가격 1달러당 25센트씩 인상합니다. 인상된 세율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연말까지 4년 간 유효합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 소득세(PIT) 세율을 인상합니다. 그림 2와 같이 이 법안은 상위 계층 소득에 대한 기존의 9.3퍼센트 PIT 세율을 인상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추가 한계 세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동 신고자의 경우, 예를 들어 연간 5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사이 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1퍼센트의 한계 세율이 부과되면서 총 세율이 10.3퍼센트로 인상됩니다. 마찬가지로, 6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 사이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퍼센트의 한계 세율이 부과되고,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퍼센트의 한계 세율이 부과되면서, 이 소득 계층에 대한 총 세율은 각각 11.3퍼센트와 12.3퍼센트로 인상되게 됩니다. 이같은 새로운 세율은 약 1퍼센트의 캘리포니아 PIT 신고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현재 주 PIT의 약 40퍼센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그림 2

현행 세율과 발의안 제30호에 따라 제안된 개인 소득세의 세율

개인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공동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세대주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현행 한계 세율 ^b	제안된 추가 한계 세율 ^b
\$0-\$7,316	\$0-\$14,632	\$0-\$14,642	1.0%	—
7,316-17,346	14,632-34,692	14,642-34,692	2.0	—
17,346-27,377	34,692-54,754	34,692-44,721	4.0	—
27,377-38,004	54,754-76,008	44,721-55,348	6.0	—
38,004-48,029	76,008-96,058	55,348-65,376	8.0	—
48,029-250,000	96,058-500,000	65,376-340,000	9.3	—
250,000-300,000	500,000-600,000	340,000-408,000	9.3	1.0%
300,000-500,000	600,000-1,000,000	408,000-680,000	9.3	2.0
500,000 초과	1,000,000 초과	680,000 초과	9.3	3.0

^a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계층 구분은 2011년도에 유효한 것으로,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개인 신고자에는 각자 따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결혼한 부부 및 RDP(등록된 동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공동 신고자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부부 및 RDP, 그리고 부양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 유자격자도 포함됩니다.

^b 한계 세율은 열거된 각 소득 계층 구분별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제안된 추가 세율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유효합니다. 열거된 현행 세율에는 100만 달러 초과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1퍼센트의 정신 건강 세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0호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세.
지역 공공안전을 위한 자금 제공 보장.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서울은 2012년 과세연도부터 시작해 2018년 과세연도말까지 7년 간 유효합니다. (서울 인상이 2012년 1월 1일자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영향 대상 납세자들은 한 해 전체분 서울 인상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수개월 간 더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1퍼센트의 추가 인상은 여전히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의안 제30호의 서울 변화로 인해, 해당 납세자들의 한계 PIT 세율이 10.3퍼센트에서 13.3퍼센트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 대상인 발의안 제38호도 PIT를 인상하게 됩니다. 다음 상자에서 보면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에 모두 찬성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 헌법에 보면 두 개 법안이 상충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동일한 주 전체의 투표를 통해 통과된 두 개 법안의 조항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더 많은 "찬성" 표를 획득한 법안의 조항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의 투표 대상인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는 모두 개인 소득세(PIT)를 인상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따라서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한 가지 세금 인상만 발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에는 모두 양쪽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어떤 조항들이 발효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의안 제30호가 찬성표를 더 많이 받는 경우.** 발의안 제30호에는 발의안 제30호의 조항 전체가 우선하며, PIT 세율 인상과 관련한 일체 다른 법안(이 경우 발의안 제38호)의 조항들은 일체 발효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항이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가 찬성표를 더 많이 받는 경우.** 발의안 제38호에는 발의안 제38호의 조항 전체가 우선하며, 판매세 또는 PIT 세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다른 법안(이 경우 발의안 제30호)의 세율 관련 조항들은 일체 발효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항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발의안 제30호의 세금 인상이 발효되지 않게 되면서, "자동 예산 삭감(trigger cuts)"이라고 불리는 지출 삭감이 발효될 것입니다.

재정적 영향

2018-19년까지 추가 주 세입. 판매세와 PIT 인상이 모두 발효되는 (2012-13부터 2016-17년까지) 5 회계연도

동안 이 법안의 세금 인상에 따른 연간 주 세입 증가액은 평균 약 6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서울 인상이 발효되고 만료되면서 2011-12년, 2017-18년, 2018-19년에는 더 적은 폭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각 연도별로 세입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은 위에 언급된 예상 세입보다 위 또는 아래로 수십억 달러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법안에 따른 추가 세입의 대부분이 상위 소득 계층 납세자에 대한 PIT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위 소득 계층 납세자가 신고하는 소득 대부분은 임금이나 급여 보다는 납세자들의 투자나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계층 소득 납세자의 경우 임금과 급여 폭은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변동이 있지만, 그 투자 소득은 주식 시장, 주택 가격, 경기 상황 등에 따라 한 해에서 다음 해 사이에 큰 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한 현재 정신 건강 세금의 경우 2009-10년도에 약 7억3천 달러의 세수를 거뒀지만, 그 전 몇년 동안은 액수가 그 두 배를 넘었었습니다. 납세자 소득의 이같은 변동과 서울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이 불확실하므로, 이 법안을 통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지출

배경

주 일반 기금은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 예산 지원에 사용됩니다.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는 세입은 공립 학교, 공립 대학, 건강 프로그램, 사회보장 서비스, 교도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지출되는 돈이 주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권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여러 이전 발의안에 따라 주에서는 연간 최소 금액(흔히 발의안 제98호 최소 보장액이라고 부름) 이상 각종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합해서 K-14 교육이라고 부름)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보장액은 주 일반 기금과 지방정부 재산세 세입을 합쳐 조달됩니다. 매년 최소 보장액의 계산은 주 일반 기금 세입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기금 세입이 크게 늘어난 해의 경우, 보장액도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할당되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무제한" 조건인데, 다시 말해 지원 받은 돈은 교육 목적이면 어떤 용도로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안 사항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균형 예산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조세 수입을 제공합니다.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 세금 인상을 통해 창출되는 세입은 발의안 제98호 최소 보장액 계산에 포함되며, 보장액은 매년 수십억 달러씩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세입의 일부는 더 큰 규모의 학교 예산 지원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의 균형 예산 달성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회계 관점에서 얘기할 때, 신규 세입은 교육 보호 계정(EPA: Education Protection Account)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주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계정에 들어 있는 자금 중 89퍼센트는 각종 학교에 제공되고, 11 퍼센트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공됩니다. 각종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이 자금을 일체의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기존의 학생 한 명당 무제한 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하게 되는데, 단, 학군에서 학생 한 명당 받는 EPA 기금이 200 달러 미만이 될 수 없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정규 학생 한 명당 받는 EPA 기금은 100 달러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적 영향

2012-13년 예산안은 본 법안의 유권자 찬성에 달려 있습니다. 입법부와 주지사는 지난 6월, 2012-13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 적자와 그 이후에 예상되는 예산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산 계획안을 채택했습니다. 2012-13년도 예산 계획은 (1) 유권자들이 본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가정하고, (2) 그에 따른 세입을 다양한 주정부 프로그램에 지출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 따라 창출되는 세입의 큰 부분이 각종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출됩니다. 그 때문에 2012-13년도 각종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 2011-12년도 대비 66억 달러

(14퍼센트)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같은 인상폭의 거의 대부분이 전년도 K-14 비용을 지불하고, 주의 일부 K-14 지급 지연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큰 폭으로 예상되는 예산 적자를 감안해, 예산 계획에는 일부 건강 및 사회보장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고, 주정부 직원 보수를 줄이고, 일회성 기금을 사용하고, 다른 주 계정에서 돈을 빌려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19년의 예산에 대한 영향. 본 법안에 따른 추가 조세 수입은 2018-19년까지 주 균형 예산 달성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본 법안에 따른 추가 세입은 2018-9년까지 연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며, 이 돈은 기존 주정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고, K-14 교육 지급금을 추가 지연 없이 지급하고, 기타 주 부채를 상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용도는 차후 입법부와 주지사의 조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시에, 상위 계층 소득 납세자의 소득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 법안에 따라 주 세입도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후 몇년 간 주 예산 책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안된 세금 인상이 만료되고 나면, 관련 조세 수입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후 수년 간 추가적인 예산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안이 거부될 경우 재정적 영향

유권자들이 본 법안을 거부할 경우 대안 예산 계획을 통해 지출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본 법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주에서는 발의안에 정해진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성되는 추가 세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12-13 예산 계획에서 지출을 60억 달러 감축해야 합니다. 현재 주법에 정해져 있는 이러한 자동 예산 삭감(trigger cuts)은 그림 3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삭감 대상의 거의 대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K-14 교육에서 54억 달러, 공립 대학에서 5억 달러를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K-14 감축분 중에서 약 30억 달러는 무제한 기금의 삭감입니다. 각종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는 예비금을 사용하거나, 학교 교육 기간을 단축하거나,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같은 삭감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삭감액 24억 달러는 각종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체납액을 다시 2011-12년도 수준으로 높게 될 것입니다. 이는 회계연도 말에 가서 각급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의 현금 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단기 차입을 한층 더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8-19년의 예산에 대한 영향. 유권자들이 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주 세입은 찬성했을 때와 비교할 때 2018-19년까지 매년 수십억 달러 더 적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세입을 가지고 주 균형 예산을 어떻게 달성할지는 입법부와 주지사의 향후 조치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의 주 균형 예산은 각급 학교 또는 기타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 신규 세입, 또는 일회성 조치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3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30호를 거부하는 경우 2012-13년도 지출 감축액

(단위: 백만)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5,354
캘리포니아 대학	250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250
개발 서비스 부서	50
시 경찰청 보조금	20
CalFire	10
DWR 홍수 조절 프로그램	7
지방 수자원 안전 순찰 보조금	5
수렴감시부	4
공원 및 유락시설 관리부	2
법무부(DOJ) 법집행 프로그램	1
총액	\$5,951

DWR =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수자원부)의 약자, DOJ = Department of Justice.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지방정부 프로그램

배경

2011년, 주에서는 몇몇 프로그램의 시행 및 자금 조달 책임을 지방정부(주로 카운티)로 이관했습니다. 이관된 프로그램 관련 책임에는 일부 성인 범죄자의 구금, 가석방자의 감독,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새로 이관된 책임 수행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입법부는 연간 주 조세 수입 중 약 60억 달러를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대부분은 판매세 수입 일부를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긴 데 따른 것입니다.

제안 사항

2011년도 주정부 프로그램 책임의 이관과 관련해 특정 조항을 헌법이 추가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세입을 보장합니다. 본 법안은 주에서 이관한 프로그램 책임 수행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2011년도에 지방정부로 돌린 세금 수입(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로 이전된 판매세 세입을 각급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최소 보장액 산정에서 영구 제외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프로그램 요건 확대 권한을 제한합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인상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한, 앞으로 2011년도에 이관된 프로그램 책임을 수행하는 지방정부 비용을 인상하는 내용의 주법이 채택되더라도 이같은 법을 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에서 일부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이관된 프로그램 책임과 관련해 연방 법규 또는 규정 상 변경 사항 또는 특정 법원 결정으로 인해 지방정부에 일체의 신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에서 이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의무적 자금 지원 책임을 없앱니다. 헌법에 따라,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새로운 책임 또는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그 비용을 지방정부에 변제해 주어야 합니다. 현행법 상 주에서 프로그램 책임을 이관한 경우, 그 일부의 비용을 책임지기 위해 지방정부에 추가 자금 지원(의무적 비용 변제)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은 주정부가 그러한 의무적 변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회의법 비용의 주 변제를 끝냅니다.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에는 모든 지방 입법 기관의 회의는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에서는 브라운법의 일부 조항(공개 회의의 의제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는 요건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에 변제해 주었습니다. 본 법안에는 주정부가 브라운법에 정해진 대로 공개 회의 절차를 따르는 비용에 대해 지방 기관에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주정부. 이관된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비용은 그렇게 하기 전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법안이 (1)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주정부가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보장하고 있으며, (2) 주정부가 앞으로의 연방법 개정 및 관례와 관련한 비용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3)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추가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법 및 규정 시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비용은 2011년 프로그램 이관과 브라운법 절차로 인한 일체의 잠재적인 주정부 의무 사항을 없애는 본 법안의 조항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따른 순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출된 공무원 및 법원의 향후 조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방정부. 위에 언급된 요인들이 지방정부에는 정반대의 재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정부가 (1) 2011년 이관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지방정부에 제공해야 하고, (2) 앞으로의 연방 및 주법 개정 및 관례와 관련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세입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지방정부 세입의 증가분은 2011년 프로그램 이관과 브라운법 절차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의무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없애는 본

법안의 조항들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따른 순 재정적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출된 공무원 및 법원의 향후 조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요약

유권자들이 본 법안에 찬성할 경우, 주 판매세율은 4년 간, PIT 세율은 7년간 인상되면서, 2012-13년과 2016-17년 사이에 추가적인 주 세입으로 연간 평균 약 60억 달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12, 2017-18, 2018-19 회계연도의 경우 그보다 적은 세입 증가폭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세 수입은 주정부의 2012-13년 예산 계획 실행 자금으로 사용되고, 앞으로 7년 동안 균형 예산 달성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본 법안은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로 이관된 주정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2011년 이관된 주정부 조세 수입분을 연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본 법안을 거부할 경우, 주 판매세와 PIT 세율은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 인상에 따른 자금이 주정부의 2012-13 예산 계획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2012-13년도 주 지출은 약 6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며, 이 감소분의 대부분이 교육 부문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 주 세입은 본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비해 수십억 달러 더 적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30호

교육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세.
지역 공공 안전을 위한 자금 제공 보장.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 발의안 제30호에 대한 찬성론 ★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캘리포니아 교사 및 법집행 종사자들의 메시지

친애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여러분,
수년 간 예산 삭감이 계속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대학,
공공 안전 서비스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4년만 두고 보더라도 학교 예산이 200억 달러 삭감되었고,
교사 수는 30,000명이 줄어들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도록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캘리포니아를 올바른 상태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발의안 제30호인 학교 및 지역 공공 안전 보호법(Schools & Local
Public Safety Protection Act)은 현재 주지사 Jerry Brown, 여성 유권자
연맹, 그리고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있는 교육, 법집행기관 및
기업의 리더들로 구성된 연합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이 법안이 교육
및 안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캘리포니아주의 만성적인
예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발의안이기 때문입니다.

- **큰 폭의 학교 예산 삭감을 막아 줍니다.** 발의안 제30호가 없을 경우 우리 학교와 대학들은 올해 추가로 60억 달러라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이같은 예산 삭감을 막고, 올해 캘리포니아 주내 학교에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발의안입니다. 이 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서를 최신판으로 바꾸고, 교사들을 재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 **지역 공공안전 예산 지원을 보장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서 공공 안전 자금 지원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치안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 **균형 예산 달성을 돕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균형 예산을 달성하고, 수년 간의 속임수와 차입을 통해 쌓인 캘리포니아주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질적 문제인 예산 부족을 종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해 발의안 제30호는 최고 소득 계층, 즉, 연간 소득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부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판매세는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의 세금은 한시적이고 균형적으로 사용되며 교육 및 안전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 **최고 소득 계층에 한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 한해 소득세를 더 내도록 합니다. 한 해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부부의 경우 소득세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 **모든 신규 세입은 한시적입니다.** 발의안 제30호의 세금은 모두 한시적이며, 이 발의안은 유권자의 찬성 없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최고 소득 계층의 경우 7년 동안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판매세 조항은 4년 간 유효합니다.
- **돈은 입법부에서 손댈 수 없는 특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학교를 위해 마련된 기금은 입법부가 손을 댈 수 없고, 주정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없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 **발의안 제30호는 의무적 감사 실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독립 감사의 의무 시행을 통해 기금이 교육 및 공공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여성 유권자 연맹, 캘리포니아주 교사, 공공 안전 분야 종사자들과 그 뜻에 동참하십시오.

발의안 제30호에 찬성 표를 던지십시오.

학교와 공공 안전을 위해 일어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YesOnProp30.com을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ENNIFER A. WAGGONER, 회장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DEAN E. VOGEL, 회장
캘리포니아 교사 협회

KEITH ROYAL, 회장
캘리포니아주 보안관 협회

★ 발의안 제30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0호 지지자들은 우리가 큰 폭의 세금 인상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면 누구나 훌륭한 교육 시설을 원하지만 세금 인상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수천 가지의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방대한 관료주의 및 낭비를 줄이고 간소화하는 대신 세금을 인상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한 일을 놓고 보자면 50억 달러 상당의 캘리포니아 공채를 "목적지 없는 초특급 열차"에 지출 승인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연간 3억 8천만 달러의 부담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학교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합니다. 연간 판매세를 10억 달러 인상하고 소기업 소득세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학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결보기와는 다릅니다. 학교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새로운 지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이 현재 교육 예산으로 책정된 돈을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에게 예산, 연금, 교육에 대한 개혁 없이 백지 수표를 주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중소기업을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 계속 낭비할 돈만 더 대주는 법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30호는 결보기와 다릅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더 많이 가져가면서 경제를 해치고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여기에 속을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JOEL FOX, 회장
중소기업 행동 위원회
JOHN KABATECK, 전무이사
전국 독립기업 연맹/캘리포니아
KENNETH PAYNE, 회장
새크라멘토 납세자 연합

★ 발의안 제30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500억 달러짜리 정치적 "속임수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를 위한 신규 예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0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7년간 지속되는 대폭적인 세금 인상에 찬성하기만 하면 그에 따른 신규 세입이 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입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정치인들이 학교에 신규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속임수 게임"을 하게 해 줍니다.

- 원래 학교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다음, 그 돈을 신규 세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돈을 가져가고 다른 손으로 다시 갖다 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든 발의안 제30호는 학교를 위한 신규 지원을 단 한 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많은 교육자들이 이같은 결점을 지적했고, 캘리포니아 학교 이사회 협회(California School Boards Association)에서도 "... 주지사의 발의는 학교를 위한 신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2012년 5월 20일).

- 월스트리트 저널도 같은 결점을 지적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Jerry Brown은 세금 인상분이 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번 11월, 자신의 세금 인상안에 찬성하도록 유권자들의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실정을 알고 보면, 신규 세입분은 파산 상태인 교사 연금 기금을 메우는데 필요한 것이다."(월스트리트 저널 사설, 2012년 4월 22일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발의안 제30호의 공식 타이틀과 요약문을 확인해 보면 그 돈은 "돈이 필요한 다른 곳에 사용..."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돈이 한 푼이라도 추가적으로 학교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의무 규정이나 보장도 전혀 없으며 발의안 제30호에는 예산 낭비를 줄이거나, 관료주의를 없애거나, 행정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교육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30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특수 이해 단체들은 물쓰듯 하는 자신들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은 인상하기를 원하면서 의미 있는 개혁안의 통과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 특수 이해 단체들과 그들이 조종하는 정치인들은 연금 개혁안의 통가를 막았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금 기금 부채가 남아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실질적 개혁안 통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예산 개혁안 통가를 막은 것도 이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늘어나는 세입이 낭비되지 않는 다거나 실제로 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개혁도 추구하지 않는 지출에 소비할 돈만 더 제공함으로써 이처럼 위험한 행동을 부추깁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의 위협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발의안 제30호를 지지하는 주지사와 정치인들 및 특수 이해 관계 단체들은 유권자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안하는 대폭적 세금 인상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 제도나 연금 제도의 개혁에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학교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나 보장도 없는 500억 달러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대신,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 절감을 개혁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발의안 제30호에 반대합니다. 세금 인상 대신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JON COUPAL, 회장
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

TOM BOGETICH, 명예 이사
캘리포니아주 교육 위원회

DOUG BOYD, 회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 위원회

★ 발의안 제30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수년 간 예산 삭감이 계속되어 온 만큼, 이제는 학교와 지역 공공 안전 보장을 위해 선을 그어야 할 때입니다.

발의안 제30호의 엄격한 재정 통제는 학교와 공공 안전 목적으로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 조세 수입은 입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학교의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 매년 이 돈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것이며, 행정부나 새크라멘토 공무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의안 제30호는 예산의 낭용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과밀 학급에서 시달리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지속적인 학교 운영과 치안 유지를 위해 최고 소득 계층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합니다.

- 금년도 대폭적인 학교 예산 삭감을 막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60억 달러에 달하는 학교와 대학의 금년도 예산 자동 삭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발의안입니다. 발의안 제30호가 없는 경우 금년도 학교 수업일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감축하고, 큰 폭으로 수업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수십억 달러의 신규 학교 예산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30호가 가져다 주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예체능과 같은 수업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공공 안전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주 헌법으로 지역 공공 안전 예산을 보장하며, 향후의 교도소 지출 비용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균형 예산 달성을 돕습니다. 발의안 제30호는 주 균형 예산 달성을 위한 장기적 해결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교사, 법집행기관, 기업 리더들, 주지사 Jerry Brown은 모두 발의안 제30호가 캘리포니아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의안 제30호를 지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YesOnProp30.com을 참조하십시오.

JENNIFER A. WAGGONER, 회장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JOSHUA PECHTHALT, 회장
캘리포니아 교사 연맹

SCOTT R. SEAMAN, 회장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

제31호

31

주정부 예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 주정부의 예산 주기를 2년으로 정합니다.
- 상쇄 세입 또는 지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주의회가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 재정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 동안 주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모든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성과를 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성과 목표를 요구합니다.
- 주의회에서 표결을 하기 최소한 3일 전에 법안을 공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의회나 주정부 기관이 60일 이내에 변경을 거부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주정부가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률들을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 판매세 수입이 매년 약 2억 달러 감소하고, 특정한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 제공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과 세입에 보다 중대한 다른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는 공무원들의 향후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개요

이 법안은 지방정부, 입법부 및 주지사의 일부 의무 사항을 변경시킵니다. 또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운영의 일부 측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림 1은 이 법안의 주요 조항을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으며, 아래에 각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정부 계획의 허가 및 자금 지원

제안 사항

지방정부가 신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카운티와 기타 지방정부(예: 각 시, 학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특별 구획 등)는 각자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서는 경제 개발, 교육, 사회보장 서비스, 공공 안전, 공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다룰 수 있습니다. 각 계획은 (1) 카운티, (2) 해당 카운티 학생의 과반수가 속해 있는 학군, (3) 그 외 해당 카운티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집행 위원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지방 행정 기관은 이러한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에서 일부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아래 설명).

지방정부가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법 또는 규칙이 자신들의 계획 수행 권한을 제한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기존 주법 또는 규칙의 목표에 "기능적으로 상응하는" 지방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 자금의 지원을 받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주법 또는

발의안 **주정부 예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제31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31

규칙 대신 이러한 지방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입법부(주법의 경우) 또는 관련 주 부서(주 규칙의 경우)는 이러한 대안적 지방 절차를 거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방 차원에서 수립된 절차는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갱신하지 않는 한 4년 후 만료됩니다.

지방 재산세 이전을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들은 매년 재산세로 지방정부에 약 5백억 달러를 납부합니다. 각 카운티별로 지방정부 기관들 사이에 재산세를 배분하는 방법은 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재산세를 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들 사이에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적용 대상인 각 지방정부는 집행 위원회에서 2/3 득표로 해당 변경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일부 주 판매세 세입을 지방정부로 이전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평균 판매세율은 8퍼센트를 약간 넘습니다. 판매세 세입은 2009-10년 기간 동안 422억 달러였고, 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들 사이에 대략 균등하게 배분되었습니다. 2013-14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이 법안은 주정부 몫의 일부분을 신규 계획을 시행하는 카운티로 이전하도록 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하는 판매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같은 변동으로 인해 계획을 시행하는 참여 카운티 지방정부의 세입은 단기적으로 연간 총액 약 2억 달러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주 세입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주정부 프로그램에 지원할 예산은 사라지게 됩니다. 판매세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참여 카운티에 할당됩니다. 법안은 지방정부의 계획을 통해 판매세의 배분 및 해당 계획의 시행 지원에 사용될 일체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 문제를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발의안 제31호의 주요 조항

- ✓ **지방정부 계획의 허가 및 자금 지원**
 - 지방정부가 자체 공공 서비스를 조율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는 카운티에 주 세입을 일부 이전합니다.
 - 이러한 지방정부가 주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절차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이러한 지방정부가 지방 재산세를 서로 간에 이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 **입법부의 특정 법안 통과 권한 제한**
 - 새로운 자금 확보 출처 및/또는 지출 감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 비용 지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감소시키는 특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법안을 상기 요건에서 면제합니다.
 - 거의 모든 법안 및 수정안에 대해 입법부 승인 최소 3일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 ✓ **주지사의 주 지출 감축 권한 확대**
 - 주지사가 특정 상황에서 주 재정 위기 상황 시 지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 **공공 예산 책정 및 감독 절차 변경**
 - 연단위로 진행되는 주 예산 책정 절차를 2년에 걸친 주 예산 책정 절차로 변경합니다.
 - 입법부가 2년 간의 의회 일정 중 일부를 각종 공공 프로그램의 입법부 감독 목적으로 할애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각자의 예산이 여러 가지 목표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31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재정적 영향

31

앞서 기술한 2억 달러의 이전과 더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그 외 추가적인 재정적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자체적 절차를 수립하도록 허용할 경우, 주정부 절차를 적용할 때와는 다른 프로그램 결과물이 발생하여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특정 지방정부에 얼마나 많은 돈이 가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산세 납세자들이 내는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신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소액의 추가 금액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이 부분에 따른 변동 사항은 (1) 얼마나 많은 수의 카운티가 계획을 수립하는지, (2) 얼마나 많은 지방정부가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시행 방식을 변경할 것인지, (3) 그러한 활동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본 법안의 순 재정 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카운티의 경우 그 영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특정 법안 통과 권한 제한

현재 법률

예산 및 기타 법안. 매년, 입법부와 주지사는 주 예산안과 기타 법안들을 승인합니다. 예산안이 승인되어야 일반 기금(General Fund)과 그 외 다른 많은 주 계정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기금은 교육, 보건, 사회보장 서비스, 교도소 및 기타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주요 운용 계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과 대부분의 다른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입법부의

양원(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과반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 세금을 인상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2/3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법의 도입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절차로서 입법부와 주지사는 주 지출과 세입에 대해 각각 제안된 법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주 헌법에 주정부가 각각의 신규 법률에 대해 자금 조달 방법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정부가 전체적으로 균형 예산을 달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년 주에서 예산안을 채택할 때마다 주에서는 반드시 일반 기금 세입 추정치가 승인된 일반 기금 지출에 상응하거나 초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제안 사항

주 비용을 늘릴 수 있는 입법부 권한을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어느 회계연도든지 주 지출 인상분이 2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지출 삭감, 세입 인상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 등을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를 입증해 보이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요건은 새로이 주정부 부서 또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현재의 주정부 부서 또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주정부 지정 지방정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법안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대상으로는 주정부 부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일회성 지출을 허용하는 법안, 업무량 또는 생활비 증가로 인해 특정 부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인상하는 법안, 연방법에 정해진 예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 단체 협상 협약에 따라 주정부 직원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인상하는 법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2008-09년 이후 어느 연도든지 주 균형 예산 달성을 위해 삭감했던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복구하는 법안도 제외됩니다.

주 세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입법부 권한을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어느 회계연도든지 주 세금 또는 기타 세입 감소분이 2천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지출 삭감, 세입 인상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 등을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를 입증해 보이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점을 변경합니다. 이 법안에는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동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은 표결을 통해 각종 법안과 그러한 법안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 최소 3일 동안 해당 법안과 개정안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자연 재해 또는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특정 법안은 제외).

재정적 영향

이 법안은 입법부가 주 지출을 늘리거나 세입을 감소시키는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기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입법부의 권한을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할 경우,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주 지출은 줄어들고, 세금과 각종 수수료는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이 부분이 초래하는 재정적 영향은 입법부의 향후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주 지출 감축 권한 확대

현재 법률

예산안이 승인되고 나면 발의안 제58호(2004)에 따라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세입 부족 상황 또는 지출 초과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재정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재정 비상 사태가 선포되면, 주지사는 반드시 입법부 특별 회의를 소집해 재정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45일 이내에 조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법부가 45일 기한 이내에 결정하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현재 주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주지사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안 사항

특정 상황에서 주지사의 지출 감축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입법부가 45일 이내에 재정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주지사가 일반 기금 지출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대부분의 학교 지출, 채무 상환, 연금 납부 및 일부 건강 및 사회보장 서비스 프로그램 지출 등 헌법이나 연방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는 지출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카테고리들은 현재 일반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축분 총액은 균형 예산 달성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는 양원 표결에서 모두 2/3 찬성을 통해 감축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31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31

재정적 영향

주지사의 지출 감축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반적인 주 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의 재정적 영향은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수년 후에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예산도 주 지출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예산 책정 및 감독 절차 변경

제안 사항

연단위 주 예산 책정 절차를 2년 단위 절차로 바꿉니다. 이 법안은 주 예산 책정 절차를 연단위(연차) 절차에서 2년 단위(격년차) 절차로 바꾸게 됩니다. 2015년부터 주지사는 2년에 한 번씩 다음 2년에 대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이 되면 주지사는 2015년 7월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와 2016년 7월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주지사는 2년에 한 번씩 예산 업데이트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입법부의 예산안 통과에 대해 6월 15일이라는 현행 헌법 상 기한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입법부 감독을 위해 구체적인 기간을 할애합니다. 현재 입법부는 2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 활동을 감독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입법부가 2년에 걸친 회기 중 두 번째 연도 7월부터의 기간을 공공 프로그램 감독 및 검토 기간으로 할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서는 입법부가 최소 5년에 한 차례 주정부가 관리하거나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절차를 수립해 그 절차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입법부는 (1) 즉시 발효하는 법안(보통 양원 표결에서 모두 2/3 찬성표가 필요), 또는 (2)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또한 양원 표결에서 모두 2/3 찬성표 필요)을 제외하고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주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책정 요건을 부과합니다. 현재,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공공 프로그램의 운영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하여금 예산안에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일반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정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예산이 다양한 프로그램 목표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그러한 목표 달성 측면의 진척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적 영향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예산 책정 요건을 시행하고 새로운 평가 요건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수립하는데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비용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해당 요건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 전체로 볼 때, 필요한 비용은 **연간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새로운 예산 책정 및 평가 관련 요건은 지출 우선 순위 재수립, 프로그램 효율, 일부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추가 재투자 등과 같이

발의안 제31호

주정부 예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민발의 헌법 개정안 및 법안.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정부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법안의 재정적 영향 요약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듯이 이 법안은 주 판매세 세입 일부를 지방정부의 계획을 수행하는 각 카운티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연간 2억 달러에 달하는 주 세입이 감소할 것이며, 그만큼 해당 카운티의 지방정부로 가는 예산 액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른 기타 주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 재정 변화에 따른 순 영향은

전체적으로 행정 당국자들이 앞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출 및 세입에서 이러한 기타 변화들은 위에 언급된 2억 달러에 달하는 판매세 세입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1

그림 2 발의안 제31호의 주요 재정적 영향		
	주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계획의 허가 및 자금 지원		
각종 계획 자금 지원	연간 세입 2억 달러 축소.	계획 수립 카운티의 지방정부에 대한 연간 세입 2억 달러 증가.
신규 계획의 효과	예측할 수 없지만 상당한 잠재적 효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부 카운티에서 상당한 잠재적 효과.
입법부의 특정 법안 통과 권한 제한	입법부의 향후 행동에 따라 잠재적으로 지출 감소(또는 세입 증대) 효과.	입법부의 미래 행동에 따라 지방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자금 지원 측면 잠재적 변동.
주지사의 주 지출 감축 권한 확대	몇년 이내 지출 감소 가능성.	몇년 내 지방 프로그램에 대한 주 자금 지원 감소 가능성.
공공 예산 책정 및 감독 절차 변경		
시행 비용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겠지만, 잠재적 비용 연간 수천만 달러.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겠지만, 잠재적 비용 연간 수천만 달러.
신규 요건의 영향	예측 불가능.	예측 불가능.

★ 발의안 제31호에 대한 찬성론 ★

31

경기에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주는 벌써 오랫동안 계속 예산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주정부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낭비, 남용 또는 과도 차입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보다는 특수 이해 단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이 결국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강제할 것이며, 유권자들과 납세자들이 정치인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초당파적 주 감사관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여러 주정부 기관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운영 개혁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감사관의 제안이 시행되었더라면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통합 법원 시스템 관리 시스템(Court Case Management System)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58개 카운티 중 단지 7개 카운티를 연결하는 데만 예산을 2억 달러 이상 초과해 5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난 후 결국 프로젝트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실질적인 균형 예산 달성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검토나 시민 감독 없이 더 이상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1호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 학교나 범죄행 당국, 기타 지역사회의 중요한 목적에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돈이 수백 달러씩 낭비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며,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늘리거나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를 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각 조항을 기존 리소스를 사용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세금을 각 시와 카운티에 되돌려 줌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에 찬성하면

- **시민 의견 반영과 투명성이 늘어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공개 검토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현재 주 예산에는 실질적인 투명성이나 공개 보고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가 반드시 입법부 의원들이 주 예산안 투표를 실시하기 전 최소 3일 동안 공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규 정부 지출에 대해 재정 감독 및 제약을 가합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가 먼저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은 상태로 2천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신규 지출 또는 세입 감소분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지방정부 통제 및 신축성을 강화합니다.** 2012년도 주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의 14억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지방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각 지방정부에 최대 2억 달러를 되돌려 줍니다. 각 도시, 카운티, 학군이 성과를 개선하고 지역별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 **예산의 성과와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중점을 측정 가능한 성과 달성에 두도록 하고, 주 입법부와 각 지방정부에 정기 공공 성과 보고서를 발행하고, 추가 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합니다.
-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모든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성과 개선 방안을 도약하기 위한 공개 성과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 대상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 **2년치 주 예산을 의무화합니다.** 정치인들이 단기 예산 통과 수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입법부 의원들에게 장기 재정 해결 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1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정부 지출을 제한하여 정부 예산 책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HON. CRUZ REYNOSO

캘리포니아주 대법관(명예)

HON. DELAINE A. EASTIN

전 공공 교육 교육감

PROF. JAMES FISHKIN 박사,

스탠포드 대학교

★ 발의안 제31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1호는 균형 예산을 달성하거나, 일반 시민의 의견 반영을 늘리거나, 성과를 개선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가 실제로 찬성측 주장이 약속하는 바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서서 지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복잡한 규칙, 제한, 요건을 새로 추가할 뿐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처가 둔하고 느려지며 비용은 늘고 효과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해당 조항들은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하여 법원이 그 의미를 파악해 정리하려면 수년간의 소송이 필요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비용을 늘리고, 관료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고,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는 약화시킬 것입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주민 투표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무시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공기 오염도, 공공 건강, 근로자 안전 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게 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른 세금을 인상하거나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는 세금을 인하할 수도 없고 학교 예산을 늘릴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에는 결점이 너무 많아 이를 지지하는 조직의 여러 구성원들은 이 발의안을 유권자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를 지지하는 캘리포니아 포워드 액션 기금(California Forward Action Fund)의 전 이사회 이사인 Bob Balgenorth는 이 발의안이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한층 더 해가 될 것" 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사임 서한을 통해 Balgenorth 씨는 "캘리포니아 포워드가 이 결함들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무장관에게서 서명을 제출한 데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결함 투성이 발의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31호에 반대 표를 던지십시오.

ANTHONY WRIGHT, 전무 이사

헬스 액세스 캘리포니아

LACY BARNES, 상무 이사

캘리포니아 교사 연맹

LENNY GOLDBERG, 전무 이사

캘리포니아 조세 개혁 연합

★ 발의안 제31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1호는 심히 부실하게 작성된 법안으로 모순적이며 개혁이 아닌 소송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혁을 원하고 있지만 발의안 제31호는 관료주의를 강화하고 새로운 문제점만 야기시킬 것입니다. 각종 제약과 부실하게 정의된 요건들만 겹겹이 추가함으로써, 세금 인하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들을 비선출 관료들에게 맡기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은 앞으로 수년간 소송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교육 및 기타 핵심적 기능에 필요한 예산 2억 달러를 삭감하여 각종 실험적 카운티 프로그램에 지출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지금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산의 많은 부분이 교육 예산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발의안 제31호는 주 세입 중 연간 2억 달러를 실험적 카운티 프로그램에 지출하게 될 특수 계정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서 지출해야 할 돈을 가지고 도박할 때가 아닙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가 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교육 예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발의안 제31호는 실제로 세금을 인상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주정부가 충분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개선을 채택하거나 학교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수년간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가 예산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인상하거나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세금을 인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 조항의 상충적인 성격으로 인해 주정부는 예산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세금을 인하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같은 조항의 의도는 주정부에서 세금을 인하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 부주의한 법안 작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의안 제31호는 이를 주 헌법의 일부로 영구화하려고 합니다.

발의안 제31호는 각 카운티들이 증대한 주법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공중 보건, 수질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공중 보건을 보장하고, 공기와 물의 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에는 지방 정치인이 주민 투표 없이 이러한 법을 변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이같은 조항의 남용을 방지할 만한 효과적인 방법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1호로 인해 추가적인 정부 절차와 관료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정부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수천 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서 수행 기반 예산 책정이라는 것은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미 수 차례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당파적 입법분석관에 의해 실시된 공식 재정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예산 책정 관행을 실시할 경우 일체의 개선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연간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확실하지만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혁을 원하지만 발의안 제31호는 상황을 좋기는 커녕 오히려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SARAH ROSE, CEO
 캘리포니아 보수유권자연맹
JOSHUA PECHTHALT, 회장
 캘리포니아 교사 연맹
RON COTTINGHAM, 회장
 캘리포니아 보안관 연구 협회

★ 발의안 제31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투명성, 공개 검토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본 정부 책임 법안은 납세자들이 특수 이해 단체와 로비 그룹에 이용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환경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보장할 것입니다.”

—Hon. Cruz Reynoso, 캘리포니아 대법관(명예)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책정 절차를 검증해 볼 때입니다. 더 이상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예상치 못한 적자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효과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James Fishkin 교수
 “발의안 제31호는 주정부의 돈을 빌려 지출하려는 유혹을 줄여 줄 것입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학교들이 교육을 개선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31호에 찬성 투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한 표와 같습니다.”

—Hon. Delaine Eastin, 전임 주 공익 교육장

발의안 제31호에 찬성하면

-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정부가 있지도 않은 돈을 지출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책정 절차에 투명성이 생길 것입니다.
- 새크라멘토에서 각 시 및 카운티에 이르기까지 통제력과 신속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www.sos.ca.gov를 방문하셔서 법안을 직접 살펴보고 정부가 더 이상 낭비성 지출을 하지 않도록 막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1호는 가장 엄격한 헌법 수정 요건 기준을 충족합니다. 발의안 제31호는 신중하게 작성되었고, 법적으로 유효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책정 절차와 운영관리를 분명히 개선할 것입니다.

BILL HAUCK, 전임 의장
 캘리포니아 헌법 개정 위원회

발의안 제32호

급여 공제에 의한 정치 기부금. 입후보자에 대한 기부금. 주민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장관 작성

급여 공제에 의한 정치 기부금. 입후보자에 대한 기부금. 주민발의 법안.

- 노동조합이 급여에서 공제한 자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업 또는 정부 계약업자에 의한 급여 공제(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금지가 적용됩니다.
- 직원이 고용주가 후원하는 위원회나 노동조합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것은 매년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 노동조합과 기업이 입후보자와 입후보자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다른 정치적인 지출(기업이 급여 공제 금지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가용 자원으로부터 지출하는 것 포함)은 계속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정부 계약업자가 선출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이 법안의 요건을 시행 및 집행하기 위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이 증가합니다(매년 100만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음).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정치개혁법(Political Reform Act). 유권자 투표로 채택된 발의안인 캘리포니아주의 1974년 정치개혁법(Political Reform Act of 1974)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선거 운동 재정 및 공개법 제정되었습니다. 정치개혁법은 주 및 지방 후보자, 지방 투표 법안, 지방 공직자에는 적용되지만, 연방 후보자 또는 연방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FPPC(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공정 정치 실천 위원회)는 (1) 위반 혐의 조사를 포함해, 정치개혁법의 각종 요건을 시행하며, (2) 정치개혁법에 대한 FPPC의 해석과 관련한 자문 및 의견 발표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행정적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방 선거 운동 재정 법률. 지방정부 중에는 정치개혁법에서 정하는 요건 외에 지방의 후보자, 투표 법안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 재정 및 공개 요건을 정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정 및 시행합니다.

정치적 지출. 많은 개인, 단체 및 기업들이 주 및 지방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자금을 지출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지출은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대한 금전적 기부, 선거 운동 무료 봉사, 의견 전달을 위한 광고 제작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 선거 운동 재정 법률에 따르면 정치적 지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정치적 기부.** 정치적 "기부"라는 표현에는 보통 (1) 후보자에게 직접, (2)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3) 이러한 재원을 특정 후보자나 투표 법안을 위한 지지 또는 반대에 사용하는 특정 위원회에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이 주 후보자(또는 특정 주 후보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위원회)에 제공하는 정치적 기부금의 액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개인, 단체 또는 기업은 주지사 후보자에게는 최대 2만 6천 달러까지, 그리고 입법부 의원직 후보자에게는 최대 3천 9백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상 정치 기부금은 주 또는 지방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독립적 지출.** 특정 후보자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하기 위해 지출된 돈이 (1) 특정 후보자 또는 (2) 특정 후보자나 투표 법안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와 조율하지 않고 지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독립적 지출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는 TV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그 광고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 운동과는 아무런 조율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 독립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현행 법률은 개인, 단체 및 기업이 독립적 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적 지출 내역은 반드시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 **기타 정치적 지출.** 정치적 지출 중에는 정치적 기부금이나 독립적 지출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넓은 범주에서 볼 때 조직이 그 구성원, 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행하는 지출, 즉 "구성원 소통"이 포함됩니다. 이같은 지출은 주법에서 제한하지 않으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급여 공제. 한정된 상황에서 고용주는 직원 급여에서 돈을 원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천 공제된 돈을 "급여 공제"라고 부릅니다. 흔히 이루어 지는 급여 공제 중에는 사회보장연금, 소득세, 의료 보험, 자발적 자선 기부 등을 위한 공제가 있습니다.

노동 조합 회비 및 수수료.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250만 명의 근로자가 노동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동 조합은 집단 협상 절차에서 직원들을 대표하며, 이를 통해 고용주 측과 고용 조건을 협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 조합은 (1) 조합원들로부터 걷은 회비와 (2) 조합을 대변하는 비조합원들이 집단 협상 절차에서 내는 공정 비율 수수료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으로 각종 활동 비용을 지출합니다. 고용주들은 이러한 회비와 수수료를 직원들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해 노동 조합으로 이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지출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급여 공제. 노동 조합 중에는 급여 공제를 통해 받는 자금 중 일부를 집단 협상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각종 활동 지원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지출에는 정치 기부금 및 독립적 지출, 그리고 노동 조합원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의 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은 집단 협상과 관련 없는 정치적 지출 및 기타 지출 목적으로 자신들의 공정 비율 수수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동 조합을 제외하고 현재 정치적 지출 재정 조달을 위해 급여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제안 사항

이 법안은 다음에 의한 주 및 지방 선거 운동 경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 선거 운동 재정 법률을 개정합니다.

-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 조합.
- 기업.
- 정부 계약업자.

이러한 제한은 미국 대통령이나 상하원 의원 등 연방 선출직에 대한 선거 운동 경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 공제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지출 재정 조달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 조합, 기업, 정부 계약업자, 주 및 지방정부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치적 목적"에는 정치적 기부금, 독립적 지출, 선거 운동과 관련한 구성원 소통, 그리고 그 외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집단 협상 등 그 외 다른 활동이나 연방 선거 운동에서의 지출과 같은 목적으로 급여 공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노동 조합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 및 노동 조합에 의한 정치 기부금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 및 노동 조합이 후보자에게 정치적 기부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나 노동 조합은 (1) 후보자에게 직접 또는 (2)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위원회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금지 조항은 기업이나 노동 조합이 독립적 지출 형식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부 계약업자가 선출된 공직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집단 협상 계약에 따른 공공 부문 노동 조합을 포함해) 정부 계약업자들이 자신들의 계약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선출 공직자에 대해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 계약업자들은 자신들의 계약이 고려 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이러한 선출 공직자에 대해 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 영향

주정부 입장에서는 위반 혐의 조사 비용과 자문 요청 대응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그 외 다른 행정 비용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합쳐 이러한 비용은 **연간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32호에 대한 찬성론 ★

발의안 제32호에 찬성합니다. 특수 이해 단체와 정치인들 사이의 금전적 고리를 끊읍시다.

정치인들은 기업들과 정부 노동 조합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운동 기부금을 받아 특수 이해 단체들이 시키는 대로 투표합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가 아닌 특수 이해 단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막대한 예산 적자, 고액의 연금과 같은 공금 유용, 해고가 불가능한 무능한 교사들의 양산입니다.

발의안 제32호는 기업과 노동 조합 등 특수 이해 단체들의 정치인에 대한 기부를 금지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특수 이해 단체가 아닌 캘리포니아 주민 개개인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특수 이해 단체들은 발의안 제32호가 자신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자금 연결 고리를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할 것입니다. 허위로 논점을 흐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도 합니다.

이들은 발의안 제32호가 부자들과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독립 PAC에 자금을 지원하는 헛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노동 조합과 기업 모두 독립 정치 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들 위원회는 헌법 보호 대상이므로 금지될 수가 없습니다.

"발의안 제32호는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에 대한 기업과 노동 조합의 기부를 종식시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미국 헌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정부에 대한 특수 이해 단체들의 영향력을 종식시킵니다. 발의안 제32호에 찬성표를 던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 캘리포니아 대법관 John Arguelles

발의안 제32호에 대한 찬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간단하고 직접적인 개혁을 의미합니다.

- 정치인에 대한 기업 및 노동 조합의 기부 금지
- 계약업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을 승인하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
- 정치적 기부를 자발적인 것으로 만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특수 이해 단체들과 정치인들 사이의 자금 고리를 단절시킵니다.

정치인들은 컨트리 클럽, 와인 시음회, 시가 시연회 등에서 고가의 참석비를 받는 화려한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합니다. 거물급 로비스트들은 이같은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선거 운동

기부금으로 수천만 달러를 건넵니다. 이런 일들은 수백 가지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부지기수로 일어나며, 정치인들과 특수 이해 단체들은 서로 상부상조합니다.

- 대형 개발 업체, 부유한 영화 제작자들, 타주의 기업들에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줍니다.
- 기부자들은 주정부의 환경 규정 적용에서 면제됩니다.
- 정부 공무원들에게는 높은 연금 혜택을 줍니다.
- 세금 인상을 제안하면서 학교와 치안 조직 예산은 삭감하고, 목적이 불투명한 초고속 열차와 같은 낭비적 프로그램 예산을 보호합니다.

특수 이해 단체들이 직원 급여에서 정치적 목적 자금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에 기부되는 모든 돈이 엄격한 자발적 기부에 의한 것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규모 캘리포니아주 노동 조합의 정치적 기금 모금 관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nox vs. SEIU*)

발의안 제32호는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이 자신이 버는 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합니다. 근로자들이 정치인이나 자신들이 반대한 명분을 위해 강제로 기부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업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을 승인하는 정치인들에게 기부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 기부자들에게 계약을 발주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들은 아예 배제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2호는 이같은 특별 대우를 비롯하여 9천 5백만 달러를 지출했지만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파생적 낭비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CNET, 2002년 6월 12일*)

여러분의 찬성이 없다면 이같은 특수 이해 단체 부정부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 32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www.stopspecialinterestmoney.org

GLORIA ROMERO, 주 이사

Democrats for Education Reform

GABRIELLA HOLT, 회장

Citizens for California Reform

JOHN KABATECK, 전무 이사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California

★ 발의안 제32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2호에 대해 투표하시기 전에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억만장자가 면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내고 이 법안을 투표 용지에 포함시키겠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특수 이해 단체가 후원하는 발의안에 빠져나갈 구멍이나 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합정이란 항상 있었고 발의안 제32호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보험사, 억만장자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발의안 제32호에서 유일하게 면제를 받는 세 가지 그룹이며, 노동 조합은 더 이상 후보자에게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 특수 이해 단체의 경우 계속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제한 자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2호 지지자들은 근로자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들이 반대하는 명분을 위해 강제로 돈을 기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은 근로자들이 강제로 노동 조합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동 조합 수수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발의안 제32호의 주요 지지자는 전 월스트리트 투자자들, 보험사 임원들, 헤지펀드 관리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발의안 제32호의 조항 면제 대상입니다. 왜 그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 다른 발의안 제32호 자금 지원자들은 우리 환경과 이웃을 보호하는 법률로부터 면제 받으려고 애쓴 개발 회사 소유자들입니다. 발의안 제32호는 이러한 기업들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지 생각해 보십시오.

• Business Super PAC과 독립적 지출 위원회들도 발의안 제32호 조항 면제 대상입니다.

• 발의안 제32호는 방대한 주정부 관료 조직을 더 키우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돈 수백만 달러를 가짜 개혁에 지출하도록 만듭니다.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은 이 발의안 제32호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이 발의안이 엉망인 새크라멘토의 상태를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는 거짓된 시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JO SEIDITA, 의장

캘리포니아 Clean Money Campaign

JOHN BURTON, 의장

캘리포니아 민주당

ROBBIE HUNTER, 비서실장

Los Angeles/Orange 카운티 건설업위원회

★ 발의안 제32호에 대한 반대론 ★

캘리포니아 여성 유권자 연맹, California Common Cause, California Clean Money Campaign은 모두 발의안 제32호에 반대합니다.

발의안 제32호는 겉보기와는 다른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32호는 "정치 개혁"을 약속하지만, 사실상 특수 이해 단체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 표를 던져야 합니다.
정치와 돈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 Business Super PAC과 독립적 지출 위원회들도 발의안 제32호 조항 면제 대상입니다. 이 단체들은 후보자들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고, 투표 법안의 통과 또는 거부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지만 스스로는 선거 운동의 기부금 제한이나 투명성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무제한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의안 제32호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지도 않습니다.
- 발의안 제32호가 통과된다면, 기업 특수 이해 단체들이 후원하는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여 Super PAC은 선거 운동 자금이 모금되는 주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이미 2004년 이래 각종 캘리포니아주 선거에서 9천 5백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출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는 TV는 한층 더 상호비방적 광고들로 흥수를 이룰 것입니다.

진정한 선거 운동 제정 개혁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거 운동 개혁은 특정인에게 특별 면제 혜택을 주는 일 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합니다. 발의안 제32호는 월스트리트 투자사, 헤지 펀드, 개발자, 보험사 등 수천 개의 대기업들에게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면제 혜택을 받는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이 작성한 주요 기부자(Major Donors)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2009년 이후만 1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해 왔습니다.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이 법안은 노동 조합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급여 공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99%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은 정치적 기부 목적으로 급여 공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수익금을 사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습니다.

공식 요약문을 한 번 보십시오. "급여 공제 금지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가용 재원에서 나오는 기업 지출을 포함해, 다른 정치적 지출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문구에서 불균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2호의 주요 지지자들은 대부분 전 보험사 임원들, 월스트리트 임원들, 개발자, 그리고 발의안 제32호의 특별 면제 조항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명분에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새크라멘토에는 당파적 다툼과 교착 상태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 선거 운동에 사용된 돈은 우리 모두가 정치 선거 운동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의안 제32호의 후원자들은 우리의 분노와 불신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려고 합니다.

발의안 제32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평성이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기업 특수 이해 집단은 그대로 두고 노동 조합과 근로자들만 제한할 경우,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기업 특수 이해 집단을 옹호하는 정치 제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수 이해 단체가 대기와 수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장악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발의안 제32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http://www.VoteNoOn32.com>을 방문해 발의안 제32호가 왜 겉보기와 다르며 일반 캘리포니아 시민에게 해가 되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발의안 제32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 JENNIFER A. WAGGONER**, 회장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
- DEREK CRESSMAN**, 지사장
캘리포니아 커먼코즈
- DAN STANFORD**, 전 의장
캘리포니아주 공정 정치 실천위원회

★ 발의안 제32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특수 이해 단체들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발의안 제32호에 없는 내용 때문에 발의안 제32호를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발의안에 들어 있는 내용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발의안 제32호는 대법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 조합 모두가 정치인들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발의안 제32호에 대한 찬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혁을 의미합니다.

- 2010년도 선거 기간 중 기업과 노동 조합은 주 정치인들에게 4천 8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발의안 제32호가 있었다면, 그 4천 8백만 달러는 절대 후보자들에게 기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계약업자들은 절대 다시는 자신들의 계약을 승인하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 기업들이나 노동 조합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돈을 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2호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 및 노동 조합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모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든든한 특수 이해 단체들은 발의안 제32호를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주정부에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LA 학군이 학생들을 성적 확대한 교사를 신속하게 파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학군은 의회 의원들에게 요청해 파면을 쉽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년에 걸쳐 정치인들에게 100만 달러를 기부한 캘리포니아주 최대 교사 노동 조합이 로비스트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개혁안은 무효화되었습니다.

LA의 Antonio Villaraigosa 시장은 그것을 "냉소적 정치 조작"이라고 불렀습니다. *San Francisco Chronicle* 지는 "역겨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캘리포니아인들에게 정말로 해가 됩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손에서 크나큰 돈가방을 빼앗아야 합니다. 발의안 제32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 MARIAN BERGESON**
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장관
- JON COUPAL**, 의장
Howard Jarvis 납세자협회
- HON. JOHN ARGUELLES**
전 캘리포니아 대법관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 운전자가 이전에 어떤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보유했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현행법을 변경합니다.
- 보험회사가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이력에 비례하여 운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보험 비용을 인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보험의 실효가 군 복무 또는 실직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실효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이 실효된 운전자가 보험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3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운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아마도 주정부의 보험료세 세입에 대한 재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자동차 보험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2011년도 캘리포니아 보험사들이 징수한 전체 보험료 중 약 210억 달러(40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보험 규정. 198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특정 유형의 보험에 대해 요율 변경 시, 요율 변경이 발효되기 전에 보험 커미셔너(Insurance Commissioner) 변경 내용을 검토 및 승인하도록 하는 발의안 제 103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발의안 제 103호 또한 다음과 같은 요율 결정 요인들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에 대한 요율 및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중요도 순으로, (1) 피보험자의 운전 안전 기록, (2) 피보험자의 매년 운전 거리, 그리고 (3) 운전 시작한 이래의 연수입니다.

보험 커미셔너는 자동차 요율 및 보험료 결정을 위해 추가 요율 결정 요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목적을 위해 16가지 선택적 요율 요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계속 자사 보험을 유지하는

고객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서 자사로 바꾼 신규 가입 고객에게 이같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료세.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는 현재 주 법인소득세 대신 보험료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세 세액은 매년 자동차 보험 및 그 외 다른 보험에 대해 매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올린 보험료 수입 총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201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사들이 납부한 보험료세 세입은 약 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세입은 주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제안 사항

이 법안은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사에서 자사로 옮긴 신규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가입 유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입 유지는 보통 한 보험사가 중간에 변경 없이 계속 자동차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중간에 변동 기간이 있더라도 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변동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여전히 이 할인 혜택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이유에서든 지난 5년 사이 실효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고 또는 일시적 해고에 따른 고용 상실로 지난 5년 사이 실효 기간이 18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군복무로 인한 경우.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경우 부모의 자격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혜택은 비례적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할인은 직전 5년 사이 해당 고객의 보험 가입 연도 수(개월 수는 연도로 반올림)를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본인이 이전 5년 기간 중 3년 동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 고객은 전체 가입 유지 할인 혜택 중 60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재정적 영향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하는 보험사들의 전체 자동차 보험료 수입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거두는 보험료세 수입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유지 할인 혜택을 도입할 경우, 할인 혜택 수혜 자격을 가진 고객이 지불하는 보험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분은 이러한 할인 혜택 수혜 자격이 없는 고객이 지불하는 추가 보험료로 벌충될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한 주 보험료세에 대한 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발의안 제33호에 대한 찬성론 ★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은 법을 준수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는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보험사를 찾아 유리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약 85%가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합니다. 법에 따라 계속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계속 같은 보험사의 보험을 이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현행 법률은 가입자가 더 나은 보험을 찾거나 더 나은 혜택을 찾을 경우, 가입 유지에 따른 할인 혜택을 철회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고, 어떤 회사든 자동차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라면 계속해서 이같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소비자들이 더 나은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층, 해외 전쟁 복원병 협회(VFW), 캘리포니아 미군 협회(American GI Forum of California), 소방관들, 소기업 소유주들, 개인 소비자들, 그리고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모두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보상 받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행사해 다른 보험사로 바꾼다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따른 보상이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 때문에 보험사들 중 일부는 발의안 제33호를 좋아하고 일부는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보험 대리점이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발의안이 보험사들로 하여금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33호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간단하고, 이치에 맞는 내용입니다.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어떤 보험사를 고르든지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의안 제33호는 보험 유지 할인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보험 미가입자들의 보험 가입을 장려합니다. 여러분은 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해당 할인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율도 커집니다. 따라서, 미가입 운전자들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도로가 더욱 안전해집니다.

발의안 제33호는 그 외 다음과 같은 다른 보호 장치도 제공합니다.

- 현역 군 복무 중이신 분들의 경우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할인 혜택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American GI Forum과 Veterans of Foreign Wars 등의 주도 하에, 군인 가족들도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실직 또는 임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최대 18개월까지 보험 유지 운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운전 가능 연령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학교 때문에 멀리 가 있거나 관계 없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90일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러한 할인 혜택 수혜 자격이 유지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할인 혜택 자격 박탈 걱정 없이 여러 보험사 중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간 더 치열한 경쟁과 더 우수한 보험 요율로 이어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자동차 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행동은 보상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ROBERT T. WOLF, 회장
CDF 소방관
ESTERCITA ALDINGER
소기업 소유주
DEAN LEE
VFW(해외 전쟁 복원병 협회)

★ 발의안 제33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보험업계의 속임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더 많은 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3호의 자금 99%는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해 주고자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업계의 억만장자 한 사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험사 임원이 우리 돈을 절약해 주기 위해 주민 발의안에 800만 달러라는 돈을 썼습니까?

발의안 제33호는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가진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이 발의안은 대학 진학, 심각한 부상으로 부터의 회복, 또는 대중 교통 이용 등과 같이 합법적인 이유로 운전을 그만 뒀던 사람들이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이전에 운전한 경험이 없거나 과거에 경제적 이유로 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는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2010년에 이 억만장자 소유 회사가 비슷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천 6백만 달러를 썼을 때 이 법률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더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직했던 주민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다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더 높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중병이 들어 보험 가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회복 후 다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더 높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킬 것입니다. 이 억만장자 보험사 소유주에게 자동차 보험의 규제 완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DeANN McEWEN, RN, 회장
캘리포니아 간호사협회
RICHARD HOLOBER, 전무 이사
캘리포니아 소비자연합
JAMIE COURT, 회장
소비자 감시 단체

★ 발의안 제33호에 대한 반대론 ★

소비자 운동가들도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 수백만 명의 책임감 있는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 받기 위한 또 하나의 술수입니다.

Mercury Insurance는 2010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위해 1천 6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Mercury Insurance의 억만장자 회장 George Joseph은 발의안 제33호 자금을 대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언제부터 억만장자 보험사 소유주가 여러분 돈을 아껴 주려고 수백만 달러씩 썼습니까?

발의안 제33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운전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줍니다. 법무장관의 공식 요약문에 따르면 발의안 제33호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이 말은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가진 운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적혀 있는 내용과 실제 적용되는 것이 다른, 교묘하게 작성한 법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보험부(Department of Insurance)는 소위 "보험 유지 할인" 수법은 많은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에게 "할증 요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Consumer Reports의 정책 및 옹호 기구인 Consumers Union이 이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새로 취직해 운전을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대형 보험사들의 책임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보험업 규제 완화를 실시하며, 바로 그 때문에 Mercury Insurance라는 회사의 소유주로서 소비자들에게 계속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해 온 억만장자가 이 발의안의 자금 99%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부는 Mercury 사가 "고객들을 착취하고 거만함과 무관심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왔으며 그 상응하는 악명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합니다. 이는 과거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었던 책임감 있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3호는 보험사들이 단순히 지난 5년 사이의 어떤

시점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다 뿐이지 그 외에는 완벽히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훨씬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도록 허용합니다. 운전자들은 당시에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보험이 필요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산층 가족들에게 손해가 되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3호 할증 요금을 합법화한 주에서 나타난 결과는 보험료 인상이었습니다.

- 텍사스주 주민들은 61%를 더 냅니다.
- 네바다주 주민들은 79%를 더 냅니다.
- 플로리다주 주민들은 103%를 더 냅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합니다. 이는 보험 미가입 운전자들만 늘어나고, 가입자 보험료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부과하려는 위약금으로 인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어 보험 미가입 운전자 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모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미가입 운전자들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가입 운전자가 늘수록, 납세자들과 주정부 부담은 늘어납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미 2010년 이후 이와 거의 유사한 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강력한 특수 이해 단체에 우리의 거부가 확인한 거부임을 명확히 보여 줍시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권한을 더 강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 투표합니다. 사실이 아닌 달콤한 사랑발림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opTheSurcharge.org>를 참조하십시오.

HARVEY ROSENFELD, 설립자
소비자 감시 단체

ELISA ODABASHIAN, 이사
서부 해안 지역 및 주 선거 운동 단체, Consumers Union,
Consumer Reports의 정책-옹호 기구

NAN BRASMER, 회장
캘리포니아 퇴직 미국인 동맹

★ 발의안 제33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법을 준수하면 할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 상 보험사를 바꾸면 할인 혜택 자격을 상실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조건이 더 좋은 보험사를 찾아 가입하더라도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발의안에 대해 겁을 주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발의안 제33호의 지지자이자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George Joseph 씨는 캘리포니아인들이 지지하는 고객 서비스와 낮은 보험료를 제공해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발의안 제33호를 읽고 진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소방관들과 고속도로 순찰대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Highway Patrolmen)는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이 더 나은 자동차 보험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므로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합니다.

불공정한 기업 관행에 맞서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소비자 그룹 Greenlining Institute는 이 법안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운전자들이 보험사를 바꾸도 보험 유지 할인 혜택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는 법을 준수하는 운전자들과 어떤 회사를 선택하든지 원하는 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보험사를 변경하기가 더 쉽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쟁을 늘리고 모두에게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며, 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이 보험 유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발의안 제33호는 군 가족, 실업 또는 임시 해고 상태의 소비자, 학생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미가입 운전자들에게 보험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해의 전쟁 복원병 협회와 GI Forum 등 재향군인 단체들도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ROBERT T. WOLF, 회장
CDF 소방관
JULIAN CANETE, 회장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
SAMUEL KANG, 법무 자문위원
Greenlining Institute

제34호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장관 작성

사형. 주민발의 법안.

-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최고 형량인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합니다.
- 이미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합니다.
-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교도재활부가 명령한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의 임금은 피해자 배상 벌금 또는 명령을 적용하여 공제한다고 명시합니다.
- 살인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법집행기관에 1억 달러를 전용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운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정부와 카운티는 살인 재판, 사형 항소 및 교도와 관련하여 첫 수년 동안 매년 약 1억 달러를 절약하고, 그 후에는 절약 금액이 매년 약 1억 3,000만 달러로 증가합니다. 이 추정 금액은 주로 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법과 미래에 범죄자들에게 달리 사형을 선고 및 집행하는 비율에 따라 수천만 달러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법집행기관에 향후 4년 간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정부에 총 1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합니다.

34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살인 및 사형. 일급 살인은 일반적으로 (1) 의도적이며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2) 납치 등 특정 기타 범죄와 동시에 발생한 불법적 살인으로 정의됩니다. 일급 살인은 최소 25년 이후 주정부 가석방 위원회에 의해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주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법에 의거 범죄의 구체적인 "특수 상황"이 법원에서 기소 및 입증된 일급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받습니다. 현행 주법은 살인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행된 경우, 예외적으로 잔인한 경우, 피고가 다른 구체적인 범죄 활동 중에 살인을 자행한 경우 등 기소가 가능한 여러 특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 상황이 기소 및 입증된 경우에는 배심원이 적용할 처벌을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형 집행. 사형을 구형하는 살인 사건 공판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피고가 살인 및 기타 기소된 특수 상황에 대해 유죄인지를 결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사형 평결은 자동으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됩니다.

이러한 "직접 항소"에서 피고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부적절하게 포함 또는 배제된 증거 등 재판 중에 발생한 주법 또는 연방 헌법의 위반 사항을 입증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유죄 및 사형이 확정되면 피고는 미국 대법원에 판결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형 건은 직접 항소 외에도 일반적으로 주 법원 및 연방 법원 모두에서 광범위한 법정 소송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법정 소송은 직접 항소에서 고려된 요소와 다른 사건 요소(피고의 변호인이 무능했다는 주장 등)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신변보호법" 청원으로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주지사에 감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 선고에 이어지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데에는 최대 이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 모두에서 법원 및 검찰 비용뿐만 아니라 살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피고를 위한 변호인 비용 등 살인 사건 공판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소 과정에서 사형을 확정하고자 주 법무성에서 검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주정부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주정부 기관(주관선변호인사무국(Office of the State

제34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Public Defender), 신변보호법지원센터(Habeas Corpus Resource Center) 포함)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변호인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변호인을 제공합니다.

1978년 현 사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약 900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14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83명은 사형 집행 전에 사망했고 약 75명은 법원에 의해 감형되었습니다. 2012년 7월 사형 선고를 받고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수는 725명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직접 항소 또는 신변보호법 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남자 사형수는 대개 San Quentin 주 교도소(사형수 수감 시설)에 수감되어 있고 여자 사형수는 Chowchilla의 중앙 캘리포니아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다양한 보안 규정과 절차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수감자와 관련한 보안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개 사형수가 감방 밖에 있는 동안에는 수감을 채우고 한 명 또는 두 명의 교도관이 항상 호송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수감자는 여럿이 감방을 같이 쓰는 반면에 사형수는 현재 독방에 수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 사항

본 법안은 주정부의 현 사형법을 폐지합니다. 또한 본 법안에 따라 일반적으로 살인범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일을 해야 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지역 법집행기관에 새로운 주정부 자금이 제공됩니다.

사형 폐지. 본 법안에 따라 어떠한 범죄자도 주정부에 의해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며 대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재선고될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형 관련 직접 항소 및 신변보호법 청원을 모두 주 항소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주 항소법원이나 상급법원은 사형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후에 남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수감자 노동 규정. 현행 주법은 일반적으로 살인범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보안상의 위험이 커서 노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없는 수감자 등 노동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또한 수감자는 법원에 의해 범죄 피해자에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안은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이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일을 해야 하며 주 규정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 지급해야 하는 벌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법안에 따라 주 규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감자 노동 규정과 관련한 기존 교도소 관행이 반드시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법집행기관을 위한 기금 설립. 본 법안에 따라 살인 및 강간 해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보안관, 검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별 기금이 설립됩니다. 예를 들어 본 법안은 기금을 살인 및 성범죄 수사 또는 기소 인력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법안에 따라 2012-13년에는 1000만 달러, 2013-14년, 2015-16년에는 각각 3천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가 주정부의 일반기금에서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은 주 법무장관이 정한 공식에 따라 지역 법집행기관에 분배됩니다.

재정적 영향

본 법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재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사건 공판

법원 소송 절차. 본 법안에 따라 현 법률상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의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형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살인 사건과 관련한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첫째, 일부 재판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사형 선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인 사건

제34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공판의 또다른 측면도 단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사형 구형을 꺼릴 수 있는 배심원을 제외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재판의 배심원 선정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사형 폐지에 따라 일부 살인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관선 변호인과 관련하여 카운티에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이 구형된 사건에 필요한 변호인의 수가 더 많고 처벌 단계와 관련한 수사 및 기타 준비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교도소. 본 법안이 살인 사건 공판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의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살인죄, 특히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대개 재판 및 선고가 완료될 때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사형의 폐지로 일부 살인 사건의 재판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살인으로 기소된 사람이 주 교도소로 이전되기 전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의 비용은 줄고 주 교도소의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비용 절감. 주정부 및 카운티는 살인 사건 공판과 관련하여 감소된 비용으로 주 전체에서 연간 수천만 달러를 절감할 것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본 법안이 없었을 경우 진행되었을 사형 재판의 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정부와 카운티는 법원 관련 자원의 일부를 다른 법원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티 교도소에서 절감된 비용은 더 이상 사형 재판 피고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교도소 공간을 현재 일부 카운티에서 교도소 공간의 부족으로 조기에 석방되는 범죄자 등 다른 범죄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만큼 상쇄될 것입니다.

사형의 폐지로 범죄자들이 일부 살인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 얻는 보상이 줄어드는 만큼 위의 비용 절감액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사형이 금지되고 재판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사건보다 재판으로 회부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카운티 교도소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피고 변호인과 관련한 주정부 및 카운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항소 소송

시간이 지나면서 본 법안에 따라 사형 항고 과정에 참여하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과 주정부 기관의 지출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주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와 관련하여 계류 중인 항소를 모두 해결할 때까지는 항소와 관련한 주정부 지출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비용 절감액은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의 항소가 늘어남에 따라 연간 총 100만 달러 정도로 정부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 교정

사형 폐지는 여러 면에서 주 교도소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형을 폐지하면 이전에 사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가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되기 때문에 교도소 수감 인원과 비용이 다소 높아질 것입니다. 사형수가 현재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용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수백 명의 사형수를 수감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으로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형수를 수감 및 감독하기 위한 보안 조치는 수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형수 수감 비용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수감자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영향의 순영향은 연간 수억 달러로 주 교도소 시스템 운영 비용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감액은 여러 원인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법안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이행되었을 집행 비용이 증가하면 향후 사형수 수감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을 폐지하는 본 법안의 조항에 따른 교정 비용 절감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면 본 법안이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면 사형수 수감 비용도 증가할

34

제34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것입니다. 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로 인한 교정 비용 절감액이 예상보다 더 높아집니다.

일반기금의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의 이전

본 법안에 따라 총 1억 달러가 2012-13년부터 2015-16년까지 주정부 일반기금에서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여러 주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할 일반기금 자원은 줄어들지만 보조금을 받는 지방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늘어납니다. SAFE 캘리포니아 기금에서 지역 기관으로 제공되는 자금에 따라 체포 및 기소가 늘어나는 만큼 본 법안으로 인해 재판 법원, 교도소 운영을 위한 주정부 및 카운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정적 영향

교도소 신축. 본 법안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사형수의 수감과 관련한 향후 시설비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향후 교도소 신축 비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절감의 정도는 향후 사형수 증가율, 주정부의

향후 사형수 수감 방법, 전체 교도소 수감 인원 증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인 사건 발생 비율의 영향. 사형 폐지가 캘리포니아주 살인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 법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형사 소송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전체적으로 본 법안에 따라 살인 사건 공판, 항소 소송, 주 교정과 관련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액은 처음 몇 년 간은 연간 약 1억 달러였다가 이후 연간 약 1억 3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간 비용 절감액의 실제 액수는 본 법안의 집행 방식과 본 투표가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사형 선고 및 집행 비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수천만 달러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법안에 따라 주에서는 총 1억 달러를 향후 4년 동안 지방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 발의안 제34호에 대한 찬성론 ★

여러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일부는 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캘리포니아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Franky Carrillo는 16세의 나이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여기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무죄가 입증되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Cameron Willingham은 2004년에 텍사스에서 방화를 저질러 자녀들을 살해한 죄로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공정한 수사 결과 방화는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처형된 다음 무죄가 밝혀져야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LaDoris Cordell 판사, Santa Clara(퇴직)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 1967년 이후로 형이 집행된 사람은 고작 13명에 불과하고 2006년 이후 사형에 집행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형수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 우리는 세금으로 자금을 대는 최대 25년의 항소 건과 특수 수감에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형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일을 하고** 판사의 명령에 따라 피해자보상기금에 **돈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또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 **죽을 때까지** 감옥을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세금 낭비**가 사라져 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수의 살인범과 강간범을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예산을 절감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제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보다 사형의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 중립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형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는 5년 동안 **약 10 달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사형수 특수 수감 비용이 사라지면서 비용이 절감됩니다.

http://media.lls.edu/documents/Executing_the_Will_of_the_Voters.pdf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을 **법집행기관과 학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잔인무도한 살인범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가도록 들 수 없습니다.**

매년 살인 사건의 거의 절반과 강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미결로 남습니다.** 살인범이 자유롭게 확보하며 다시 강간을 저지르고 인명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형수에게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는 동안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들을 즉시 법의 심판에 따라 영원히 감옥에 가둬 혹독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발의안 제34호는 세금을 절감**하고 절감된 1억 달러의 돈을 강간 및 살인 사건의 해결에 유용한 DNA 테스트, 과학수사연구소 및 기타 도구에 쓰이도록 합니다.
- 발의안 제34호에 따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은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1977년 이후 온당하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모두 여전히 감옥에 수감 중이거나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분명 실효성이 있으며 결코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고한 사람에 사형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사형제도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자체를 해결해야 보다 사회가 안전해집니다.” —전직 법무장관 John Van de Kamp

“Willingham와 같은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뻔한 사건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의안 제34호를 지지합니다.”

—Bishop Flores, San Diego 교구

발의안 제34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GIL GARCETTI, 지방 검사
Los Angeles County, 1992–2000

JEANNE WOODFORD, 교도소장
캘리포니아 사형수 수감 교도소, 1999–2004

JENNIFER A. WAGGONER, 회장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

★ 발의안 제34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JERRY BROWN은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수 중 무죄인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San Francisco Chronicle*, 12-03-07.

발의안 제34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발언이든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죄, 범죄 해결, 비용 절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34호는 캘리포니아주 일반 기금에서 1억 달러를 가져갈 것입니다. **비용 절감으로 이 돈이 충당될 거라는 찬성측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의안 제34호는 살인범들이 평생 동안 수감 상태로 보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간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낭비할 것입니다.” —Mike Genest, 2005–2009 캘리포니아주 재무부 국장.

발의안 제34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발의안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이른바 “노동 요구안” 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로서 살인자들이 만족스러운 체육 활동까지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무죄임이 밝혀진 Franky Carrillo . . . 그는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사형수 감옥” 이란 건 없습니다. San Quentin 교도소가 있을 뿐입니다. 유권자들은 현명하므로 발의안 제34

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지 않으며 그저 반대할 뿐입니다. 또한 이들은 보다 높은 비용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합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에게 끔찍하게 죽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주요 법집행기관이 발의안 제34호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Scott Seaman, 캘리포니아 경찰서장협회 회장.

죄를 진 살인범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Scott Peterson은 자신의 아들을 임신한 아내 Laci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LACI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기 CONNER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키다 살해된 43명의 경찰 등의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안전을 위해 우리와 그 뜻을 함께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4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CARL V. ADAMS, 회장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KERMIT ALEXANDER
로스앤젤레스 조폭에 의한 피해자 가족

RON COTTINGHAM, 회장
캘리포니아 보안관 연구 협회

★ 발의안 제34호에 대한 반대론 ★

캘리포니아의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사형을 폐지하면 앞으로 사년 동안은 1억 달러, 이후에는 수백만 달러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사형수들이 평생 동안 머물 곳과 보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발의안 제34호는 비용 절감에 대한 발의안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34호는 공공안전법을 약화시키는 ACLU의 의제입니다. ACLU는 살인범이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이를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합니다!

ACLU의 노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잔인한 행동이며 또한 유권자를 오도하고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캘리포니아주에 위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발의안 제34호는 연쇄살인범을 비롯하여 경찰, 어린이, 노인을 살해한 살인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비켜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4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에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석방된 범죄자들이 다시 강간 및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정의의 회복을 위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했습니다.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은 범죄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했을 때에만 선고되며 사형을 선고 받는 살인범은 전체 살인범의 2%도 되지 않습니다.

Richard Allen Davis: 12세의 Polly Klaas를 납치, 강간, 살해.

Richard "The Night Stalker" Ramirez: 납치, 강간, 고문으로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14명이 불구가 되었고 11명 이상이 위협 당함.

조직 폭력단 일원 Ramon Sandoval: 숨어 있다가 AK-47로 경찰 Daryle Black(전직 미 해병)과 Rick Delfin에게 총을 쏘. 흑인을 살해하고, Delfin의 머리에 총을 쏘으며, 임신부를 다치게 함.

연쇄 살인범 Robert Rhoades: 어린이 강간범으로, 8살의 Michael Lyons를 납치. Michael Lyons를 10시간 동안 성폭행 및 고문한 후 70군데를 칼로 찌르고 목을 잘라 시신을 강에 유기함.

Alexander Hamilton: 경찰 Larry Lasater(해병대 참전 용사) 살인. Lasater의 부인은 당시 임신 칠 개월이었음.

주요 살인 피해자 수:

어린이 225명
경찰 43명
성폭행/살해 235명
고문/살해 90명

문제는 ACLU입니다. 이들은 사형제도가 지속적이지 못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위선입니다! 법의 공정한 집행을 끊임 없이 지연,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ACLU와 그 지지자들입니다. 오하이오, 애리조나 등의 다른 주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완전한 권리를 주고 공정하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캘리포니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농간: 발의안 제34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ACLU나 다른 사형 반대론자들이 쓴 신문 기사 및 "연구"에 근거하여 비용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재활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폐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단순한 수감/보건 비용만도 수천만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고한 어린이, 경찰, 누군가의 부모를 서슴지 않고 살해한 살인범들을 돌보기 위해 연간 5만 달러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사용될 것입니다.

악랄한 살인범에게 평생 동안 머무른 곳과 보건의 혜택을 주면 돈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의안 제34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추려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치적 안건의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검찰, 경찰, 범죄 피해자, 지역사회 대표는 모두 발의안 제34호에 **반대표**를 던져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ACLU를 막으십시오. 사형제도를 유지합니다. 캘리포니아를 보호합니다.

waitingforjustice.net을 방문하십시오. 저희와 뜻을 함께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4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HON. PETE WILSON

전임 캘리포니아 주지사

MARC KLAAS

12세의 살인 피해자 Polly Klaas의 아버지

KEITH ROYAL, 회장

캘리포니아주 보안관 협회

★ 발의안 제34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4호가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입니다.

관련 사실:

- 본 유권자 안내서에 수록된 공정한 비용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 제34호로 매년 수백만 달러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법집행기관 지도부와 검찰은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가 엉망이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비해 매년 수백만 달러가 더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http://ccfaj.org/tr-dp-official.html>.
- 발의안 제34호는 사형수에게 값비싼 특수 수감, 변호사, 독방이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을 학교에 사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사형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시스템에 낭비되는 수백만 달러의 돈이 교사, 경찰, 소방관들의 업무에 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Carlos Moreno,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퇴직)

발의안 제34호는 살인범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

- 흉악한 살인범이 석방 가능성 없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도록 합니다.
- 살인범에게 노동을 시키고 법원이 명령한 피해자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여 강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1억 달러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미 감옥에 있는 소수의 범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지만 살인 사건의 46%, 강간 사건의 56%가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1977년 이후로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죄수는 모두 여전히 수감 중이거나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 증거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10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일부는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발의안 제34호가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형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발의안 제34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ANTONIO R. VILLARAIGOSA 시장

로스앤젤레스 시

HON. JOHN VAN DE KAMP, 법무장관

캘리포니아주, 1983-1991

LDORIS CORDELL (퇴직)

Santa Clara County 대법원 판사

인신매매. 처벌. 주민발의 법안.

- 1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형, 그리고 150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을 포함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합니다.
- 징수한 벌금은 피해자 서비스와 법집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 인신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성범죄자들은 인터넷 접속과 온라인 활동에서 사용하는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법원 소송절차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경찰들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인신매매 범죄자의 기소 및 구금과 관련된 형사사법 업무로 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용이 증가하나, 매년 수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 전체에서 지방정부에 최대 수백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집행관에 대한 새로운 필수 교육 요건으로 인해 매년 이보다 적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 새로운 형사 벌금으로부터 매년 수백만 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자금은 인신매매 피해자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집행 업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연방법. 연방법에는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Federal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은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상업적 성행위를 위해서 강압 또는 사기 수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모집, 수송 또는 확보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성매매의 예로는 매춘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 **노동 매매**—노동력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강압 또는 사기 수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모집, 수송 또는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 매매의 예로는 국외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해 외국 국적자에게 강제로 무보수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연방 법집행기관이 집행하며, 각 법집행기관은 독립적으로 또는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들과 공조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법. 기존 주법에도 인신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유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법에서는 인신매매를 (1) (성매매와 같은) 일정한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2) 강제 노동 또는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법 상, 인신매매는 최대 5년 간의 징역형, 또는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 형무소에서 최대 8년 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당한 인신매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6년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 간, 매년 인신매매 범죄로 주 형무소에 수감된 범죄자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인신매매로 인한 주 형무소 수감자는 18명입니다.

현행 주법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일부 인신매매 행위가 개입된 범죄 포함)은 반드시 지방 경찰 또는 보안관 관서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35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제안 사항

본 법안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주법을 몇 가지 변경합니다. 구체적으로, (1) 인신매매의 정의를 확대하고, (2)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3)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벌금을 부과하며, (4)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증거가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변경하고, (5) 인신매매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법집행관의 추가적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성범죄 등록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합니다.

인신매매 정의의 확대. 본 법안은 주법 상의 인신매매 정의를 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한 범죄들을 추가적으로 인신매매 형태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음란물을 복제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그 행위를 저지른자가 그 음란물에 등장하는 미성년자와 전혀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강제 또는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서 주법과 연방법이 유사하게 됩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한층 더 엄격한 형사 처벌. 본 법안은 인신매매에 대한 현행 주법 상의 형사 처벌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노동 매매에 대한 징역 형량을 범죄당 최대 12년으로 늘리고, 성인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범죄당 최대 20년으로 늘립니다. 강압이나 사기가 개입된 미성년자의 성매매의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림 1에서 보면, 본 법안에 따른 각 최대 징역 형량, 추가 형량, 형사 벌금에 대한 증가분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본 법안은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자가 인신매매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각 전과에 대해 5년의 형량을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당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형사 법원에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최대 1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인신매매에 대한 최대 형사 처벌 형량 증가		
	현재 법률	발의안 제35호
징역 형량^a		
노동 매매	5년	12년
성인 강제 성매매	5년	20년
미성년자 비강제 성매매	없음 ^b	12년
미성년자 강제 성매매	8년	종신형
가중 형량^a		
중대한 신체적 위해	6년	10년
인신매매 범죄 전과	없음	전과 1건당 5년
벌금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	모든 인신매매 범죄 에 대해 최대 150 만 달러
^a 실제 형량에는 일정 범위 헛수 포함.		
^b 본 법안에서 미성년자 비강제 성매매로 간주하는 행위는 현행법 상 위법이기는 하지만 인신매매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음.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각기 다를 수 있음.		

제35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본 법안은 위에서 징수된 벌금을 모아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징수된 벌금의 70퍼센트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퍼센트는 해당 기소가 이루어진 관할권 내 법집행기관 및 검찰 기관에 배정하여 인신매매 방지, 증인 보호, 구조 작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법원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본 법안은 또한 인신매매 혐의가 개입된 범죄 사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결과 성범죄(성매매 등)를 저지른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할 시 그 사람이 해당 성범죄에 개입되었다는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에 의한 성행위 증거는 법정에서 해당 피해자의 신용이나 인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개입된 인신매매 사건에서 특정한 항변 사용을 불허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집행관 교육. 본 법안은 경찰 및 보안관서와 CHP(California Highway Patrol: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일하며 현장 또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치안담당관들이 인신매매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최소 2시간 동안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2014년 7월 1일까지, 또는 각 담당관이 현장 또는 수사 업무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성범죄 등록자에 대한 요건 확대. 본 법안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자의 경우 지방 경찰서 또는 보안관서에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 및 ID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ID에는 이메일 주소, 사용자 이름, 스크린 이름, 또는 그

외에 인터넷 통신 및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ID가 포함됩니다. 등록자가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 계정을 변경하거나 인터넷 ID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반드시 그러한 변경 조치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집행 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재정적 영향

현재, 인신매매 사건들은 사건 수사에 캘리포니아주 법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여러 개의 관할권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고, 연방정부가 그러한 사건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과 그 밖에 본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른 변경 사항들이 주 당국에 의한 인신매매자 체포 및 유죄 판결의 유의한 증가로 이어질지, 또는 대부분의 인신매매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방 법집행 당국에 의해 주로 처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이 법안의 재정적 영향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강화에 따른 주 및 지방 형사 사법 처리 비용의 소폭 증가. 이 법안에 따라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면 주 및 지방 형사 사법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 형량 증가로 인해 범법자들이 주 형무소에서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지방 법집행관들의 의무적 자금 지원 및 교육 요건과 관련된 이 법안의 조항들로 인해 인신매매 체포, 처벌 및 유죄 판결 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주 및 지방 형사 사법 처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신규 비용은 **연간 2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5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지방 법집행관 교육 비용의 증가 가능성.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이 법안은 대부분의 주 및 지방 법집행관들에게 인신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HP 담당관들의 경우 이미 그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 기관에 대한 이 요건의 재정적 영향은 현재 지방 담당관들이 이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정도, 그리고 지방 법집행 기관들이 본 법안의 교육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각 카운티와 시 당국에서 기존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교육 중인 인력에 대한 대체 인력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총 최대 일회 비용은 수백만 달러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신규 채용 인력을 훈련시키는 데 이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 서비스를 위한 벌금 세입 증가.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신규 형사 벌금으로 인해 추가 세입이 발생하겠지만, 연간 몇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세입은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는 범죄자의 수, 법원에서 부과하는 벌금의 액수,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들이 납부하는 실제 금액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은 일차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배정되지만, 인신매매 방지, 증인 보호, 구조 작업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 발의안 제35호에 대한 찬성론 ★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표를 던져 인신매매를 뿌리 뽑읍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힘없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법들의 재정적 이득을 위해 강제로 성매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어린 소녀들로 12살짜리 소녀들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범죄 사업 중 하나이며,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길거리나 온라인 상에서도 어린 소녀들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전국적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들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F"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발의안 제35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발의안 제35호에 찬성하면**
- 인신매매법에 대한 징역 형량을 늘려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법들을 반드시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모든 성범죄자들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의 착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법들에 대한 벌금량을 늘려 확보된 자금을 피해자 서비스 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존 피해자들이 삶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합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상당수는 힘없는 아동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성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FBI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주 도시 세 곳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고밀도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발의안 제35호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인신매매자들이 자신들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성매매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노립니다. 돈을 벌고 나면 피해자들을 내다 버립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발의안 제35호를 통과시킴으로써 캘리포니아인들은 우리 아이들의 성적 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 편에 설 것이라는 의지를 공포해야 합니다."

—Nancy O' Malley, Alameda County District Attorney & 전국 피해자 권리 옹호자

발의안 제35호는 온라인 상에서 시작되는 아동청소년 착취를 막습니다.

인터넷은 인신매매자들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통로입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법집행기관이 제35호에 찬성 투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맞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성매매자들을 처벌하고 성적 착취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on Cottingham, 회장, Peace Officers Research Association of California, 공공 안전 담당자 64,000명의 대표

범죄 피해자들과 그 옹호자들도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의안 제35호는 길거리 또는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인신매매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Marc Klaas, 1993년 납치-살해 당한 Polly Kalss의 아버지이자 범죄 피해자 권의 옹호자

"저는 14살 때 문제 가정을 뛰쳐나와 인신매매자의 손아귀에 잡혀들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아직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와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인신매매 생존자로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성적 착취 반대를 행동으로 보여 주고 제35호에 찬성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Leah Albright-Byrd, 인신매매 생존자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합시다. 인신매매자들의 범죄를 막읍시다.

발의안 제35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VoteYeson35.com

LEAH ALBRIGHT-BYRD

인신매매 생존자

MARC KLAAS, 회장

KlaasKids Foundation

SCOTT R. SEAMAN, 회장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

★ 발의안 제35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

이 법안은 인신매매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5호가 통과될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자녀, 부모, 배우자, 동거 파트너, 룸메이트, 건물주 등 성인들 사이에 정상적이며 상호 합의에 의한 성매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신매매자로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평생 동안 강제로 성범죄자로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상관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면 미국 군대에서 복무하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내 아들도 인신매매자로 낙인 찍혀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Maxine Doogan

진짜 인신매매법들을 막기 위해 성매매 업계와 협력하기 보다는 발의안 제35호를 후원하는 극좌파이며 성행위 반대 주의자인 페미니스트들과 극우파 종교 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유권자들이 "인신매매"라는 말을 들으면 그에 현혹되어 상호 합의에 의한 성인들 간의 매춘을 한층 더 범죄시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운동을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신매매의 "고밀도 지역"이라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다른 곳에서도 있었던 폭로 주장들과 의심이 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http://www.oregonlive.com/portland/index.ssf/2011/01/portland_child_sex_trafficking.html

발의안 제35호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시점에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부채를 새로 추가하려 합니다. 발의안 제35호의 선거 운동 기부금은 90% 이상을 한 사람의 부유한 기업 임원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www.huffingtonpost.com/2012/07/07/californians-against-sexual-exploitation-act_n_1656311.html). 하지만 이 사람이 법안을 집행하는 데 드는 예산까지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신매매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재산 몰수가 "마약과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듯이, "성매매와의 전쟁" 비용도 절대 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의안 제35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MANUAL JIMENEZ, CFO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 Inc.

NORMA JEAN ALMODOVAR

STARCHILD

★ 발의안 제35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5호는 실제로 약속한 바에 그 결과가 미치지 못하며, 유권자들은 이에 반대해야 합니다.

법으로 급하는 것이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습니다. 발의안 제35호가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이 발의안의 찬성론자들에게 또 다시 백지 수표를 써 주는 꼴이 됩니다. 이 근시안적인 투표 법안은 넓은 범위의 매춘업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매매자의 부모, 자녀, 룸메이트, 동거 파트너, 건물주까지도 모두 성범죄자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발의안의 실질적인 목표는 몰수된 재산을 확보해 후원하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35호는 감독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단속에서 볼 수 있는 부정부패 관행에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http://www.contracostatimes.com/news/ci_20549513/

[defendant-cnet-corruption-scandal-gets-federal-prison-sentence](http://www.contracostatimes.com/news/ci_20549513/)

발의안 제35호가 통과될 경우 이는 주 예산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동청소년들을 구출한다는 구실 하에 수행되는 위장 단속 작전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성인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재원에 의지하게 됩니다. <http://www.sfgate.com/default/article/Bay-Area-sweep-nets-child-prostitute-pimp-suspects-3661229.php>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로 체포되는 십대 청소년 대부분은 포주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재원이 자동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사라진 소년들: 고정 관념을 타파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 <http://www.riverfronttimes.com/2011-11-03/news/commercial-sexual-exploitation-of-children-john-jay-college-ric-curtis-meredith-dank-underage-prostitution-sex-trafficking-minors/>

발의안 제35호는 "구출"이라는 핑계로 법률 상의 금지를 미성년자 체포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패한 정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UN 자문 그룹 소속 자문 위원 Cheryl Overs의 아동청소년의 상업적 성적 착취와의 싸움에 관한 견해 <http://www.plri.org/story/tackling-child-commercial-sexual-exploitation> 이미 실패한 정책을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http://www.traffickingpolicyresearchproject.org/>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는 불확실하며 심지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조항들로 인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정에서 이 법안을 변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배포하려는 의도"를 포함한 "인신매매"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로 위헌 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징역 형량과 벌금을 포함하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도 위헌 가능성이 있으며, 변호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할 피의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 또한 위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에 금액을 알 수 없는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석방 담당 부서에도 업무를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Jaycee Dugard 사건,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폭력적인 성범죄자로부터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2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의 확대된 조항들을 집행하려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http://www.sfbg.com/politics/2012/06/16/bringing-heat>

이 잘못된 발의안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포심을 부추겨 유권자들에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벌금과 수수료를 놓고 도박을 하도록 만들어 원래부터 모자라는 주정부 재원이 기존의 사회 보장 서비스 개입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법은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http://blog.sfgate.com/incontracosta/2012/06/25/concord-police-assist-with-multi-agency-operation-targeting-child-prostitution/>

발의안 제35호의 근본 정책은 영향을 받는 대상 인구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상호 동의 하에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형사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고 강제로 찬성론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의 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명확히 말씀 드립니다. 성매매의 범죄화는 착취를 허용하는 조건입니다. 이를 허용하는 대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발의안 제35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MAXINE DOOGAN, 회장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 Inc.
MANUAL JIMENEZ, CFO
 Erotic Service Providers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Project, Inc.

★ 발의안 제35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

"제가 처음 인신매매범에게 착취 당한 것은 겨우 10살 때였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착취를 당했고, 인신매매범은 계속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길거리와 온라인 상에서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인신매매를 막을 수 있도록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해 주십시오."

—Withelma Ortiz, 인신매매 생존자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하시면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F" 등급을 받았습니다. FBI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주 도시 세 곳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고밀도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소년들이 처음 인신매매 당하는 나이는 평균 12세에서 14세 사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다른 인신매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숙제 걱정을 해야 할 나이입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인신매매범의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하며, 온라인을 통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모든 등록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이용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5호는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벌금액을 늘리고, 이러한 돈을 피해자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의안 제35호에 대한 찬성론은 다음과 같이 폭넓은 연합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KlasKids Foundation과 Crime Victims United 같은 아동청소년 및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
 - 8만여 명의 일반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집행기관
 - 인신매매 생존자들
- 발의안 제35호에 찬성 투표하여 아동청소년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를 막읍시다.

WITHELMA ORTIZ
 인신매매 생존자
CARISSA PHELPS
 인신매매 생존자
NANCY O' MALLEY
 Alameda 카운티 지방 검사

발의안 제36호

삼진법. 반복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처벌. 주민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부장관 작성

삼진법. 반복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 처벌. 주민발의 법안.

- 새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경우에 한해 중신형을 부과하도록 삼진법을 개정합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이 아니었고 판사가 공공안전에 지나친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경우, 현재 중신형을 받아 복역 중인 범죄자에 대한 재선고를 허용합니다.
- 유죄판결을 받은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이 아닌 성범죄 또는 마약범죄였거나, 총기 소지와 관련된 범죄였던 경우에는 계속 중신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들이 성폭행, 살인, 아동 성희롱이었던 경우, 세 번째 범죄가 심각하거나 폭력적이 아니더라도 그 중범죄자에 대해 중신형이 유지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주정부는 교도소 및 가석방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매년 지속적으로 7,000만 달러 절약할 수 있고, 향후 이삼십 년간 더 많은 금액(최대 매년 9,000만 달러)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금액은 주정부의 향후 조치에 따라 수천만 달러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범죄자에 대한 재선고와 관련된 법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주정부와 카운티에 향후 이삼 년간 수백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합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범죄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중죄, 경범죄, 법률 위반. 중죄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범죄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특정 상황에서 주 교도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 교도소에서의 징역형을 받지 않는 범죄자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 카운티 집행 유예 담당 부서의 감독을 받거나,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현행법은 일부 중죄를 "폭력 관련" 중죄나 "심각한" 중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현행법 상 폭력 관련 중죄로 정의되고 있는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폭력 관련 중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강도 미수 폭행 등과 같은 범죄도 심각한 중죄로 간주됩니다. 폭력 관련 중죄 또는 심각한 중죄로 분류되지 않는 중죄로는 (총기류가 개입되지 않은) 도난, 규제 대상 물질 소지 등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캘리포니아 교정 기관에는 약 137,000명의 수감자가 복역 중입니다. 2012-13년 주 교도소 예산은 거의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삼진 선고. 발의안 제184호(일반적으로 "삼진법"으로 칭함)는 유권자들에 의해 1994년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정 재범자들에게 대해 더 긴 형량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전에 한 차례 이상 폭력적이거나 심각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주 교도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중죄 처벌.** 이전에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 판결이 한 차례 있는 자의 경우, (단순히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만이 아니라) 일체의 추가적인 중죄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 선고는 법에서 정하는 최초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의 두 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세컨드 스트라이커(second strikers)"라고 부릅니다. 2012년 3월 현재, 복역 죄수 중 약 33,000명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들입니다.

- **세 번째 중죄 처벌.** 이전에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 유죄 판결이 두 차례 이상 있는 경우, (단순히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죄만이 아니라) 일체의 추가적인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 선고는 무기 징역으로 첫 25년 간은 가석방 대상에도 오르지 못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써드 스트라이커(third strikers)"라고 부릅니다. 2012년 3월 현재, 복역 죄수 중 약 9,000명이 써드 스트라이커들입니다.

법에 위와 같은 형량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일부의 경우, 법원은 선고 중 이전 중죄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컨드 또는 써드 스트라이커로 선고를 받았을 범죄자는 삼진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형무소 석방 결정. 현행법 상 대부분의 세컨드 스트라이커들은 형량을 마치면 형무소에서 자동적으로 석방됩니다. 이와는 달리, 써드 스트라이커들은 주정부의 가석방 결정위원회(BPH)의 승인을 받아야 석방이 가능합니다. 써드 스트라이커가 선고 형량에서 정해진 최소 복역 연수를 마치고 나면, BPH 위원회는 가석방 심사 청문회를 열고 석방 허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BPH는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은 써드 스트라이커가 25년을 복역하고 나면 해당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BPH가 청문회에서 써드 스트라이커를 석방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 BPH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삼진법은 1994년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첫 써드 스트라이커는 거의 2020년이 가까워져야 가석방 고려 대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석방 후 감독. 현행법 상, 모든 세컨드 및 써드

스트라이커들은 석방 후 반드시 지역 사회 내에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가장 최근 유죄 판결이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범죄가 아니었던 경우, 보통 지역 사회 내에서 카운티 보호 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컨드 스트라이커는 지역 사회 내에서 주 가석방 담당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모든 써드 스트라이커들은 석방 후 지역 사회 내에서 주 가석방 담당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세컨드 또는 써드 스트라이커들이 지역 사회 내 감독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 또는 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제안 사항

본 법안은 삼진법에 따라 복역 중인 써드 스트라이커들 중 현재 선고 대상 범죄가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복역 형량을 감해 줍니다. 또한, 현재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가 아닌 범죄로 지정된 범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일부 써드 스트라이커에 대해 형량 재선고를 허용합니다. 이같은 변경에 대한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써드 스트라이커에 대한 형량 단축. 이 법안은 두 차례 이상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새로운 범죄가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가 아닌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최소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대신, 새로운 범죄에 대한 보통 선고 형량의 두 배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형량이 2년 내지 4년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써드 스트라이커의 경우, 25년에서 무기징역을 받는 대신, 써드 스트라이커가 아니었으면 받을 형량의 두 배, 즉 사년 내지 팔년 사이의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같은 형량 단축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범죄자가 일부 마약, 성 및 총기류 관련 중죄를 포함해, 일부 새로 또는 이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계속 삼진법에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따른 무기징역 선고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재 씨드 스트라이커의 형량 재선고.

이 법안은 일부 씨드 스트라이커들에 대해 법원에 재선고 신청을 허용합니다. 법안은 재선고 신청 자격을, 현재 선고 대상 범죄가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가 아니고, 현재 또는 이전 범죄가 정해진 마약, 성 및 총기류 관련 중죄가 아닌 씨드 스트라이커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선고 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원은 먼저 범죄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범죄자가 재선고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재선고가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을 충족하는 범죄자에 대해 반드시 재선고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원은 해당 범죄자의 범죄 이력, 수감 중 행실, 교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 등,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재선고를 받는 범죄자에 대해 이전에 받은 형량 대신, 가장 최근의 범죄에 대한 통상적 형량의 두 배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재선고 요청이 거부된 범죄자들의 경우 원래 선고 형량에 따라 무기징역 복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재정적 영향

주정부 교정 예산 절감. 이 법안은 주정부의 교정 제도에 여러 가지 재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법안은 두 가지 면에서 주 교도소 비용을 줄여 줍니다. 첫째, 무기징역형은 현재 복역 대상 범죄가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인 씨드 스트라이커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본 법안의 조항 때문에, 삼진법에 따라 현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수감자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수감될

중범죄자들 중 일부의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씨드 스트라이커들의 형량을 재선고함으로써 기존 수감자들 중 다수의 복역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감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주정부 가석방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범죄자들이 주로 석방 후에 주 가석방 기관보다는 카운티 보호 관찰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범죄자들이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씨드 스트라이커 수감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BPH가 앞으로 실시해야 할 가석방 심사 청문회 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변화로 인해 주 교정 예산은 연간 약 7,000만 달러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이삼십 년에 걸쳐 절감액은 늘어나 연간 최대 9,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연간 절감액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수천만 달러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절감액 수준은 법원의 재선고를 받는 씨드 스트라이커들의 수,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앞으로 BPH가 석방하는 씨드 스트라이커의 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재선고 비용. 이 법안은 이 법안의 재선고 조항과 관련하여 주 및 카운티에 일회성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재선고 조항으로 법원 사건 처리량이 늘어나고, 이같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재선고 절차를 담당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검찰, 공선 변호인, 법원 보안관 부서에 대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카운티에는 재선고 절차 진행 중에 수감자를 수용해야 하는 교도소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같은 비용은 앞으로 이삼년 간 주 전체에 걸쳐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기타 재정적 영향. 주정부 및 카운티에 법원, 보호 관찰, 교도소와 관련해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 법안에 따라 형무소에서 석방되는 일부 범죄자들이 주가석방 기관 대신 보호 관찰 부서의 감독을 받게 되고, 이들이 보호 관찰 규정을 위반하거나 새롭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장기적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 외 다양한 재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이 법안에 따라 석방되는 범죄자들이 (민간 보험 혜택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 보험 등) 정부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석방된 범죄자들이 취직하여 일하게 될 경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입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영향의 폭은 알 수 없습니다.

★ 발의안 제36호에 대한 찬성론 ★

발의안 제36호 삼진아웃 개혁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집행 기관 지도자들, 민간 단체, 납세자 권익 옹호자들로 구성된 폭넓은 초당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러지도록 합니다**
귀중한 재정 및 법집행 자원이 부적절하게 분산되어 비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6호는 폭력 관련 재범자들이 조기에 석방되지 않고 처벌받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 **캘리포니아주 예산을 연간 1억 달러 이상 절감해 줍니다**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세금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대신 학교 예산 지원, 범죄와의 싸움, 주정부 적자 감소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진법은 심각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상습 범죄자들은 25년부터 무기징역의 징역형을 통해 계속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생깁니다**
발의안 제36호는 비폭력 관련 범죄자들로 감옥 시설이 과밀화되는 것을 막아 폭력 관련 중죄자들을 계속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둘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조성합니다.
- **법집행 기관의 지원**
검찰, 판사, 경찰은 발의안 제36호가 위험한 범죄자들은 평생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36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36호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계속 사회로부터 격리시킵니다.
- **납세자 지지**
발의안 제36호는 매년 1억 달러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개혁을 위한 미국인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Grover Norquist 씨는, “삼진개혁법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납세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을 폭력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소중한 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예상에 따르면, 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세 번째 이상의 비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비용과 의료비로 수백만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6호는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 **범죄에 대한 엄격하면서 현명한 대응**
형사 사법 전문가 및 법집행 기관 지도자들이 신중하게 작성한 만큼 발의안 제36호는 정말 위험한 범죄자들은 개혁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범자들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세 번째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비폭력 관련 범죄 재범자들은 통상적 형량의 두 배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 받게 됩니다. 강간, 살인 또는 아동 성추행 등과 같이 극히 폭력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모든 피의자는 세 번째 범죄가 얼마나 사소한 것이든 2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참하십시오

발의안 제36호가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계속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재범자 삼진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선고 측면에서 비례성을 강조해 공정성을 갖고 이 중요한 법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의안 제36호에 찬성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www.FixThreeStrikes.org를 방문해 더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STEVE COOLEY, 지역구 검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GEORGE GASCON, 지역구 검사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DAVID MILLS, 교수
스탠퍼드 로스쿨

★ 발의안 제36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6호의 지지자들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제36호의 감춰진 조항으로 인해 수천 명의 위험한 범죄자들이 형량을 감형받고 조기에 감옥에서 석방될 것입니다. Fresno Bee에 따르면:
"발의안 제36호가 통과될 경우, 삼진법에 따라 복역 중인 무기징역수 약 3,000명이 감형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범죄자들 중 일부가 주 가석방 기관이나 그 외 일체의 법집행 기관 감독 없이 석방되게 됩니다. 독립 입법분석관에 따르면:
"이 법안에 따라 재선고를 받는 씨드 스트라이커들의 경우 석방 즉시 주 가석방 감독이 아닌 카운티 지역 사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이들 중 일부는 지역 사회 감독 없이도 석방될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36호는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검찰과 판사들은 이미 삼진법을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검사협회의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들과 검찰은 발의안 제36호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제36호는 위험한 재범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삼진법을 적용해 다시는 거리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우리 권한을 감소시킵니다."

- 제36호는 캘리포니아주 경찰 서장, 보안관, 검사, 경찰관 등을 대표하는 단체를 포함해, 모든 주요 법집행 기관 및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36호의 지지자들 중에는 법집행 기관이나 단체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제36호는 세금을 낮추지 않습니다. 정부가 범죄와 싸우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많아지면 세금도 더 나갑니다!

삼진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제36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CHIEF RICK BRAZIEL, 회장

캘리포니아 평화공무원협회

HENRY T. NICHOLAS, III, Ph.D., 저자

캘리포니아 희생자 기본 권리 선언(California's Victims Bill of Rights)

CHRISTINE WARD, 전무 이사

범죄 피해자 행동 연합

발의안 제36호

발의안 제36호는 살인, 강간, 아동 성추행, 아동 학대, 폭력범죄, 무기징역형을 내릴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다. 발의안 제36호는 살인, 강간, 아동 성추행, 아동 학대, 폭력범죄, 무기징역형을 내릴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다. 발의안 제36호는 살인, 강간, 아동 성추행, 아동 학대, 폭력범죄, 무기징역형을 내릴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이다.

★ 발의안 제36호에 대한 반대론 ★

1994년, 유권자들은 재범자들에게 대한 형량을 늘리는 삼진법을 큰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범죄율은 곤두박질쳤고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같은 범죄자들이 캘리포니아주 법원과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대부분의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이제 더는 못 참고 삼진 아웃이라고 외쳤습니다.

2004년, ACLU와 엄격한 형법에 반대하는 기타 단체들은 삼진법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제 다시 발의안 제36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를 속이지 못했고 이번에도 우리를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발의안 제36호는 위험한 범죄자들이 감형을 받아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발의안 제36호는 누구에게 적용될 겁니까?

-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로, 검찰이 세 번째 범죄 혐의로 기소한 범죄자들;
- 너무도 위험한 존재라서 판사가 검사의 그러한 기소 결정에 동의한 범죄자들;
- 너무도 위험한 존재라서 배심원단이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범죄자들;
- 너무도 위험한 존재라서 판사가 2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릴 범죄자들; 그리고
- 합법적 상소가 모두 기각된 범죄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발의안 제36호는 같은 범죄자가 다른 판사에게 석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범죄자들 일부는 **가석방이나 일체의 감독 없이** 감옥에서 석방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발의안 제36호에 따른 일부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에 대해 독립 입법분석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 사회 감시 없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6호가 다음과 같은 캘리포니아주 경찰, 보안관서 및 법집행 기관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 캘리포니아 경찰서장협회
- 캘리포니아 보안관 협회
-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 캘리포니아 보안관연구협회
- 로스앤젤레스 경찰관 보호소

이렇게 갓 석방된 상습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해치거나 죽이고, 결국은 지금 수감된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들을 현재 감옥에 계속 수감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지출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희생자 권익 옹호 단체가 발의안 제36호를 반대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
- 범죄 피해자 행동 연합
- 살인 미수 범죄 예방 시민 모임
- 범죄정의법재단

유권자들이 삼진법을 통과시킬 당시, 그 법이 너무 가혹하거나 고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러한 견해를 2004년에 거부했습니다. 삼진법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발의안 제36호는 답이 아닙니다. 형량 선고법이 바뀌더라도 앞으로 저질러질 범죄에 한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 희생자들이 이같이 위험한 범죄자들의 재선고와 조기 석방이라는 고통을 다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6호에 반대 투표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www.save3strikes.com

- SHERIFF KEITH ROYAL**, 회장
캘리포니아 보안관 협회
- 지역구 검사 CARL ADAMS**, 회장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
- HARRIET SALERNO**, 회장
캘리포니아 범죄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

★ 발의안 제36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6호의 반대자들이 사용하는 겉주기 수법을 믿지 마십시오.

여기 사실이 있습니다:

- 발의안 제36호는 살인범,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 및 그 외 위험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형량을 모두 채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발의안 제36호는 소중한 세금 수익 달러를 절감해 줍니다.
- 발의안 제36호는 주 교도소 정역 형량을 두 배로 늘림으로써 비폭력 관련 범죄 재범자들을 계속 처벌합니다.

현재, 감옥이 공공 안전에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비폭력 관련 범죄자들로 넘쳐나는 바람에 위험한 범죄자들이 조기에 석방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6호는 위험한 범죄자들의 조기 석방을 금지합니다. 양말 한 켤레를 훔친 일, 빵이나 아기 분유를 훔친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에는 무기징역은 맞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6호는 다음과 같은 법집행 기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Steve Cooley,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구 검사
- Jeffrey Rosen, 산타 클라라 카운티 지역구 검사

- George Gascon,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지역구 검사
- Charlie Beck,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장
- 이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36호가:
-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는 무기징역 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을.
-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한다는 것을: 비폭력 관련 범죄자들에 소중한 경찰 및 교정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읍시다.
-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합니다.

- STEVE COOLEY**, 지역구 검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 JEFFREY F. ROSEN**, 지역구 검사
산타 클라라 카운티
- CHARLIE BECK**
로스앤젤레스 경찰청장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라벨 부착. 주민발의 법안.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미가공 또는 가공 식품이 특정한 방법으로 유전자 형질이 변경된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제조되는 경우, 그러한 식품에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러한 식품이나 다른 가공 식품을 "자연" 식품이라고 광고하거나 그러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다음의 식품들은 제외됩니다: 인증된 유기농 식품,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 유전자 변형 물질을 먹었거나 주입했으나 유전자를 직접 변형시키지 않은 동물로부터 만든 식품, 단지 소량의 유전자 변형 성분을 사용하여 가공했거나 그러한 성분이 함유된 식품, 의학적인 질환의 치료를 위해 투여하는 식품, 식당에서와 같이 즉시 소비를 위해 판매하는 식품 또는 알코올성 음료.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라벨 부착을 규제하기 위해 주정부의 연간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범위 내에서 증가합니다.
- 이 법안의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소송으로 인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금액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중 일부는 각 소송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현행법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법원 제소 수수료에 의해 지원될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유전자 변형(GE) 식품. 유전자 변형은 살아 있는 유기체의 특성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해당 유기체의 유전 형질을 변경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새로운 식물 및 동물종을 개발해 나중에 GE 식품이라고 불리는 식품 공급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은 해충에 대한 식물의 저항력을 향상시키거나 식물이 살충제 사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가장 흔한 GE 작물로는 다양한 종의 옥수수과 대두가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체 옥수수의 88 퍼센트, 대두의 94퍼센트가 GE 종자를 사용한 작물이었습니다. 그 외 흔한 GE 작물로는 알팔파, 카놀라, 목화, 파파야, 사탕무, 주키니 호박이 있습니다. 또한, GE 작물은 가공 식품(미가공 농산물이 아닌 식품)에 포함되는 식품 원료(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식료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료품의 40 내지 70 퍼센트에 일정 부분 GE 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규제. 연방법은 구체적으로 GE 식품 규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는 최근 다른 식물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입증된 GE 작물의 사용에 대한 일부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은 대부분의 식품(유전자 변형 식품 여부에 관계 없이) 및 식품 첨가물이 안전하며 적절한 라벨 부착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주정부 규제. 현행법 상,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GE 식품을 규제할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보건국(DPH)은 대부분 식품의 안전성과 라벨 부착 규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본 법안은 GE 식품 규제를 명시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주법을 몇 군데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법안은 (1) 대부분의 판매 대상 GE 식품에 대해 적절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2) 그러한 식품의 라벨 부착에 대한 DPH의 규제를 의무화하고, (3) 개인이 본 법안의 라벨 부착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라벨 부착. 본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내 소매 매장에서 판매되는 GE 식품에는 반드시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을 명확하게 부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법안은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유전자 변형을 통해 그 전체 또는 일부가 생산되는 원료 식품(과일 및 야채 등)에는 반드시 전면 포장 또는 라벨에 "유전자 변형 제품"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개별 표정되어 있거나 라벨이 없는 경우, 이 문구는 해당 물품이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는 선반 또는 상자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을 통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된 가공 식품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 또는 "부분적으로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식료품점 같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식료품에 올바로 라벨이 부착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안 준수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GE 표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준수 제품이 됩니다. 소매상은 GE 표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각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라벨 부착의 예외 대상인 이유를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매상이 예외 대상 제품을 문서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해당 제품 공급자(도매상 등)로부터 해당 제품은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로 유전자 변형한 제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서약을 받는 방법 또는 (2) 해당 제품에 GE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외부 인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식품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참여자들(농부 및 식품 제조업체 등)도 이같은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이 법안은 특정 식품을 위의 라벨 부착 요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음료, 유기농 식품, 식당 음식, 그리고 그 외에 즉시 섭취할 의도로 만들어진 음식의 경우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고기 또는 닭고기 등 유전자 변형을 통해 직접 생산되지 않은 육류의 경우도 해당 동물이 GE 작물을 사료로 섭취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면제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GE 식품의 라벨 부착 및 광고에서 "천연," "천연 제조한," "천연 재배한," 그리고 "100% 천연" 등의 표현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이 작성된 방식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유전자 변형 여부에 관계 없이 일부 가공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정부 규제. 이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GE 식품에 대한 라벨 부착 요건은 식품의 안전 및 라벨 부착 규제를 책임지는 기존 임무의 일환으로 DPH가 규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DPH가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PH는 식품에 GE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표본 채취 절차를 기술하는 규정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법안 시행을 위한 소송. 이 법안의 위반 행위는 주, 지방 또는 민간 당사자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해당 행위를 조사 및 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합당한 비용을 재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의심되는 위반 행위로 인해 초래된 일체의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 소비자 법적구제법(Consumer Legal Remedies Act)에 따라 본 법안의 요건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주 행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법안은 식품이 실제로 올바른 라벨을 부착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서를 검토하고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등, DPH가 GE 식품 라벨 부착 규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정부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같은 규정(예를 들어 식료품 매장에 대한 점검의 실시 빈도)의 시행과 관련한 DPH의 방법 및 범위 선택에 따라, 이같은 비용은 연간 수십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가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 증가 가능성.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은 개인이 라벨 부착 요건 위반 행위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 및 카운티에는 소송 사건 증가분을 처리 및 심리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의 정도는 제기되는 소송 사건 수,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기소하는 사건 수,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원 비용 증가분 중 일부는 각 소송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현행법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법원 제소 수수료로 충당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법원 지출을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37

★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찬성론 ★

발의안 제37호에 찬성투표합니다—여러분은 여러분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발의안 제37호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음식이 유전자 변형 방식을 사용해 만들어졌는지 알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식품의 정확한 라벨 부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식품 라벨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일부 의사 및 과학자들이 알레르기 및 기타 중요한 건강 상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식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식품에는 라벨에 영양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발의안 제37호를 통해, 우리는 각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즉, 각 식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그 외 식물 또는 동물로부터 가져온 유전자를 사용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변형된 DNA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쉽게 기재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유럽 대부분의 국가, 일본,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미국인들에게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장기적 건강 연구는 전무합니다. 여러분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구입하든 않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입하는지 알고 가족의 건강으로 도박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벨 부착은 우리가 우리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발의안 제37호는 간단하고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라벨에 정보를 기재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표시하는 새 라벨을 인쇄하거나, 또는 유전자 변형 기법을 사용하

제조한 식품 판매를 원치 않을 경우 제품을 변경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발의안 제37호는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해 "천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대형 식품 제조업체와 농화학 기업들, 해당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살충제의 영향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식품의 칼로리, 또는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 또는 염분량 등, 식품 라벨에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려고 버티던 바로 그 기업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유전자 변형에 대해 우리에게 은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든 않든, **발의안 제37호**는 여러분께 여러분 가족이 먹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립니다.** 대형 화학 회사들이 여러분 대신 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 가족 단위 농장주, 의사, 간호사, 영양사, 소기업가, 그리고 거의 백만 명에 가까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미 나서서 여러분께 우리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를 드리기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www.CARightToKnow.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시거나 동참해 주십시오.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투표를 하실 때, 한 가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가?** 답은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찬성 투표입니다.

www.CARightToKnow.org

DR. MICHELLE PERRO, 소아과 전문의
REBECCA SPECTOR, 서부 해안 지역 이사
 식품안전센터
GRANT LUNDBERG, 최고 경영자
 Lundberg 가족 단위 농장

★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

제37호의 소위 "알 권리" 규정은 기만적인 술법으로, 특정 이익집단의 면제와 소비자 및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숨은 비용들로 가득합니다.

제37호는 우유, 치즈, 육류를 라벨 부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맥주, 포도주, 주류, 식당 판매 음식, 그리고 그 외 유전자 변형 식품(GE) 원료가 들어 있는 음식을 제외시킵니다.

실제로, 제37호 선거 운동의 자금을 대는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소비하는 식품의 삼분의 이를 제외시킵니다.**

새로운 갈취 소송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37호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들이 위반이나 손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도 농부, 식료품상, 식품 회사 등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갈취 소송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400여 개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GE 원료로 만들어진 식품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세계보건기구, 전미 과학 아카데미, 24명의 노벨상 수상 과학자,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주요 보건 기구 및 단체들이 모두 동의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는 데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의사협회

더 높은 소비자 및 납세자 비용 부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보편적인 식품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더 고가의 원료로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37호로 인해 평균 캘리포니아 가구의 연간 식품비 지출 부담이 수백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주 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는 제37호에 따른 행정 절차와 법정 소송으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제37호의 가장 큰 자금 후원자 조차 "고비용의 물류적 혼란 상황이 초래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7호는 기만적인 고비용 수법입니다. 반대 투표합니다!

www.NoProp37.com

JONNALEE HENDERSON

캘리포니아 농업협회

DR. HENRY I. MILLER, 창립 이사

FDA 식품의약국 생명기술실(Office of Biotechnology)

TOM HUDSON, 전무이사

캘리포니아 납세자 보호위원회

★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7호는 제창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일체 건강이나 안전 상 혜택은 없이, 정부 관료적 절차와 납세자 비용을 추가하고, 사소한 소송을 새롭게 만들고, 식비 지출을 수십억 늘리게 되는 기만적이고,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식품 라벨 부착 수법입니다. 게다가, 특정 이익집단의 면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발의안 제37호는 과학과 상충됩니다

유전자 변형(GE)이라고도 불리는 생명기술은 질병과 병충해에 잘 견디고 살충제를 적게 사용해도 되는 다양한 종의 옥수수, 대두 및 기타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 거의 20년 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천 종의 보편적 식품이 생명기술 작물에서 나온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발의안 제37호는 별도 라벨을 부착하거나 더 고비용의 원료로 다시 만들지 않을 경우, 이처럼 완벽하게 안전한 식품을 캘리포니아 내에서 금지하게 됩니다.

미국 FDA는 이같은 라벨 부착 정책을 "기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유수의 과학-의학 기구 및 단체도 생명기술 식품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 전미 과학 아카데미
- 미국 건강과학 위원회
- 영양과 식이요법학 아카데미
- 세계보건기구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는 데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미국 의사협회, 2012년 6월

발의안 제37호: 특정 이익집단의 면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발의안 제37호의 자의적인 규정과 면제 조항은 소비자가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Dr. Christine Bruhn, 식품공학부, UC 데이비스

제37호는 모순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면제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대두 우유에 대해서는 별도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우유와 낙농 제품은 제외시킵니다. 과일 주스는 라벨 부착이 의무지만 알코올류는 예외입니다. 육류가 들어 있는 애완동물 사료는 라벨 부착이 의무지만 사람이 먹는 육류는 예외입니다.

중국이나 그 외 다른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의 경우 판매자가 단순히 제품이 "GE 불포함"이라고 주장하면 예외 대상이 됩니다. 비양심적인 외국 기업은 현 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7호는 갈취 소송을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변호사들이 일체의 위해 입증 없이 가족 단위 농장이나 식료품상을 고소할 수도도록 함으로써 "헤드헌터 소송"이라는 새로운 소송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제37호는 변호사들이 갈취 소송을 이용해 가족 단위 농장이나 식료품상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원, 기업 및 납세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비용 부담을 초래합니다." —법률 소송 남용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시민 모임

발의안 제37호: 관료적 절차와 납세자 비용 증가

제37호는 주정부 관료들이 수만 가지의 식품 라벨을 감시함으로써 복잡한 요건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료적 절차와 소송에 몇백만 달러가 지출될지에 대한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백지 수표인 셈입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식비 지출 증가를 의미합니다

제37호는 농장과 식품 업체에 캘리포니아 내 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라벨을 부착하거나, 더 고가의 비 GE 또는 유기농 원료로 바꾸도록 강제합니다.

각종 경제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평균 가정의 식비가 연간 수백 달러 늘어날 것이요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숨은 식품 세금**으로 특히 가장 형편이 어려운 노인 가구 및 저소득 가구에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37호는 가족 단위 농장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80,000 농장주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농업협회

과학자, 의학 전문가, 가족 단위 농장주, 납세자 권익 옹호자, 소기업에 동참하십시오.

제37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이 기만적인 고비용 식품 라벨 부착 술수를 막아야 합니다.

www.NoProp37.com

DR. BOB GOLDBERG, 회원

전미 과학 아카데미

JAMIE JOHANSSON

캘리포니아주 가족 단위 농장주

BETTY JO TOCCOLI, 회장

캘리포니아 소기업 협회

★ 발의안 제37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7호—내가 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권리에 "찬성"하십시오.

발의안 제37호는 단순히 내가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식품 라벨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여러분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 공무원, 정치인 또는 농화학 기업은 절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유전자 변형 재료가 들어 있는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 시행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유럽, 호주, 일본,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등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만큼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려 주지만 하면 됩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농업 기업과 농화학 기업들과 해당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합니다. 발의안 제37호 하에서는, 지금 드시는 음식을 계속 구입하실 수도 있고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식비나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식품 업체들은 라벨을 정기적으로 재인쇄하고, 기간적으로 합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의안 제37호때문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7호는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FDA는, "유전자 변형된 식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식품 라벨 없이는 여러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식품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 식품 업체들은 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유전자 변형 식품의 건강 상 영향에 대해 과학적 연구 결과가 불확실하고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라벨 부착은 가족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37호에 찬성하십시오.

www.Carighttoknow.org

JAMIE COURT, 회장

소비자 감시 단체

JIM COCHRAN, 총지배인

Swanton 베리 농장

DR. MARCIA ISHII-EITEMAN, 수석 과학자

국제농약행동당

발의안 제38호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공식 명칭 및 개요

법무장관 작성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 7,316달러가 넘는 연간 소득에 대해 최저 개인 소득자의 경우 0.4%에서부터 250만 달러가 넘는 개인소득자의 경우 2.2%까지 적용하는 차등제를 사용하여 개인 소득세율을 12년 간 인상합니다.
- 첫 4년 간, 세금 수입의 60%를 K-12 학교에, 30%를 주정부 부채 상환에, 10%를 유아 프로그램에 각각 배정합니다. 그 후에는, 세금 수입의 85%를 K-12 학교에, 그리고 15%를 유아 프로그램에 각각 배정합니다.
- 지역 통제, 감사,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K-12에 대한 자금을 학교별, 학생당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 주정부가 신규 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주정부의 개인 소득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2013-14년에는 대략 100억 달러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2012-13년에는 이 금액의 절반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 처음 몇 년 동안의 각 연도에는 학교에 약 60억 달러, 보육 및 유아원에 대해 10억 달러, 그리고 주정부의 부채 상환 자금을 비축하기 위해 30억 달러가 사용됩니다. 2013-14년의 배정 금액은 2012-13년에 징수한 자금의 추가 분배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 2017-18년에서 2024-25년까지는 학교, 보육 및 유아원에 지출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부채 상환에 지출되는 비율은 감소할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개요

이 법안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납세자의 개인소득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세입은 공립 학교,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 그리고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각 법안의 주요 규정은 아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합니다.

주 세금 및 세입

38 배경

개인소득세(PIT). PIT는 개인 및 가족의 임금, 사업, 투자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 PIT 세율은 각 소득 계층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소득 부분에 대해 1퍼센트부터 9.3퍼센트 사이입니다. (이를 한계 세율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오를수록 더 높은 한계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에서 창출되는 조세 수입(2010-11 회계연도 동안 총 494억 달러)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연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1퍼센트의 세금이 적용됩니다.(관련 세입은 전액 정신 건강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제안 사항

PIT 세율을 인상합니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 동안 최저 소득 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주정부 PIT 세율을 인상합니다. 그림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소득 계층 세율이 인상되면서 추가 한계 세율도 인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 신고자의 경우 \$34,692에서 \$54,754 사이 소득에 대해 추가적으로 0.7퍼센트의 한계 세율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총 세율이 4.7퍼센트로 인상됩니다. 마찬가지로 \$54,754에서 \$76,008 사이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1퍼센트의 한계 세율이 추가로 부과되면서 총 세율이 7.1퍼센트로 인상됩니다. 이같은 세율 인상으로 인해 주정부 PIT 신고 중 약 60%에 대해 납세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 요인들 중 개인, 부양 가족, 노인 및 기타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본 법안의 세율 인상 대상 계층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많은 저소득 세금 신고자들의 경우 계속해서 모든 납세 의무가 면제될 것입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추가 1퍼센트는 계속 100만 달러 초과 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세율 변화로 인해 해당 납세자들의 한계 PIT 세율은

발의안 **제38호**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그림 1

현행 세율과 발의안 제38호에 따라 제안된 개인 소득세의 세율

개인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공동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세대주 신고자의 과세 대상 소득 ^a	현행 한계 세율 ^b	제안된 추가 한계 세율 ^b
\$0-\$7,316	\$0-\$14,632	\$0-\$14,642	1.0%	—
7,316-17,346	14,632-34,692	14,642-34,692	2.0	0.4%
17,346-27,377	34,692-54,754	34,692-44,721	4.0	0.7
27,377-38,004	54,754-76,008	44,721-55,348	6.0	1.1
38,004-48,029	76,008-96,058	55,348-65,376	8.0	1.4
48,029-100,000	96,058-200,000	65,376-136,118	9.3	1.6
100,000-250,000	200,000-500,000	136,118-340,294	9.3	1.8
250,000-500,000	500,000-1,000,000	340,294-680,589	9.3	1.9
500,000-1,000,000	1,000,000-2,000,000	680,589-1,361,178	9.3	2.0
1,000,000-2,500,000	2,000,000-5,000,000	1,361,178-3,402,944	9.3	2.1
2,500,000 초과	5,000,000 초과	3,402,944 초과	9.3	2.2

^a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계층 구분은 2011년도에 유효한 것으로, 이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개인 신고자에는 각자 따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결혼한 부부 및 RDP(등록된 동거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공동 신고자에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부부 및 RDP, 그리고 부양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 유자격자도 포함됩니다.

^b 한계 세율은 열거된 각 소득 계층 구분별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15,000인 개인 신고자의 경우 현행 세율에 따르면 2011년 납부 세금이 \$227였을 것입니다: \$73(신고자의 소득 중 첫 \$7,316 부분의 1퍼센트에 해당)와 \$154(신고자의 소득 중 \$7,316을 초과하는 부분의 2퍼센트에 해당)의 합입니다. 이같은 납부액이 여러 요인 중 개인, 부양자, 노인 및 기타 감세 혜택에 따라 감소 또는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제안된 추가 세율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유효합니다. 열거된 현행 세율에는 100만 달러 초과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1퍼센트의 정신 건강 세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0.3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인상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 대상인 발의안 제30호도 PIT를 인상하게 됩니다. 다음 상자에 보면 두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유아 보육 및 교육(ECE) 및 채무 상환 자금을 제공합니다. 본 법안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은 새로 만들어지는 캘리포니아 교육신탁기금(CETF)에 적립됩니다. 이 기금은 세 가지 용도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림 2에서 나와 있는 대로 2013-14년과 2014-15년에 본 법안은 CETF 기금의 60퍼센트를 학교에 배정하고, 10퍼센트를 ECE 프로그램, 그리고 30퍼센트를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합니다. 2015-16년과

그림 2

발의안 제38호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의 할당

	2013-14년 및 2014-15년	2015-16년 및 2016-17년	2017-18년부터 2023-24년까지
학교	60%	60%	85%
유아 보육 및 교육(ECE)	10	10	15
주정부 부채 상환	30	30 ^a	— ^a
총계	100%	100%	100%
각급 학교 및 ECE 프로그램에 대한 할당액 증액 한도 ^a	없음	있음	있음

^a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최소 비율을 반영합니다. 증액 한도를 초과하는 세입은 부채 상환에 사용됩니다.

38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2016-17년에는 전체적인 기금 배정은 동일하지만 주정부 부채 상환에 조금 더 높은 비율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5-16년부터 이 법안이: (1) 이전 5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 1인당 개인 소득의 평균 증가액을 바탕으로 학교 및 ECE 프로그램에 대한 총 배정액 증가를

유권자들이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에 모두 찬성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 헌법에 보면 두 개 법안이 상충되는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동일한 주 전체의 투표를 통해 통과된 두 개 법안의 조항들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더 많은 "찬성" 표를 획득한 법안의 조항이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의 투표 대상인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는 모두 개인 소득세(PIT)를 인상하는 조항을 담고 있고, 따라서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한 가지 세금 인상만 발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제30호와 발의안 제38호에는 모두 양쪽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어떤 조항들이 발효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의안 제30호가 찬성표를 더 많이 받는 경우.** 발의안 제30호에는 발의안 제30호의 조항 전체가 우선하며, PIT 세율 인상과 관련한 일체 다른 법안(이 경우 발의안 제38호)의 조항들은 일체 발효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항이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가 찬성표를 더 많이 받는 경우.** 발의안 제38호에는 발의안 제38호의 조항 전체가 우선하며, 판매세 또는 PIT 세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다른 법안(이 경우 발의안 제30호)의 세율 관련 조항들은 일체 발효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항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발의안 제30호의 세금 인상이 발효되지 않게 되면서, "자동 예산 삭감(trigger cuts)"이라고 불리는 지출 삭감이 발효될 것입니다. (자동 예산 삭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 제30호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제한하며, (2) 증가율 초과분 기금은 전액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017-18년부터 2023-24년까지는 CETF 기금의 최대 85퍼센트가 학교로 배정되며, 15 퍼센트까지 ECE 프로그램으로 배정되고, 증가율 초과분 세입은 계속해서 주정부 부채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입법부에 개정 권한이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통과시킬 경우 이 법안은 앞으로 찬반 투표를 통해서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입법부는 유권자 승인 없이는 이 법안에 대해 일체 개정이 금지됩니다.

재정적 영향

연간 추가 주정부 세입 약 100억 달러. 처음 몇 년 간(2013-14년 시작) 연간 주정부 세입 증가액은 약 1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2012-13년에 이 법안으로 인한 연간 주정부 세입 증가액은 이 금액의 절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창출되는 총 세입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해에 창출된 세입은 이전 해 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이 법안이 상위 소득 납세자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상위 소득 납세자들의 소득은 주식 시장, 주택 가격 및 기타 투자 상 변동에 의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변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세자 소득의 이같은 변동과 세율 인상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 불확실하므로, 이 법안을 통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배경

대부분의 공립 학교 예산 지원은 주정부 예산 지원 공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약 600만 명의 공립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학생들은 1,000여 개의 교육 기관, 주로 학군을 통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예산은 발의안 제98호 최저 보장액이라고 칭하는 주정부 학교 기금 지원 공식을 통해 제공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예산 지원에도 최저 보장액 충족 조건이 적용됩니다.) 최저 보장액은 주정부 일반 기금과 지방 재산세 세입을 합쳐서 조달합니다. 2010-11년에 학교는 학교 예산 지원 공식을 통해 43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지출은 지방 집행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주정부 관련 학교 기금의 약 70 퍼센트가 다양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각 학군의 집행 위원회가 기금 사용처를 결정합니다. 집행 위원회는 보통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기금이 사용될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기금이 해당 학군 내 각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금의 나머지 30퍼센트는 반드시 급식 제공 또는 학생 통학 등과 같은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학군은 보통 이처럼 용도가 제한된 기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제안 사항

이 법안에 따라 각급 학교는 2016-17년 기간 중에는 PIT 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세입의 약 60퍼센트를, 그 이후에는 연간 약 85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이 CETF 기금은 발의안 제98호의 학교 일반 기금 지원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기금은 세 가지 보조금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또 한이 법안을 통해 이 기금과 관련해 지출 제한과 보고 요건이 수립됩니다. 이러한 주요 조항은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기금을 세 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배분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CETF 학교 기금을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기금의 70퍼센트).**
기금의 가장 큰 부분(전체 CETF 학교 기금의 70퍼센트)을 각 학교 학생수 기준을 배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학생당 보조금은 각 학생의 성적에 따라 결정되며 더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이 있는 학교가 더 많은 기금을 받게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은 수업, 학교 지원 스태프(카운셀러, 사서 등), 학부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학생 보조금(기금의 18퍼센트).**
법안은 CETF 학교 기금의 18퍼센트는 각 학교당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무료 급식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수에 따라 정의)의 수를 기준으로 전 주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배정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학생 보조금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술 및 수업 자료 보조금(기금의 12퍼센트).** 기금의 나머지 12퍼센트는 각 학교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전 주에 일률적인 비율로 배정합니다. 이 기금은 학교 교직원 교육 목적과 최신 기술

및 수업 자료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금은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학군이 받은 기금은 반드시 기금 배정 대상 학생이 있는 해당 학교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학생 보조금의 경우 특정 학군 내 저소득 학생이 100퍼센트 모두 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저소득 보조금 전액을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학교 기금과 마찬가지로 CETF 기금이 각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지방 집행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발의안 제38호 기금이 모든 학교의 기금 순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 법안은 각 학군이 비 CETF 재원으로부터 받는 학생별 기금액이 2012-13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대해서든 학군이 학생당 지원금을 2012-13년 수준 아래로 감축하는 경우, 해당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해당 감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각 학군은 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발의안 제38호는 학군 집행 위원회가 공개 공청회를 열고 CETF 학교 기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행정 직원 및 기타 학교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위원회는 기금 사용처를 결정하고 나면 반드시 CETF 학교 지출이 어떻게 교육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며 어떻게 그러한 향상된 결과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각 학교별로 예산 보고 요건을 수립합니다. 또한 법안에는 학군에 대한 여러 보고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2-13년부터 모든 학군이 각 소속 학교에 대해 온라인 예산을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예산에는 각 기금 출처에서 나온 각 학교별 지원금 및 지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금액은 다양한 지출 범주로 나눠 기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익 교육장은 반드시 통일된 예산 보고 양식을 제공하고 이천 연도 데이터를 포함해 모든 학교의 예산이 일반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군은 반드시 해당 학년도 만료일로부터 60일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이내에 각 소속 학교에서 CETF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허용 및 금지 사항. 법안은 학군 배정금의 최대 1퍼센트를 예산 책정, 보고 및 감사 요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본 법안에서는 해당 인상분을 비 CETF 기금 지원 대상 직원 등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CETF 학교 기금을 급여 또는 수당 인상 제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법안에는 CETF 학교 기금이 2012년 11월 1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주, 지방 또는 연방 기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

학교에 추가 기금을 제공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 학교는 법안을 통해 연간 약 60억 달러 또는 학생당 1,000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 금액 중 42억 달러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 용도로 제공되며 11억 달러는 저소득 학생 보조금, 7억 달러는 교육, 기술 및 수업 자료 보조금 용도로 제공됩니다. (2013-14년 금액은 2012-13년에 확보된 기금도 배포 대상에 포함되므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제공되는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17-18년부터 주정부 부채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교에 지출되는 금액은 한층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유아 보육 및 교육

배경

ECE 프로그램은 5세 이하 유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유치원(보통 5세부터 시작)에 다니기 전에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아동은 어떤 종류든 ECE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가정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자녀의 사회적, 인지적 능력 개발을 위해서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보통 출생부터 3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3세부터 5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보통 프리스쿨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며 보통 유치원 입학 준비에 중점을

둡니다. 주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프로그램이 반드시 기본적인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직원 자격, 성인-아동 비율, 커리큘럼, 가족 수수료, 보육 비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별 구체적 특징은 각기 다릅니다.

일부 아동은 보조금 지원 대상 ECE 서비스 참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ECE 프로그램에 유료로 참여하지만, 일부 아동의 경우 공공 기금의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보통 저소득 가구, 생활 보조-취업 프로그램 또는 그 외 다른 취업 또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및/또는 특수 니즈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구 등에 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ECE 보조금 수혜 자격은 주 중앙 소득 수준의 70퍼센트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예를 들어, 현재 3인 가구의 월 한도는 \$3,518입니다)로 한정됩니다. 주정부는 보조금 수혜 대상 ECE "슬롯"에 대해 아동 당 정해진 비율 액수를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 전일제 영유아 보육에 월 1,000달러, 전일제 프리스쿨에 월 700달러가 지급됩니다.

현재 기금 수준으로는 모든 자격 충족 아동에 대해 ECE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2010-11년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액은 약 26억 달러로, 이 돈을 사용해 5세 이하의 캘리포니아주 아동 중 약 15퍼센트에 해당되는 약 500,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캘리포니아 아동 중 대략 절반이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 수혜 자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및 연방 ECE 기금이 자격을 충족하는 아동 전체에 보조금 지급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제안 사항

앞서 언급한 것처럼 ECE 프로그램은 2016-17년 기간 중에는 PIT 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되는 세입의 약 10퍼센트를, 그 이후에는 연간 약 15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법안은 이 돈을 그림 3에 요약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배분하여 할당합니다. 그림 상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ECE 프로그램을 위해 확보된 기금 중 최대 23

발의안 제38호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퍼센트는 최근 주 예산 감소분을 아동 보육 슬롯 및 제공자 지급율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주정부의 ECE 제도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정 주 전체 활동을 시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ECE 기금은 그림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더 많은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특정 ECE 제공자들에 대한 지급율을 인상하기 위해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됩니다. 또한 법안은 주정부가 ECE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지원을 감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정부는 앞으로도 ECE 프로그램에 주 일반 기금에서 2012-13년에 지출한 것과 동일한 비중(약 1퍼센트)을 지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안에는: (1) ECE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등급 시스템, (2) 프리스쿨, 그리고 (3)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3 발의안 제38호의 유아 보육 및 교육(ECE) 조항	
목적/설명	ECE 기금의 비율 ^a
“복원 및 제도 개선”	
프로그램 복원 —2008-09년도 이래 기존의 보조금 지원 대상 ECE 프로그램에 대해 이루어진 주정부 예산 삭감 부분을 부분적으로 복원합니다. 복원에는 서비스 제공 대상 아동 수를 확대하고, 혜택 수혜 자격으로 정해진 가족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주 정부의 아동 1인당 지급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19.4%
등급 평가 시스템 —각 ECE 프로그램에 대해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 및 학업적 준비에 대해 기여하는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공식적인 등급을 책정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2.6
ECE 데이터베이스 —주정부 지원 대상 ECE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위해 주 전체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아동의 ECE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와 유치원 진학 준비도 평가 성적이 포함됩니다. 주정부의 K-12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됩니다.	0.6
라이선싱 조사 —주정부 라이선스 발행 기관이 ECE 프로그램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 및 안전 조사의 빈도를 늘립니다.	0.3
소계	(23.0%)
“ECE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	
삼세부터 오세 사이의 아동 대상 서비스 —더 많은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서비스 이용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51.6%
출생부터 삼세까지의 아동 대상 서비스 —저소득층의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및 가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이 캘리포니아 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16.6
제공자 지급율 —새로운 등급 책정 스케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ECE 프로그램에 대해 아동 1인당 지급금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며 지원금의 대부분은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집중시킵니다. 또한 출생부터 18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받은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ECE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기존 아동 1인당 지급율을 인상합니다.	8.9
소계	(77.0%)^b
총계	100.0%

^a 복원과 제도 개선에 할당된 금액이 3억 5,500만 달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안의 부채 상환이 2017-18년에 중단되면 이러한 활동에 지출되는 비율은 약간 줄어들고, ECE 프로그램 강화 및 확대에 지출되는 비율은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b 이 기금의 최대 3퍼센트를 주정부 차원 행정관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ECE 제공 기관에 할당되는 기금의 최대 15퍼센트를 시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8

개별 ECE 프로그램의 품질 평가를 위해 주 전체 등급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법안은 주정부가 개별 ECE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가늠하기 위해 "조기 학습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QRIS)"을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치에 더해 주정부는 2014년 1월까지 각 프로그램별로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과 학업 준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스케일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ECE 프로그램은 이 스케일을 사용하여 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등급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프로그램 제공자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발의안 제 38호는 QRIS 스케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은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 아동 당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 많은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저소득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슬롯 수를 확대합니다. 신규 슬롯 제공에 필요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품질 등급이 높은 프리스쿨 프로그램 제공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기금은 현재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지 않은 자격 충족 아동 수 추정치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할당됩니다. (신규 슬롯의 최소 65퍼센트는 전일제, 전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기존 가구 소득 참여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 또는 가족 소득과 관련 없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제한되며

최우선 순위는 위협에 직면한 아동에게 부여됩니다(위탁 양육 아동 포함).

저소득 가구의 영유아 대상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동일한 이름의 연방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캘리포니아주 얼리 헤드 스타트(EHS)를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중 최대 65퍼센트는 출생부터 삼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아동 보육 및 가족 지원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신규 슬롯의 최소 75퍼센트는 전일제, 전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EHS 기금의 최소 35퍼센트는 프로그램 중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및 보육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가족 지원 서비스에는 프로그램 직원의 가정 방문, 아동 발달 정도 평가, 가족 문맹 퇴치율 개선 프로그램, 부모 및 보육자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재정적 영향

ECE 프로그램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법안을 통해 마련되는 기금 중 연간 약 10억 달러를 주정부 ECE 시스템에 사용하게 됩니다. (2013-14년도 금액은 2012-13년도에 확보된 자금도 할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은 시행 초기 몇 년 동안 추가로 약 10,000명의 영유아 및 90,000명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으로의 가용 기금 액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날 것입니다. 2017-18년부터 주정부 부채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ECE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금액은 한층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주정부 부채 상황

배경

일반 공채 채무 상황. 채권 자금 조달은 주로 장기간 사용되는 인프라(학교 및 대학 건물, 고속도로, 인도 및 차도, 토지 및 야생 생물 보호, 수자원 관련 시설 포함)에 사용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정부가 사용하는 장기 차용 방식입니다. 주정부는 투자자에게 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 대가로, 주정부는 명시된 일정에 따라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정부 채권의 대부분은 일반 공채로, 이는 유권자들이 승인해야 하며 주정부의 일반 조세 부과 권한을 통해 보장됩니다. 일반 채권은 보통 일반 기금에 있는 자금에서 연차 채무 상환 지급을 통해 상환됩니다. 2010-11년도에 주정부는 일반 공채 채무 상환금으로 47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 중 32억 달러는 학교 및 대학 시설에 대한 채무 상환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안 사항

2016-17년까지 채무 상환 용도로 세입의 최소 30퍼센트. 2016-17년도 말까지 발의안 제38호에 따른 세입의 최소 30퍼센트는 주정부의 채무 상환 비용 지급 용도로 사용됩니다. 법안은 이 돈을 먼저 교육 채무 상환 비용 지급 용도(유치원 시설부터 대학 시설)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교육 채무 상환 비용을 지급한 후 기금이 남는 경우 주정부의 다른 일반 공채 채무 상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5-16년부터 학교 및 ECE 할당금 증가를 제한하고 남는 기금은 채무 상환 지급에 사용됩니다. 2015-16년부터 학교 및 ECE 프로그램에 대한 총 CETF 할당 금액은 이전 5년 간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개인 소득 평균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을 초과해 수령된 CETF 기금은 주정부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안은 세입 할당 상의 변동 사항을 감안해 2017-18년은 제외합니다.)

재정적 영향

2016-17년 사이 연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일반 기금 절감. 2016-17년 연말까지 법안을 통해 확보된 세입의 최소 30퍼센트(연간 약 30억 달러)는 일반 공채 채무 상환 비용을 지불하고 주정부의 일반 기금 절감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다른 공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 기금 세입을 늘림으로써 이 기간 동안 균형 예산 달성을 더 용이하게 만듭니다.

2015-16년부터 추가 일반 기금 절감 가능. 법안의 증액 제한 조항으로 인해 특정 연도에는 일반 기금 절감분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감액은 PIT 세입 및 1인당 개인 소득 증가에 따라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 발의안 제38호에 대한 찬성론 ★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므로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양질의 학교가 없다면 캘리포니아주도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교에 투자하는 대신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학교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정치인들이 삭감한 학교 예산은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40,0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한 학급 규모가 가장 큼니다.

학교 지원금 복원 및 확대.

발의안 제38호는 다시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전인적 교육을 복원하고 교육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보장된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재학생 수에 따라 각급 학교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보장하게 되며 이는 십이년 간에 걸쳐 연간 평균 1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각 학교는 지원 받은 돈을 각자 필요에 따라 학급 규모를 줄이는데 쓰거나, 미술, 음악, 수학, 과학, 직업 및 기술 교육, 대학입시 준비 등 수업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 따라 우리 동네 각 학교에 직접 보내지는 지원금의 액수는 www.moneyforlocalschools.org/resto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삭감을 막습니다.

발의안 제38호는 2016-17년까지 연간 약 30억 달러를 주정부의 교육 채권 부채 상환을 통한 주정부 적자 감축에 매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성공 준비를 돕습니다.

제38호는 유아 교육 부문 예산 삭감분을 복원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1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제공합니다.

학교에 투자하는 공정 분담 방법.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더 나은 학교가 우리 주의 경제와 삶의 질에 가져올 혜택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학교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납세 능력 기준으로 슬라이드 스케일 방식을 사용해 모든 항목 공제 후 소득에 대해 주정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학교 지원금을 복원하기 위해 연간 100억 달러를 제공합니다.

가장 부유한 납세자가 가장 많이 내게 되며 소득이 2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세율이 2.2% 인상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25,000 달러 미만인 납세자들의 경우 연 평균 7달러를 내게 됩니다.

발의안 제38호가 나와 같은 납세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십시오:** www.moneyforlocalschools.org/taxcalculator.

학부모와 납세자에 대한 다섯 가지 약속:

- **입법부는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제38호는 입법부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거나 밀려 쓰는 것을 금지하며, 입법부는 각급 학교가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을 대체하는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기금은 반드시 모든 학교에 학생 1인당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학교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은 감사 대상이 될 것이며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 할당하려는 시도는 징역형과 공직 수행 금지로 처벌할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 **이 돈은 학교 교직원의 급여나 연금을 인상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8호는 1% 이상 행정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지출 결정은 일반 시민 의견 반영 후 각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학군은 돈을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각 학교에서 공개 회의를 열고 학부모, 교육자 및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각 학교의 개선 성과는 각 학군이 책임집니다.** 각 학군은 반드시 학교별로 연간 교육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개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시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발의안 제38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CAROL KOCIVAR, 회장

캘리포니아주 사친회

EDWARD JAMES OLMOS, 배우

ARUN RAMANATHAN, 전무 이사

Education Trust-West

★ 발의안 제38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누구나 더 나은 학교를 원합니다.

하지만 **새로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책임질 사람 없는 주정부 관료 조직에 쏟아 붓는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제도 개혁 보다는 낭비와 자금 유용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 발의안 제38호는 세금을 인상해 그 돈을 책임질 사람 없는 관료 조직에 쏟아 붓는 법안입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중산층 납세자 및 중소 상공인들에게 막대한 소득세 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연간 8,000 달러 이상인 경우, 여러분의 세율은 앞으로 **십이년** 간 최대 21%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소득세를 기업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신고하는 가족 사업에 대한 세금을 크게 인상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는 소기업 및 가족 사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없앱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심지어 사기나 낭비가 있더라도 십이년 동안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 4년 동안 연간 30억 달러씩 원하는 곳에 쓰라고 주는 법입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각급 학교가 기본적인 지원금만 받으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비용이 들어 가는 관료적 절차를 새로 만들고, 필수적인 학교 기본 기능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신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발의안 제38호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38호에 대해 반대 투표하는 데 캘리포니아 교육자, 의사, 법집행 담당관, 납세자 단체, 소상공인 리더에 동참하세요. www.StoptheMiddleClassTaxHike.com.

ANDREW WONG, Member

Pomona Unified School District, 교육위원회

KEITH ROYAL, 회장

캘리포니아주 보안관 협회

RICHARD RIDER, 의장

San Diego 세금 지킴이

발의안 제38호

교육 및 유아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세금. 주민발의 법안.

★ 발의안 제38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8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대다수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1,200억 달러 소득세 인상
 여러분의 과세 대상 연간 소득이 17,346 달러 이상이라면
 발의안 제38호는 여러분의 개인 소득세율을 최대 21%까지
 인상할 것이며, 이것은 연방 정부 세금에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발의안 제38호의 세금 인상은 2024년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더 높은 소득세를 내시게 되는 셈입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실업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금 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능력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 같이
 우리 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금
 인상만 계속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8호는 우리가 앞으로
 십이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꼼짝없이 세금 인상을 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제로
 얼마나 교실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책임 없이
 세금을 통해 새로 들어오는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일자리를 죽입니다
 약 380만 개의 캘리포니아주 소규모 사업장이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대신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세금 인상은 연 소득이 고작 30,000 달러 내지 40,000
 달러에 불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더 높은 세금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개선하는 대신, 발의안 제38
 호는 기업들이 직원수를 줄이고, 다른 주로 이사가고, 심지어
 폐업하게 만들 것입니다.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높은 세금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 실적 향상 요건은 전무
 제38호에 따르면 학교 실적 향상이나 무능한 교사의 해고와
 관련된 요건은 전무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이 행정관리,
 컨설턴트, 연금, 수당 및 전체 비용에 지출되고, 실제 교실에
 돌아가는 돈은 너무도 적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학생 24%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는 학생
 성취도 향상은 요구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제도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십이년간 사기나 낭비가 있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십칠페이지에 걸쳐
 쓰여져 있는 법안 안에, 낭비, 사기 또는 유용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한 차례의 유권자 투표 없이는) 2024년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일체 변경을 금지한다는 특수 조항이 숨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은 1,200억 달러, 하지만 적자 줄일 돈은 없어
 발의안 제38호는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이 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발의안 제38호에는 이 돈 중 일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자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 조항도 없고,
 정치인들이 신규 세금으로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데도 또다시 우리에게 적자가 났다고 보고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조항도 없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 깨알 같은 글씨와 결합으로 가득한 27페이지
 • 1,200억 달러의 세금 인상
 • 과세 대상 소득 17,346 달러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인상
 • 소상공인에 타격 주고 일자리를 없앱니다
 • 학교 실적 향상 요건은 전무
 • 또 한 차례의 투표 없이는 사기나
 낭비가 있어도 십이년간 바꿀 수 없습니다
 발의안 제38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또 하나의 결합 투성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싼 법안입니다.

ALLAN ZAREMBERG, 회장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
 KEN WILLIAMS, 위원
 Orange County 교육 위원회
 THOMAS HUDSON, 전무 이사
 캘리포니아 납세자보호 위원회

★ 발의안 제38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

우리의 학교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200억 달러의 예산
 삭감. 50개 주 중 학생 1인당 지출 47위. 40,000명의 교육자 해직.
 정치인들은 교육을 우선시하지는 커녕,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8호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결책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격만 합니다.
 • 세금에 대해 겁주려는 술책에 속지 마십시오. 제38호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상폭은 21%가 아니라 0.4%에서 2.2%가
 될 것입니다.
 • 소득이 30,000 달러 내지 40,000 달러 사이인 소규모
 사업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제38호에
 따른 25,000 달러와 50,000 달러 사이 소득자에 대한 평균
 인상폭은 54달러입니다.
 • 제38호의 학교 지원금은 의무적으로 각 학교의 학생 당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에서(학생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학생 성취도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새크라멘토의 정치인들은 이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 제38호는 급여, 연금 또는 그 외 수당을 인상하는 데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 지출은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 실질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제38호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독립 감사와 교육 성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 전용을 시도할 경우 중죄로 취급됩니다.
 • 유권자들은 제38호를 개정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입법부는 돈을 학교에 쓰지 않고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제38호의 보장을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38호는 각 학교에 예산 삭감분을 회복하고 교육
 성과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십이년간 연간 평균 100억 달러에
 해당되는 신규 지원금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고, 고용주들에게 숙련된, 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공립 학교에 의지합니다.
 학교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prop38forlocalschools.org에 가서 제38호를 직접 읽어
 보십시오.
 학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발의안 제38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CELIA JAFFE, 회장
 제4학군 PTA, Orange County
 ALEX KAJITANI
 2009년도 캘리포니아주 올해의 교사
 TINA REPETTI-REZZULLO
 2010-2011년도 Los Angeles County 올해의 교사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 다주(multistate)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하는 비율에 근거하여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재산을 보유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기업의 세금 납부에 대해 유리한 대우를 하는 세액 계산 공식을 선택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기존의 법률을 폐지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에너지 효율성 및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입으로부터 5년 간 매년 5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다주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의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주정부에 연간 약 1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고, 이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일부 다주 기업들이 주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이 법안에 의해 향후 5년 간 증가하는 세입 중 약 절반은 에너지 효율성 및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출될 것입니다.
- 나머지 세입 중 상당한 부분은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주법인 소득세. 매년 기업이 주정부에 법인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해당 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다른 주 또는 국가(다주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주정부 세금은 캘리포니아 주와 연관된 소득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 기업의 수로 보면 다주 기업이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주정부 법인 소득세의 대부분을 내는 것은 다주 기업입니다. 다주 기업이 내는 법인 소득세는 세 번째로 큰 주정부 일반 기금 수입원으로, 2010-11년에는 이 액수가 9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주 기업은 자신들의 과세 대상 소득 결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현재, 주법은 대부분의 다주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와 연관되어 주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 방법(Three-Factor Method)".** 첫 번째 방법은 기업 매출을 올리는 장소, 재산 및 직원 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주 기업이 캘리포니아 내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 재산 또는 직원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하는 "단일 매출 요인 방법(Single Sales Factor Method)".** 두 번째 방법은 기업 매출을 올리는 장소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주 기업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발생시키는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 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제품의 사분의 일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주에서 판매된 경우, 이 회사 총 수익의 사분의 일이 캘리포니아 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세금 목적 상 자신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현재 주정부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발전소 및 송전선 등)를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이고 환경적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공공 요금 납부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가전제품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물 및 가전제품 표준을 수립합니다.

학교 자금 지원 공식. 1988년 유권자들이 통과시키고 1990년에 수정된 발의안 제98호는 매년 공립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이하 "학교")에 대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최저 예산 지원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보장액을 발의안 제98호 최저 보장액이라고 부릅니다. 입법부가 이같은 보장을 중지하고 더 낮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권한이 있지만, 대개는 보장액과 같거나 더 큰 액수의 예산을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발의안 제98호 보장액은 주정부 일반 기금 세입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주정부 기업 소득세로 들어오는 세입 포함). 마찬가지로, 이 법안처럼 세입 증가를 가져오는 법안도 더 높은 학교 예산 지원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98호 지출은 주정부 일반 기금 지출에서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주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범주입니다.

제안 사항

다주 기업들이 자신들의 과세 대상 소득 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앱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다주 기업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주 과세 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다주 기업은 단일 매출 요인 방법을 사용해 캘리포니아 주 과세 대상 소득을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만 영업하는 기업의 경우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는 또한 모든 다주 기업들이 주 과세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할당된 매출 부분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한 규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대형 케이블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에너지 효율 및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에는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Clean Energy Job Creation Fund)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이 기금을: (1) 공립 학교, 칼리지, 종합 대학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시설 개조 및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2) 에너지 개조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그리고 (3) 에너지 효율성 및 대체 에너지 관련 직업 훈련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사용되는 지출은 입법부가 결정하며, 입법부는 에너지 프로젝트 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 시행하는 비용 효과적인

프로젝트에 이 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은 (1) 모든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반드시 CEC 및 CPUC와 조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2) 연 단위로 기금 지출을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9인으로 구성된 감독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은 의무적 단일 매출 요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확보되는 신규 세입 중 일부로 충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확보되는 세입의 절반(최대 5억 5,000만 달러)이 매년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이러한 예산 이전은 2013-14년부터 2017-18년까지 5 회계연도 동안만 실시됩니다.

재정적 영향

주정부 세입이 증가합니다. 그림 1의 첫째 줄에 표시된대로 이 법안으로 인해 2013-14

그림 1
주 세입 및 지출에 대한 발의안 제39호의 추정 영향

	2012-13년	2013-14년부터 2017-18년까지	2018-19년 이후
연간 세입	5억 달러	10억 달러,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	10억 달러 초과
연간 지출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액	없음	5억 ~ 5억 5,000만 달러	없음
학교 예산 지원 보장액 증가	2억 ~ 5억 달러	2억 ~ 5억 달러,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	5억 ~ 10억 달러 초과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년부터 주정부 세입이 연간 약 10억 달러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2012-13년 기간에는 대략 반년 정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세입 증가분은 일부 다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창출되는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입 일부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2013-14년부터 2017-18년 까지) 오년 동안, 추가 세입의 약 절반 정도(연간 5억 달러 내지 5억 5,000달러)가 각종 에너지 효율 및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용도로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서 학교 예산 지원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에 따라 확보된 세입은 캘리포니아 주의 연단위 발의안 제98호 최저 보장액을 산정하는 데 고려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에 이전된 기금은 이러한 산정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 1의 하단 부분에서 표시된대로 세입이 증가하면서 2012-13년부터 2017-18년까지 기간 동안 최저 보장액은 최소 2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몇해 동안은 최저 보장액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018-19년부터 시작해, 보장액은 최소 5억 달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와 마찬가지로, 몇년 동안은 보장액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확보된 세입 중 특정 연도에 학교에 배정되는 정확한 비율은 전반적인 주정부 세입 증가분과 미지급 학교 지원금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의안 제39호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 발의안 제39호에 대한 찬성론 ★

2009년, 한 정치적 거래로 인해 타주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십억 달러에 달하는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 . .

새크라멘토에서 진행된 2009년도 예산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밤 중 의회 의원들과 타주 기업 이익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은 공청회도 없이 시민 토의도 없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들은 주법에, 타주 기업들이 매년 캘리포니아주 조세 체도를 마음대로 조종해 캘리포니아 주에 공정한 자신들의 몫을 내지 않게 해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빠져나갈 구멍의 대가는: 연간 캘리포니아 주 세입이 10억 달러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39호에 찬성 투표하시면 타주 기업에 대한 조세 구멍이 사라집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이 구멍을 깨끗이 막아 줍니다. 이러한 우리 조세 체도의 조작 행위를 종식시키고, 실제 본사가 어디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여기서 창출되는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합니다.

발의안 제39호는 다주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기업들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듭니다. 제39호에 찬성 투표하십시오-이 구멍을 없애는 것이 캘리포니아 일자리 창출에도 좋습니다**

지금의 조세 구멍을 이용하면 기업들은 여기에 있는 직원 수가 더 적을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 밖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는 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의 초당파적 독립 입법분석관이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의안 제39호로 인해 많게는 40,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독립 입법분석관은 지금 있는 구멍을 없애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39호에 찬성하면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이익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다주 기업들이 이 구멍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캘리포니아 주에 연간 10억 달러라는 세입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이 구멍을 막고, 이 돈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 공공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세입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체 신규 세입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수억 달러가 각급 학교에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발의안 제39호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감해 줄 것입니다. 제39호는 구멍을 막는 데서 생기는 세입의 일정 부분을 각급 학교 및 공공 건물에서 실시되는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됩니다. 단열성 개선, 새는 창문 및 지붕 교체, 소규모 태양열판 설치 등과 같이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효율성 강화 조치를 통해 주정부의 에너지 비용을 줄임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교육, 경찰 및 소방 등 필수 서비스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천식과 폐기관 질환을 일으키는 공기 오염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학교 건물 보수 작업을 통해 납, 석면, 곰팡이 및 그 외 독성 물질들을 학교에서 없애게 될 것입니다." —Jane Warner, 회장, 캘리포니아지부 미국 폐협회

제39호에 찬성 투표합니다—엄격한 책임성

발의안 제39호에는 **연단위 독립 감사 실시, 시민 감시 위원회**에 의한 지속적인 검토 및 평가, 모든 기금 및 지출에 대한 **완전한 회계 기록**, 그리고 **완전한 일반 공개** 등, 엄격한 재정 책임성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9호에 찬성 투표합니다—기본 상식입니다: 타주 기업을 위한 조세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연간 10억 달러를 다시 캘리포니아로 가져옵니다.

<http://www.cleanenergyjobsact.com/>

JANE WARNER, 회장
캘리포니아지부 미국 폐협회

TOM STEYER, 의장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 모임

MARY LESLIE, 회장
로스엔젤레스 기업협의회

★ 발의안 제39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39호의 캠페인 공약을 읽으실 때는 CNN이 "캘리포니아 주 헤지 펀드 킹"이라고 부른 Tom Steyer가 "빠져나갈 구멍" 같이 여론 조사를 통해 검증한 빈틈한 전문 용어에 2,0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고 "깨끗한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기록적인 속도로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떻게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법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발의안 제39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팔년 연속으로 사업하기 가장 안 좋은** 주로 꼽히고 있고, 미국 전체에서도 신용 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실업자는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라고요? 아닙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이미 수십 년 간 시행되고 있고 주정부 세입으로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는 조세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초당파적 입법분석관과 재무부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39호는 10억 달러의 세금 인상안입니다.**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억 달러의 세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주의 고용주들에게 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을 또 하나의 핑계를 제공해 줍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세입도 줄어들고, 학교와

법집행 기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에 좋은 일일까요?

발의안 제39호는 투표함 예산 책정의 최악 버전입니다. 학교, 도로, 인프라, 공공 안전에 투자될 수 있는 25억 달러를 주 예산에서 훔쳐갑니다.

발의안 제39호는 또한 정치적 친분 집단을 위해 급여와 연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등 새로운 관료주의적 장애물을 추가합니다. 책임을 묻지는 않고, 부정부패에 대한 납세자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세금은 늘고, 일자리는 줄고, 관료주의와 낭비는 늘어납니다. . . . 책임성은 제로고, 이해 상충에 대한 납세자 보호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발의안 제39호의 진실입니다.

민주당원, 무소속, 공화당원 모두 동의합니다.반대 투표합니다!

MIKE SPENCE, 회장
캘리포니아 납세자 보호위원회

ROBERT MING, 의장
캘리포니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 모임(Friends for Saving California Jobs)

JACK STEWART, 회장
캘리포니아 제조업체 및 기술 협회

발의안 제39호

다주 기업에 대한 세금 대우.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자금 제공. 주민발의 법안.

★ 발의안 제39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39호는 캘리포니아 주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주들에 대해 막대한 10억 달러 상당의 세금 인상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중산층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율은 거의 11%에 육박하면서 이미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우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낭비와 부정부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39호는 새로운 관료주의적 장애물과 특별 이익 단체 위원회에 최대 2,200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없이 수십억 달러를 쓸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고, 납세자들을 이해 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39호에 자금을 대고 있는 사람은 CNN 방송이 "캘리포니아의 헤지 펀드 킹"이라고 부르는 억만장자로, 이 사람은 유권자들의 표를 사서 투표에 이기기 위해 2,000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치 컨설턴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들을 믿지 마십시오.

발의안 제39호는 정치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더 많은 세금과 낭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반대 투표해야 합니다.

학교, 보건 및 복지, 환경 보호, 공공 안전 등으로 갈 수 있었던 25억 달러가 대신 두툽한 급여 봉투에 책임성이라고는 거의 없는 새로운 정부 위원회로 전용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예산 적자는 16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발의안 제39호는 불필요한 새 관료주의적 장치에 돈을 낭비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교사와 경찰관이 필요하지 관료주의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중산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공격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제조업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2백만에 가까운 근면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떤 일자리도 찾지 못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가 제안하는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인상은 4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조세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더 많은 노조원 및 비노조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정부와 관료집단을 더 크게 키웁니다. 다 들어 본 얘기입니다. 새크라멘토에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시민 감시 위원회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정치적 임명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도록 돈을 줍니다. 그들은 세금을 마음대로 쓸 수(또는 낭비할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습니다.

발의안 제39호에서는 소위 "녹색 에너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계약에 돈을 지출합니다. 이 계약은 누가 수수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거액의 선거 자금 기부자들입니다. 제39호는 매우 영성하게 작성되어 하청업자들이 계약을 승인하는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 선거 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개혁이 필요하지, 중산층 일자리를 없애는 세금 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1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인상해 이 돈으로 관료주의 장치와 연금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주 예산 적자, 높은 실업율,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부터의 보호 장치는 없습니다.

제39호의 자금을 대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억만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권자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발의안 제39호에 반대 투표하시면 캘리포니아 주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를 없애는 10억 달러의 세금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캘리포니아 주 중산층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은 살전 정부와 연금을 더욱 살찌우기 위한 특수 이익 단체 지출을 위해 백지 수표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 낭비적 지출, 변함 없는 정치인들에게 반대 투표하십시오. 정부 책임성을 요구하십시오. 제39호에 반대 투표하십시오.

JACK STEWART, 회장
캘리포니아 제조업체 및 기술 협회

LEW UHLER, 회장
전국조세제한위원회

PAT FONG KUSHIDA, 회장
캘리포니아 아세아태평양 상공회의소

★ 발의안 제39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

사실: 발의안 제39호에 찬성 투표하면 타주 기업들을 위한 세금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측 주장은 추잡하고 기만적입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캘리포니아 가족들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세금을 인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타주 기업들에게는 불공정한 세금 감면을 주지만 우리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구멍을 막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위의 주장에 서명한 "제조업체 그룹"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포함해 타주 기업들이 속임수를 써가며 제39호에 앞장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멍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2009년, 밀실에서 이 구멍을 만든 것은 의회 의원들과 로비스트들이었습니다

San Jose Mercury News는 이를 두고 기업 로비스트들이 "캘리포니아를 속여 넘겼다, 이것이야말로 기업들의 평판을 추락시키고 정부의 개방 정책을 조롱하는 속임수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39호에 찬성 투표하면 구멍을 막아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최악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39호는 캘리포니아 주에 일자리를 만듭니다

고용주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반대측의 주장은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세금 구멍은 일자리를 다른 주에 두는 기업을 유리하게 만듭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캘리포니아 주 내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장벽을 제거해 줍니다. 게다가 발의안 제39호를 통해 수천 개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사실: 엄격한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관료주의적 장치에 대한 반대편의 거짓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발의안 제39호는 연단위 독립 감사를 포함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효율성에 지출된 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 위원회 수립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구멍을 막는 데서 생기는 세입에서 수익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39호에 찬성하십시오. 구멍을 막으십시오. 캘리포니아의 세입과 일자리를 지킵시다.

ALAN JOSEPH BANKMAN, 조세법 담당 교수
스탠퍼드 로스쿨

RUBEN GUERRA, CEO
중남미 기업 협회

JANE SKEETER
캘리포니아 소기업 소유주

선거구 재조정. 주 상원 선거구. 주민투표.

-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설정한 새 주 상원 선거구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하면 승인되고 "반대" 투표를 하면 거부됩니다.
- 새 선거구가 거부되면, 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감독을 받아 주 상원 선거구를 조정할 것입니다.
- 주 상원 선거구는 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변경됩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재정적인 순영향에 대한 법률 분석가의 추정 요약.

- 유권자들이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인증한 주 상원 선거구 지도에 "찬성" 투표를 하여 승인하면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 유권자들이 시민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가 인증한 주 상원 선거구 지도에 "반대" 투표를 하여 거부하면 주정부에 새 상원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약 50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카운티에는 주 전체에서 새 선거구에 대한 새 선거구 지도 및 이와 관련된 선거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약 50만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입법분석관의 분석

배경

캘리포니아 입법부: 상원과 하원. 캘리포니아주는 40개의 주 상원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고, 상원 의원 1명이 각 주 상원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80개의 주 하원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고 하원 의원 1명이 각 하원 선거구를 대표합니다. 주 헌법에는 각 상원 및 하원 선거구에는 다른 상원 및 하원 선거구들과 대략 같은 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경계선 결정. 십년에 한 차례, 연방 인구 조사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나오면 상원, 하원, 평등 위원회, 의회 선거구의 경계선을 조정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입법부가 이러한 선거구 경계 조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10년,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발의안 제11호와 제20호를 각각 승인했고, 그에 따라 선거구 경계선 결정 책임은 새로 만들어진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 헌법에는 위원회는 각각 세 개 그룹 중 한 곳에 속하는 등록된 유권자 14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주 내 최대 규모의 정당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 5명은 주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정당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 나머지 4명은 이 두 정당 중 어느 쪽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들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옆의 상자에 (1) 위원회 위원 선정에 사용되는 절차, 그리고 (2)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정할 때 위원들이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선거구 경계를 채택(또는 "인증")하려면 세 개 그룹에서 각각 "찬성" 표가 최소 세 표씩 나와서, 아홉명의 위원들이 찬성해야 합니다.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

십년에 한 차례, 다음과 같은 3단계 절차에 따라 14명의 위원을 선정합니다:

- **신청자를 받습니다.** 등록된 캘리포니아 유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감사관은 특정 이해 상충이 있는 신청자, 지난 5년 사이에 소속 정당을 바꾼 신청자, 또는 지난 3차례 총선 중 최소 2개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외시킵니다.
- **신청자 중 후보 그룹을 좁힙니다.** 신청자들의 분석 능력, 공명정대성, 캘리포니아주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을 검토한 후, 세 명의 주 감사관들이 가장 적절한 후보 60명을 선발합니다. 그런 다음 입법부 지도자들에게 후보자 명단에서 24명까지 지울 수 있도록 합니다.
- **위원회 선발.** 주 감사관이 남아 있는 후보 중에서 무작위로 첫 8명의 위원 이름을 선발합니다. 그런 다음 선발된 위원들이 선별된 후보 명단에서 최종 6명의 위원을 선정합니다.

제40호

입법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선거구 결정에 대한 주요 헌법 기준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새로 선거구 지도를 작성할 때 위원회는 정당, 현직자 또는 정치적 후보를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중요도 순서대로 나열)을 충족하는 선거구를 수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합당한 수준으로 인구면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연방 투표 권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합니다.
4. 일체의 도시, 카운티, 도시와 카운티, 구역 또는 관심 지역 사회의 분할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5. 지리적으로 범위가 좁아야 합니다.
6. 상원 선거구는 2개의 온전하고, 완전하며, 인접한 하원 선거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투표. 헌법은 위원회가 인증한 선거구 지도에 대해 유권자들이 주민투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찬반 투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측에서 정해진 수의 등록된 유권자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대상이 된 지도는 주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발효됩니다. 주민투표가 주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지도는 발효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새로운 지도 작성을 권장하게 됩니다.

인증 받은 선거구 지도. 2011년 8월, 위원회는 일련의 지도를 인증해 상원, 하원, 평등 위원회, 의회 선거구 경계를 수립했습니다. 2011년 11월, 지지자들은 인증 받은 상원 선거구 지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주민투표가 찬반 투표 대상이 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6월 예비 선거와 11월 총선에서 어느 지도가 사용될 것인지 판결해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증 받은 상원 선거구 지도가 "캘리포니아 헌법에 정함으로써 헌법 상 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지도를 2012년 6월 예비 선거와 2012년 11월 총선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안 사항

이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인증한 상원 선거구 경계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증한 하원, 평등 위원회, 의회 선거구 경계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인증 받은 상원 선거구 지도 사본이 본 유권자 정보 안내서 뒷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성" 투표는 이 선거구를 승인한다는 의미이고, "반대" 투표는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권자들이 "찬성" 투표하는 경우. 위원회가 2020년 연방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 새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는 위원회가 인증한 상원 선거구 경계선이 사용됩니다.

유권자들이 "반대" 투표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특별 위원"을 임명해, 헌법에 정해진 선거구 조정 기준에 따라 새로이 상원 선거구 경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은퇴한 명예 판사들을 특별 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새 상원 선거구 경계선은 대법원이 인증하게 됩니다. 새 경계선은 위원회가 2020년도 연방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 경계선을 수립하기 전까지 사용됩니다.

재정적 영향

유권자들이 "찬성" 투표를 하여 위원회가 인증한 상원 선거구 지도를 승인하더라도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반대" 투표를 하여 위원회가 인증한 상원 선거구 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특별 위원들을 임명해 새 상원 선거구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정부에 약 **500,000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카운티에는 주 전체에서 새 선거구에 대한 새 선거구 지도 및 이와 관련된 선거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약 **500,000 달러**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론 ★

제40호에 대한 찬성 투표는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를 보호합니다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 투표는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 기구인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결정한 주 상원 선거구 지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반대 투표는 정치인들에게 독립 위원회가 설정한 공정한 선거구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돈 수십만 달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40호는 유권자가 승인한 시민 위원회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들 사이의 간단한 선택입니다

200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발의안 제11호를 통과시켰고 그 결과 주 상원과 주 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독립 기구인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발의안 제11호 이전에는, 주 입법부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비경쟁적 선거구를 선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재선을 보장했습니다.

현재 소수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이 독립 위원회가 선정한 주 상원 선거구 지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비경쟁적 선거구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시도는 이미 법정에서 실패한 바 있습니다

같은 정치인들이 주 상원 선거구 지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원회가 인증한 상원 선거구가 캘리포니아주 헌법 XXI조에 규정된 헌법 상 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위원회가 인증한 상원 선거구는 전체적으로 XXI조의 현행 조항에서 요구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초당파적 선거구 조정 절차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의 산물이다." *Vandermost 대 Bowen* (2012년)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www.courts.ca.gov/opinions/archive/S198387.PDF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 투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의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아닌, 독립 위원회가 선정한 선거구 지도를 갖기 위해 지난 4년에 걸쳐 세 차례나 투표를 했습니다:

- 발의안 제11호에 대한 찬성(2008년): 주 상원과 주 하원 선거구 지도 작성을 위한 독립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 구성
- 발의안 제20호에 대한 찬성(2010년): 캘리포니아주 의회 선거구에 대한 발의안 제11호의 개혁 조항 연장
- 발의안 제27호에 대한 반대(2010년): 독립 위원회를 없애고 다시 자신들의 선거구 조정 권한을 돌려 받기 위한 정치인들의 시도를 거부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발의안 제11호와 발의안 제20호의 통과와 발의안 제27호의 패배로 인해 새크라멘토 정치인들이 개입되지 않은 공정한 선거구 조정 절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유권자가 승인한 개혁 덕분에,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독립 위원회가 2012년 선거부터 주의회의 선거구를 공정하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선거구 조정 개혁은 선거구 조정 과정이 투명하고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정치적인 뒷거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더 이상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며,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선거구 주민들의 니즈에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위원회는 정치인들을 절차에서 빼고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돌려 주었습니다." —John Kabateck, 전무이사, 전국 독립기업 연맹/캘리포니아

발의안 제40호에 찬성-정치인들이 유권자가 승인한 선거 개혁을 뒤집지 못하게 막읍시다

www.HoldPoliticiansAccountable.org

JENNIFER A. WAGGONER,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 회장

DAVID PACHECO,
 AARP 캘리포니아 회장

ALLAN ZAREMBERG,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회장

★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40호의 후원자로서 우리의 의도는 2012년도에 위원회의 주 상원 선거구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 선거구를 유지하라는 주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우리는 선거 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더 이상 반대 투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JULIE VANDERMOST,

발의안 제40호 후원자

발의안 선거구 재조정. 주 상원 선거구. 주민투표.

제40호

★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반대론 ★

발의안 제40호의 공식 후원자로서, 우리의 의도는 이 발의안의 찬성 투표 적격성이 현재 주 상원 선거구 경계선이 2012년에 시행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를 검토한 후 선거구 경계선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법안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반대 투표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ULIE VANDERMOST,
발의안 제40호 후원자

★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반대론에 대한 반론 ★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찬성 투표는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를 보호하는 데 여전히 필요합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이 주민투표의 후원자들이 위에서 자신들은 더 이상 "반대" 투표 선거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여전히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작성한 주 상원 선거구 지도를 유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주민투표가 찬반 투표 대상이 되고 나면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해 집니다—위에 언급했듯이 후원자들이 법안을 포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안 제40호는 고비용의 대안적 절차와 유권자가 승인한 시민 위원회 사이의 간단한 선택입니다.**

- 제40호에 대한 찬성 투표는:
- 유권자가 승인한 독립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선정된 주 상원 선거구 지도를 보호합니다.
 - 납세자들의 세금 수십만 달러를 절약해 줍니다.
 -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독립 시민 위원회가 작성한 지역구 경계선이 유지되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재선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고, 유권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선거구 주민들의 니즈에 대응해야 합니다.
 -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독립 위원회가 선거구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세 차례에 걸쳐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발의안 제40호에 대한 "반대" 투표는 독립 위원회가 작성한 공정한 선거구 지도를 뒤집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정치인들에게 한 번 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 조정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투표합시다.** 바람직한 정부, 기업, 노인 권익 옹호 단체, 민권 단체들의 폭넓은 연합에 동참해 발의안 제40호에 찬성 투표해 주십시오.
www.HoldPoliticiansAccountable.org

KATHAY FENG, 전무이사
캘리포니아 코몬코즈(Common Cause)
JOHN KABATECK, 전무이사
전국 독립기업 연맹/캘리포니아
GARY TOEBBEN, 회장
로스앤젤레스 지역 상공회의소

미국 대통령 후보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9084항에서는 대통령 후보 정보를 캘리포니아 주무장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voterguide.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입법 및 의회 후보

이 유권자 안내서에는 주 선거 법안 및 미국 상원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상원, 하원 및 미국 하원의원 공직은 하나 또는 일부 카운티의 유권자에게만 해당되므로, 해당 공직의 일부 후보자 성명서는 카운티 견본 투표 용지 책자에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는 주 입법 공직(미국 하원의원 및 미국 상원의원과 같은 연방 공직이 아님)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자발적인 지출 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지출을 지정된 금액 이내로 유지하기로 선택한 입법 후보자는 카운티 견본 투표 용지 책자에서 최대 250 단어의 후보자 성명서 게재 공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경비를 자발적으로 제한한 주 상원 후보자는 총선에서 116만 9천 달러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경비를 자발적으로 제한한 하원의원 후보자는 총선에서 90만 9천 달러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발적인 선거운동 경비 한도를 수락한 입법 후보자 목록을 확인하려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_stat.htm으로 이동하십시오.

모든 미국 하원의원 후보자는 카운티 견본 투표 용지 책자에서 후보자 성명서 게재 공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 하원의원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서 게재 공간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발적인 선거운동 경비 한도는 미국 상원을 포함한 연방 공직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국 상원 후보자는 유권자 안내서의 후보자 성명서 게재 공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 상원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서 게재 공간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미국 상원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Dianne Feinstein
- Elizabeth Emken

모든 지명된 후보자 목록을 보려면,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cand.htm으로 이동하십시오.

미국 상원 후보자 성명서

미국 상원의원:

- 미국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 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일합니다.
- 새로운 국가 법률에 대해 제안 및 투표합니다.
- 연방법원 판사, 미국 대법원 판사 및 민간 및 군사 직책에 대한 여러 고위급 대통령 임명을 확정하는 투표에 참여합니다.

DIANNE FEINSTEIN

정당 선호도:

민주당

18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9 (310) 203-1012

Los Angeles, CA 90067

www.diannefeinstein2012.com

지금은 우리 주와 국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비록 회복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로부터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는 전세계의 심각한 경제적 과제와 국가 안보에 관련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이런 도전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검증된 리더십을 가진 미국 상원 의원이 필요합니다. 저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와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급여세 삭감,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고 주내 빈번한 압류를 종식시키기 위한 채용자 제도, 직업 창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인프라, 교사 및 응급 구호자의 급여 지원, 실업 상태인 전문가와 장기간 실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세금 공제 등과 같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을 지지합니다. 또한 고령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 안전 및 의료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상원 정보 위원회는 당파를 벗어난 공명 정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보장하고, 테러리스트 활동을 저지하며, 16개 정보 기관에 대한 중요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시민의 시민권을 보호하는데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를 위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고 그동안 많은 헌신을 해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LIZABETH EMKEN

정당 선호도:

공화당

P.O. Box 81

Danville, CA 94526

(925) 395-4475

info@emken2012.com

www.emken2012.com

워싱턴에 있는 일부 인사를 바꾸지 않고는 워싱턴 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체 상태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일자리 증가율은 더 낮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근면 성실한 주민들에게 더 적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실업률을 가진 미국 내 10대 도시 중 9곳이 우리 주에 있습니다. 지난 이십년간 캘리포니아의 미국 상원 대표자는 동일했지만 우리의 문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원의원이 매우 중요한 법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소규모 기업이 높은 세금과 과중한 규제에 위협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의 센트럴밸리 농부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에서 최첨단 산업 분야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의 국가 안보 및 방위 산업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실패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 상원에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주부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가에서 해외가 아닌 이곳 캘리포니아에 더 쉽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Emken2012.com을 참조해 주십시오.

후보자 성명서는 무작위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었습니다.
본 페이지의 성명서는 후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그 정확성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각 성명서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후보자 자비로 인쇄되었습니다.

발의안 제30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 보호법

제1항. 법안명

본 법안을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 보호법”으로 칭한다.

제2항. 배경

(a) 지난 4년간 캘리포니아주는 교육, 경찰, 소방, 의료 및 기타 중요한 주 및 지역 서비스에서 56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해야 했다. 이러한 자금 삭감에 따라 교사들이 강제 해고되고, 학교의 학급 정원 수가 늘어나고, 대학 수업료가 인상되고, 경찰의 치안 범위가 줄어들고, 화재 대응 시간이 늘어나고, 교도소의 재소자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가출옥자 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b) 이러한 주요 서비스의 삭감은 캘리포니아주의 노인, 중산층 근로가족, 어린이, 대학생 및 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삭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c) 수년간의 삭감과 어려운 선택에 이어 이제 상황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것이 캘리포니아주를 성장과 성공의 길로 되돌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d)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 보호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근로가족이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반면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을 내도록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e)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 보호법은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며, 이 계층은 대부분 이러한 소득세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판매세율을 2011년 초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지난해 발효된 일부 판매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한다.

(f) 이 법안의 새로운 세금은 일시적이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라 1/4 센트의 판매세 인상은 사년 후 만료되고 최상위 부유층 납세자의 소득세 인상은 칠년 후 종료된다.

(g) 새로운 세수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 지방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직접 제공된다. 지역 경찰 및 어린이 보호 서비스와 같은 시와 카운티의 공공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도 보장된다.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노인, 근로 가족 및 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 재원이 확보된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h) 기금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손댈 수 없는 특별 계정에 편입한다. 이 새로운 수입은 주 관료 또는 행정 비용에 사용되지 않는다.

(i) 이 기금은 학교와 공공안전에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는다. 선출된 공무원은 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기소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제3항. 목적 및 취지

(a) 본 법안의 주된 목적은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요구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주 헌법에서 주의 통제를 벗어난, 학교 및 공공안전 전용 특수 계정으로 기금을 보호한다.

(b) 이 법안은 수십억 달러의 주 지출을 영구 삭감하는 보다 광범위한 주 예산 계획 위에 수립된다.

(c) 법안은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공공안전을 위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금 지원을 보장하며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노인, 중산층 근로 가족, 어린이 및 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의 추가 삭감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d) 이 법안은 지역 공공안전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지역 관할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 수입을 지방 정부로 전환하는 데 대해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학교에는 전환되지 않을 경우 수령하게 되는 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한다.

(e) 본 법안은 새로운 수입을 행정 비용이 아니라 학급 관련 비용을 위해 교육구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당 학교 기금은 주 예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f) 본 법안에 따른 모든 수입은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에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독립 회계감사관의 지역 감사를 받습니다.

제4항. 제36항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에 추가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항. (a) 이 항의 목적에 따라 다음을 수행한다:

(1) “공공안전 서비스”에만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A) 법집행 요원, 형사 소송에 배정되는 변호사, 법원 보안 직원을 포함한 공공안전 공무원의 고용과 훈련.

(B)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에 대한 지역 교도소 관리와 거처 제공 및 제반 서비스와 감독.

(C) 아동 학대, 방임 또는 악용 방지, 학대, 방임 또는 악용되거나 학대, 방임 또는 악이용될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및 해당 아동의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입양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성인 보호 서비스 제공.

(D) 학업 성적 부진,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피해, 노숙, 예방 가능한 감금이나 수용을 줄이기 위해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E) 약물 남용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

(2) “2011년 재조정 법률”은 2011년 재조정이라고 부르는 주정부 예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9월 30일 이전에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며, 이는 관련 보고 책임을 포함하여

공공안전 서비스 책임을 지방 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규정한다. 본 법률은 입법부에 의해 결정된 대로 연방법 및 기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서비스를 설계,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유연성과 통제권을 지방 기관에 제공한다. 그러나, 2011년 재조정 법률에는 초기 주기적 심사, 진단 및 치료(EPSTDT) 프로그램 및 정신 건강 관리 보호를 제외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지방 기관에 배정된 새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

(b) (1) 2011-12년 회계연도에 시작하여 그 이후 지속되어 온 제(d)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제30025항에 규정된 대로 다음 금액이 2011년 지방 수입 기금으로 예치된다.

(A) 2011년 7월 1일 현재 세입 및 과세법 제6051.15항 및 제6201.15항에 설명된 세금으로부터 과생된 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

(B) 2011년 7월 1일 현재 세입 및 과세법 제11005항에 설명된 차량면허세로부터 과생된 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

(2) 2011년 7월 1일 이후 제(1)목에 따라 예약된 수입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일반기금 수입 또는 세금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 (1) 2011년 지방 수입 기금에 예약된 기금은 지방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안전 서비스 전용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2011년 재조정 법률의 전면적인 이행이 보류 중인 상태에서 기금은 주정부가 지방 기관을 대신하여 공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프로그램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기금은 2011년 재조정 법률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할당된다.

(2) 카운티 재무관, 시 및 카운티 재무관 또는 담당 공무원이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재무부 내에서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을 조성한다. 2011년 각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의 재원은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명시된 대로 지방 기관이 공공안전 서비스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3) 제XIII B조 제6항 또는 다른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재조정 법률 또는 해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칙 또는 이행 명령 또는 행정 명령에 의해 지방 기관에 부여된 새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명령은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주정부가 기금을 보조해야 하는 명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방 기관이 공공안전 서비스 책임 또는 다른 사항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법의 제5권 제2부 제1편 제9장(제54950항 이하)을 준수한다는 어떠한 요건도 제XIII B조 제6항에 따른 상환 명령이 될 수 없다.

(4) (A) 2012년 9월 30일 후에 제정되고 지방 기관이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증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주정부가 비용 증가분에 대해 연간 기금을 제공하는 한도에서만 지방 기관에 적용된다. 지방 기관은 본 세목에 기술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기금이 제공되는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B) 2011년 10월 9일 후 이행되고 2011년 재조정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으며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증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 이행 명령 또는 행정 명령은 주정부가 비용 증가에 대해 연간 기금을 제공하는 한도에서만 지방 기관에 적용된다. 지방 기관은 본 세목에 기술된, 새 규칙, 이행 명령 또는 행정 명령에 따라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기금이 제공되는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C) 제(A)세목 및 제(B)세목에 설명된 대로, 지방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새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기금이 제공되는 수준 이상은 주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며 제XIII B조 제6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 목은 2011년 1월 2일 동 호와 같이 제XIII B조 제6항 제(a)호 제(2)목에 의거 현재 보조금이 제외되는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주정부는 2011년 재조정 법률이 명령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지방 기관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포기, 또는 이러한 계획 또는 포기에 대한 수정사항을 연방정부에 제출하지 않는다. 단, 연방법이 계획, 포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한도까지 또는 주정부가 비용 인상분에 대한 연간 기금을 지원하는 한도까지는 제외된다.

(E) 주정부는 지방 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주정부에 의해 부여된 명령에 대해 본 항에 의거 보조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본 항이 규정하는 주정부 기금은 제(b)호 및 제(d)호에 설명된 재원, 증가 재산세, 또는 지방 수입 기금의 판매세 제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하위제정과 다른 재원으로부터 제공된다.

(5) (A) 제(a)호 제(1)목의 제(C)세목에서 부터 제(E)세목에 설명되고 2011년 재조정 법률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연방법령 또는 규칙에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설명된 대로 연방 상응 보조금이 지원되는 조건이 변경되고 지방 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속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해당 비용의 비연방 지분을 50 퍼센트 이상 제공해야 한다.

(B) 주정부가 제(a)호 제(1)목의 제(C)세목에서 부터 제(E)세목에 설명되고 2011년 재조정 법률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제기된 연방 사법 또는 행정 소송의 당사자이고, 벌금형의 형태로 금액이 부과된 조정이나 사법 또는 행정 명령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 기관이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증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정이나 사법 또는 행정 명령이 있는 경우, 주정부는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해당 비용의 비연방 지분을 50 퍼센트 이상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는 조정 또는 명령이 하나 이상의 지방 기관이 행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법률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하거나 부주의한 방식으로 행동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C) 본 항이 규정하는 주정부 기금은 제(b)호 및 제(d)호에 설명된 재원, 증가 재산세, 또는 지방 수입 기금 판매세 제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하위계정과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제공된다.

(6) 주정부 또는 지방 기관이 본 조항 또는 2011년 재조정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가 사법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절차는 다른 민사 사건에 우선한다.

(7)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에 예약된 기금은 주정부가 연방 상응 보조금 수혜 자격을 유지하고, 주정부의 공공안전 서비스 제공을 관할하는 해당 연방 기준을 주정부가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8)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에 예약된 기금은 지방 기관에 의해 공공안전 서비스를 위한 다른 기금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d) 제(b)호에 설명된 세금이 감소하거나 시행이 중단된 경우 주정부는 매년, 세금 감소나 시행 중단 없는 경우 제(b)호에 설명된 세금에 의해 제공되었을 총액보다 많거나 동일한 금액의 비용을 2011년 지방 수입 기금에 제공해야 한다. 금액 산정 방법은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설명되며, 주정부는 지방 기관이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이양된 공공안전 서비스 책임 수행 의무가 있는 한 해당 금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주정부가 매년 해당 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회계감사관이 매월 일반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2011년 지방 수입 기금으로 이전한다. 그 이후 회계감사관은 해당 금액을 2011년 재조정 법률이 명령한 방식으로 지방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본 호에 따른 주정부 채무는 제XVI조 제8항에 의거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제1우선순위와 제XVI조 제1항에 설명된 유권자가 승인한 부채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제2우선순위보다 일반기금에 대한 청구 우선순위가 낮다.

(e) (1) 지역 공공안전 서비스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공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에 따라 제(f)호에 명시된 대로 본 절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지급하기 위해 일반기금에 교육 보호 계정이 만들어진다.

(2) (A) 2013년 6월 30일 전에 그리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6월 30일 전에 재무국장은 제(f)호에 규정된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추가 세수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총액을 추정해야 한다. 재무국장은 또한 2013년 1월 10일까지 2012-13년 회계연도 말까지 징수될 추가 세수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B) 2013-14년에서 2018-19년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의 첫 세 사사분기의 각 분기의 마지막 10일 동안 회계감사관은 해당 회계연도에 제(A)세목에 따라 추정된 총액의 사분의 일을, 해당 금액이 제(D)세목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C) 2012-13년에서 2020-21년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에 재무국장은 제(D)세목에 의해 명시된 대로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함께 추가하여 교육 보호 계정에

대한 조정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i) 2012-13년에서 2018-19년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의 마지막 사사분기에 재무국장은 제(A)세목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추정된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 업데이트된 금액에서 이미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ii) 2015년 6월 및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6월 재무국장은 이전 두 회계연도에 대해 제(f)호에 규정된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발생한 추가 세수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총액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전 두 회계연도에 대해 제(i)목에서 업데이트된 추정 금액은 이 최종 결정 시 공제해야 한다.

(D) 제(C)세목에 따라 결정된 합계 금액이 양수인 경우 회계감사관은 해당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 10일 내에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합계 금액이 음수인 경우 회계감사관은 총 감소 금액이 여기 설명된 합계 금액과 같아질 때까지 분기별 이전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C)세목의 제(i)조목에 따른 계산 목적 상 분기별 이전 금액은 본 호에 따른 중단이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될 수 없다.

(3) 교육 보호 계정의 모든 기금은 이에 따라 본 항에 기술된 대로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차터 스쿨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된다.

(A) 본 항에 따라 충당되는 금액의 십일 퍼센트는 해당 조항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교육법 제84750.5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일반 목적의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확장 위원회에 의해 분기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할당된다. 본 호에 따라 계산되는 해당 절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할당 금액은 교육법 제84751항의 제(a)호, 제(c)호 및 제(d)호에 명시된 금액으로 상쇄되는데, 이 금액은 해당 절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교육법 제84750.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도 전일제 학생 일인당 백달러 (\$100) 미만의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 본 항에 따라 충당되는 금액의 팔십구 퍼센트는 본 항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차터 스쿨 각각에 대해 교육법 제2558항 및 제42238항에 따라 계산된 수입 한도와 교육법 제4763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비례하여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에 대한 일반 목적의 기금 및 차터 스쿨에 대한 주정부 일반 목적의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감에 의해 분기마다 할당된다. 이와 같이 계산되는 금액은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차터 스쿨 각각에 대해 교육법 제2558항 제(c)호, 제42238항 제(h)호의 제(1)목에서 제(7)목, 그리고 제47635항에 명시된 금액으로 상쇄되는데, 해당 절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이 금액은 해당 절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차터 스쿨

각각에 대해 교육법 제2558항, 제42238항 및 제4763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어떤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차터 스쿨도 일일 평균 출석 학생 수당 이백 달러 (\$200) 미만의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본 호는 법률적 조치 없이 자동 이행된다. 교육 보호 계정의 기금은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학장 위원회와 교육부 교육감이 분배하되, 입법부나 주지사가 제IV조 제12항에 따른 연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XVI조 제8항 제(h)목을 시행하거나, 입법부나 주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실패에 따라 기금의 분배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호 계정에 예탁된 기금은 입법부, 주지사 또는 어떤 주정부 기관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6)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해당 관리 위원회나 기구가 공청회를 통해 사용 방식을 결정하고 교육 보호 계정 기금을 관리자의 급여, 복리후생 또는 다른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체 판단에 따라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수령한 기금의 사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은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수령한 기금 액수 및 해당 기금의 사용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7)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은 다른 모든 법률적 요건 외에 매년 독립적인 재무 및 규제준수 감사를 통해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수령한 기금을 본 절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고 지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 절의 추가 감사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발생시키는 비용은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으며 본 절의 목적 상 관리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본 절에 따라 교육 보호 계정에 예탁된 금액에 대해 제(f)호에 따라 과세되는 수입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일반 기금 수입”, “일반 기금 세금 수익금” 및 “주정부에 의해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금”으로 간주된다.

(f) (1) (A) 본 법안에 따라 개인 유형자산을 소매로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편(제6001항 이하)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이외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 전까지 모든 소매업자에게 이 주에서 소매 판매되는 모든 개인 유형자산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총수입액의 1/4 퍼센트 세율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B) 본 법안에 따라 개인 유형자산을 소매로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권(제6001항 이하)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이외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 전까지 이 주에서 모든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개인 유형자산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자산 판매 가격의 1/4 퍼센트 세율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C)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는 본 절의 발효일 이후에 수정된 조항을 포함하여 판매 및 사용세법이 적용된다.

(D) 본 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제(a)호 제(1)목에 기술된 소득세 단계 및 9.3 퍼센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A) (i) 과세 소득이 이십오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지만 삼십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십오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3 퍼센트이다.

(ii) 과세 소득이 삼십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지만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삼십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1.3 퍼센트이다.

(iii) 과세 소득이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2.3 퍼센트이다.

(B) 제(A)세목의 제(i)조목, 제(ii)조목 및 제(iii)조목에 명시된 소득세 단계는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제(h)호에 다르게 규정한 대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C) (i) 세입 및 과세법 제19136항 제(g)호의 목적 상 본 항은 발효일 현재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ii)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0편(제17001항 이하) 및 제10.2편(제18401항 이하)의 목적 상 본 항에 따라 수정된 소득세 단계 및 이 항에 따라 규정되고 부과되는 세율은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따라 규정되고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D) 본 항은 201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제(c)호 제(1)목에 기술된 소득세 단계 및 9.3 퍼센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30

(A) (i) 과세 소득이 삼십사만 달러 (\$340,000)를 초과하지만 사십만팔천 달러 (\$408,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삼십사만 달러 (\$34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3 퍼센트이다.

(ii) 과세 소득이 사십만팔천 달러 (\$408,000)를 초과하지만 육십팔만 달러 (\$68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십만팔천 달러 (\$408,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1.3 퍼센트이다.

(iii) 과세 소득이 육십팔만 달러 (\$680,000)를 초과하는 경우 육십팔만 달러 (\$68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2.3 퍼센트이다.

(B) 제(A)세목의 제(i)조목, 제(ii)조목 및 제(iii)조목에 명시된 소득세 단계는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제(h)호에 다르게 규정한 대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C) (i) 세입 및 과세법 제19136항 제(g)호의 목적 상 본 항은 발효일 현재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ii)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0편(제17001항 이하) 및 제10.2편(제18401항 이하)의 목적 상 본 항에 따라 수정된 소득세 단계 및 이 항에 따라 규정되고 부과되는 세율은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따라 규정되고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D) 본 항은 201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g) (1) 회계감사관은 자신의 법률적 권한에 따라 2011년 지방 수입 기금 및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의 지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이 본 절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회계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 보호 계정에 대한 감사를 단행해야 한다.

(2) 법무장관 또는 지역구 검사는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 또는 교육 보호 계정의 기금이 잘못 사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

제5항. 발효일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 제36항 제(b)호는 본 법안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 제36항 제(f)호 제(2)목 및 제(3)목은 본 법안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 현재 발효된다. 본 법안의 기타 모든 조항은 제공된 법안에 투표하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승인할 경우 투표 다음날에 발효된다.

제6항. 충돌 법안

본 법안과 개인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다른 법안이 동일한 주 광역 선거 투표에 회부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안의 조항은 본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법안이 해당 법안과 충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안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표를 득표하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법안의 조항은 무효화 된다.

제7항. 본 법안은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2011년 법령 제43장 및 세입 및 과세법 제6051.15항 및 제6201.15항에 따라 예탁된 수입이 “일반기금 수입” 또는 “일반기금 세금 수익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공하게 되는 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기금을 제공한다.

발의안 제31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고 추가하며 교육법과 정부법에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에는 취소선이 인쇄되며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정부 성과 및 책임법

제1항. 배경 및 선언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정부의 자세를 선언한다:

1. 신뢰성.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는 더 높은 투자 수익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민들은 양질의 정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결과에 책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각 부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정부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은 모든 지출에 대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비용 효율성. 캘리포니아주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귀중한 공공 자원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이 높고 효과적인 활기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투명성. 공공 사업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 정직성과 개방성이 민주주의의 무결성 및 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진작한다.

5. 결과 중심주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공공 목적을 명확하게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 법안을 통해 주민들은 주 및 지방 정부의 목적이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그리고 공명정대한 지역사회를 촉진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목적은 고용 증대, 교육 개선, 빈곤 퇴치, 범죄 감소, 건강 증진을 통해 달성된다.

6. 협조. 모든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중복사항을 제거하며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서비스를 통합하고

효과가 입증된 전략을 채택하여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을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7. 주민친화.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알고 있고 주민들이 선출 공무원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역 일선 수준에서 최상의 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8. 지역 고용 창출 지원. 캘리포니아주는 지역 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활성화는 대부분 지역 단위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주정부는 지방 정부가 지역적으로 협력해 지역 경제에 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급여수준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다.

9. 의견 수렴 자세. 활기찬 상호교류의 민주주의 그리고 양방향의 소통과 책임있는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지역사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10. 검소함과 신중함. 오늘날의 주 및 지방 정부는 주민들에게 달성 과제에 대한 설명 없이 수억 달러의 비용을 예산 수립 과정에 사용한다. 이러한 동 기금들은 공공 예산의 기본 목적대로 재원을 목표에 결부시키고 목표 달성 현황을 알리는 예산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항. 2. 목적 및 취지

본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자원을 사용해 주 및 지방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과와 책임을 개선한다.

2. 주정부가 다음과 같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예산 수립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a. 목표 달성 프로그램 및 진행 상황에 맞춰 예산을 결정하는데 집중한다.

b. 이개년 예산을 개발하고 예산이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이상 모든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

c. 주요 프로그램을 새로 제정하기 전에 세금 삭감 여부 및 자금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d. 예산법을 포함하여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3년간 공개해야 한다.

3. 지방 정부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결과를 개선하고, 책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민 친화적인 정부를 만든다.

a. 목표 달성 프로그램 및 진행 상황에 맞춰 지방 정부 예산을 결정하는데 집중한다.

b. 자체적으로 직접 달성할 수 없는 지역사회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 실행 계획을 공공 절차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카운티, 시 및 학교에 부여한다.

c. 실행 계획을 승인하는 지방 정부에 공공 프로그램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주정부 비용 집행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d. 주정부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 규칙을 만들기 위해 진행 및 과정을 저해하는 주 법령 또는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실행 계획을 승인하는 지방 정부에 부여한다.

e.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지방 정부에 권고한다.

f. 실행 계획 개발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부 주정부 기금을 지방 정부에 제공한다.

g. 지속적으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 정부에 매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사년마다 평가하여 지방 유권자 및 납세자에 대한 지방 선출 공무원의 책임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4.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예산에 자원을 할당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일에 주민을 참여시킨다.

5. 막대한 추가 기금 없이 현재 주 및 주 정치적 하부조직의 예산 수립 과정에 전담 배치된 기존의 자원을 사용하여 예산 개혁을 단행한다. 또한, 기존 과세 기반 및 수입으로부터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조성한다. 본 법안의 어느 조항도 세금 인상이나 세율 또는 과세 기반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3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8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8항. (a) 정기 회기 중 예산 법안 외 어느 법안도 하원이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의원의 사분의 삼이 찬성하여 이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 한, 법안이 제출된 후 31일째까지 위원회 또는 각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b) 입법부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을 만들 수 없으며 법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 어느 법안도 하원이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이 요건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에서 3일간 심의하지 않는 한 통과될 수 없다. 자연 재해나 테러리스트 공격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에 의해 소집된 특별 회기에서 통과되는 긴급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제외한 어느 법안도 수정 조항을 포함하여 인쇄물로 인쇄되어 의원들에게 배부되고 주민들에게 3일 이상 공개될 때까지는 통과될 수 없다. 어느 법안도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 의해 각 의회의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통과될 수 없다.

(c) (1) 본 목의 제(2)항 및 제(3)항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 회기에 제정된 법령은 법령 제정일로부터 90일의 기간 후 1월 1일에 발효되며 특별 회기에 제정된 법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특별 회기가 휴회된 날로부터 91일째 발효된다.

(2) 입법부가 2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에 공동 휴회를 재소집하기 위해 휴회한 날 이전에 통과된 법안에 의해 제정되고 해당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령이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이 아닌 경우, 제II조 제10항 제(d)호에 따라 1월 1일 전에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청원서가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법령 제정일 다음 1월 1일에 발표되며, 주민투표 청원서가 법무장관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II조 제9항 제(b)호에 따라 청원서가 주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제정일로부터 91일째 발표된다.

(3) 선거를 소집하는 법령, 주정부의 일상적인 당기 비용을 위한 세금 징수 또는 총당금을 규정하는 법령 및 긴급 법령은 제정 즉시 발효된다.

(d) 긴급 법령은 주민들의 평화, 건강 및 안전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이다. 법안의 한 조항에는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과 법안은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되는 호명표결에서 의원 삼분의 이의 찬성을 통해 별도로 통과되어야 한다. 긴급 법령은 공직을 만들거나 폐지하거나, 공직의 급여, 기간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특권 또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득권 또는 이권을 만들 수 없다.

제4항. 제9.5항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에 추가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5항.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었지만 (1) 제XIII B조 제6항에 설명된 주의 지시에 따른 지역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주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에 의해 기금이 제공될 경우 당해 회계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에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를 초과한 주 비용의 순 증가를 초래하거나, (2) 주 세금 또는 다른 주 수입원을 삭감하여 당해 회계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에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 이상 주정부 수입의 순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은 해당 법안 또는 다른 법안에서 주 비용의 순 증가 또는 주 수입의 순 감소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프로그램 삭감이나 추가 수입 또는 이를 결합한 상쇄 조항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의 임계값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제5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10항. (a)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는 각 법안은 주지사에게 제출된다. 각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해야 법령이 된다. 주지사는 이의서와 함께 법안이 발의된 의회에 법안을 환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는 의사록에 반대 사유를 기록하고 재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각 의회가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의원 삼분의 이가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 법안은 법령이 된다.

(b) (1) 입법부가 이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에 재소집하기 위해 공동 휴회를 위해 휴회한 날 이전에 통과된 법안에 의해 제정되고 해당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법안은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이 아닌 경우 해당일 이후 30일 내에 환부되지 않으면 법령이 된다.

(2) 이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의 6월 30일 전에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6월 30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 해당 연도의 7월 31일 이전까지 환부되지 않으면 법령이 된다. 또한 이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의 9월 1일 전에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9월 1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 해당 연도의 9월 30일 이전까지 환부되지 않으면 법령이 된다.

(3) 주지사에게 제출된 기타 다른 모든 법안은 12일 내에 환부되지 않을 경우 법령이 된다.

(4) 입법부가 특별 회기를 휴회하여 이의서가 첨부된 법안의 환부를 막는 경우, 주지사가 법안과 이의서를 주총무처에 계류된 상태로 법안이 제출된지 12일 내에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은 법령이 된다.

(5) 주지사가 이 호의 제(3)목 또는 제(4)목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의 12일째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익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c) (1) 이년의 입법 회기 중 첫 번째 연도에 제출되어 2년 중 두 번째 연도의 1월 31일까지 법안을 발의한 의회에 의해 통과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해당 의회에 의해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다. 선거를 소집하는 법령, 주정부의 일상적인 당기 비용을 위한 세금 징수 또는 총당금을 규정하는 법령 및 즉시 발효되는 긴급 법령 법안 및 주지사가 거부한 뒤 통과된 법안을 제외한 어느 법안도 ~~꼭수 연도의 9월 1일~~ 2년 중 두 번째 연도의 6월 30일 이후에는 통과될 수 없다.

(2) 제(1)목에 규정된 대로 이년 중 두 번째 연도의 1월 31일까지 법안을 발의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정된 또는 수정된 법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어떤 법안도 이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제출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d) (1) 입법부는 2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의 11월 15일 후에는 주지사에게 어떠한 법안도 제출할 수 없다. 이년 중 두 번째 연도의 7월 4일 다음 첫 번째 월요일에 입법부는 프로그램 감독 및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 회기의 일부로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입법부는 법령 또는 2개년 예산법에 기술된 성과 기준을 바탕으로 주정부가 운영하거나 또는 주정부를 대신하여 추가 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 기관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감독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주정부가 운영하거나 또는 주정부를 대신하여 추가 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주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일정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검토 순서를 정하여 프로그램 목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종료하는 제안 법률의 형태로 검토 결과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은 오년에 한번 이상 검토해야 한다.

(2) 제(1)목에 따라 프로그램 감독을 위해 수립되는 과정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 결과 개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한 주 법령 또는 규칙이 최소 삼년 이상의 지역사회 전략 실행 계획의 검토를 기준으로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요구대로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XI A조에 따라 채택된 지역사회 전략 실행 계획의 검토도 포함되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는 실행 계획이 계획에서 파악되는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을 개선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 주지사는 법안의 다른 부분을 승인하면서 하나 이상의 총당금 항목을 감축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주지사는 감축하거나 제거한 항목 내역을 조치 사유와 함께 법안에 첨부해야 한다. 주지사는 법안을 발의한 의회에 내역서 및 사유서를 전달해야 한다. 감축되거나 제거된 항목은 별도로 재심의해야 하며 법안과 같은 방식으로 주지사의 거부에 관계없이 통과될 수 있다.

(f) (1) 2004-05년 회계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법안의 제정 이후, 주지사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기금 수입이 당해 연도에 대한 예산 법안의 기준으로 사용된 일반 기금 수입 추정액 아래로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일반 기금 지출이 일반 기금 지출 추정액을 상회하여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두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정적 비상 상태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할 수 있으며 입법부는 이에 따라 특별 회기를 소집해야 한다. 성명에는 재정적 비상 사태의 성격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지사가 재정적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안 법률과 함께 성명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지사의 성명에 대응하여 입법부는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성명 발표 후 45일째까지 입법부에서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이송하지 못할 경우 입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에게 이송될 때까지는 다른 법안을 제정하거나 공동 휴회를 위해 휴회할 수 없다.

(3) 이 조항에 따라 선언된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에는 이러한 취지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2)목 및 제(4)목의 목적 상 이러한 진술이 포함되면 법안이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확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따라 선언되고 이러한 취지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었으며 재정적 비상 상태를 선언하는 성명 발표 후 45일째까지 통과되어 주정부에 이송된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은 제정 직후 발효된다.

(4) (A) 입법부가 재정적 비상 상태를 선언하는 성명 발표 후 45일째까지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이송하지 못할 경우 주지사는 행정 명령에 의해 헌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도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기존 일반 기금의 총당금을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주지사가 축소 또는 제거한 총당금의 총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지출이 제(1)목에 따라 추정된 최근 일반 기금 수입의 최근 추정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액수로 제한된다.

(B) 입법부가 개회 중인 경우 입법부는 주지사가 제(A)세목에 따라 행정 명령을 발표한 후 20일 내에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 의한 행정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주지사가 행정

명령을 발표할 때 입법부가 개회 중이 아닌 경우 입법부는 30일 내에 재소집하여 위에 명시된 표결을 통해 행정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입법부에 의해 기각되지 않은 행정 명령 또는 행정 명령의 일부는 행정 명령을 기각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발효된다. 재정적 비상 상태를 선언하는 성명 발표 후 45일째 이후 제(2)목에 기술된 금지 조항은 (i) 이 조항에 따라 발표된 하나 이상의 행정 명령이 발효되거나 (ii) 입법부가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이송한 경우 적용이 중단된다.

(C) 제(B)세목에 따라 예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은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통과될 경우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또는 법률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단,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은 입법부 각 의회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제6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IV조 1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12항. (a) (1) 각 홀수 연도의 첫 10일 내에 주지사는 권고되는 주 지출 및 해당 지출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주 총 수입 연도 추정액에 대한 항목별 내역이 포함된 향후 두 회계연도연도에 대한 예산을 설명 통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호에 따라 제출되는 주 지출 권고안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주 총 수입 추정액의 항목별 내역에는 일회성 자원으로 예상되는 자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자원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예산 연도에 대한 예산 및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는 이년 간의 예산은 집합적으로 이개년 예산이라고 한다. 각 짝수 연도의 첫 10일 내에 주지사는 제정된 이개년 예산을 수정하거나 증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다.

(b) 이개년 예산에는 성과 및 책임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에 대해 권고되는 지출에 사용 가능한 총 자원의 추정액.

(2) 예산 연도 차기 회계연도 이후 세 회계연도에 대한 예상 지출 및 예상 수입의 추정액.

(3) 고용 증대, 교육 개선, 빈곤 퇴치, 범죄 감소, 건강 증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및 공명정대한 지역사회 조성 목적을 촉진하는 예산 유용성에 대한 진술.

(4)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과 측정 기준 및 주정부 기관 및 프로그램의 성과 기준에 대한 설명.

(5) 예산 전용으로 제안된 공공 자원에 대한 주정부의 각 주요 지출 및 제(3)목에 기술된 전체적인 목적 및 목표와의 관계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에 대한 진술.

(6) 주정부가 공공 자원의 지출 및 투자를 제(3)목에 기술된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를 대신하여 주 기능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지출 및 투자와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에 대한 진술.

(7) 제(3)목에 기술된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진행 현황 및 이전 연도의 예산에 기술된 성과 측정 기준에 따라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공개 보고서.

(c)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에 대해 집합적으로 권고되는 지출이 추정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주지사는 지출 감소 또는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자원의 감축 또는 둘 다를 권고해야 한다. 실제적인 한도에서 권고안에는 지출 감소나 추가 수입이 주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지사는 이개년 예산과 함께 이개년 예산에 포함된 총당금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 및 오개년 자본 기반 구조 및 전략적 성장 계획을 법령에 의해 명시된 대로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d)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예산이 (1) 제XIII B조 제6항에 설명된 주의 지시에 따른 지역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주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에 의해 기금이 제공될 경우,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25,000,000달러 이상 주 비용의 순 증가를 초래하거나 (2) 주 세금 또는 다른 주 수입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25,000,000달러 이상 주 수입의 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법안에서는 주 비용의 순 증가 또는 주 수입의 순 감소에 준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줄어든 프로그램이나 추가 수입, 또는 이 모두에 대한 상세 조항을 제안해야 한다. 이 호에 명시된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의 임계값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b) (e) 주지사 및 주지사 당선자는 주정부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이개년 예산 및 모든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 (f) (1) 이개년 예산 및 모든 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 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권고되는 지출을 세분화한 예산 법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법안은 추가 예산을 제안하는 법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2) 예산 법안 및 주지사에 의해 제출된 대로 예산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제공하는 기타 법안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의장이 각 의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매년 5월 1일 이전 입법부의 각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 법안을 심의한 후, 각 의회는 예산 법안을 양원 협의회가 포함된 합동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 법안 및 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을 검토하고 매년 6월 1일까지 각 의회에 권고안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합동 위원회 외에 정책 위원회에 대한 법안 추천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3) (4) 입법부는 예산 법안 및 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을 매년 6월 15일 자정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차기 회계연도에 대해 예산 법안 또는 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에 포함되는 총당금은 당해 예산 연도에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

(4) (5) 예산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주지사가 제안하는 긴급 변안 또는 입법부의 급여 및 비용 총당금을 제외하고, 입법부는 예산 법안이 제정되는 화요일 예산 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 동안의 지출을 위한 기금을 총당하는 법안을 주지사에게 보내어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d) (g) 예산 법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법안에는 두 개 이상의 총당금 및 하나의 명시된 목적을 위한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공립 학교를 위한 총당금과, 예산 법안, 추가경정예산 법안 및 해당 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의 총당금을 제외하고,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총당금은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을 통해 통과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e) (h) (1) 법률 또는 헌법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법안, 추가경정예산 법안 및 해당 예산 법안을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은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을 통해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통과되는 경우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또는 법률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본 호의 어떤 내용도 본 항의 제(d)호 제(g)호 및 본 조 제8항의 제(b)호에 포함된 공립 학교를 위한 총당금의 투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항의 목적 상 “예산 법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은 입법부에 의해 통과된 예산 법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법안의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 법안으로만 구성된다.

(3) 본 항의 목적 상 “예산 법안”은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법안을 의미한다.

(f) (i) 입법부는 모든 주정부 기관의 예산 제출, 승인, 집행 및 청구 제출을 통제할 수 있다.

(g) (j) 2004-05년 회계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의 경우, 2개년 예산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해당 예산 법안의 통과일 현재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일반 기금으로부터 총당되는 모든 총당금과, 제XVI조 제20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된 일반 기금 금액을 합한 총액이,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예산 법안의 통과일 현재 추정된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전된 일반 기금 수입, 이전액 및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기금으로부터 총당하는 당해 예산 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법안을 입법부가 주지사에게 보내 심의를 요청하지 않거나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되는 일반 기금 수입, 이전 및 잔액의 그 추정액은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는 예산 법안에 기술되어야

한다.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는 예산 법안에는 입법부가 추정한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입과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입의 차액을 포함해, 일반 기금 수입의 추정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2년 예산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본 호에 설명된 총 일반 기금 채무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h) (k) 본 항의 제(c) (f)호, 본 조의 제4항, 제III조의 제4항과 제8항을 포함하여 법 또는 이 헌법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법안이 6월 15일 자정까지 입법부의 의해 통과되지 않는 연도에는, 6월 15일 자정부터 예산 법안이 주지사에게 제출되는 날까지 모든 정기 회기 또는 특별 회기 동안 입법부 의원의 급여 지급, 출장비 또는 생활비 상환을 위해 당기 예산 또는 향후 예산으로부터 충당금을 계상할 수 없다. 이 호에 따라 몰수된 어떠한 급여 또는 출장비 또는 생활비 상환액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제7 항. 제XI A조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XI A조
지역사회 전략 실행 계획

제1 항. (a)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방 정부 기관이 지출의 목적 및 목표 달성에 진척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길 기대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헌법의 기타 다른 조항의 요건 외에 각 지방 정부 기관이 채택하는 예산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고 기관의 권한과 의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1) 지방 정부 기관의 기능, 역할 및 지역적으로 설정된 우선순위에 적용하여, 고용 증대, 교육 개선, 빈곤 퇴치, 범죄 감소, 건강 증진 등의 목표에 반영된 대로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공명정대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 유용성에 대한 설명.

(2) 제(1)목에 따라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지방 정부 기관이 설정한 목표 달성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반적인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

(3) 예산에 계상된 공공 자원에 대한 정부의 각 주요 지출에 대한 결과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1) 목에 따라 지방 정부 기관이 설정한 전체 목표와의 상관성에 대한 설명.

(4) 지방 정부 기관이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제(1) 목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자원의 지출 및 투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가에 대한 설명.

(5) 제(1)목에 따라 지방 정부 기관이 설정한 목표 달성 진척 현황과 이전 연도의 예산에 명시된 측정 방식에 따른 성과 달성에 있어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공개 보고서.

(b) 각 지방 정부 기관은 제(a)호 제(1)목에 따라 지역사회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제안된 예산 개발에 있어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의 참여를 장려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c) 본 항은 2014년에 시작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예산 연도에 발효된다.

(d) 본 항의 조항은 자동 이행되며 지방 정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항. (a)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의 조치에 의해 지역사회 전략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고 칭함)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카운티는 기존 기능 또는 서비스가 실행계획의 예상 범위 내에 포함되는 카운티 내 모든 다른 지방 정부 기관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카운티 내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은 감독 위원회에 실행계획을 시작하거나, 계획 과정에 참여하거나, 실행계획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은 인근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의 참여를 장려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실행계획의 초안을작성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1) (A) 실행계획이 본 조의 제1항 제(a)호를 포함하여 제(1)목에서 제(5)목에 기술된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요약하고, (B)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공공 서비스 및 참여하는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고, (C) 이러한 서비스가 실행계획에 따라 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 설명하고, (D)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부터 받은 기금을 포함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을 규정하고, (E)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사회 내 불균형을 고려하고, (F) 실행계획이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채택된 예산과 어떻게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2)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 원하는 결과와 이러한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

(3) 주민 및 주정부에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수단.

(c) (1) 실행계획은 카운티 내에서 참여하는 각 지방 정부 기관의 집행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최소 수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실행계획은 카운티, 실행계획에 따라 카운티 내 주민의 과반수 이상에게 지방 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 기관, 그리고 카운티 내 공립 학교 학생의 과반수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교육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카운티를 포함하여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한 실행계획의 승인 또는 실행계획의 수정에는 해당 기관 집행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 실행계획은 본 목에 규정한 마대로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지방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일단 실행계획이 채택되면, 카운티는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하고 계약 당사자인 각 지방 정부 기관 집행부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 승인될 경우, 참여한 각 기관의 의무와 책무를 확인하고 할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 본 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본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 온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하는 경우 실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실행계획에서 확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기관에 할당된 주 또는 지방 기금을 통합할 수 있다.

제3항. (a) 본 조의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실행계획의 당사자들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는 법령 또는 규칙을 포함해, 주 법령 또는 규칙이 실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거나, 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권한이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법령 또는 규칙의 목표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조항을 실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의도된 주 목표에 대한 설명, 바람직한 결과를 저해하는 본 규칙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 제안된 지역사회 규칙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및 공명정대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결과에 어떻게 지역사회 규칙이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 상, 조항이 법령 또는 규칙의 정책 및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법령 또는 규칙과 기능적으로 동등하다.

(b) 당사자들은 하나 이상의 주 법령에 대해 제(a)호에 설명된 것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조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정기 또는 특별 회기 동안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에 입법부가 결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항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 본 조의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실행계획의 당사자들이 해당 규칙은 실행계획의 목표를 저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규칙을 공포하거나 관리하는 데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항의 제(a)호에 설명된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부서는 60일 내에 해당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행계획을 받은지 60일 내에 기관이나 부서가 조항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항은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 규칙과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항에 반대하는 모든 조치에는 반대 이유를 기술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d) 본 항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주 기금을 지원 받는 주 프로그램의 운영 직접 규정하는 법령과 규칙에만 적용된다.

(e) 본 항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은 본 항에 의거 갱신되지 않을 경우 발효일로부터 사년 후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4항. (a)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은 이와 같이 본 조에 따라 준비된 지역사회 전략 실행계획에 포함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재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주 재무부에 조성된다. 정부법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자금은 본 조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지속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본 조가 추가된 법에 따라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이전된 수입은 제XIII B조에 따라 충당될 수 있는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으로 간주된다.

(b)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은 법령에 따라, 실행계획에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는 기금의 지출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카운티에 분배되어야 한다.

(c) 실행계획에 따라 교육구에 할당되는 모든 기금은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 이외의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실행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이 결정한 바대로 어느 재원으로부터나 지급될 수도 있다. 실행계획에 따라 교육구에서 수령하는 할당금은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할당된 세금의 지방 수익금 또는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5항. 본 조의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채택한 카운티는 사년마다 한 번 이상 실행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고 이러한 주민의 의견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참여하는 기관이 실행계획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평가에는 해당 정부 서비스 이행 및 효과성 면에서의 참여하는 기관 간 성과 개선 정도; 지역사회 불균형의 해소 진척 상황; 및 해당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표가 실행계획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제1항 제(a)호를 포함해 제(1)목에서 제(5)목에 기술된 목적 및 목표가 달성된 정도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항. (a) 주정부는 지방 정부 기관이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실행계획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정부 또는 주정부 부서나 기관은 지역 수준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계획에 참여하는 하나 이상의 지방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채택된 실행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b) 주정부는 재정 및 규제적 보조금을 통해 지방 정부 기관이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및 공명정대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지리적 규모에서 가장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결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방 정부 기관 및 주민 대표의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주정부는 자발적으로 지역 협력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의 목적 및 목표를 향해 진척이 있는 참여 지방 정부 기관을 위해, 해당하는 경우, 인프라와 인적 서비스 마련을 위한 추가 운용하는 기금 제공을 우선 고려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촉진하고 지역 내 지방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지방 정부 기관의 해당 계획에는 제1항 제(a)호를 포함해 제(1)목에서 제(5)목에 기술된 목표와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항. 본 조의 어느 항목도 지방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존 권한도 폐지하거나 대체할 의도가 없으며, 지방 정부 기관이 정부 서비스 이행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지역 프로그램 및 계획에

개발하고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금지할 의도가 없다.

제8항. 본 조의 목적 상 "지방 정부 기관"은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등 기타 다른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제8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 제29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29항. (a) 입법부는 자체적으로 부여되거나 주정부에 의해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를 위해 징수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로부터 과생되는 수입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에 부여할 수 있다. 계약은 일반 또는 직접 예비 선거에서 각 관할구역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에 의해 승인되어야 발효된다.

(b) 제(a)호에도 불구하고 이 호의 발효일 이후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는 Bradley-Burns 균일 지방 판매 및 사용세법 또는 기타 후속 조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에 의해 부과되고 해당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를 위해 주정부가 징수되는 판매 또는 사용세로부터 과생되는 수입을 서로 간에 분배하기 위한 계약을, 각 계약을 제안하는 법령 또는 결의가 계약 당사자인 각 관할구역 집행부의 삼분의 이 이상의 투표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 체결할 수 있다.

(c) 제(a)호에도 불구하고 제XI A조에 따라 채택된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에 참여하는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기타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포함한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기관에 할당된 증가예산세로부터 받는 수입을 서로 간에 분배하기 위한 계약을, 각 계약을 제안하는 법령 또는 결의가 계약 당사자인 각 관할구역 집행부의 삼분의 이 이상의 투표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 체결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XI A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각 참여 기관의 예산과 부합해야 한다.

제9 항. 제6장(제55750항 이하)은 정부법 제5권 제2부 제2편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6장.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

55750. (a) 세입 및 과세법 제7101항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3-14년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세입 및 과세법 제6051항에 의거 0.035 퍼센트의 요율로 징수되는 수입, 순환급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 A조 제4항에 의거 조성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주 재무부에 예탁되어야 하며 해당 기금은 조성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입법부가 판매세 과세 기반을 줄이고 이에 따라 수입 측면에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이 2013-14년 회계연도에 받은 기금보다 감소하는 경우, 회계감사관은 당해 회계연도에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통해 받는 수입에 추가 시 2013-14년 회계연도에 기금을 통해 받는 수입금과 같은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55751. (a) 세입 및 과세법 제7101항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3-14년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세입 및 과세법 제6201항에 의거 0.035 퍼센트의 요율로 징수되는 수입, 순환급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 A조 제4항에 의거 조성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주 재무부에 예탁되어야 하며 해당 기금은 조성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입법부가 사용세 과세 기반을 줄이고 이에 따라 수입 측면에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이 2013-14년 회계연도에 받는 기금보다 감소하는 경우, 회계감사관은 당해 회계연도에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통해 받는 수입에 추가 시 2013-14년 회계연도에 기금을 통해 받는 수입금과 같은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55752. (a) 2014-15년 회계연도 및 이후의 매 회계연도에 회계감사관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XI A 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이전 회계연도 6월 30일 이전에 발효되는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이 항에 따라 기금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감사관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한 각 카운티에 분배해야 한다. 기금은 회계연도의 첫 번째 사사분기에 분배되어야 한다. 한 회계연도에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의 분배 가능한 총액 중에서 회계감사관은 각 카운티에 이에 따라 실행계획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제(c)호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대해 계산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분배해야 한다.

(b) 본 항에서 사용되는 바대로,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이 적용되는 인구수는 참여하는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의 인구수를 합한 지리적 영역의 인구수이다. 단, 하나 이상의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거주민은 한 번만 계산되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최근의 재무부 인구통계 데이터에 따라,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지리적 영역의 주민수 계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c) 회계감사관은 각 카운티의 실행계획이 적용되는 인구수를 제(a)호에 따라 기금을 제공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실행계획에 대해 계산된 전체 인구의 비율로 결정해야 한다.

(d)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 A조 제4항 및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은 2011년 재조정 및 본 항이 추가된 법안에 따라 발생하는 지속적인 절감액을 일부 나타낸다. 본 항에 따른 첫 번째 기금 할당 이후 사년간 입법분석관실은 실행계획의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계획이 서비스 이행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한 정도 또는 추가 기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감소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10항. 본42246항이 다음과 같이 교육법에

추가된다:

42246. 교육구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XI A 조에 의해 승인된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에 참여함에 따라 제공하는 또는 수령하는 기금은 제42238항 또는 후속 법령에 의거한 교육구 수입 한도의 주 지분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11항. 제9145항이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된다:

9145.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9.5항 및 제12항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기존 주 프로그램 또는 기관의 범위 확장”에는 다음 중 어느 항목도 포함되지 않는다:

(1) 2008-09년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연도에 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추정 결손금을 해결하기 위해 감축되거나 제거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 재개.

(2) 생활비 또는 작업량의 증가 그리고 입법부가 승인한 양해 각서에 의해 인정된 증가분을 포함하여, 기존의 법적 책임을 이행코자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 기금의 증대.

(3) 연방법 또는 본 항이 추가된 법안의 발효일 현재 발효 중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 대한 주 기금의 확대.

(4) 기금을 충당하는 법령에서 파악된 대로 주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 대한 일회성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기금 제공.

(5)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 B조 제6항 제(b)호 제(5)목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금 제공.

(b) “주 비용”에는 주 일반의무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추가 수입”에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해 변경된 특정 변경사항으로 초래되는 수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수입 징수를 책임지는 주정부 기관이 정량화하고 지속적인 증가로 판단한 주의 수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12항. 제11802항이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된다:

11802.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주지사는 주 직원 및 기타 이해 당사자와 논의 후 입법부에 캘리포니아주 헌법 IV조 제12항의 성과 기준 예산 책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2015-16년 회계연도 및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제13항. 제13308.03항이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된다:

13308.03. 제13308항에 기술된 요건 외에 재무국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매년 5월 15일까지 입법부의 상하원 중 한 곳 또는 양원에 계류 중인 예산 법안에서 제안된 바대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제정된 예산 법안에서 계상한 바대로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의 주 수입 및 주 지출 상의 갱신된 추정액을 입법부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b) 이개년 예산 또는 기타 추가 정정 예산이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기 직전에, 예산 법안에 통합되는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의 총 수입 및 총 지출 내역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c) 매년 11월 30일까지 채택된 예산에 기술된 수입 및 지출에 현재 연도 당일까지의 실제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최신 재무 현황 자료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요건은 입법분석관이 재정 개요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다.

제14항. 개정

본 법안의 법률 조항은 입법부 양원 삼분의 이의 투표로 승인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의해 본 법안의 목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제15항. 가분성

본 법안의 조항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조항의 적용이 위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머지 조항 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법안의 조항의 한도에서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항. 발효일

본 법의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은 2014년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발효된다. 본 법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법의 기타 항은 법이 채택되는 선거 다음 날 발효된다.

제17항. 법제실

(a) 주민들은 본 법안에 의해 제안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 IV조 제12항의 개정사항이 2009-10년 정기 회기의 하원 헌법 개정 번호 4(Res. Ch. 174, Stats. 2010) (이하 ACA 4)에 의해 제안되고 2014년 11월 4일 주 광역 총선 투표 용지에 게재될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개정사항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선언한다.

(b) 선거법 제9086항 및 제9091항, 정부법 제88002항 및 제88005.5항에 따라 법제실이 ACA 4 본문을 준비하고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기존 조항은 본 법안에 의해 개정된 대로 해당 항의 조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제실은 ACA 4에 의해 제안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변경사항을, 동 법안에 의해 개정된 바대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조항과 구별할 수 있도록 ACA 4의 전문을 준비하고 교정해야 한다. 주무장관은 본 항에 따라 법제실에서 준비하고 교정한

대로 ACA 4의 전문을 2014년 11월 4일 주 광역 총선 투표를 위한 투표 안내 책자에 게재해야 한다.

발의안 제32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정부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제1항. 법안명, 배경 및 목적의 선언

A. 특정 이익 집단이 정부에 대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매년 기업 및 노조가 수백만 달러를 정치인들에게 기부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거대한 지출 아래 묻히고 있다.

B. 수년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캘리포니아주의 부채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많은 지방 정부가 파산 직전의 기로에 서있다. 너무나 자주 정치인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기부한 기업, 노동조합 및 정부 계약업자에 편중된 특정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다.

C. 이러한 기부 결과 대기업을 위한 특별 세제 혜택, 사실 노동조합을 부유하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부 프로그램, 공무원 노조원을 위한 지지할 수 없는 연금, 혜택 및 급여를 모두 캘리포니아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D.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기부 한도를 설정했지만 기업 및 노조의 정치 자금이 정치 과정 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늦추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치를 뒤덮는 많은 돈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 고용주와 노조는 종종 근로자들에게 기업 또는 노조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때로는 은연중에 또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한다. 이들의 목적은 자금을 공급하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다.

E.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고 기업 및 노동조합의 기부에 의한 주정부의 실제적인 부패 및 부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특정 이익 자금 증지법을 제정한다:

1. 기업 및 노동조합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 금지;
2. 정부 계약업자가 계약을 수여한 정부 공무원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3. 기업과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노조원의 급여에서 강제적인 원천징수방식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금지;
4. 직원들의 모든 정치적 기부 행위가 완전히 자발적인 성격의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제2항. 특정 이익 자금 증지법

제1.5조(제85150항 이하)가 정부법의 제9권 제5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5조. 특정 이익 자금 증지법

85150. (a) 법률 및 본 권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위원회를 포함해, 기부 자금이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하는 데 사용될 경우, 어느 기업,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타 다른 후보자, 후보자가 관리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부할 수 없다.

(b) 법률 및 본 권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 계약업자 또는 정부 계약업자가 후원하는 위원회도 해당 선출된 공무원이 계약을 받주, 허가 또는 수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기간과 계약 기간 동안 정부 계약업자에게 계약을 받주, 허가, 수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데 참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공식 위치를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경우, 선출된 공무원 또는 선출된 공무원이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해서는 안된다.

85151. (a) 법률 및 본 권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업,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정부 계약업자 또는 정부 고용주도 근로자의 임금, 수입 또는 보수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어떠한 금액도 공제할 수 없다.

(b) 본 항은 기부 행위가 1년 이하의 유효 기간이 있는 해당 근로자의 서면 동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제(a)호에 의해 금지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고용주,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c) 본 항은 퇴직연금, 건강, 생명, 사망 또는 장애 보험, 기타 유사한 수당에 적용되지 않으며 미합중국법 제26권 제501(c)(3)항에 따라 구성된 자선 단체 기부금을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5152. 본 조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기업”은 캘리포니아 주, 미국의 다른 주,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또는 미국 의회법에 따라 구성된 모든 기업을 의미한다.

(b) “정부 계약업자”는 정부 고용주에게 상품, 부동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고용주와의 계약 당사자인, 정부 고용주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 계약업자에는 정부 고용주와의 계약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조합이 포함된다.

(c) “정부 고용주”란 카운티, 시, 차터 카운티, 차터 시, 차터 시 및 카운티, 교육구, 캘리포니아 대학교, 특정 지구, 위원회,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치 정치적 하부조직을 의미하며 미국 정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d)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참여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불평, 노동 분쟁, 임금, 급여, 고용 시간 또는 작업 조건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논의하는 모든 종류의 조직, 기관

31

32

또는 근로자 대표 위원회 또는 계획을 의미한다.

(e) “정치적 목적”은 후보자의 지명이나 선출, 법안의 인증이나 통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관리하는 위원회, 주 중앙 위원회, 카운티 중앙 위원회를 포함한 정당의 위원회, 또는 회원 단체,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된 정치 대책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거나 존재하는 조직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2

(f)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정부 고용주의 직원인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g) 개정된(제9권(제81000항 이하)) 1974년 정치개혁법 또는 공정 정치 실천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규칙으로 정의된, 본 조에 사용된 기타 모든 용어는 여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11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33

제3항. 실행

(a) 본 법안의 어떤 조항이나 조항 일부, 또는 해당 조항 또는 일부의 개인이나 단체, 상황에서의 적용이 어떠한 이유든 무효 또는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 조항 일부 및 적용은 무효 조항, 조항 일부 또는 적용을 제외하고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b) 본 법안은 어떠한 기존 계약 또는 단체 교섭 합의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본 법안에 위배되는 모든 신규 또는 수정 계약이나 단체 교섭 합의는 무효가 된다.

(c) 본 법안은 해당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다. 피고용인이나 노조원이 본 법안 조항의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 법안 조항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피고용인 또는 노조원에 있다.

(d) 정부법 제81012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 조항은 입법부에 의해 수정될 수 없다. 본 법안은 이후 주민발의 법안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제10항 제(c)호에 의거해서만 수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발의안 제33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보험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제1항 법안명

본 법안은 2012 자동차보험할인법으로 명명한다.

제2항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보험감독원이 보험료를 규제하고 자동차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인 범위를 결정한다.

(b) 이용 보험사에 관계없이 주의 의무 보험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캘리포니아 보험 소비자가 할인가격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c) 자동차 보험 유지 소비자 할인은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해당 할인은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d) 지속적인 보험 가입 유지를 위한 개인별 할인은 보험사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 상품을 구매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된다.

제3항 목적

본 법안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의무보험가입법을 준수한 캘리포니아 보험 소비자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4항 제1861.023항이 다음과 같이 보험법에 추가된다:

1861.023. (a) 제1861.02항 제(a)호 제(4)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제1861.02항에 의거 모든 보험 정책에 대해 보험 가입 유지를 선택적인 자동차 보험료 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b)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보험 가입”은 캘리포니아 자동차할당리스크플랜(California Automobile Assigned Risk Plan) 또는 캘리포니아 저가자동차보험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보험 등 공인 보험사에서 중단 기간 없이 자동차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했음을 뜻한다.

(1) 지속적인 보험 가입은 피보험자의 군복무로 인해 보험 미가입 기간이 생긴 경우에도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지속적인 보험 가입은 지난 오년 동안 휴직이나 해고에 따른 실직으로 인해 최대 18개월까지 미가입 기간이 생긴 경우에도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지속적인 보험 가입은 사유에 관계 없이 이전 오년 동안 90일 이하의 미가입 기간이 있더라도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은 부모의 지속적인 보험 가입 할인 자격에 따라 지속적인 보험 가입 할인을 받을 수 있다.

(c) 지속적인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없는 소비자는 비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은 소비자가 지속적인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받았을 할인률에 비례한다. 비율에는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한 이전 오년 동안의 가입 연수가 반영된다.

제5항 투표 법안의 상충

본 법안과 보험 가입의 지속과 관련된 법안이 동일한 주 광역 투표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법안의 조항은 본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법안이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 전부가 우선되며 다른 법안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제6항 개정

본 법령의 조항은 양원의 호명표결에서 전체 의원 삼분의 이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에 의해 본 목적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부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

제7항 가분성

주민을 위해 본 법령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며, 본 법령 조항 또는 이에 따른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무효 사항은 무효 조항 또는 적용이 제외되면 효력이 생기는 본 법령의 적용이나 기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제34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발의 법안은 형법 조항을 수정하고 폐지하며 정부법 조항을 추가하기 때문에 삭제가 제안된 기존 조항에는 취소선이 인쇄되며 제안된 신규 추가 조항은 새로운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SAFE 캘리포니아법

제 1항 법안명

본 주민발의 법안명은 “캘리포니아법의 절약 및 의무, 완전한 집행”이며 약자로 “SAFE 캘리포니아법(The SAFE California Act)” 라 명명한다.

제2항 배경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본 문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 살인범과 강간범은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매년 전체 살인 사건의 46 퍼센트, 강간의 56 퍼센트나 되는 높은 비율의 사건이 매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제한적인 법집행 자원은 보다 많은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범죄자를 우리의 길거리에서 사라지게 하며,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 경찰, 보안관, 지방 검찰은 현재 강간 및 살인 사건의 증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DNA 검사 같은 첨단 법의학 수사를 진행하기는 커녕 살인 및 성범죄 수사관의 수를 늘릴 자금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법집행기관에는 법의 완전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강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범죄자가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3. 많은 사람들이 사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직

사형 전담 검사이자 판사인 Arthur Alarcon과 법학과 교수 Paula Mitchell의 연구에 따르면 1978년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집행에 사용한 비용은 \$4십억에 달하며 사형 재판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비해 20배나 비용이 많이 든다. 사형을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세금은 매년 \$1억 이상 절감될 수 있다. 절감된 금액은 범죄 예방 및 기소에 사용될 수 있다.

4. 살인범 및 강간범이 거리를 활보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납세자들이 낸 수억 달러의 돈을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소수의 범죄자들을 영원히 감옥에서 지내게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사형에 처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자원을 폭력 예방과 교육에 사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5. 사형을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단 한 명의 죄수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오년 동안 \$10억 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10억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법집행, 우리 아이들의 학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투자될 수 있다.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죄질이 가장 나쁜 범죄자를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비용을 절감시킨다.

6. 미국에서 무죄인데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수는 100 명이 넘으며 이 중 일부에게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전문가들은 Cameron Todd Willingham이 어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 사형을 집행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에는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7.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목격자 확인, 구식 법의학, 지나치게 열성적인 기소로 인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다. 주법은 심지어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감옥에 보내 납세자와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소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형을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최소한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게 된다.

8.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현재 노역을 하는 사형수의 비율은 1 퍼센트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은 경비가 철저한 감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번 돈은 Marsy 법에 의해 보장된 피해자 권리에 따라 피해자보상기금을 통해 피해자를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9.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은 큰 의미가 없다. 사형건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비통한 가족에게 보다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확실한 처벌이다.

10. 본 법안의 소급 적용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종식됨으로써, 법집행 자원은 살인 및 강간

33
34

사건의 해결률을 높이고 판결의 공정성, 질, 확실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다.

제3항 목적 및 취지

캘리포니아주민은 본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적 및 취지를 선언한다:

1. 보다 많은 살인범과 강간범을 체포하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한다.
2. 오년 동안 \$10억의 세금을 절감하며 절감된 돈이 지역 법집행, 우리 아이들의 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3. 사형제 대체를 통해 절감된 돈의 일부로 SAFE 캘리포니아기금을 만들고 지역 법집행기관, 특히 경찰, 보안관, 검찰에 자금을 지원하여 살인과 강간 사건 해결률을 높인다.
4.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위험성을 제거한다.
5. 특수 상황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평생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서 의무 노역을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벌어들인 돈은 희생자보상기금을 통해 희생자를 돕는 데 사용되도록 한다.
6. 비통한 피해자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기억을 견뎌야 하는 수십 차례의 재판일과 연기 등 사형건과 관련하여 25년 이상 이어지는 심의 과정을 없앤다.
7.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관행을 종식시키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법집행 자원을 마련한다.
8. 사형의 가석방 가능성 없는 중신형 대체를 통해 본 법안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 질, 확실성을 달성한다.

제 4항 형법 제190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0. (a)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형,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중신형, 또는 25년형에서 중신형까지의 주교도소 수감형을 받는다 적용되는 처벌은 제190.1항, 제190.2항, 제190.3항, 제190.4항 및 제190.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제(b)호, 제(c)호 또는 제(d)호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15년형에서 중신형까지의 주교도소 수감형을 받는다.

(b) 제(c)호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희생자가 제830.1항 제(a)호, 제830.2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c)호, 제830.33항 또는 제830.5항의 제(a)호에 정의된 바에 따라 피해자가 업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고 업무 수행 중인 치안관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5년형에서 중신형까지의 주교도소 수감형을 받는다.

(c)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희생자가 제830.1항 제(a)호, 제830.2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c)호, 제830.33항 또는 제830.5항의 제(a)호에 정의된 바에 따라 피해자가 업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고, 업무 수행 중인 치안관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소가 이루어져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주교도소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중신형의 처벌을 받는다:

- (1) 피고가 분명하게 치안관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경우.
- (2) 피고가 제12022.7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분명하게 치안관에 큰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경우.
- (3) 피고가 직접 제12022항 제(b)호를 위반하며 위험한 또는 치명적인 무기로 공격을 저지른 경우.
- (4) 피고가 직접 제12022.5항을 위반하며 총기로 공격을 자행한 경우.
- (d)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 밖에 있는 타인에게 큰 상해를 입히고자 총기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살인 행위를 자행한 경우 20년형에서 중신형까지의 주교도소 수감형을 받는다.
- (e) 제3편 1권 제7장 제2.5조(제2930항 이하)는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최소 형량을 줄이는 데 적용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형량을 선고 받은 사람은 본 조항에 의해 규정된 최소 구금 기간을 복역하기 전에는 가석방될 수 없다.

(f)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본 조항에 따라 형량을 선고 받은 모든 사람은 제2700항에 의거 교도재활부의 규정 및 법규에 따라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서 수감 기간 동안 매일 여러 시간 충실하게 노동을 해야 한다. 재소자에게 배상 벌금 또는 배상 명령 이행의 의무가 있는 경우 교도재활부 장관이 제2085.5항 및 제2717.8항에 의거 교도재활부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재소자의 임금 및 신택세외 예치금에서 금액을 공제한 후 캘리포니아 피해자보상및정부청구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로 해당 자금을 송금한다.

제5항 형법 제190.1항이 폐지된다.

190.1. 본 장에 의거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독립 단계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a) 피고의 유죄 여부가 먼저 결정된다. 사실 심리에서 피고의 일급 살인 죄가 유죄로 판명되면 이와 동시에 피고가 일급 또는 이급 살인 범죄에 대한 이전 법적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190.2항 제(a)호 제(2)목에 의거 기소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제190.2항에 열거된 모든 특수 상황에 대한 진실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b) 피고가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특수 상황 중 하나가 피고가 일급 또는 이급 살인 범죄에 대한 이전 법적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하는 제190.2항 제(a)호 제(2)목에 의거 기소된 경우 즉시 해당 특수 상황의 진실 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

(c) 피고가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제190.2항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과 관련된 기소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제1026항에 따라 정신이상을 이유로 하는 모든 무죄 답변에 대해 피고의 정신상태를 제190.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단한다. 정신상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부패할 처벌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제190.3항 및 제190.4항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6항 형법 제190.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0.2. (a)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에 대한 처벌은 제190.4항에 의거 다음의 특수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에서의 종신형으로 결정된다:

- (1) 살인이 고의적이며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행된 경우.
- (2) 피고가 이전에 일급 또는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본 목의 목적을 위해 다른 관할권에서 저지른 범죄로, 캘리포니아에서 저질렀다고 가정하는 경우 일급 또는 이급 살인으로 처벌되었을 범죄는 일급 또는 이급 살인으로 간주한다.
- (3) 본 법적 절차에서 피고가 하나 이상의 일급 또는 이급 살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4) 어떤 장소나 지역, 주거지, 건물, 구조물에 파괴력이 강한 폭발물이나 폭탄, 폭약을 설치하거나 숨겨두는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 (5) 합법적인 체포를 피하거나 막으려는 목적 또는 합법적인 구금 회피를 완벽하게 하거나 완벽하게 하려는 시도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 (6) 피고가 파괴력이 강한 폭발물이나 폭탄, 폭약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한 경우, 또는 이를 시도하거나 이렇게 되도록 한 경우의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가 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7) 피해자가 제830.1호, 제830.2호, 제830.3호, 제830.31호, 제830.32호, 제830.33호, 제830.34호, 제830.35호, 제830.36호, 제830.37호, 제830.4호, 제830.5호, 제830.6호, 제830.10호, 제830.11호 또는 제830.12항에 정의된 치안관으로 업무 수행 중에 의도적으로 살해 되었고, 업무 수행 중인 치안관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위에 열거한 조항에 정의된 치안관 또는 전직 치안관으로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살해되는 경우.
- (8) 피해자가 연방 법집행관 또는 요원으로 업무 수행 중에 의도적으로 살해 되었고, 업무 수행 중인 연방 법집행관 또는 요원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연방 법집행관 또는 요원으로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복 살해된 경우.
- (9) 피해자가 제245.1항에 정의된 소방관으로 업무 수행 중에 의도적으로 살해 되었고, 업무 수행 중인 소방관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10) 피해자가 어떤 형사 또는 청소년 관련 법적 절차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러진 의도적 살인 범죄의 목격자인 경우로, 살인 행위가 목격한 범죄의 자행

또는 자행 시도 중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 목격자로 모든 형사 또는 청소년 관련 법적 절차에서 증언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복 살해된 경우. 본 목에서 사용된 “청소년 관련 법적 절차”는 복지제도법 제602항 또는 제707항에 의거한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11)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주의 지방, 주 검찰 또는 연방 검찰의 검사, 부검사, 전직 검사, 전직 부검사로, 살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경우.

(12)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주의 지방, 주, 연방 체제 하에서 법정 기록을 갖고 있는 판사 또는 전직 판사로, 살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경우.

(13) 피해자가 연방 정부 또는 본 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주의 지방 또는 주정부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또는 임명 공직자이거나 전직 공직자로 살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업무 수행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경우.

(14) 살인의 수법이 극히 예외적인 악행을 드러내며 특히 악랄하거나, 극악무도하거나, 잔인한 경우. 본 조항에서 사용된 “극히 예외적인 악행을 드러내며 특히 악랄하거나, 극악무도하거나, 잔인함”이란 문구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고통을 가하며 자행된 과립치하거나 무자비한 범죄를 의미한다.

(15) 피고가 잠복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

(16) 피해자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출신국의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살해된 경우.

(17) 피고가 다음의 중범죄에 관여 또는 공모하는 동안, 또는 다음의 중범죄를 자행했거나 자행 시도에 관여 또는 공모하는 동안, 또는 다음의 중범죄를 자행하거나 자행 시도 후 즉시 도주하는데 관여했거나 공모하는 동안, 살인 행위가 자행된 경우:

- (A) 제211항 또는 제212.5항을 위반한 강도 행위.
- (B) 제207항, 제209항 또는 제209.5항을 위반한 납치.
- (C) 제261항을 위반한 강간.
- (D) 제286항을 위반한 동성애.
- (E) 제288항을 위반하고 14세 이하 아동에게 자행된 외설 또는 음란 행위.
- (F) 제288a항을 위반한 구강 성교.
- (G) 제460항을 위반한 일급 또는 이급 절도.
- (H) 제451항 제(b)호를 위반한 방화.
- (I) 제219항을 위반한 열차 파손.
- (J) 제203항을 위반한 난동.
- (K) 제289항을 위반한 도구에 의한 강간.
- (L) 제215항에 정의된 차량 탈취.
- (M) 제(B)세목의 납치 또는 제(H)세목의 방화라는 특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살인의 구체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 해당 중범죄 요소의 증거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경우 위의 두 특수

상황은 납치 또는 방화가 주로 또는 유일하게 살인을 자행하려는 목적으로 저질러졌을지라도 입증된다.

(18) 살인이 의도적이며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자행된 경우.

(19) 피고가 독극물 투여를 통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20)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주의 지방, 주, 연방 체제 하에서 법정 기록을 갖고 있는 배심원으로, 살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경우.

(21) 살인 행위가 의도적이며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 밖에 있는 타인을 살해하고자 총기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자행된 경우. 본 목의 목적에 따라 “차량”은 차량법 제415항에 정의된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22) 피고가 제186.22항 제(f)호에 정의된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살인 행위가 조직폭력단 활동과 관련하여 자행된 경우.

(b) 본 문서에 열거된 특수 상황에 대한 제(a)호에 따라 살해 의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한 제190.4항에 따라 사실임이 입증된 특수 상황과 관련한 실질적 살인범은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을 받는 데 있어 특수 상황의 기초가 되는 범죄 자행 시점에 반드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 실질적 살인범 외 살해 의도를 갖고 일급 살인 행위자에 지원이나 사주, 조인, 회유, 간청, 요청, 원조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은 제(a)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이 제190.4항에 의거 사실임이 밝혀지면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처벌을 받는다.

(d) 제(c)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살인범 외 생명을 경시하며 타인의 죽음을 초래한 제(a)호 제(17)목에 열거된 증범죄 자행의 주요 공범으로 범죄와 관한 지원이나 사주, 조인, 회유, 간청, 요청, 원조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제(a)호 제(17)목에 열거된 특수 상황이 제190.4항에 따라 사실임이 밝혀지면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본 조항 및 제190.1호, 제190.3호, 제190.4호, 및 제190.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7항 형법 제190.3항이 폐지된다.

190.3. 피고가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특수 상황에 대한 기소가 사실임이 판명되는 경우 또는 피고가 군대및제대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제1672항 제(a)호 또는 동법의 제37항, 제128항, 제219항 또는 제4500항 위반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형 판결 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 심리에서 사형과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중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한다. 처벌 문제에 관한 법적 절차에서 증거는 악화, 완화, 선고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주판 및 피고 모두에 의해 제거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 범죄의 속성 및 상황, 해당 유죄 판결에 폭력 범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 증범죄 유죄 판결 전과,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이 포함된 피고의 다른 범죄 행위 여부, 피고의 성격, 배경, 이력,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이 포함되지 않은 피고의 다른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사용된 범죄 행위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가 기소 및 무죄 선고를 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 범죄 활동의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 증거 사용에서의 제한은 본 조항에 의거한 법적 절차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적 절차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령 또는 판결 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가 사형 판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범죄 또는 특수 상황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제외하고 어떠한 증거도 재판 전 법원에서 정한 합당한 기간 내에 제출할 증거에 대해 피고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고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검찰에 의해 제출될 수 없다. 피고가 변호를 위해 제출할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는 이러한 통보가 없이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사실 심리자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선고가 선고가 내려진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가석방 가능성을 포함한 형으로 감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사실 심리자는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이 있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피고가 현 법적 절차에서 기소된 범죄 상황 및 제190.1항에 의거 사실임이 밝혀진 특수 상황의 유무.

(b)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이 포함된 피고의 범죄 행위 여부.

(c) 이전 증범죄 유죄 판결 전과.

(d)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극심한 정신적 또는 감정적 장애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e) 피해자가 피고의 살인 행위에 참여했거나 동의했는지 여부.

(f) 피고가 합당한 근거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범죄를 자행했는지 여부.

(g) 피고가 타인의 극심한 협박 또는 상당한 지배 하에서 범죄를 자행했는지 여부.

(h)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피고의 능력 또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일차시킬 피고의 능력이 정신 질환이나 결함, 중독의 영향으로 손상되었는지 여부.

(i) 범행 당시 피고의 연령.

(j) 피고가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지 여부.

(k) 범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범행의 심각성을 경감시키는 기타 상황.

모든 증거를 심리 및 접수한 후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을 심리하고 고려한 후, 사실심리관은 본 조항과 관련하여 형을 가중 및 감경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사실심리관이 형을 가중하는 상황이 감경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사형을 선고한다. 사실심리관이 형을 감경하는 상황이 가중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을 선고한다.

제8항. 형법 제190.4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0.4. (a) 제190.2항에 열거된 특수 상황에 대한 혐의가 있고 사실심리관이 피고의 일급 살인 유죄를 판결할 때마다, 사실심리관은 혐의가 있는 각 특수 상황의 진위에 대한 특별 판결 또한 내려야 한다. 모든 특수 상황의 진위 여부는 재판 또는 제190.1항 제(b)호에 의거한 심리 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심리관이 결정한다.

특수 상황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합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실심리관은 기소된 각 특수 상황의 진위에 대한 특별 판결을 내린다. 범죄의 자행 또는 자행 시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모든 특수 상황에서 해당 범죄는 재판 및 판결에 적용되는 일반법에 의거하여 기소되고 입증된다.

피고가 배심원이 없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와 주민이 배심원 배석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심리관이 법원이 되는 경우 사실심리관은 배심원이 된다.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와 주민이 배심원 배석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심리관은 배심원이 된다.

사실심리관이 제190.2항에 열거 및 기소된 특수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별도의 형벌심리가 열려 피고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처벌을 받게 되고 나머지 기소된 특수 상황 중 어떤 상황도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거나, 사실심리관이 배심원이 아닌 경우, 기소된 나머지 특수 상황의 진위 여부 사안에 동의할 능력이 배심원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형벌심리를 열 수 없다.

피고가 배심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배심원단에서 기소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이 사실이라는 평결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된 모든 특수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는 평결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문제 심리를 할 새로운 배심원단의 선정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유죄 문제는 이러한 배심원단이 심리하지 않으며 이전 배심원단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장일치의 평결이 내려진 특수 상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재심리를 하지 않는다. 새로운

배심원단에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이 사실이라는 평결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법원 재량에 따라 이전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를 심리할 새로운 배심원단 선정을 명령하거나, 주교도소에서의 징역 25년형을 부과한다.

(b) 피고가 배심원이 없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와 주민이 배심원 배석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심리관이 법원이 되는 경우, 사실심리관은 배심원이 된다.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와 주민이 배심원 배석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심리관은 배심원이 된다.

배심원이 된 사실심리관은 형벌 종류에 대한 만장일치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형벌 종류에 대한 심리를 할 새로운 배심원단의 선정 명령을 내린다. 새로운 배심원단에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이 사실이라는 평결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새로운 배심원단 구성 명령을 내리거나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을 부과한다.

(c) (b) 피고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사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심리관이 배심원인 경우, 타당한 사유로 법원이 해당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배심원을 선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배심원단이 제1026항에 따라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주장 그리고 혐의가 있는 특수 상황의 진위 여부 및 적용되는 형벌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기록에 의거하여 타당한 사유 발견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명시하고 재판 기록에 포함시킨다.

(d) 피고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모든 경우, 제1026항에 따라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주장 하에서의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이전 재판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전 단계의 사실심리관이 이후 단계의 사실심리관과 동일하면 재판의 모든 이후 단계에서도 고려된다.

(e) 사실심리관이 사형을 선고하는 평결 또는 판결을 이미 환부한 모든 경우, 피고는 제1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이미 해당 평결 또는 판결 수정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 시 증거를 검토하고, 제190.3항과 관련하여 피고의 형을 가중하는 상황 및 감경하는 상황 모두를 고려하며, 가중하는 상황이 감경하는 상황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배심원단의 판결 및 평결이 법 또는 제출된 증거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판사는 기록부에 판결의 이유를 명시한다.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한 판결 이유를 명시하고 서기 기록에 포함시킨다. 제1181항 제(7)호에 의거 사형 평결 수정 거부는 제1239항 제(b)호에 의거 피고의 자동 항소에서 검토된다. 신청 승인은 주민 항소에서 검토되며 제(6)목에 의거한다.

제9항. 제33장(제7599항 이하) 이 정부법 제1권 제7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33장. 미결 강간 및 살해 사건 수사를 위한
SAFE 캘리포니아 기금

제1조.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의 창설

7599.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이라고 하는 특별 기금이 주 재무부 내에 창설되며 지속적으로 본 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당된다.

제2조. 기금 충당 및 배정

7599.1. 기금 충당

2013년 1월 1일 1천만 달러 (\$10,000,000)가 2012-13년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 이전되고 본 장에 추가된 법률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2013-14년, 2014-15년 각 회계연도의 7월 1일 및 2015-16년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추가로 총 삼천만 달러 (\$30,000,000)가 일반 기금에서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 이전되고 지속적으로 본 장에 추가된 법률의 목적을 위해 충당된다.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 이전된 기금은 본 장에 추가된 법률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입법부에 의해 충당 또는 이전되지 않는다.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 없이 사용될 수 있다.

7599.2. SAFE 캘리포니아 기금 자금의 분배

(a) 법무장관의 지시 하에 회계감사관이 살인 및 강간 사건의 해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보안관, 검찰에 SAFE 캘리포니아 기금에 예치된 자금을 지출한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및 활동에는 강간 사건에서 수집된 물리적 증거의 보다 빠른 처리, DNA 분석 및 대조 등 법의학 능력 개선, 살인 및 성범죄 수사 또는 기소 인력 확충, 증인 이주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의 자금은 법무장관이 결정한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공식을 통해 경찰서, 보안관, 검찰에 배정된다.

(b) 이러한 자금의 배정 및 분배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SAFE 캘리포니아 기금에서 공제된다. 법무장관과 회계감사관은 배정 및 분배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많은 자금이 살인 및 강간 사건의 해결률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0항. 법률의 소급 적용

(a) 제3항에 서술된 바와 같이 본 법률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고 판결의 공정성, 확실성, 질을 높이기 위해 본 법률은 소급 적용된다.

(b) 피고 또는 재소자가 본 법률 발효일 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는 본 법률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으로 자동 변경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본 법률의 발효일 후 어떠한 사형도 집행하지 않는다.

(c) 본 법률의 발효일 후 대법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형 사건 항소 및 인신보호영장을 대법원 재량에 따라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제11항. 발효일

본 법률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제10항 제(a)호에 따라 투표 다음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제12항. 가분성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본 법률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 제10항을 제한없이 모두 포함하여, 무효화된 조항이나 적용을 제외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는 해당 무효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제35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발의 법안은 증거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형법의 장 제목 및 항을 수정하고 추가한다; 이에 따라 삭제가 제안된 기존 조항이 취소선이 인쇄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캘리포니아 성착취방지법

제1항. 제목

본 법안을 캘리포니아 성착취 방지법("CASE Act")으로 명명한다.

제2항. 배경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주의 전주민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2.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 및 민권에 위배되는 범죄이다. 인신매매는 타인의 취약점을 악용함으로써 드러나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이 없다.
3. 미 법무성 연구에 따르면 300,000명 이상의 미국 아동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 위험에 놓여 있다. 대부분은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성매매로 유인되지만 사세밖에 안 되는 아동이 매매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러한 미성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4. 인터넷의 보급이 캘리포니아에 큰 이득이 되었지만 인신매매범 및 성범죄자 역시 인터넷을 악용하여 우리 주의 취약 계층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우리는 성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아동을 착취하려는 인신매매범과 온라인 성범죄자의 위협에 맞설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34

35

6. 우리는 성범죄자가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범죄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제3항. 목적 및 취지

캘리포니아 주민은 본 CASE 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적 및 취지를 선언한다:

- 1.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범죄를 돕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한다.
- 2. 인신매매 대상이 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 3. 성범죄자 등록 요건 등 성적 착취 관련 법을 강화하여 법집행기관이 온라인 성범죄, 인신매매를 추적 및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 제1161항이 다음과 같이 증거법에 추가된다:

1161. (a) 형법 제236.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결과로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행위와 관련한 어떤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형사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채택할 수 없다.

(b) 형법 제236.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성적 이력 또는 상업적 성행위 이력의 증거는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을 공격하거나 성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채택할 수 없다.

제5항. 형법 제1편 제8권 제8장(제236항 이하)의 제목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8장. 불법 감금 및 인신매매

제6항. 형법 제 236.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36.1. (a) 제266항, 제266h항, 제266i항, 제267항, 제311.4항 또는 제518항의 중범죄 위반을 야기 또는 유지하고자 하거나 강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타인의 개인적 자유를 박탈 또는 침해한 사람은 누구나 인신매매로 유죄이며 5년형, 8년형 또는 12년형의 주교도소 징역과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b) 제(c)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항의 위반은 3년형, 4년형 또는 5년형의 주교도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c) 본 항을 위반한 범행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4년형, 육년형 또는 팔년형의 주교도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d) (1) 본 항의 목적에 따라, 타인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불법적 박탈 또는 침해에는 위협을 받거나 위협을 느낀 당사자가, 위협을 가한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적 상해 위협이나 사기, 기만, 강제, 폭력,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협박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실제 여권이나 이민서류 또는 여권이나 이민서류로 알려진 해당 문서를 파괴하거나 은닉, 제거, 압수, 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 본 항의 목적에 따라 “강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는 한 개인에 의해 수행 또는 제공된 것으로, 무력, 사기, 강제나 개인의 의지를 심하게 억압하며 이에 상응한 행위를 통해 취하거나 유지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b) 제266항, 제266h항, 제266i항, 제266j항, 제267항, 제311.1항, 제311.2항, 제311.3항, 제311.4항, 제311.5항, 제311.6항 또는 제518항을 위반 또는 위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타인의 개인적 자유를 박탈 또는 침해한 사람은 누구나 인신매매로 유죄이며 8년형, 14년형 또는 20년형의 주교도소 징역형과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c) 제266항, 제266h항, 제266i항, 제266j항, 제267항, 제311.1항, 제311.2항, 제311.3항, 제311.4항, 제311.5항, 제311.6항 또는 제518항을 위반을 또는 위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를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시키기 위해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인, 설득을 하거나 이를 시도한 사람은 누구나 인신매매로 유죄이다. 본 호의 위반은 다음과 같은 주교도소에서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징역 5년형, 8년형 또는 12년형 및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의 벌금.

(2) 범행에 피해자 또는 타인에 대한 불법적 상해 위협이나 무력, 공포, 사기, 기만, 강제, 폭력, 협박이 포함된 경우 징역 십오년형에서 종신형 및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의 벌금.

(d) 미성년자를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시키기 위해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인, 설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피해자 연령, 인신매매범 또는 인신매매범 대리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다.

(e)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본 항에 의거 형사상 기소에 대한 변호 사유가 아니다.

(f)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사실에 대한 오인은 본 항에 의거 형사상 기소에 대한 변호 사유가 아니다.

(f) (g) 입법부는 본 항의 인신매매 정의가 미국연방법 제22부 제7102(8)항에서 규정한 심각한 매매 형태의 연방 정의에 상응함을 확인한다.

(g) (1) 제(c)호에 명시된 형에 더해 상업적 성행위와 관련된 인신매매를 저질러고 범행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 누구나 최대 십만 달러 (\$100,000)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2) 본 호에 사용된 “상업적 성행위”는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h) 본 항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되는 모든 벌금은 피해자증인지원기금(Victim-Witness Assistance Fund)에 예치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다. 본 항에 의거하여 징수 및 예치된 벌금의 최소 50 퍼센트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에 지원된다.

(h) 본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1) “강제”는 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면

35

심각한 피해나 물리적인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모든 책략이나 계획, 양식; 법적 절차의 남용 또는 남용 위협; 부채 상황을 구실로 한 구속; 또는 판단력에 손상을 가할 의도로 개인에 관리 대상 물질을 제공하거나 점유를 돕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 "상업적 성행위"는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3) 본 항의 목적에 따라, "타인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불법적 박탈 또는 침해"는 위협을 받거나 파악한 당사자가, 위협을 가한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적 상해 위협이나 무력, 공포, 사기, 기만, 강제, 폭력,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협박"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 다른 상황이었다면 묵인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행위를 묵인 또는 수행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무력이나 폭력, 위협, 어려움, 응징의 직접적 또는 암시적 위협; 피해자의 실제 여권이나 이민서류, 또는 여권이나 이민서류로 알려진 해당 문서를 파괴하거나 은닉, 제거, 압수, 소유하는 직접적 또는 암시적 위협; 피해자의 피해자의 실제 여권이나 이민서류, 또는 여권이나 이민서류로 알려진 해당 문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은닉, 제거, 압수, 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강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는 한 개인에 의해 수행 또는 제공된 것으로, 무력, 사기, 강제나 개인의 의지를 심하게 억압하며 이에 상응한 행위를 통해 취하거나 유지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6) "신체적 증상"은 상당한 신체상 상해를 의미한다.

(7)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8) "심각한 피해"는 어떤 주변 상황이든 동일한 사정 및 동일한 상황에서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해당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이나 서비스, 상업적 성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모든 피해를 뜻하며 여기에는 심리, 재정, 명성과 관련한 피해 등 신체적 또는 비신체적인 모든 피해가 포함된다.

(i) 피해자 연령, 인신매매법 또는 인신매매법 대리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등 전체 상황은 본 항에 기술된 "타인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불법적 박탈 또는 침해", "협박", "강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다.

제7항. 형법 제236.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36.2. 법집행기관은 피해자의 시민권과 관계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대로 성실하게 인신매매의 모든 피해자를 파악한다.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한 자,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한 미성년자, 제647항 제(a)호 또는 제(b)호의 위반 혐의자, 가정 폭력 또는 강간 성폭행 피해자를 보게 된 치안관은 다음과 같은 인신매매 단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a) 정신적 외상이나 피로, 상해의 흔적 또는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

(b) 대화를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대화가 타인의 검열을 받고 있는 경우.

(c) 이동의 자유가 없는 사람.

(d) 한 곳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는 사람.

(e) 고용주에 채무가 있는 사람.

(f) 해당인에 접촉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보안 조치가 사용되는 경우.

(g) 자신의 정부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취업 이민 서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제8항. 제236.4항이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236.4. (a) 제236.1항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은 부과된 다른 처벌이나 벌금, 배상에 추가로 피고에 최대 백만 달러 (\$1,000,000)의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법원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며, 여기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 범행 상황 및 지속기간, 범죄의 결과로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정도, 범죄의 결과로 피해자가 겪은 손실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제236.1항을 위반하는 범죄 또는 범죄 시도로 피해자에 큰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나 추가로 주교도소에서의 연속 징역 5년형, 7년형 또는 10년형 처벌을 받는다.

(c) 제236.1항에 명시된 범죄를 위반하여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개별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추가 판결에 대해 주교도소에서의 연속 징역 5년형을 받는다.

(d) 제236.1항 및 본 항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된 모든 벌금은 피해자증인지원기금에 예치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캘리포니아 비상관리국 (Californ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al EMA)에서 집행된다. 징수 및 예치된 벌금의 70 퍼센트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보호소나 상담, 기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지원된다. 징수 및 예치된 벌금의 30 퍼센트는 인신매매 방지, 증인 보호, 구조 활동의 자금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재판권의 법집행기관 및 기소기관에 지원된다.

제9항. 형법 제290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90. (a) 제290항에서 제290.023항 제290.024항까지를 성범죄자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으로 명명한다. 관련 항에서 언급하는 "법률"은 성범죄자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을 말한다.

(b) 제(c)호에 기술된 모든 사람은 제290.002항 및 제 290.01항에 기술된 대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평생 동안, 또는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평생 동안, 시나 카운티로의 이주 또는 임시로 거주하는 시나 카운티, 캠퍼스로의 거주지 변경 5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의 경찰서장에 등록해야 하고, 지자체 인가가 없어 경찰서가 없는 지역 또는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보안관에 등록해야 하며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기타 커뮤니티 칼리지의 캠퍼스 또는 관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의 치안서장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도 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c)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1944년 7월 1일 이후, 난동을 일으키기 위한 폭행을 제외한, 제261항, 제286항, 제288항, 제288a항, 제289항, 또는 제220항, 제236.1항 제(b)호 및 제(c)호, 제243.4항, 제261항 제(a)호의 제(1)목, 제(2)목, 제(3)목, 제(4)목, 제(6)목, 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이 내려지는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된 제262항 제(a)호의 제(1)목, 제264.1항, 제266항, 제266c항, 제266h항의 제(b)호, 제266i항의 제(b)호, 제266j항, 제267항, 제269항, 제285항, 제286항, 제288항, 제288a항, 제288.3항, 제288.4항, 제288.5항, 제288.7항, 제289항, 제311.1항, 제311.2항의 제(b), 제(c)호, 제(d)호, 제311.3항, 제311.4항, 제311.10항, 제311.11항, 제647.6항, 이전 제647a항, 제653f항의 제(c)호, 제314항의 제1호 또는 제2호, 제272항에 따른 외설 또는 음란 행위를 수반한 범죄, 또는 제288.2항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86항, 제288항, 제288a항, 제289항이나 제207항 또는, 제209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모든 행위의 자행이나 자행 시도, 강간 또는 강간의 시도로 인해 제187항을 위반하여 본 주 법원, 연방 법원, 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위에 언급된 범죄 중 하나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법정 전과자; 위의 날짜 이후 위에 언급된 범죄를 시도 또는 모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제10항 형법 제290.01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90.012. (a) 해당되는 자는 등록 또는 주소 변경 이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출생일부터 매년 출생일 오일 이내에 제290항 제(b)호에 기술된 기관에 등록을 갱신한다. 해당되는 자는 매년 갱신 때마다 법무성의 연례 갱신양식에서 요구하는 현행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제290.015항 제(a)호 제(1)목에서 제(3)목 제(5)목까지에 기술된 정보가 포함된다. 등록 기관은 등록자에게 법무성 양식의 등록 요건 사본을 제공한다.

(b) 이에 더해 복지제도법 제6600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폭력법 판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성에서 정한 방식으로 석방 후 최소 90일마다 일회 이상은 주소지,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한 직장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성폭력범으로 90일 마다 등록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등록이 이루어질 때마다 늘어난 등록 의무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는다. 본 통보는 하나 이상의 등록 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제공된다. 본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제290.018항 제f호에 규정된 처벌의 변호 사유이다.

(c) 이에 더해 본 법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단기 체류하는 동안, 제290.011항에 따라 최소 30일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d) 어떠한 단체도 본 항에 의거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려는 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등록 기관은 연례 갱신 및 주소 변경 등 등록 내용을 바로 법무성범죄정보네트워크(VGIN)에 제출한다.

제11항. 형법 제290.014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90.014. (a) 법률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법집행기관에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본인이 직접 통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내에 해당 사본을 법무부에 전달해야 한다.

(b) 법률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는 자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자신의 계정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인터넷 ID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자신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법집행기관에 24시간 내에 해당 추가 또는 변경 관련 통지문을 전달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이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본 호가 발효되는 시점에 해당 호가 적용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제12항. 형법 제290.01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90.015. (a) 본 법률이 적용되는 자는 제290항 제(b)호에 따라 구금, 구속, 영장 집행이 해제되거나 보호 관찰이 해제되는 즉시 등록해야 하고,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도 재등록해야 한다. 본 법률에 의거 기준에 등록한 경우, 구금 후 최종 등록 주소로 복귀한 경우, 그리고 본 290.012항 제(a)호에 따라 자신의 생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는 등록 기간이 구금 기간과 겹치지 않았던 경우,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구금되는 개인에게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시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 (1)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정보, 등록 대상자의 고용주 이름 및 주소, 고용주의 기본 주소가 고용 장소와 다를 경우 고용 장소의 주소를 제공하고 등록 대상자가 서명한 진술서.
- (2) 등록 공무원이 촬영한 해당 등록 대상자의 현재 사진 및 지문.
- (3) 등록 대상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 번호판 번호.
- (4) 등록 대상자가 설정 또는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ID 목록.
- (5) 등록 대상자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목록.
- (6) 본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등록 대상자가 제(4)목 및 제(5)목의 정보를 등록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등록 대상자가 서명한 진술서.
- (4) (7) 법률에 따른 요구사항 외에 등록 대상자가 이주하는 다른 주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고지.
- (5) (8) 적절한 거주 증명서 사본으로, 이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주 신분증, 최근 임대료, 상하수도, 가스 전기 영수증, 인쇄된 개인 수표 또는 등록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기타 최근 은행 서류, 또는 등록 공무원이 신뢰할 수 있는 기타 정보로 제한된다. 해당 개인이 거주지가 없거나 가까운 미래에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은 등록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등록 공무원에 의해 해당 사실이 기술된 후 등록 공무원이 제시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등록 공무원에게 거주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거주지가 없음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제공하면, 등록 대상자는 등록이 가능하다. 거주지는 있지만 거주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등록 대상자는 등록은 가능하지만 등록이 허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주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b) 그로부터 3일 내에 등록 법집행기관은 진술서, 지문, 사진 및 차량 운전면허증 번호를 법무부에 전달해야 한다.

(c) (1) 석방 후 제(a)호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 대상자의 가석방 또는 집행 유예를 담당하는 관할지역의 지방 검사가 등록 대상자의 체포 영장 발행을 요청하고 제290.018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석방 시점에 등록 대상자가 가석방 또는 집행 유예 상태가 아닐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관할지역의 지방 검사가 290.018 조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A) 등록 대상자가 이전에 등록한 경우 마지막으로 등록한 관할지역.

(B) 이전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해당 개인이 예상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 등록 요구 명단에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할지역.

(C) 제(A)목 또는 제(B)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본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록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관할지역.

제13항. 제290.024항이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290.024. 본 조항에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a)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란 소비자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통신 기능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조직 또는 기타 개체를 의미한다. 통신 서비스, 케이블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또는 도서관이나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직 또는 기타 개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인터넷 ID"는 인터넷 포럼 토론, 인터넷 채팅룸 토론, 인스턴트 메시징, 소셜 네트워킹 또는 유사한 인터넷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메일 주소, 사용자 이름, 화면 이름 또는 유사한 ID를 의미한다.

제14항. 형법 제13519.14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3519.14. (a) 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기소 처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법집행관의 대응 지침을 개발한다. 교육 과정 및 지침에서는 인신매매의 역학 관계 및 현상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신원확인 및 피해자와의 의사 소통,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법집행기관 법집행기관(LEA) 지지(LEA) 를 충족하는 서류 제공, 연방 법집행기관 공무원과의 협력, 치료상 적절한 조사 기법, 민간 및 이주 대책과 지역사회 자원의 가용성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제시한다. 적절할 경우 교육 진행자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이 있는 인신매매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신, 비디오 교육 테이프 또는 기타 교육을 통해 과정을 완료할 수도 있다.

(b) 본 항에서 사용된 "법집행기관 공무원"이란 제 830.2항의 제(a)호에서 정의한 대로 현지 경찰서 또는 보안관 사무실의 공무원이나 직원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치안관을 의미한다.

(c) 교육 과정, 학습 및 성과 목표, 교육 기준 및 지침은 위원회가 인신매매 분야에 관심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해당 그룹 및 개인과 협의하여 개발한다.

(d) 위원회는 해당 그룹 및 개인과 협의하여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함으로써 인신매매 교육을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e) 본 항에 명시된 교육 과정에 치안관 또는 치안관을 고용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다. 현장 또는 조사 임무가 할당된 모든 법집행기관 공무원은 2014년 7월 1일까지 또는 해당 직책에 임명된 지 6개월 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제(a)호에서 기술한 대로 인신매매 기소 처리와 관련된 교육 과정에서 최소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5항. 개정

본 법률은 해당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을 거쳐 입법부의 양원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통과되는 법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6항. 가분성

본 법안의 조항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조항의 적용이 위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머지 조항 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법안의 조항의 한도에서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발의안 제36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형법에 조항을 수정하고 개정한다; 이에 따라 삭제가 제안된 기존 조항이 취소선이 인쇄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2012년 삼진아웃 개혁법

제1항. 배경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강간범, 살인범 및 아동 성추행범과 같이 위험한 범죄자에게 중신형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주 삼진아웃법의 원래 취지를 복원하고자 2012 삼진아웃 개혁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살인범,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이 경미한 세 번째 새로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중신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2) 피고인이 현재 폭력이나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중신형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삼진아웃법을 주민의 원래 합의로 복원한다.

(3) 날치기나 단순한 약물 소지 같이 심각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습 범죄자의 경우 중신형 대신 일반적인 형량의 두 배를 받게 한다.

(4) 10년 이상 매년 납세자의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정부는 경미한 범죄로 인해 중신형을 받아 복역 중인 고령의, 위험성은 낮고, 비폭력적인 수감자의 거처 공급 또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5) 경미한 범죄로 중신형을 받아 복역 중인 위험성이 낮고 비폭력적인 수감자로 인해 교도소가 혼잡해져 현재 조기 석방되고 있는 위험한 범죄자의 조기 석방을 차단한다.

제2항. 제667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667. (a) (1) 제1385항의 제(b)호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에 심각한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심각한 중죄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범죄로 인해 다른 관할지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은 현재 범죄로 인해 법정에서 받은 선고 외에 별도로 기소 및 심리된 고발의 이전 유죄판결마다 처벌이 5년 가중된다. 현재 범죄의 판결과 가중 판결은 연속하여 집행된다.

(2) 다른 법률 조항에 의거 선고된 형벌의 수감 기간이 더 길 경우 본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 호를 적용하기 위해 이전 구금 및 영장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양원의 과반수 투표로 통과된 법률에 의해 입법부는 본 호에 제시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4) 본 호에서 사용된 "심각한 중죄"란 제1192.7항 제(c)호에 나열된 심각한 중죄를 의미한다.

(5) 이전 유죄판결이 제1192.7항 제(c)호 제(24)세목에

기술된 심각한 중죄에 대한 판결이 아닐 경우, 필로폰 관련 약물이나 필로폰 전구체를 판매, 제공 또는 관리하거나 판매, 제공, 관리하도록 공급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공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본 하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b) 제(b)호에서 제(i)호까지를 제정된 입법부의 의도는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전에 하나 이상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징역형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중과하려는 것이다.

(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제(d)호에 정의된 하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입증될 경우 법원은 다음을 모두 고수한다:

(1) 후속 중죄의 유죄판결에서 양형 누적에 대한 전체 기간에 제한이 없다.

(2) 현재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허가되지 않으며 이전 범죄에 대한 형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될 수 없다.

(3)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적인 중죄의 유죄판결과 현재 중죄의 유죄판결 사이의 기간이 형량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 교도소 외 다른 시설로의 감호조치는 없다. 복지제도법 제3부 제1장 제2조(제3050항 이하)에서 규정한 바대로 감호조치는 없으며 피고인은 캘리포니아 재활센터로의 감호조치 대상이 아니다.

(5) 제3편 제1권 제7장 제2.5조(제2930항 이하)에 따라 부여된 총 점수는 부과된 총 수감 기간의 오분의 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 교도소에 실제로 피고인이 수감될 때까지 누적되지 않는다.

(6)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죄에 대한 현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e)호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해 연속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7) 제(6)목에서 기술한 두 건 이상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에 대해 현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법률에서 기술한 방식대로 피고인이 연속해서 형량 선고를 받는 다른 유죄판결에 대해 누적적으로 각기 유죄 선고를 해야 한다.

(8)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e)호에 따른 선고는 피고인이 이미 복역하고 있는 다른 선고에 연속해서 부과된다.

(d) 다른 법률과 제(b)호에서 부터 제(i)호에 이르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의 이전 유죄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제667.5항 제(c)호에서 폭력 관련 중죄로 정의된 범죄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심각한 중죄로 정의된 범죄. 이전 유죄판결이 제(b)호에서 부터 제(i)호에 이르는 목적에 따라 이전 중죄 유죄판결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전 유죄판결 날짜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최초 형량선고가 있는 후 바로 해당 선고에서 중죄를 자동으로 경범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처분은 이전 유죄판결이 제(b)호에서 부터 제(i)호에 이르는 목적에 따라 이전의 중죄인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A) 판결 또는 선고유예.
- (B) 형 집행유예.
- (C) 중죄 유죄판결 후 정신 이상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주 보건부로의 감호조치.
- (D) 캘리포니아 재활센터, 또는 주 교도소의 대체 수용시설인 기타 시설로의 감호조치.

(2)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경우 주 교도소 수감 처분을 받은 범죄에 대한 다른 관할지역의 이전 유죄판결-은 그 또 다른나머지 관할지역의 이전 유죄판결이 제667.5항 제(c)호에 정의된 특정 폭력 관련 중죄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정의된 심각한 중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범죄일 경우(포함), 특정한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의 이전 유죄판결을 구성한다.

(3) 이전 청소년 관련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 형벌 대상이 되는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구성한다:

- (A) 이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청소년의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
- (B) 이전 범죄가 복지제도법 제707항 제(b)호 또는 제(1)목 또는 제(2)목에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명시된 경우.
- (C) 청소년이 청소년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
- (D) 청소년이 복지제도법 제707항 제(b)호에 나열된 범죄를 저질러 복지제도법 제602항의 취지 하에 청소년 법정 판결을 받은 경우.

(e) 제(b)호에서부터 제(i)호에 이르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적용되는 다른 가중 및 처벌 규정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하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 유죄판결들을 받은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 (1) 제(d)호에 정의된 바대로 이미 항변하여 입증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이 피고인에게 한 건 있는 경우, 확정 기간 또는 미확정 기간의 최소 기간은 달리 제공하지 않는 한, 현재 중죄 유죄판결 형량의 두 배가 된다.
- (2) (A) 제(C)세목에서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우, 제(d)호에 정의된 대로 이미 항변하여 입증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두 건 이상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현재 중죄 유죄판결의 기간은 다음 중 더 긴 가장 긴 기간으로 계산되는 미확정 형량의 최소 기간과 함께 중신형 미확정 기간이 된다:
 - (i) 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에 이어 현재 중죄 유죄판결의 형량이 다르게 규정된 기간의 세 배.
 - (ii) 25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
 - (iii) 제2편 제7권 제4.5장(제1170항 이하)에서 적용되는 가중 기간, 또는 제190항 또는 제3046항에서 기술한 기간을 포함하여, 기본 유죄판결에 대해 제1170항에 따라 법정에서 결정한 기간.

(B) 제(A)세목에 기술된 미확정 기간을 법률에 의해 연속 기간이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수감 기간에 연속해서 복역해야 한다. 제(A)세목에서 기술한 미확정 기간에 이어 부과된 다른 기간은 여기에 병합되지 않고, 해당 개인이 교도소에서 석방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C) 피고인이 제667.5항 제(c)호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정의된 둘 이상의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에 대해 이미 항변하여 입증되었고, 현재 범죄는 제(d)호에 정의된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가 아닐 경우, 기소를 통해 다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제(e)호의 제(1)목에 따라 선고를 받게 된다:

- (i) 현재 범죄가 보건 및 안전법의 제11370.4항 또는 제11379.8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거나 진실임이 밝혀진 규제 약물 관련 기소 건이 아닌 경우.
- (ii) 현재 범죄가 제261.5항 또는 제262항의 제(d)호에 정의된 흉악한 성범죄이거나, 제266항, 제285항, 제286항의 제(b)호 제(1)목 및 제(e)호, 제288a항의 제(b)호 제(1)목 및 제(e)호, 제311.11항 및 제314항의 위반을 제외하고, 제290항의 제(c)호에 따라 성범죄자로 의무 등록해야 하는 중죄인 경우.

(iii) 현재 범죄를 자행하는 중에 피고인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화기 또는 흉기로 무장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

(iv) 피고인이 다음 중죄에 대해 본 항의 제(b)호에 정의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 (I) 복지제도법의 제6600항 제(b)호에 정의된 "성폭력 범죄".
- (II) 제288a항에 정의된 대로 14세 이하 및 자신보다 10살 연하인 소년과의 구강 성교, 제286항에 정의된 대로 14세 이하 및 자신보다 10살 연하인 타인과의 남색, 또는 제289항에 정의된 대로 14세 이하 및 자신보다 10살 연하인 타인과의 성기 삽입.
- (III) 제288항을 위반하여 14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외설 또는 음란 행위.

(IV) 제187항에서 제191.5항까지 정의된 살인 미수 범죄를 포함한 살인 범죄.

(V) 제653f항에 정의된 살인 교사.

(VI) 제245항 제(d)호 제(3)목에 정의된 경찰관 또는 소방관에 대한 기관총 공격.

(VII) 제11418항 제(a)호 제(1)목에 정의된 대량 살상 무기 소지.

(VIII) 캘리포니아에서 중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f) (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제(d)호에 정의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 유죄판결들이 한 건 이상 있는 모든 경우 제(b)호에서 제(i)까지가 적용된다. 제(2)목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 검사가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2) 기소 검사는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제 1385항에 따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 혐의를 기각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한 경우 법원에서 혐의를 기각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의 어떤 내용도 제1385항에 의한 법원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g)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제1192.7항 제(b)호에 정의된 양형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기소에서 알려진 모든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제(f)호 제(2)세목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 혐의 기각을 요청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h) 제(c)호에서부터 제(g)호에서 기존 법령이라 함은 1993년 6월 30일 2012년 11월 7일에 존재하는 법령을 말한다.

(i) 제(b)호에서부터 제(h)호까지의 규정이나 해당 규정의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 해당 무효 사항은 무효 규정 또는 적용이 제외되면 효력이 생기는 해당 호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j) 본 항의 규정은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양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통과되는 법령을 제외하고 또는 선거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유효해지는 법령을 제외하고는 입법부가 개정할 수 없다.

제3항. 형법 제667.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667.1. 제667항의 제(h)호에도 불구하고, 본—법률의 발효날짜 2012년 11월 7일 이후 자행된 모든 범죄에 대해, 제 667항 제(c)호에서부터 제(g)호에서 기존 법률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본 법률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해당 법률을 말하는 것이며, 본 호를 개정하는 2005—06 정가 회기 중 2012년 11월 7일에 제정된 명령에 따라 수정된 동 법률 개정 내용도 포함한다.

제4항. 형법 제1170.1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170.12. (a) 여러 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집계 및 연속 기간; 이전 중죄로서의 이전 유죄판결; 구금 및 기타 가중 또는 처벌.

(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제(b)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전에 항변하고 입증된 한 건 이상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피고인에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고수한다:

(1) 후속 중죄의 유죄판결에서 양형 누적에 대한 전체 기간에 제한이 없다.

(2) 현재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허가되지 않으며 이전 범죄에 대한 형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될 수 없다.

(3)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적인 중죄의 유죄판결과 현재 중죄의 유죄판결 사이의 기간이 형량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 교도소 외 다른 시설로의 감호조치는 없다.

복지제도법 제3부 제1장 제2조(제3050항 이하)에서 규정한 바대로 감호조치는 없으며 피고인은 캘리포니아 재활센터로의 감호조치 대상이 아니다.

(5) 제3편 제1권 제7장 제2.5조(제2930항 이하)에 따라 부여된 총 점수는 부과된 총 수감 기간의 오분의 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 교도소에 실제로 피고인이 수감될 때까지 누적되지 않는다.

(6)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죄에 대한 현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본 조항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해 연속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7) 제(b)호제(6)목에서 기술한 두 건 이상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에 대한 현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법률에서 기술한 방식대로 피고인이 연속해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죄판결에 대해 각 유죄판결의 선고를 연속해서 부과해야 한다.

(8)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항에 따른 선고는 피고인이 이미 복역하고 있는 다른 선고에 연속해서 부과된다.

(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항의 목적을 위해서 이전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제667.5항 제(c)호에서 폭력 관련 중죄로 정의된 범죄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심각한 중죄로 정의된 범죄. 이전 유죄판결이 본 항의 목적에 따라 이전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전 유죄판결 날짜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최초 형량선고 받은 후 바로 해당 선고에서 중죄를 자동으로 경범죄로 변환하지 않는 한,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 처분은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이 본 조항의 목적에 해당하는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인지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판결 또는 선고유예.

(B) 형 집행유예.

(C) 중죄 유죄판결 이후 정신 이상 성범죄자로 분류된 후 주 보건부로의 감호조치.

(D) 캘리포니아 재활센터, 또는 주 교도소의 대체 수용시설인 기타 시설로의 감호조치.

(2)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경우 주 교도소 수감 처분을 받은 범죄에 대한 다른 관할지역의 이전 유죄판결: 은 그 또 다른 나머지 관할지역의 이전 유죄판결이 제 667.5항 제(c)호에 정의된 한 특정 폭력 관련 중죄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정의된 심각한 중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범죄일 경우(포함), 특정한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의 이전 유죄판결을 구성한다.

(3) 이전 청소년 판결은 판결 가중을 위해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구성한다.

(A) 이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청소년의 나이가 십육 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B) 이전 범죄는

(i) 복지제도법 제707항 제(b)호에 나열되거나,

(ii) 본 호에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나열되어 있다.

(C) 청소년이 청소년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D) 청소년이 복지제도법 제707항 제(b)호에 나열된 범죄를 저질러 복지제도법 제602항의 취지 하에 청소년 법정 판결을 받은 경우.

(c) 본 항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적용되는 다른 가중 및 처벌 규정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하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유죄판결들을 받은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 제(b)호에 정의된 바대로 이미 항변하여 입증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이 피고인에게 한 건 있는 경우, 확정 기간 또는 미확정 기간의 최소 기간은 달리 제공하지 않는 한, 현재 중죄 유죄판결 형량의 두 배가 된다.

(2) (A) 제(C)세목에에서에서 제공한 경우는 제외된 경우 경우, 피고인이 입증된 제(b)호-제(1)목에 정의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두 건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중죄 유죄판결의 기간은 다음 중 더 큰 가장 큰 기간으로 계산되는 미확정 판결의 최소 기간을 포함한 중신형 미확정 기간이 된다:

(i) 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에 이어 현재 중죄 유죄판결의 형량이 다르게 규정한 기간의 세 배, 또는

(ii) 이십오년형 또는

(iii) 제2편 제7권 제4.5장(제1170항 이하)에서 적용되는 가중 기간, 또는 제190항 또는 제3046항에서 기술한 기간을 포함하여, 기본 유죄판결에 대해 제1170항에 따라 법정에서 결정된 기간.

(B) 본 호의 제(2)목 제(A)세목에 기술된 미확정 기간을 법률에 의해 연속 기간이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수감 기간에 연속해서 복역해야 한다. 본 호 제(2)목 제(A)세목에 기술된 부정기형에 이어져 부과된 다른 모든 형량은 거기에 합쳐지지 않으며 해당인의 출소 시점에 시작된다.

(C) 피고인이 이전에 제667.5항 제(c)호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정의된 대로 주장하고 입증된 두 가지 이상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 범죄가 본 항 제(b)호 제(1)목에 기술된 중죄가 아닌 경우 피고인은 검찰이 다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는 한 본 항 제(c)호 제(1)목에 따라 선고를 받는다.

(i) 현재 범죄가 보건 및 안전법의 제11370.4항 또는 제 11379.8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거나 진실임이 밝혀진

규제 약물 관련 기소 건이 아닌 경우.

(ii) 현재 범죄가 제261.5항 또는 제262항 제(d)호에 정의된 중대 성범죄이거나 제266항 및 제285항, 제(b)호 제(1)목 및 제286항 제(e)호, 제(b)호 제(1)목 및 제288a항 제(e)호, 제314항 및 제311.11항 위반을 제외하고 제 290항 제(c)호에 의거한 성범죄자 의무 등록을 초래하는 중죄인 경우.

(iii) 현재 범죄를 자행하는 중에 피고인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화기 또는 흉기로 무장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

(iv) 피고인이 다음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로 본 항 제(b)호에 정의된 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I) 복지제도법 제6600항 제(b)호에 정의된 "폭력적 성범죄".

(II) 14세 미만 아동과의 구강 성교, 제288A항에 정의된 대로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아동과의 구강 성교, 14세 미만 및 제286항에 정의된 대로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아동과의 항문 성교 또는 14세 미만 아동 및 제289항에 정의된 대로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아동과의 성교.

(III) 제288항을 위반하여 14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음란하거나 음란 행위.

(IV) 제187항에서 제191.5항까지 정의된 살인미수죄를 포함한 모든 살인죄.

(V) 제653f항에 정의된 살인교사.

(VI) 제245항 제(d)호 제(3)목에 정의된 경찰관 또는 소방관에 대한 기관총 공격.

(VII) 제11418항 제(a)호 제(1)목에 정의된 대량 살상무기 소지.

(VIII) 캘리포니아에서 중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d) (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은 피고인이 이전에 본 항에 정의된-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유죄판결들을 받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2)목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 검사가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2) 검사는 제1385항에 따라 정의를 위해 또는 이전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유죄판결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이전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 혐의를 기각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한 경우 법원에서 혐의를 기각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의 어떤 내용도 제1385항에 의한 법원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e) 제1192.7항 제(b)호에 정의된 대로 이전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이 유죄 답변 거래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알려진 이전의 모든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제(d)호 제(2)목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전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 혐의의 삭제 또는 기각을 추진하는데 합의해서는 안 된다.

(f) 제(a)호에서 제(e)호 또는 제1170.126항의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사람 또는 정황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에도 무효가 해당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이나 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호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g) 본 항의 조항은 의사록에 기록된 출결 확인 투표에서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해서 하원을 통과한 법령 또는 유권자가 동의할 때에만 발효되는 법령을 제외하고는 입법부에 의해서 수정될 수 없다.

제5항. 형법 제1170.12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170.125. 1994년 11월 8일 총선총선에서 채택된 발의안 제184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의 발효일인 2012년 11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저지른 모든 범죄, 제 1170.12항 및 제1170.126항항의 기존 법률에 대한 모든 참조는 해당 법령이 2012년 11월 7일에 본 항을 수정했던 2005-06 정규 회기 동안 제정된 법에 의한 해당 법률의 수정 내용을 포함하여 본 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해당법령 항에 대한 참조이다.

제6항. 제1170.126항이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1170.126. (a) 본 항에 의거한 재선고 조항과 관련된 법령은 제667항 제(e)호 제(2)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에 따라 현재 부정기형을 복역 중인 사람으로 본 법률에 따른 선고가 부정기 중신형이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b) 유죄판결 시 재판에 의해서든 소송에 의해서든 제 667항 제(e)호 제(2)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에 의거한 부정기 중신형을 복역 중이며 제667.5항 제(c)호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로 정의되지 않은 중죄인 경우, 본 항이 추가된 법률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또는 이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일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법정에서 본 항이 추가된 법률에 의해 수정된 제 667항 제(e)호 및 제1170.12항 제(c)호의 조항에 따라 재선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c) 제667항 제(e)호 제(1)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1)목에 의거해 내려진 유죄판결을 받은 "두 번째 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본 항의 조항에

따른 재선고 자격이 없다.

(d) 제(b)호에 기술된 선고 취소 청원은 제667항 제(e)호 제(2)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 또는 둘 모두에 따른 선고로 이어졌던 현재 기소된 모든 중죄를 지정하며, 제667항 제(d)호 또는 제1170.12항 제(b)호에 따라 진술되고 입증된 이전의 모든 유죄판결도 지정한다.

(e) 재선고 자격이 있는 재소자는 다음과 같다:

(1) 제667.5항 제(c)호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로 정의되지 않은 중죄의 유죄판결로 제667항 제(e)호 제(2)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에 따라 선고된 부정기 중신형을 복역 중인 재소자.

(2) 재소자의 현재 형이 제667항 제(e)호 제(2)목 제(C)세목 제(i)조목에서 제(iii)조목까지 각 조목 또는 제 1170.12항 제(c)호 제(2)목 제(C)세목 제(i)조목에서 제(iii)조목까지 각 조목에 나타난 범죄에 대해 부과되지 않은 경우.

(3) 재소자가 제667항 제(e)호 제(2)목 제(C)세목 제(iv)조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 제(C)세목 제(iv)조목에 나타난 범죄로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f) 선고 취소 청원 접수 시 법원은 청원자가 제(e)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청원자가 제(e)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해당 청원자의 재선고가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청원자는 제667항 제(e)호 제(1)목 및 제1170.12항 제(c)호 제(1)목에 따라 재선고된다.

(g) 제(f)호의 자유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1) 범죄 유형, 희생자의 부상 정도, 이전 복역 기간 및 범죄 간격을 포함한 청원자의 형사 유죄판결 이력

(2) 청원자의 구금 중 징계 기록 및 재활 기록

(3)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새로운 선고로 인해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다른 모든 증거.

(h) 어떤 경우에도 본 법률에 따른 재선고가 원래의 선고보다 더 긴 형량을 부과할 수는 없다.

(i) 제977항 제(b)호에도 불구하고 재선고를 청원하는 피고인은 재선고에서 변론이 수정되지 않고 해당인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나 재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정 출석을 포기할 수 있다. 출석 포기는 피고인이 서면으로 서명한다.

(j) 피고인을 처음 판결했던 법원에서 재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의 청원을 판결할 판사를 지정한다.

(k) 본 항의 어떤 내용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구제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

(l) 본 항 및 관련 항의 어떤 내용도 본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판결의 중국성을 축소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

(m) 본 법률에 따라 명령된 재선고 심리는 캘리포니아주 헌법(Marsy's Law) 제I조 제28항 제(b)호 제(7)목에 의거한 "유죄판결 사후 석방"으로 간주된다.

제7항. 확대 해석

본 법률은 캘리포니아주 국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공공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

제8항. 가분성

본 법률 조항 또는 이에 따른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무효 사항은 무효 조항 또는 적용이 제외되면 효력이 생기는 본 법률의 적용이나 기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제9항. 충돌 법안

본 법안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만 동일한 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다른 충돌 투표법안으로 대체되고 이후 충돌 투표법안이 무효화되는 경우, 본 법률이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유권자의 취지이다.

제10항. 발효일

본 법률은 유권자에 의한 법 제정 후 첫 날에 발효된다.

제11항. 개정

본 법령의 전문에 달리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률의 조항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a) 입법부 각 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출결 확인을 통해 재적 의원 삼분의 이가 찬성하고 주지사가 동의한 법령; 또는

(b) 입법부 각 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출결 확인을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고 다음 투표에 회부되어 유권자 과반수가 찬성한 법령; 또는

(c) 유권자 과반수가 찬성해서 발효되는 법령.

발의안 제37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보건 및 안전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알 권리 법

제1항. 배경 및 선언

(a) 캘리포니아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유전자 변형 동식물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유전자를 조작해 생물에 삽입하는 것은 모호한 과정이다. 그 결과가 항상 예측 또는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b) 정부의 과학자들은 유전자 공학 고유의 기술인 식물 내 DNA 인공 삽입이 채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으로 식품에 기존 독성물질 수준이 증가되고 새로운 독성물질과 건강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c)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의 의무 표시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섭취하는데 따른 잠재적 건강상 영향을 추적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d)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식품 생산자가 유전자 변형을 통한 식품 생산 여부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이러한 식품의 안전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한, FDA는 심지어 유전자 변형 농작물 개발자들에게 당국과의 협의도 요구하지 않는다.

(e)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 자신이 먹는 식품이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된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유럽 연합(EU) 회원국, 일본 및 미국의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오십개국에 유전자 변형 식품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이 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의 의무 표시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없다.

(g) 공개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식사 및 종교 금기를 어기게 된다.

(h)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재배 또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잡초를 제거하는 농약인 제초제를 견디도록 만들어진다. 그 결과, 수억 파운드의 제초제가 미국 농장에서 추가로 사용되었다. 제초제의 추가 사용 때문에 제초제에 저항력이 있는 해초가 무성해졌고 이로 인해 점점 더 유독한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유독한 제초제가 우리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식수를 손상시키며, 농장 근로자와 소비자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가 이러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식품의 구매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i) 유기 농업은 캘리포니아주 농업의 중대한 부분으로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많은 유기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기농 인증 경작지 넷 중 하나는 거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기농업은 연간 20퍼센트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j) 유기농 재배 농부가 유전자 조작 종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농부의 농작물이 많은 유전자 조작 농작물이 있는 이웃 농지로 인해 우발적으로 오염되는 위기에 처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오염의

36

37

위험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유기농작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져 유기농 산업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의 유기농 농부들과 유기농 식품 산업에 피해를 입히면서 생산된 식품의 구매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k) 유전자 변형 식품을 "천연", "자연에서 만든", "자연에서 기른" 또는 "순수 자연" 등의 단어를 사용해 라벨을 부착하고 광고 및 마케팅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제2항. 취지 성명서

본 법안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이 구매하고 섭취하는 식품이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천연 식품이라는 잘못된 표시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권리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

제3항. 제6.6조(제110808항 이하)가 보건 및 안전법 제 104부 제5편 제5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6.6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알 권리 법

110808. 정의

다음의 정의는 본 조의 목적으로만 적용된다:

(a) 상업적으로 경작. "업적으로 경작"은 한 사람이 사업이나 무역 과정에서 기르거나 재배해서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b) 효소. "효소"는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에 촉매 작용을 하고 반응이 완료된 후에도 스스로 파괴 또는 변형되지 않는 단백질을 의미한다.

(c) 유전자 변형. (1) "유전자 변형"은 다음의 적용으로 유전 물질이 변형된 생물에서 생산된 식품을 의미한다:

(A) DNA 재조합 기술과 세포 또는 세포 기관 내 핵산 직접 주입을 포함한 시험관 핵산 기술, 또는

(B) 원형질체 융합을 포함한 세포 융합 또는 기증 세포/원형질체가 자연적 증식이나 재조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분류과에 속하지 않게 되는 자연적 생리, 생식 또는 재조합 장벽을 극복하는 교배 기술.

(2) 이 호의 목적 상:

(A) "생물"은 복제, 생식 또는 유전 물질 이동이 가능한 생물체를 의미한다.

(B) "시험관 핵산 기술"은 극소 주입, 극대 주입, 화학 천공법, 전기 천공법, 미세캡슐화 및 리포솜 융합 등을 통해 생물체 밖에서 준비된 유전 물질을 생물에 직접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벡터 시스템 및 기술을 이용하는 DNA 또는 RNA 재조합 기술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외의 식품을 의미하며, 통조림 제조, 훈제, 압착, 조리, 냉동, 건조, 발효 또는 제분 등의 가공 처리를 한 농산물로 만든 모든

식품도 포함된다.

(e) 가공 보조물. "가공 보조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지만 최종 형태로 포장되기 전에 해당 식품에서 제거되는 물질;

(2) 가공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고 식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변형되며, 자연 상태에서 해당 식품에서 발견되는 성분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물질; 또는

(3) 가공 과정에서 기술적 또는 기능상 효과를 위해 식품에 첨가되지만 최종 식품에 미미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최종 식품에서 기술적 또는 기능상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물질.

(f) 식품 시설. "식품 시설"은 제113789항에 기술된 의미를 뜻한다.

110809. 식품 유전자 변형에 관한 공개

(a) 2014년 7월 1일부터 소매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식품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잘못된 상표 표시가 된다:

(1)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해서 제공되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유전자 변형"이라는 단어를 해당 상품의 포장 앞면에 명확하고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따로 포장하거나 상표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를 위해 해당 상품을 진열하는 소매점의 진열대나 상자에 라벨을 부착한다;

(2)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 포장 앞면이나 뒷면에 "부분적으로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 또는 "부분적으로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 있음"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고 잘 보이게 표시한다.

(b) 본 항 제(a)호와 제110809.2항 제(e)호는 유전자가 변형된 모든 성분의 기재나 증명을 요구하거나 "유전자 변형"이라는 단어를 일반 제품명이나 식품의 주요 제품 수식어 바로 앞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10809.1.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을 "천연"으로 잘못된 상표 표시

제110809항에 규정된 모든 공개 요건 외에도 식품이 제 110808항 제(c)호 또는 제(d)호의 정의를 충족하고 제 110809.2항에 의거해 라벨 부착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식품이 소매점의 마크에 동반된 라벨 또는 광고나 판촉물에 해당 식품이 "천연", "자연에서 만든", "자연에서 자란", "순수 자연"임을 또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의도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해당 식품은 캘리포니아주에 존재할 수 없다.

110809.2.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 표시—면제

제110809항의 요건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그 자체가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동물만으로 구성되거나 그런 동물에서 전적으로 유래된 식품으로 해당 동물이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 사료를 먹었거나 주입당했거나 유전자 공학 수단을 통해 생산된 약물을 주입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b)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유전자 변형 종자나 식품

37

사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르고, 재배했거나 생산한 농산물에서 유래한 식품.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이나 식품에 관해 제110809항 제(a)호의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상품이나 식품을 자신에게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상품이나 식품이 (1)고의로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았고; (2)언제든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는 식품과 분리되었고 고의로 혼합되지 않았다는 선서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식품이 앞의 문장에 기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선서 진술을 제공 시 앞의 문장에 기술된 확인서를 포함하고 있는 자신의 공급업체에서 받은 선서 진술에 의지할 수 있다.

(c) 한 가지 이상의 유전자 변형 가공 보조물 또는 효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110809항에 해당하는 모든 가공식품.

(d)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9부(제23000항 이하)에 기술된 알코올성 음료 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에 해당하는 모든 알코올성 음료.

(e) 2019년 7월 1일까지 한 가지 이상의 유전자 변형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110809항에 해당하는 모든 가공식품으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1) 이러한 어떤 성분도 해당 가공식품 전체 중량의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2) 해당 가공식품에 이러한 성분이 10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f) 독립기관에서 식품이 고의로 유전자 변형 종자나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생산되거나 그와 혼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판단이 당국이 채택한 규정에서 승인한 샘플링 및 테스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식품.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와 런던곡물거래협회(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GAFTA) 등의 국제 공인 기관이 권고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링 계획에 따라 샘플링이 실시되지 않는 한 어떤 샘플링 절차도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이 아닌 경우 어떤 테스트도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식품의 특정 DNA 배열 및 특정 단백질 탐지, 확인 및 정량화를 위한 수행 기준 및 검증 가이드라인"(CAC/GL 74 (2010))에 부합하고; (2) 어떤 DNA도 탐지할 수 없는 가공식품의 테스트에 의존하지 않는다.

(g)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법(Organic Food Products Act)과 그에 따라 미국 농무부에서 공포한 규정에 의거해 "유기농" 판매를 위해 라벨 부착, 마케팅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식품.

(h)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1) 사람이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공식품 또는 (2) 식당에서 또는 사람이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의 판매에 주로 종사하는 식품 시설에서 접대, 판매 또는 제공되는 식품.

(i) 식품 형태의 약제.

110809.3. 규정 채택

농무부는 본 조의 시행 및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제110809.2항에 명시된

예외사항 이외의 예외를 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0809.4. 시행

제8장 제4조(제111900항 이하)에 의거한 조치 이외에도 제110809항 또는 제110890.1항의 위반은 민법 제1770항 제(a)호 제(5)목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민법 제3부 제4편 제1.5권(제1750항 이하)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위반 혐의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거나 이에 대한 의존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0809항에 규정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제110809.1항에서 금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은 최소한 위반 혐의가 있는 각 포장이나 제품의 실제 또는 제공 소매가격 만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된다.

제4항. 시행

보건 및 안전법 제111910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11910. (a) 제111900항의 조항이나 법령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본 항에 의거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은 심리 시 재판권을 가지며 제출된 소송 이유에 대해 제6.6조(제110808항 이하) 또는 제5장 제7조(제110810항 이하)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제지하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모든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권 제3장(제525항 이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거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적절한 구제책이 부족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나 손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거나 개인의 고유하거나 특수한 손해나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 제(a)호에 규정된 금지 명령 이외에도 법원은 해당 사람, 조직 또는 단체에 법원이 결정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수사 및 기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c) 본 항은 농무부와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제111900항 또는 법의 다른 조항에 의거해 본 장을 시행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5항. 부당 표시

제110663항이 보건 및 안전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10663. 라벨 부착이 제110809항이나 제110809.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식품은 부당 표시된 것이다.

제6항. 가분성

본 발의안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화되거나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 무효 조항 또는 위헌 조항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의안의 다른 조항 또는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본 발의안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제7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 발의안은 본 발의안의 조항에 해당되는 미가공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덜 엄격하거나 완전한 라벨 부착을 제시하는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이나 규정의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8항. 발효일

본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10항 제(a)호에 의거한 법 제정 즉시 발효된다.

제9항. 충돌 법안

동일한 주 광역 선거에서 제기된 다른 법안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 판매 및/또는 라벨 부착에 관한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다른 법안의 조항에 유권자들이 찬성한다면 본 법률의 조항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법안의 조항이 본 법안의 요건 충족을 방해하거나 면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법안의 조항이 본 법률의 조항 준수를 방해하거나 면제하고 본 법률이 더 많은 수의 찬성 표를 득표하는 경우, 본 법률의 조항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법안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제10항. 개정

본 발의안은 입법부에 의해 수정될 수 있지만 각 의회에서 삼분의 이 이상의 득표로 통과된 법령에 의해 그 취지 및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수정된다.

발의안 제38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교육법, 형법 및 세입 및 과세법의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에 취소선이 인쇄되며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및 조기 교육 투자 및 공채 채무 삭감법

제1항. 제목

본 법안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및 조기 교육 투자 및 공채 채무 삭감법"으로 칭한다.

제2항. 배경 및 목적

(a) 캘리포니아주는 우리 아이들과 주의 미래에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각 학생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전국 46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급 정원 수로 이 분야에서 50개 주 중 최하위인 50위를 기록하고 있다.

(b) 최근의 예산 삭감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교들은 더 하위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캘리포니아 학교 예산은 2백억 달러 이상 삭감되었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으며 40,000명 이상의 교사가 해고되었다.

(c) 또한 우리는 여러 연구에서 최선의 교육 투자 중 하나로 확인된 유아기 발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공립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3-4세 유아격 유아의 40퍼센트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극빈층 영유아의 5퍼센트만이 유아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d) 우리는 더 많은 영유아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아이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학교와 유아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국가 경제와 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계경제에서 경쟁할 수 없다. 고숙련 노동력이 없다면 우리의 주는 직업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e)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때이다. 미봉책이 아니라 우리 주와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교에 진정한 혁신적 투자를 할 때이다. 본 법률은 학교가 수준 높은 인문학, 음악, 체육,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및 직업 및 기술 교과 과정과 더 적은 학급 정원수, 학교 도서관, 양호교사 및 상담교사를 포함해 각 학생의 대학 진학과 직업 준비를 지원하는 균형잡힌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준다.

(f) 본 법률은 신규 자금을 학교 개선에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새크라멘토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학부모, 교사,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사,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각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g) 모든 학교를 혁신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본 법률은 차터 스쿨, 카운티 스쿨,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지역 학교에 신규 자금이 지원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신규 자금은 교육구 본부가 아니라 지역 학교에 충당되는 자금으로 학생당 기준으로 모든 지역 학교에 배분될 것이다.

(h) 본 법안은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책임지게 한다. 운영위원회는 자금 지출을 통해 어떻게 교육적 성과를 개선했는지와 지출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어떤 결과를 달성했는지 보고하여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돈이 현명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i) 본 법률은 관리 비용에 지출되는 신규 자금이 1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학교에서 신규 자금을 급여와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j) 본 법률은 유아기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높이고 등교 가능한 학생 수를 확대함으로써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k)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우리는 더 좋은 학교와 제대로

37
38

교육을 받은 인력이 우리 주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학교 개선과 유아기 교육 비용을 모두 분담해야 한다.

(l) 우리 주의 학교와 유아기 교육 프로그램은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추가 예산 삭감을 허용하기 보다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모든 아이들과 교실에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하고 이러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동참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주의 학교를 혁신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m) 본 법안은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여 최고 소득자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는 차등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할 자금을 확보한다.

(n) 본 법안 발효 후 첫 4년 동안은 아래 기술된 대로 자금의 60퍼센트를 K-12 학교에 지원하고 10퍼센트는 유아기 교육에 30퍼센트는 주의 부채를 삭감하고 신규 교육 투자를 방해하는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2017년부터 나머지 8년 동안은 자금 100퍼센트 모두를 K-12 및 유아기 교육 기금 확대에 사용하게 된다. 세입의 불안정한 변동을 막고 필요한 학교 및 유아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1인당 개인소득 성장율을 초과하는 세입은 기존 교육 공채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주가 학교와 유아 교육시설을 건설하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신규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o) 본 법안을 통해 확보한 모든 신규 자금은 지역 학교, 유아 보육 및 교육, 학교 공채 부채 이자 및 원금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신탁 기금에 보관할 것이다. 입법부와 주지사는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금이 공정하게 모든 지역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는 학생당 배분 제도를 변경할 수도 없다.

(p) 그러나 본 법안에는 감시, 감사 및 공개를 요구하는 효과적인 책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학교 예산이 투명해지고 모든 학교의 예산 사용 내역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 본 법률의 분배 또는 배분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q) 본 법안은 또한 유권자가 재찬성하지 않는 한 12년 후에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책임감을 한층 더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신규 자금으로 실제로 교육 성과를 개선했는지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됨과 동시에 유권자들이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게 된다.

(r) 본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가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본 발의안이 즉시 전면 시행되는데 주정부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극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이 본 법률이 제공하는 교육 투자의 혜택을 모두 누리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의안은 2단계로 시행된다. 2016-17년 회계연도까지 첫 4년간의 회계연도 동안은 자금의 30 퍼센트인 약 30억 달러를 주정부의 학교 공채 및 기타 공채 부채의 이자 및 원금 청산에 충당해 이 금액을 아동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에 중요한 다른 예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재원으로 확보한다. 2017-18년 회계연도부터는 본 발의안이 전면 시행되어 자금의 100퍼센트 전부가 신규 자금으로 발의안 제98호 또는 K-12 교육이나 유아기 프로그램을 위한 다른 현 자금을 대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시 자금의 70 퍼센트를 본 법률이 요구하는 학교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확대에 사용하고 4년 후에는 전체 자금 100 퍼센트를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데 사용한다.

제3항. 목적 및 취지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본 법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학업 성과, 졸업률, 직업, 대학, 인생 준비,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당 자금을 확대함으로써 차터 스쿨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강화 및 지원.

(b) 빈곤가정 및 위기 아동을 위한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재원을 회복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의 아동 교육 강화 및 지원.

(c) 공립 교육 자금의 사용에 관한 책임성, 투명성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d) 본 법률로 발생하는 세입이 K-12 교육 활동에 사용되도록 보장;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 및 교육 확대 및 강화; 본 법안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와 상황 하에서 주정부의 현 교육 공채 부채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정부의 전반적 회계 상태를 강화하고 교육 시설에 대한 충분한 미래 투자 장려.

(e) 본 법률로 발생하는 세입은 주정부의 기존 K-12 교육 또는 보육 및 교육 자금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보장.

(f) 입법부가 본 법률로 발생하는 세입을 다른 목적으로 차용 또는 전용하거나 지역 학교에 기금 사용처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보장.

제4항. 제9.7편(제14800항 이하)이 교육법 제1권 제1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9.7편.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유아 교육 투자 및 공채 부채 삭감법

14800. 본 편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유아 교육 투자 및 공채 부채 삭감법으로 칭한다.

14800.5. 본 편, 그리고 제1권 제1부 제6편 제1.8장(제 8160항 이하)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 "지역 교육기관(LEA)"에는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독립 공립 차터 스쿨 운영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청각장애아 학교와 시각장애아 학교를 포함한 주정부 직접

교수법 서비스 운영위원회가 포함된다.

(b) "K-12 학교" 또는 "학교"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을 입학시키고 LEA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차터 스쿨, 카운티 스쿨 또는 장애아 학교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편의 "유치원"이라는 용어에는 전환기 유치원이 포함된다.

(c) "보육 및 교육(ECE)"은 프리스쿨 및 신생아부터 유치원 연령 아동까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의 의미하며 아동에게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부모와 양육자의 보육 및 교육 역량을 강화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양쪽 모두를 포함한다.

(d) 2013-14학년도 "재학생 수"는 2012-13학년도에 보고된 10월 재학생 수로 과거 3년간의 10월 재학생 수 평균 증감율을 의미한다. 그 이후 학년도의 "재학생 수"는 제 46305항에 따라 계산된 이전 학년도의 평균 월간 실제 재학생 수 또는 제46305항의 수치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학년도의 10월 재학생 수로 과거 3년간 재학생 수의 평균 증감율을 의미한다. 각 LEA의 재학생 수는 모든 LEA 관할 학교 재학생 수의 합계이다. 주 전체 재학생 수는 모든 LEA 재학생 수의 합계이다.

(e)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졸업률, 직업, 경력, 대학 및 인생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LEA 관할 학교 운영위원회의 공청회 승인을 받아 다음 목적을 위해 K-12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지출을 의미한다.

(1) 인문학, 체육,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역사, 윤리, 경제, 영어 및 외국어, 기술 교육, 직업 교육 또는 경력 교육 지도.

(2) 학급 정원수 축소.

(3) 학교 현장의 상담교사, 사서, 양호교사 및 기타 지원인력 충원.

(4) 수업일수 또는 수업년수 연장, 썸머스쿨, 프리스쿨, 방과후 프로그램 및 개인교습을 통한 학습시간 연장.

(5) 영어 학습자,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아동을 위한 추가적 사회 및 학업 지원.

(6)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발달을 위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 교육 모델.

(7) 학생의 성공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학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확대.

(f) "CETF 자금"은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1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 예탁된 세입과 최초 배분까지의 해당 자금의 모든 이자와 재배분되기 전까지의 징수된 자금의 모든 이자를 의미한다.

(g) "교육감"은 교육부 교육감을 의미한다.

14801. (a)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CETF)은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창설된다. CETF 자금은 위탁되며, 정부법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본

법률에 기술된 용도로만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b)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으로 옮기고 배분된 CETF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 B조의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 지출금이 아니다. CETF 자금은 본 법률의 목적으로만 위탁되고 일반기금 수입 또는 세금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 XVI조 제8항에 따른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제IV조 제12항 또는 제XVI조 제20항의 조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c) CETF 자금은 본 법안에 기술된 목적으로만 배분되고 사용되며 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CETF 자금은 제14813항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도 일반기금 또는 다른 어떤 기금, 사람 또는 단체에 이전되거나 대출되지 않는다.

(d) LEA에 배분된 CETF 자금과 CETF 교육감은 2012년 11월 1일 현재 K-12 학교와 보육 및 교육에 위탁된 기금을 보충하며 생계비 변화 및 가용 연방 기금 하락에 따른 조정을 거쳐 해당일 현재 본 목적을 위해 충당된 1인당 주정부, 지역 또는 연방 기금 수준을 대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K-12 교육 제도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CETF 이외의 자금에서 충당된 금액은 헌법상 규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률에 따라 배분된 자금의 결과로 축소되지 않는다.

14802. (a) 이에 따라 모든 CETF 자금의 배분과 사용을 감시하고 회계 책임을 담당할 회계감독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회계감사관, 주 감사관, 재무장관, 법무장관, 재무국장이다. 회계감독위원회는 CETF 자금이 본 편에 기술된 대로 정확하게 분배되고 본 편에 기술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독위원회, 회계감사관,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 관리 교육감에 의해 발생한 실제 비용은 CETF 자금으로 충당하지만 해당 비용이 3년간 기금에 예탁한 전체 세입의 0.3퍼센트, 즉 연간 평균 0.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016-17회계연도 말까지 본 항에서 승인한 비용의 30퍼센트를 제14802.1항에 따라 제공된 임시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본 항에서 승인한 비용의 60퍼센트는 제14803항에 따라 K-12를 위해 확보한 자금에서 공제하며 10퍼센트는 제14803항에 따라 ECE를 위해 확보한 자금에서 공제한다. 그 후에는 제14803항에 따라 본 항에서 승인한 비용의 85퍼센트는 K-12를 위해 확보한 자금에서 공제하고 15퍼센트는 ECE를 위해 확보한 자금에서 공제한다.

(c) 회계감독위원회는 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대로 비상 규정을 포함한 이러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14802.1. (a) 2016-17회계연도 말까지 회계감사관은 본 항에 규정된 대로 CETF 자금의 30퍼센트를 배정하고 나머지를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따라 배정한다. 그 후에는 모든 CETF 자금을 제14803항, 14804항, 14805항, 14806항 및 14807항에 따라 배정한다.

(b) 2016-17회계연도 말까지 "CETF 자금"이란 용어는 제14803항에 사용된 대로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8항에 따라 배정된 CETF 자금의 70퍼센트를 언급하고 "임시 지원 자금"은 본 항에 따라 배정된 CETF 자금의 30퍼센트를 언급한다.

(c) 2016-17회계연도 말까지 분기별로 회계감사관은 제14813항에 따른 배정을 위해 동일 항에 의해 설립된 교육 채무 변제 기금에 대한 임시 지원금의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고 배정한다.

14803. (a) 본 법률의 발효일 후 온전한 첫 두 회계연도 동안 회계감사관은 CETF 자금의 85퍼센트를 지역 K-12 학교 교육 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확보하고 CETF 자금의 15퍼센트는 본 법률에 기술된 금액과 방법으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제공하도록 교육감에게 배정하기 위해 확보한다. 이러한 자금에서 제14802항 제(b)호에 따른 실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제14804항에 의거한 "가용 수입"으로 간주한다.

(b) 자금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CETF 자금은 본 법률 발효일 후 온전한 첫 두 회계연도 이후 각 회계연도마다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 (A) 2015-16회계연도를 시작으로 2017-18회계연도 이외의 매 회계연도에는 회계감독위원회가 과거 5년간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평균 소득 성장률을 결정해서 이 성장률을 바로 이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서 LEA와 교육감에게 배분됐던 CETF 자금에 적용한다.

(B) 2017-18회계연도에는 제14802.1항 제(a)호에 의해 제공된 임시 지원 자금을 K-12 학교 및 ECE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지원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시작 시 회계감독위원회가 과거 5년간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평균 소득 성장률을 결정해서 이 성장률을 바로 이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서 LEA와 교육감에게 배분됐던 CETF 금액의 1.429배로 적용한다.

(2) 제(1)목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서 제14802항 제(b)호에 따른 실제 비용을 제한 금액을 제14804항에 의거한 "가용 수입"으로 간주하며 당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분기별로 LEA와 교육감에 배분하는 데 사용된다.

(c) 가용 수입을 초과하는 CETF 자금은 제14813항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배분된다.

(d) LEA에 배분된 모든 CETF 자금은 수령 후 1년 이내에 LEA에 의해 지출되지만 LEA가 이 자금의 10퍼센트 이하를 다음 학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원래의 1년 동안 지출하지 않은 모든 자금과 다음 해로 이월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모든 자금을 징수한다. 징수된 모든 자금은 가용 수입으로 간주되며 다른 가용 수입과 합산되어 제14804항에 따라 재배분된다.

14804. (a) 분기별로 회계감사관은 가용 수입의 15퍼센트를 교육감이 제6편 제1.8장(제8160항 이하)에 규정된 방법과 액수대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제공하도록 이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고 배분한다.

(b) 분기별로 회계감사관은 제14805항에서 14807항까지의 각 항에 따라 산출된 액수대로 LEA 교육구 내의 각 K-12 학교에 지출하도록 배정된 가용 수입의 85퍼센트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고 LEA에 배분한다.

(c) 본 항과 제14802.1항, 제14803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은 법률적 조치 없이 자동 이행된다. CETF 자금과 임시 지원 자금은 입법부나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에 따른 연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지사나 입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실패에 따라 자금의 분배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805. 제14804항 제(b)호에 따라 분기별로 LEA에 배분된 가용 수입 중 70퍼센트를 회계감사관이 학생당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배분한다. 각 LEA에 배분되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 LEA의 교육구에 따라 각 K-12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a) 회계 감사관은 다음의 세 가지 학년 분류 각각에 대해 일관적인 주 전체 학생당 보조금을 설정한다: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각 학년("K-3 보조금"), 4학년부터 8학년까지 각 학년("4-8 보조금"),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9-12 보조금").

(b) 세 가지 일관적 보조금은 각 학년 분류별 주 전체 총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당 4-8 보조금액은 K-3 보조금액의 120퍼센트이고 학생당 9-12 보조금액은 학생당 K-3 보조금액의 140퍼센트이다.

(c) 각 LEA는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각 학년의 재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K-3 보조금을 받고, 4학년부터 8학년까지 각 학년의 재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4-8 보조금을 받으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의 재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9-12 보조금을 받는다.

(d) 이러한 각 학생당 보조금은 재학생 수로 LEA에 해당 보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 해당 K-12 학교에 할당된다.

(e) 제(a)호와 제(b)호에 규정된 학년 조정이 재학생 수에 따른 모든 K-12 학교에 대한 재학생 수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자금의 동등한 학생당 배분에서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이다.

14806. 제14804항 제(b)호에 따라 분기별로 LEA에 배분된 가용 수입 중 18퍼센트를 회계감사관이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으로 배분한다. 각 유자격 LEA에 배분되는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 그리고 LEA 교육구 내 각 K-12 학교에 할당된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a) 미 농무부에서 연방 Richard B를 시행하기 위해 수립한 소득 자격 기준에 따라 무료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모든 주 전체 K-12 학교의 총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1966년 러셀 전국 학교 급식법 및 연방 아동 영양법(Russell National School Lunch Act and the federal Child Nutrition Act of 1966)("무료 급식 유자격 학생")에 따라 회계감사관은 해당 저소득 학생에게 추가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관적인 주 전체 학생당 보조금을 설정한다.("저소득 학생당 보조금")

(b) 각 LEA는 무료 급식 유자격 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을 받는다.

(c) 각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은 재학생 수로 LEA에 해당 보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 해당 K-12 학교에 할당된다.

14807. 제14804항 제(b)호에 따라 분기별로 LEA에 배분된 가용 수입 중 12퍼센트를 회계감사관이 학생당 기준으로 연수, 기술 및 수업 교재 보조금에 배분한다. 각 LEA에 배분되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 LEA의 교육구에 따라 각 K-12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a) 회계감사관은 주 전체 모든 K-12 학교의 총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K-12 학교 교직원들의 교육 기술 향상과 최신 기술 및 수업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일관적인 주 전체 학생당 보조금을 설정한다.("연수, 기술 및 수업 교재 보조금" 또는 "3T 보조금").

(b) 각 LEA는 LEA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유 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3T 보조금을 받는다.

(d) 이러한 각 학생당 3T 보조금은 재학생 수로 LEA에 해당 보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 해당 K-12 학교에 할당된다.

14808. (a) 제(c)호 제(2)목에 규정된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따라 LEA에서 수령하는 자금은 제14805항 제(d)호, 제14806항 제(c)호, 제14807항 제(c)호 각각에 따라 할당된 해당 K-12 학교에서만 사용되고 부과되며 본 항에서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b) 교육 프로그램 및 저소득 학생 보조금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거나 3T 보조금에 허용된 목적으로 모든 학교 3T 보조금의 총 200퍼센트까지 사용될 수 있다. 3T 보조금은 최신 수업 교재 및 기술을 습득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 졸업률, 직업, 경력, 대학 및 인생 준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사의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c) (1) 제(2)목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14805항에서 제14807항까지 각 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자금은 K-12 학교 현장에서의 직접적 서비스 또는 자료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학교나 학생들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자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수를 지급받는 시간의 최소한 90퍼센트를 물리적으로 학교에 출근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전임 인력, 그 시간을 물리적으로 학교에 출근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 또는 LEA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 관리 비용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2) (A) 각 LEA 운영위원회는 수령하는 각 학생당 보조금에서 동일한 비율로 본 편의 공청회, 감사, 예산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제된 자금은 2년간 수령한 총 보조금의 2퍼센트, 즉 연간 평균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 교직원이 현장에서 또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외부에서 제공되는 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비용은 외부 제공이 현장 제공보다 더 비용효과적일 경우 학생당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d) 어떤 CETF 자금도 2012년 11월 1일 현재 해당 인력 또는 인력 범주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을 초과하는 해당 인력 또는 인력 범주의 급여 인상 또는 복리후생 확대에 사용될 수 없지만 본 법률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직위는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급여 및 복리후생 인상분을 CETF 자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간제 또는 전일제 비율 기준으로 다른 동일한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인상분을 수령할 수 있다.

14809. LEA에 대한 분기별 CETF 배분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독위원회는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명시된 자금 지원 범주에 따라 자금을 수령한 각 LEA와 해당 LEA 내 각급 학교에 할당된 금액의 목록을 작성한다. 위원회는 적당한 장소에서 이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교육감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이 온라인 목록의 링크를 게시한다.

14810. 입법부와 주지사 또는 학교에 관할권을 가진 LEA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그 어떤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도 해당 학교의 CETF 자금 사용처를 지시할 수 없다. 각 LEA의 운영위원회만이 단독으로 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만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a) 매년 운영위원회는 직접 또는 적합한 대리인을 통해 학부모, 교사, 관리자, 기타 교직원 및 학생 등 적절한 관계자("학교 커뮤니티")와 함께 교내 또는 학교 근처에서 CETF 자금의 사용처와 이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b) 공청회 후 LEA 또는 그 적합한 대리인은 학교 커뮤니티가 LEA의 권고안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교내 또는 학교 근처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 때 사용할 CETF 자금 사용에 관한 서면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

(c) 운영위원회는 CETF 자금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 매년 자금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는 제안된 CETF 자금 지출로 교육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과 위원회가 성과 개선 여부를 판단한 방법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설명해야 한다.

14811. (a) CETF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각 LEA는 해당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야 하며 이 계정은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 계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각 LEA는 제14805항에서 14808항까지 각 항에 따라서만 해당 계정에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해야 한다.

(b) 다른 모든 법적 요건 외에도 학군에 요구되는 독립 재무 및 준법 감사를 통해 CETF 자금이 본 편에서 요구한 대로 적절하게 분배되고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이 학군의 감사 요건에 추가되며 제14504항에 따라 회계감독관이 매년 검토하고 감시하는 감사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c) LEA는 학군 내 각 학교에서 CETF 자금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었고 제14810항에 따라 지출의 목표가 학교 커뮤니티에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수립한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에 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서를 매년 각 학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교육감은 본인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제공하여 커뮤니티 구성원 및 연구자들이 LEA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정부 내 어디서나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812. (a) 2012-13학년도부터, CETF 기금 수령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본 법률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각 LEA의 집행 위원회는 LEA의 재판권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 예산을 작성해 온라인 상에 게시해야 하며 이같은 예산은 이전 회계연도 해당 학교의 실제기금과 지출을 당해 회계연도 해당 학교의 예산 기금과 지출을 비교하여 나타내야 한다. 교육감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2012-13학년도까지 현재와 과거 학년도에 대해 주정부 내 어디서나 커뮤니티 구성원 및 연구자들이 그러한 예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예산에는 본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모든 기금의 출처 및 금액 그리고 이러한 기금이 각 출처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예산은 교육감이 디자인 및 승인한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지출은 학생 당 전체 지출, 평균 교사 급여별, 그리고 수업, 수업 지원, 행정관리, 유지관리 및 기타 중요한 카테고리별로 보고해야 한다. 주 교육부는 각 학군 및 학교가 적절한 카테고리별로 일관되게 지출을 보고하고 학교와 학군 지출을 일관되게 구별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행을 확인해야 한다. 또 예산에는 직원의 수, 유형 및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구별한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일체의 개인 신분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실제 급여와 수당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각 K-12 학교의 경우 제64001항의 제(d)호, 제(f)호 및 제(h)호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단일 학교 계획서에 이같은 기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b)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서 할당 받는 기금은 학생들에게 현재 다른 주, 지역 및 연방 자금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2013-14년 회계연도부터, LEA는 본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것 이외의 다른 기금을 사용하여 물가 변동분 반영 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지출을 최소 2012-13년 회계연도 학생 1인당 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해당 학교의 "노력 목표치 유지"라고 부른다. 제(a)호에 정해진 일관된 학교 예산에는 2012-13년 회계연도에 학교에서 본 법률에 따라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기금을 사용하여 학생 1인당 지출한 내역에 대한 명확한 명세, 그리고 학교가 연차 노력 목표치 유지를 달성할 경우 현재 학년도의 학생 1인당 지출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느 해에든 LEA가 학교 중 하나에 대해 노력 목표치 유지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LEA는 해당 학교에 대해 해당 학교 현장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제14810항에 의거해 해당 학교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열리는 공개 회의에서 설명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LEA 소속 당국자는 이 회의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 노력 목표치 유지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같은 목표치 달성 실패가 학생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LEA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14813. (a) 제14803항에 의거해 회계감독위원회(Fiscal Oversight Board)가 가용 수입, 그리고 위원회와 감사관의 실제 상환 가능 비용을 모두 초과한다고 결정하는 제14802.1항의 제(a)호에 의거해 할당된 각종 기금과 CETF는 감사관에 의해 분기 단위로,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립하는 교육 채무 변제 기금(Education Debt Service Fund)으로 이전해야 한다. 교육 채무 변제 기금의 자금은 신탁에 보관하며 정부법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본 항에 정해진 배타적인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b) 교육 채무 변제 기금의 자금은 차기 회계연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으로 (1) 학교 시설의 설비 및 기구 장만 또는 그러한 학교 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리스를 포함하여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시설의 건설, 재건축, 복구 또는 대체를 위해 주정부가 발행했거나 발행하는 채권("학교 채권") 또는 (2) 제(c)호가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청소년야동 병원 또는 그 외 다른 일반공채 목적으로 주정부가 발행했거나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채무의 상환, 의무 이행 또는 완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c) 교육 채무 변제 기금으로 이전하는 자금 중에서 감사관은 학교 채권, 청소년아동 병원 또는 기타 일반공채에 대한 일반 기금을 사용한 당해 채무 상환 지급 비용을 상쇄하거나, 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 채권, 청소년아동 병원 또는 기타 일반공채에 대한 의무를 이행 또는 완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일반 기금에 대한 지출 감축분으로 이전해야 한다; 단, 교육 채무 변제 기금의 자금은 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이 먼저 모든 미불 학교 채권에 대한 당해 채무 상환 비용에 대해 일반 기금을 전액 변상하기 전까지는 청소년아동 병원 또는 기타 일반공채에 대한 당해 채무 상환 비용을 상쇄하거나 또는 청소년아동 병원 또는 기타 일반공채에 대한 의무를 이행 또는 완수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전된 기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XVI조 제8항의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XIII B조에 의거해 승인된 일반 기금 조세 수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4814. (a) 회계감독위원회는 각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 대해 독립 감사가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감사 보고서 전문과 감사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요약문을 모두 입법부 및 주지사에게 보고하고 회계감독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쉽게 눈에 띄게 게시하고 감독관의 홈페이지에 보고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쉽게 눈에 띄도록 게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세입 및 과세법의 제17041.1항에 의거해 정해진 개인세 인상분에 따른 모든 수익,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 대한 해당 수익금의 이전 전체, 각 LEA와 LEA의 관할권 내에 있는 각 학교가 해당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기금 액수 목록 및 제14811항의 제(c) 호에 의해 모든 LEA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LEA가 각 학교에서 기금을 사용한 방법과 LEA가 추구하고 달성한 성과를 보여 주는 요약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b) 교육감은 회계감독위원회와 협의해 각 LEA 및 ECE 제공자에게 감사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이나 포맷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c) 기금의 신중한 사용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본 법률의 의도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회계감독위원회는 연례 감사 실시 비용 및 필수 보고서를 작성, 배포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해당 항목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항목의 실제 비용은 제14802항의 제(b) 호에 의거 CETF 기금에서 지불될 수 있다.

(d) 연례 감사를 수행 및 보고하는 과정에서 독립 감사관은 회계감독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 또는 LEA 중 한 곳에서 본 법률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기금을 할당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법무장관 및 일반시민에 보고해야 한다.

(e)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따라 기금의 할당 또는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의도적으로 상기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생 1인당 기준으로 각 LEA 및 각 지역 학교에 기금을 할당 또는 배포하지 않는 직원은 모두 중범죄 유죄에 해당하며 법무장관의 기소 처분을 받게 되고 법무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425항의 제(b)호에 의거 카운티 지역구 검사에 의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카운티의 지역구 검사는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할당 또는 배포된 기금에 대해 형사 처벌과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요구해야 한다.

제5항. 교육법 제4630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46305. 각 초등학교, 고등학교, 통합교육구, 각 독립 차터 스쿨, 카운티 교육사무소 및 주운영 학교는 의무 사항인 모든 다른 출석 데이터와 더불어 교육부가 마련한 양식을 사용하여 교육부 교육감에게 각 수업월별 세 번째 수요일 기준 유효 등록 학생 수와 각 수업월별 세 번째 수요일 기준 실제 출석 학생 수를 보고해야 한다; 단, 해당일이 학교 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바로 전 수업일의 유효 등록 학생 수와 실제 출석 학생 수를 보고해야 한다. 수를 산정하는 날의 "유효 등록 학생 수"는 해당 학교가 수업을 개시한 수업연도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해당 학군의 정상 수업일에 등록된 학생 수에 이후 등록 학생을 더하고, 여기서 수업연도의 첫째 날 또는 본 항에 따라 숫자를 산정한 다음 전날의 바로 다음 첫 수업일 중 나중에 해당되는 날과 숫자를 산정한 날(산정일 포함) 사이에 최소 하루라도 출석하지 않은 모든 학생 수를 제외한 학생 수를 의미한다.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본 항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지역 교육 당국의 행정관리 의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집 날짜 또는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제6항. 제1.8절(제8160항 이하)이 다음과 같이 교육법 제1권 제1부 제6편에 추가된다:

제1.8절. 유아기 품질 개선 및 확대 프로그램

제1조. 총칙

8160. 본 절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또는 "ECE 프로그램"은 모든 주정부 자금 지원 또는 주정부 보조금 지원 프리스쿨, 보육 시설 또는 출생부터 유치원생에 해당되는 유아를 위한 다른 주정부 자금 지원 또는 주정부 보조금 지원 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아동 가족 신탁 기금의 기금을 전체 또는 일부 지원 받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ECE 프로그램이 주기금만을 전적으로 지원 받지 않는 경우 "ECE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를 주정부가 지원함을 의미한다.

(b) "ECE 제공자" 또는 "제공자"는 ECE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허가 받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c) "이용률"은 ECE 제공자가 본 절의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 기금을 신청하고 지원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d) "변제율"은 ECE 제공자가 ECE 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가족들을 대신해 주기금으로부터 받는 아동 1인당 지급금을 의미한다.

(e) "ECE 기금"은 제14803 및 제14804항에 따라 유아 보육 및 교육에 할당된 기금을 의미한다.

(f) "SAE 기금"은 제8161항의 제(b)호에 따라 ECE 프로그램을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용도로 배정된 기금을 의미한다.

(g) "고위험 아동"은 저소득 가정에서 출생했거나, 저소득 위탁가정에서 왔거나, 저소득 그룹 가정에서 왔으며 (1) 위탁 케어를 받고 있거나 아동 보호 서비스에 맡겨졌거나; (2) 본인들도 위탁 케어를 받고 있는 어린 부모의 자녀이거나; 또는 (3) 학대, 방치 또는 이용당했거나, 교육감이 추가 정의하는 바에 따라, 학대, 방치 또는 이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8161. ECE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도록 연단위로 교육감에게 배정된다:

(a) ECE 기금의 최대 23퍼센트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기존 ECE 프로그램이 2009-10년 회계연도부터 2012-13년 회계연도 사이에 각 ECE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된 감축 수준에 비례하여 2008-09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기금 지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용도로 삼억 달러(\$300,000,000)를 사용하되 아래의 적용을 받는다:

(A) 회복은 아동 자격을 축소하거나 변제율을 축소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소시키거나 계약 건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그 외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감소/감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 교육감이 이같은 기금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부(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또는 모든 해당 승계 기관에 할당하도록 정해진 범위까지 기금을 할당한다.

(C) 교육감과 주 사회복지부가 이용률 부족으로 인해 특정 기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기금은 제8168항 제(b)호에 따라 정해진 기준선 품질 변제율을 인상시키는 데 사용한다.

(2)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교육감과 주 사회복지부 또는 해당 승계 기관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2011-12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ECE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싱 검사 빈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 사회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라이선싱국에 오백만 달러(\$5,000,000)를 사용한다.

(3) 주 ECE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아동들의 진척도를 추적하기 위해 제8171항에 정해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구현하는 데 최대 천만 달러(\$10,000,000)를 사용한다.

(4) 제4조(제8167항 이하)에 정해진 조기 학습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QRIS 시스템")을 개발, 구현 및 유지하는 데

사천만 달러(\$40,000,000)를 사용한다.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은 제공자 변제율 또는 그 외 제공자 보상을 늘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스템 설계, 구현 및 평가, ECE 제공자 평가 및 스킬 개발,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타 양질의 훈련 기관이 제공하는 ECE 스킬 개발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대, 데이터 보관 및 분석 그리고 ECE 제공자가 달성하는 품질 수준에 대해 일반시민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5) 제(1)목부터 제(4)목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본 항 시행 당일의 내용으로 제42238.1항 제(b)호에 의거 산정된 인플레이션 조정분에 따라 연단위로 조정한다.

(6) ECE 기금이 제(1)목, 제(3)목 및 제(4)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해에는 해당 목에 정해진 금액을 비례하여 감축한다.

(b) 제(a)호에 정해진 회복 및 시스템 개선 기금을 배정한 후 교육감은 제8160항 제(f)호에 따라 "SAE 기금"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ECE 기금을 본 절에서 정하는 ECE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 목적으로 사용한다.

(c) 교육감에 배정된 ECE 기금은 해당 교육감이 해당 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절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14802항에 의거해 조직된 회계감독위원회는 매년 일체의 미사용 기금을 회수해야 하며 이러한 기금은 다시 ECE 기금의 일부가 되어 본 절에 따라 재배정된다.

8162. (a) 연방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사용하여 수립, 개선 또는 확대된 ECE 프로그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일체의 ECE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자격은 아동이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시점에 1년에 1회 확인한다. 등록을 완료하면 아동은 해당 프로그램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1년에 1회 자격을 재확인할 수 있다.

(b) 2013-14년 회계연도부터 일반 기금의 특정 퍼센트 비율로서 ECE 프로그램에 대한 연차 지출 승인은 본 법률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결과, 2012-13년 회계연도에 ECE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승인된 일반 기금 수입의 퍼센트 비율 이하로 감축되지 않는다.

8163. 교육감은 SAE 기금을 다음과 같이 배정해야 한다:

(a) SAE 기금의 25퍼센트는 본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생부터 3세 사이의 유아를 위한 목적으로 배정한다:

(1) SAE 기금의 최대 1퍼센트는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위한 외주계약 그룹 케어 프로그램에서 변제율을 제8168항 제(b)호에 정해진 품질 변제율 기준선까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배정한다.

(2) SAE 기금의 최대 2½퍼센트는 이용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출생부터 3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ECE 프로그램 및 제공자로 QRIS 시스템에 따른 품질 표준을 개선하거나 제8168항 제(b)호에서 정하는 품질 표준 기준선 이상으로 이미 ARIS 품질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프로그램 및 제공자에 대해 QRIS 시스템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분을 통해 변제율을 2012-13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정한다.

(3) SAE 기금의 21.5퍼센트는 제2조(제8164항 이하)에 따라 수립된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배정한다. 본 목에 따라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배정된 SAE 기금의 최소 35퍼센트는 제8164항 제(d)호에 따라 부모 및 기타 보육자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b) SAE 기금의 75퍼센트는 제3조(제8165항 이하)에 정해진 바에 따라 3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c) SAE 기금의 최대 3퍼센트는 주정부 차원에서 발생한 행정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

(d) ECE 제공자가 SAE 기금으로부터 받는 자금의 최대 15퍼센트는 적절한 프로그램 시설의 용도 변경, 개보수, 개발, 유지관리 또는 렌트 및 리스 비용으로 사용한다. 교육감은 시설을 위한 SAE 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감독 및 조직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을 공포한다.

제2조.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8164. 제8163항 제(a)호 제(3)목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출생부터 3세 사이 아동에 대한 보살핌을 확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한다:

(a) 이 프로그램은 교육감의 지속적인 규제 및 통제 하에 있어야 하지만 미합중국 법전 제42권 제9840a항에 따라 수립된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다. 교육감은 제 8167항에 기술되어 있는 조기 학습 자문 위원회(Early Learning Advisory Council)와의 협의를 통해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최소한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 2011년 11월자로 발효된 모든 내용 및 품질 표준 및 연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감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그 이후의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표준 및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

(b)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금은 현재 출생부터 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다른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에 지출되고 있는 자금 대신 사용될 수 없다.

(c) 교육감은 2011년 11월 현재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단, 등록 최우선권은 제8160항 제(g)호 제(1)목에 정의되어 있는 고위험 아동에게 주어지며 그 다음 우선권은 제8160항 제(g)호 제(2)목에 정의되어 있는 고위험 아동에게 주어지며 그 다음 우선권은 제8160항 제(g)호 제(3)목에 정의되어 있는 고위험 아동에게 주어진다.

(d) 인가를 받은 센터 및 가족 아동 관리 가정에 양질의 그룹 케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그룹 케어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가족 및 보육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그룹 케어 시설과 가정 내에서 영유아들의 보호, 교육 및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부터 3세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부모 및 보육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서비스에는 자율적인 가정 방문, 조기 개발 심사 및 개입, 가족 및 보육자 문해능력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및 보육자 교육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그룹 케어 등록자 가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본 호에 따라 보육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선 순위는 라이선스가 필요없는 가족, 친구 및 이웃 제공자 대상 프로그램에 주어진다.

(e) 교육감은 ELAC와 협의하여 제(d)호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품질 표준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표준 및 교육 규정이 반영된다. 교육감은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에 동일한 표준이 적용되도록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공공 기관들과 조율한다.

(f)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기금은 출생부터 3세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ECE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프로그램은 제(a) 및 제(e)호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유아는 제(c)호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g) 캘리포니아 주 내 어디서든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기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그룹 케어 정원의 최소 75퍼센트는 전일제, 전년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

8165. (a) 제8163항 제(b)호에 따라 3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강화 및 확대할 목적으로 배정된 SAE 기금은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1) SAE 기금의 최대 8퍼센트는 이용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ECE 프로그램 및 제공자로 QRIS 시스템에 따른 품질 표준을 개선하거나 제 8168항 제(b)호에서 정하는 품질 표준 기준선 이상으로 이미 ARIS 품질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프로그램 및 제공자에 대해 QRIS 시스템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분을 통해 변제율을 2012-13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정한다.

(2) 그 나머지 부분으로 전체 SAE 기금의 최소 67퍼센트는 QRIS 시스템에 따라 수립된 2개의 최고 품질 등급을 충족하는 라이선스 획득 또는 K-12 기반 프로그램에서 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를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 교육감은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QRIS가 수립되고 유의한 숫자의 프로그램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기존 지역 QRIS 시스템의 최고 두 단계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 전국 차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전환기 유치원에 적용되는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높은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본 호에 정해져 있는 확대 기금의 사용을 허가하는 임시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QRIS 프로그램 표준은 2014년 1월 1일 이내에 수립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감의 임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충족하는 공급자들은 신규 시스템에 따른 평가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 받는다. 임시 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그 효력을 다하며 임시 인증을 받은 제공자는 기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수립된 QRIS 프로그램 표준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제(2)목에 따라 주 전체에 걸쳐 새로 만들어진 정원의 최소 65퍼센트는 전일, 전체 정원이어야 하며 이러한 정원은 본 절만을 통해서 만들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출처에서 나오는 기금의 결합을 통한 혼합 수입일, 방과후 및 여름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만들 수 있다.

(b) 아동은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년도의 9월 1일자 기준 3세 내지 4세이고 아직 유치원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세부터 5세 사이"이며 따라서 제(a)호 제(2)목에 따라 기금을 제공 받는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166. (a) 교육감은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Bureau)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프리스쿨 확대 기금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의 모든 구역을 소득 기준으로 열거한 목록에 따라 최저 소득 구역부터 시작하여 목록에서 제일 높은 소득 구역으로 나와 있는 구역까지 제8165항 제(a)호 제(2)목에 따라 배정되는 기금("프리스쿨 확대 기금")을 배분한다:

(1) 교육감은 가구 소득의 중앙값 그리고 우편 번호로 정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로 정의하는 구역을 바탕으로 구역을 생성한다. 본 항 전체에 걸쳐 "구역"은 구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를 의미한다. 교육감은 ECE 유효성에 대한 가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나이 기준으로 프리스쿨 확대 기금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며 현재 ECE 프로그램이나 전환기 유치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 및 학군을 연 단위로 파악한다.

(2) 교육감은 각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에서 자격을 충족하지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수를 파악해 해당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군, 라이선스 보유 가족 아동 관리 가정 교육 네트워크("라이선스 보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 센터 기반 (ECE 제공자, 연방 헤드 스타트 또는 기타 연방 ECE 프로그램 제공자("연방 제공자")에게 이러한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프리스쿨 확대 기금 신청을 받도록 한다. 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려면 신청자는 자격 충족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첫 학년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 충족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자격 사항이 동일한 두 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우편 번호 또는 기타 지리적 단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이선스 보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 센터 기반 ECE 프로그램 및 연방 제공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교육감은 공동 신청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격 충족 지역 내 학군, 라이선스 보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 센터 기반 ECE 제공자 및 연방 제공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으로써 모든 프로그램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논쟁은 최소화하도록 독려한다. 자격을 충족하는 학군, 자격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자격을 충족하는 센터 기반

프로그램 및 연방 제공자가 모두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갖춘 아동 또는 모든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교육감은 대안적 자격 충족 지역 교육 기관, 라이선스 보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 센터 기반 ECE 제공자 및 연방 제공자로부터 해당 자격 충족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다. 대안적 자격 충족 제공자를 모색하는 데 있어 교육감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안적 지급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4) 본 절에 따라 수립 또는 확대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프리스쿨에 출석하는 것은 자발적 행위이다. 특정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 내에서 3년 연속으로 자격이 있는 커뮤니티 전체에 걸쳐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제공했으나 채워지지 않은 정원의 경우 거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구역 목록 상 차상위 소득 구역에 제공할 수 있다.

(5) 최소 5년에 한 차례 교육감은 어떤 정원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검토하고 상황 조건이 바뀌어 이제 해당 정원이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까지 일체 구역의 상실한 자격을 회복시킨다.

(b) 아동은 자격에 해당하는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에 거주한다는 사실, 또는 그 가족이 기존 수입 테스트를 거친 ECE 프로그램의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프리스쿨 확대 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단, 등록 최우선권은 먼저 제 8160항 제(g)호 (1)목의 정의에 따른 고위험 아동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 해당 호 제(2)목의 정의에 따른 고위험 아동에게 돌아가며 그 다음, 해당 호 제(3)목의 정의에 따른 고위험 아동에게 돌아간다.

제4조. 캘리포니아 초기 학습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 (California Early Learning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8167. 본 조에서 "초기 학습 자문 위원회(ELAC)는 행정 명령 제S-23-09호에 의거해 수립된 초기 학습 자문 위원회 또는 해당 승계 기관을 의미한다.

8168. (a) 교육감은 2010년 캘리포니아 초기 학습 품질 개선 시스템 자문 위원회(California Early Learning Quality Improvement System Advisory Committee)가 작성한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ELAC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초기 학습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QRIS 시스템)을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수립 및 이행한다:

(1) 프리스쿨 연령 아동, 영아 및 유아를 포함하여 출생부터 5세까지(5세 포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스쿨을 포함하는 모든 ECE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자발적 품질 등급 기준. 품질 등급 기준은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 정서적 개발과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된 ECE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2) ECE 제공자가 QRIS 시스템에 따른 프로그램 품질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평가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

(3) 자신들의 등급을 향상시키거나 QRIS 시스템 하에서 이미 더

높은 등급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ECE 프로그램 및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보충분을 통해 변제율을 2011-12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법.

(4) QRIS 시스템에 의거해 실시되는 프로그램 및 제공자의 품질 등급에 대한 즉각적인 발표를 포함하여 학부모 및 보육자가 자녀가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품질 및 종류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b) 또한 교육감은 ELAC와의 협의를 통해 2012년 11월 1일 기준으로 ECE 프로그램과 관련한 각종 법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 표준에 맞게 ECE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한 변제율 품질 기준선("변제율 품질 기준선")을 수립한다. 현재 변제율 중 변제율 품질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변제율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8161항 제(a)호 제(1)목 제(C)세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일체 기금 또는 18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제8163항 제(a)호 제(1)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일체 기금을 사용하여 해당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

8169. (a) ELAC와 교육감은 지역 계획수립 위원회, First 5 캘리포니아 위원회 및 각 카운티의 First 5 위원회와 협력하여 QRIS, 캘리포니아 주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그리고 제2조(제8164항 이하), 제3조(제8165항 이하) 및 본 조에 따라 수립된 각종 프리스쿨 확대 프로그램을 수립 및 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해당 개인 및 단체는 ECE 시스템의 효율성, 교육 및 개발 효과성 및 커뮤니티 대응성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협력하여 1998년 캘리포니아 주 아동 및 가족법(California Children and Families Act)(보건 및 안전법의 제108편(제130100항 이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을 포함하여 지역, 주, 연방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

(b) ELAC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고 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의 진척도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 한 차례 주정부 내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지역 계획수립 위원회 및 카운티 First 5 위원회와 함께 공동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c) 제8161항 제(a)호 제(4)목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은 본 항에서 정하는 협력 및 회의 소집 활동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8170. (a) 교육감은 본 절에 따라 수령한 자금에 대해 수령 및 지출한 다른 모든 자금과는 별도로 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금을 수령한 ECE 프로그램들의 이름과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품질 등급, 각 프로그램이 수령한 금액, 각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 아동 수, 해당 아동들이 이용한 서비스 유형, 그리고 확인 가능한 경우 달성된 아동 결과물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육감은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해당 보고서를 게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고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다. 이 보고서는 제8236.1항에 따라 발행되는 보고서 내에 포함된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제14814항 제(a)호가 정하는 연례 감사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b) 또한 교육감은 다음 항목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1) ECE 제공자가 품질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약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2) 본 절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모든 ECE 제공자에 대해 일관된 재무 보고 및 연례 독립 감사를 보장한다.

(3) 본 절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 및 조치한다.

8171. (a) 교육감은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E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생부터 5세 사이의 모든 아동에 대해 주 전체 대상 조기 교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Early Education Services Database)의 일환으로 기록 및 유지관리되는 고유한 식별자가 배정되도록 조치한다.

(b) 조기 교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캘리포니아 수직 학생 성취 데이터 시스템(California Longitudinal Pupil Achievement Data System, CALPADS) 또는 출생부터 18세까지 아동의 교육적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학생 레벨 승계 데이터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로 만들어 각 아동의 고유 식별자를 통해 ECE 참여를 포함, 모든 아동의 전체 교육 이력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c) 조기 교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아동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1) 매년 아동의 거주지 우편 번호.
- (2) 매년 아동이 받은 ECE 서비스. 예를 들어, 아동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 프로그램에 다녔는지 여부.
- (3) ECE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 (4) ECE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 (5) 해당 ECE 제공자에 대한 QRIS 등급 및 그 외 확인 가능한 품질 등급.

(6) 확인 가능한 경우 아동의 가정 내 제 1 언어, 능숙도 수준 및 아동이 조기 개입을 위한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의 유치원 준비도 평가.

(d) CALPADS는 제8161항 제(a)호 제(3)목에서 배정된 연단위 금액까지 본 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해 변제받는다.

8172. 교육감은 본 절의 이행을 위해 비상 규정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공포한다.

제7항. 형법 제42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425. (a) 공공 자금의 수령, 안전한 보관 또는 변제지급 임무를 맡고 있는 담당 직원으로, 법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 및 지급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는 중범죄 유죄에 해당된다.

(b) 교육법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의거해 기금의 배정 또는 배포 임무를 맡고 있는 담당 직원으로, 의도적으로 해당 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학생 1인 기준으로 각 지역 교육 기관 또는 각 지역 학교에 기금을 배정 또는 배포하지 않는 자는 중범죄 유죄에 해당하며 법무장관의 기소 처분을 받게 되고 법무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지역구 검사에 의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카운티의 지역구 검사는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법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할당 또는 배포된 기금에 대해 형사 처벌과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요구한다. 본 호 위반에 대해 유죄인 자는 누구나 제18항에 의거해 처벌 받으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모든 공직 보유 자격을 박탈 당한다.

제8항. 제17041.1항이 다음과 같이 세입 및 과세법에 추가된다:

17041.1. (a)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모든 세금에 더해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 지원을 위해 제17041항 제(a)호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는 모든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이로써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한 추가 세금은 아래의 세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 소득 기준 계층 구분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 폭에 대해 제17041항 제(h)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은:
\$7,316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0
\$7,316를 초과하나 \$17,346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7,316 초과분의 0.4%
\$17,346를 초과하나 \$27,37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0에 \$17,346 초과분의 0.7%를 더한 금액
\$27,377를 초과하나 \$38,00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10에 \$27,377 초과분의 1.1%를 더한 금액
\$38,004를 초과하나 \$48,02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27에 \$38,004 초과분의 1.4%를 더한 금액
\$48,029를 초과하나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68에 \$48,029 초과분의 1.6%를 더한 금액
\$100,000를 초과하나 \$2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199에 \$100,000 초과분의 1.8%를 더한 금액
\$250,000를 초과하나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899에 \$250,000 초과분의 1.9%를 더한 금액
\$500,000를 초과하나 \$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8,649에 \$500,000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
\$1,000,000를 초과하나 \$2,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649에 \$1,000,000 초과분의 2.1%를 더한 금액
\$2,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50,149에 \$2,500,000 초과분의 2.2%를 더한 금액

(b)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모든 세금에 더해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 지원을 위해 제17041항 제(c)호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는 모든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이로써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한 추가 세금은 아래의 세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 소득 기준 계층 구분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 폭에 대해 제17041

항 제(h)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은:
\$14,64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0%
\$14,642를 초과하나 \$34,69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4,642 초과분의 0.4%
\$34,692를 초과하나 \$44,72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에 \$34,692 초과분의 0.7%를 더한 금액
\$44,721를 초과하나 \$55,34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0에 \$44,721 초과분의 1.1%를 더한 금액
\$55,348를 초과하나 \$65,376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67에 \$55,348 초과분의 1.4%를 더한 금액
\$65,376를 초과하나 \$136,11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08에 \$65,376 초과분의 1.6%를 더한 금액
\$136,118를 초과하나 \$340,29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40에 \$136,118 초과분의 1.8%를 더한 금액
\$340,294를 초과하나 \$680,58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5,215에 \$340,294 초과분의 1.9%를 더한 금액
\$680,589를 초과하나 \$1,361,17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1,680에 \$680,589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
\$1,361,178를 초과하나 \$3,402,94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5,292에 \$1,361,178 초과분의 2.1%를 더한 금액
\$3,402,944를 초과하는 경우	\$68,169에 \$3,402,944 초과분의 2.2%를 더한 금액

(c)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제(a)호 및 제(b)호에 명시되어 있는 세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 전까지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유효한 과세 소득 기준 계층 구분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 폭에 대해 제17041항 제(h)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단위로 조정한다:

(d) 제(e)호 및 제(f)호에 정해진 바를 제외하고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제17045항 또는 공동 신고와 관련한 승계 조항을 포함하여 본 법의 모든 다른 조항의 목적 상 제17041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간주한다.

(e) 본 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 세금으로부터 파생된 세입 추정치에서 환급금을 제한 금액은 본 법 제19602.5항에 규정된 절차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교육법 제14801항에 의해 수립되고 2012년 12월 1일 이전까지 본 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 세금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 월단위로 입금한다. 본 항에 따라 허가된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이로써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규정 수립 조항(정부법 제2권 제3부 제1편 제 3.5절(제11340항 이하))으로부터 적용 면제된다.

(f) 정부법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은 이로써 회계연도에 무관하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및 조기 교육 투자 및 공채 채무 삭감법(Our Children, Our Future: Local Schools and Early Education Investment and Bond Debt Reduction Act)의 기금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 승인한다.

(g)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지 않으나, 단,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및 조기 교육 투자 및 공채 채무 삭감법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2024년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되는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찬성한 법안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항. 세입 및 과세법 제1960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602. 제17935항, 제17941항, 제17948항, 제19532항 및 제19561항에 따라 징수 및 발생한 금액, 크라코 제19602.5항에 따라 입금된 세입금, 제17041.1항에 따라 징수한 세입금, 제10장(제17001항 이하)에 따라 부과된 금액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수령한 모든 자금 및 송금액, 관련 벌금, 세금 추가분, 그리고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이자는 송금 수령 완료 후 주 재무부에 입금되고 개인 소득세 기금에 추가된다.

제10항. 가분성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본 법안의 모든 조항 또는 모든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본 법률 조항의 적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그 외 다른 측면에서 무효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결정은 본 법률의 나머지 다른 조항 또는 다른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항. 발의의 상충

(a) 본 법안, 납세자 또는 납세자 그룹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개인 소득세를 수정하거나 소매 단계에서 유형의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특권에 대해 소매상에 부과되는 세율을 수정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저장, 사용 또는 기타 소비 목적으로 소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유형의 개인 재산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저장,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 세율을 수정하는 다른 법안은 동일한 주 전체 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되며 기타 법안의 세율 수정 조항 및 해당 세율 수정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는 법의 모든 조항은 본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안이 다른 관련 법안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표를 받는 경우 해당 다른 법안의 세율 수정 조항과 세율 수정 조항에 의해 기금을 지원 받는 해당 법안의 모든 조항은 무효화되며 대신 본 법안의 조항들이 효력을 갖는다.

(b) 제(a)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조항들 사이의 상충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10항 제(b)호에 따라 해결한다.

제 12항. 개정

본 법률은 주 전체 총선을 통한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할 수 없다.

제 13항. 효력 발효일 및 만료일

(a) 본 법안은 제정일 다음 날 발효된다. 본 법안의 각 조항별 유효 일자란 법률 본문에 명시한다.

(b)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1항 제(a)호 및 제(b)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 법률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만료된다. 단, 2024년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되는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과반수 찬성을 통해 본 법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발의안 제39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공공 자원법 및 세입 및 과세법의 조항을 개정, 폐지 및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가 제안된 기존 조항에 취소선어 인쇄되며 제안된 신규 추가 조항은 새로운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캘리포니아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법(THE CALIFORNIA CLEAN ENERGY JOBS ACT)

제1항.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본 문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 캘리포니아주는 심각한 경기 후퇴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백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2) 현행 조세법은 다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기업에게 경쟁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의 다른 주는 이미 "단일 매출 요인"이라고 하는 접근방식 즉, 다주 기업에 대해 매출 중 해당 주 내에서의 매출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세법을 개정했다.

(4) 캘리포니아주가 단일 매출 요인 접근방식을 채택할 경우 입법분석관의 추정에 따르면 주 세입이 연간 최대 \$11억 증가하고 캘리포니아주에 4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5) 또한 세입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즉각적으로 수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을 감소시키고 경기를 진작시키며 에너지에 지출되는 납세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6) 현행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르는 공립 학교에는 추가 세입이 제공될 것이다.

제2항. 제16.3부(제26200항 이하)가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에 추가된다:

제16.3부.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제1절. 총칙

26200. 본 부는 캘리포니아주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법(California Clean Energy Jobs Act)으로 칭하고 인용할 수 있다.

26201. 본 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임금의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한다.

(b)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하는 다른 청정 에너지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 학교 및 공공 건물을 수리 및 현대화하는 작업에 캘리포니아 주민을 고용한다.

(c) 상업 및 거주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새로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d) 가용 기금을 사용하여 최대 수준의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편익을 달성한다.

(e) 기존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을 보충, 보완 및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및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돌아가는 경제 및 에너지와 관련한 편익을 창출한다.

(f) 지출된 비용과 창출된 일자리 및 편익을 모두 빠짐 없이 기록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본 부에 따라 기금을 제공 받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

26205. 다음과 같이 주 재무부에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Clean Energy Job Creation Fund)을 제정한다. 제26208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2016-17년 및 2017-18년에 총 오억오천만 달러(\$550,000,000)를 일반 기금에서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이전한다. 기금 내 자금은 아래 각 항을 모두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정 에너지 창출을 확대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a) 학교 및 공공 시설:

(1) 공립 학교: 공립 학교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장 및 청정 에너지 설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 및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관련 개선안 및 수리 작업.

(2) 공립 대학 및 칼리지: 에너지 효율 개장 및 청정 에너지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및 환경적 편익을 창출하는 기타 시스템 개선 작업.

(3) 기타 공공 건물 및 시설: 공공 시설에 대한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개장 및 청정 에너지 설치 작업을 위한 리볼빙 론, 낮은 이자 대출 또는 기타 재정 지원을 포함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b) 직업 교육 및 인력 개발: 캘리포니아 보존공사(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인증 지역보존공사(Certified Community Conservation Corps), 유스빌드(YouthBuild) 및 기타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불우 청소년, 세대 군인 및 기타 대상자를 교육 및 고용하기 위한 기존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

(c) 공공-민간 협력: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PACE) 프로그램, 또는 상환 요건이 포함된 비용 효과적인 개장을 위한 이와 유사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자금 지원은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감, 지역 및 경제적 형평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른다. 가능한 경우 상환 세입은 일자리 창출 편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리볼빙 론 또는 이와 유사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다.

26206. 일자리 창출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a) 프로젝트 선정과 감독은 에너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주 및 지방정부 기관이 맡아 관리한다.

(b) 모든 프로젝트는 각 프로젝트 유형별로 주 내부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관련 편익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c) 모든 프로젝트는 비용 효과적이어야 한다: 총 편익은 일정 시간에 걸친 프로젝트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 프로젝트 선정에는 에너지 관련 편익뿐만 아니라 건강 및 안전과 같은 비에너지 편익(non-energy benefits)에 대한 고려도 포함시킬 수 있다.

(d) 모든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프로젝트 명세, 비용, 예상 에너지 절감액 등이 명시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e) 모든 프로젝트는 감사 대상이다.

(f) 프로그램 총 비용은 총 지원 기금의 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g) 기금은 에너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분야에 전문성이 입증된 기관에 대해서만 지출 승인해야 한다.

(h) 모든 프로그램은 중복을 피하고 기존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위원회와 조율한다.

(i) 유자격 지출에는 설계, 허가, 자금 조달 또는 기타 프로젝트 완료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애물을 감소시키는 절차의 개발 및 시행과 같이 프로젝트 비용 및 지연의 감소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26208. 재무부와 입법분석관이 공동으로 세입 및 과세법 제 25128항, 제25128.5항, 제25128.7항 및 제25136항의 개정, 추가 또는 폐지로 인한 연간 세입 증가 추정액이 십억 달러(\$1,100,000,000) 미만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연간 세입 증가 추정치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감소시킨다.

제3절. 책임성, 독립 감사, 일반 공개

26210. (a) 시민 감시위원회(Citizens Oversight Board)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b) 위원회는 아홉 명으로 구성된다: 세 명은 재무장관이 임명하고 세 명은 회계감사관이 임명하며, 세 명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각 임명 담당 기관은 다음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성원 한 명씩을 임명한다:

(1) 엔지니어, 건축설계사 또는 기타 건물 건설 또는 설계 분야에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2) 회계사, 경제학자 또는 기타 재무 거래 및 프로그램 비용 효과성 평가 분야에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3) 에너지 효율, 청정 에너지 또는 에너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 분야의 기술 전문가.

(c)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각각 위원회에 참여할 직권의원 구성원 한 명을 지명한다.

(d) 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모두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지출을 매년 검토한다.

(2) 본 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 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금과 완료된 프로젝트 일부에 대한 연차 독립 감사를 위탁 및 검토한다.

(3) 매년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이 빠짐없이 기재된 보고서를 간행하여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시한다.

(4) 본 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기재한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한다.

제4절. 정의

26220. 본 부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청정 에너지"는 제26003항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에너지 관리 또는 효율 개선에 기여하는 장치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b) "위원회"는 제26210항의 시민 감시위원회를 의미한다.

(c) "일자리 창출 기금"은 제26205항에 규정된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을 의미한다.

(d) 프로그램 총비용"에는 본 부에 따른 기금 지원 프로그램의 주 기관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배치가 포함되나 기술 지원, 평가, 측정, 확인 또는 프로젝트 효율성 또는 실적 증가와 관련된 비용 및 지역 단위 시행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된다.

제3항. 세입 및 과세법 제2310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3101. (a) "사업 활동 수행"은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득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b)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가 다음 조건 중 한 개 항목이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과세연도에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1) 납세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직을 결성했거나 상업적으로 거주한다.

(2) 본 주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바에 따라 제 25120항 제(e)호 또는 제(f)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매출이 오십만 달러(\$500,000)와 해당 납세자의 총 매출 실적의 25 퍼센트, 두 가지 중 적은 쪽을 초과한다. 본 목의 목적 상 납세자의 매출에는 해당 납세자의 대리인 또는 독립 하청업자의 매출이 포함된다. 본 목의 목적 상 본 주 내에서의 매출은 제25137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바 대로 제25135항항들 및 제25136항 제(b)호 및 그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여 매출을 배정하는 규칙을 사용해 결정된다.

(3) 본 주 내에서 납세자의 부동산 및 유형의 개인 재산이 오만 달러(\$50,000)와 해당 납세자의 총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25퍼센트, 두 가지 중 적은 쪽을 초과한다.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가치와 재산이 본 주 내에 있는지 여부는 제 25137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바 대로 제25129항부터 제 25131항까지(해당 항 포함)에 명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판단한다.

(4) 제25120항 제(c)호에 정의된 바 대로 납세자가 본 주 내에서 보수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오만 달러(\$50,000)와 해당 납세자가 지급한 총 보수액의 25퍼센트, 두 가지 중 적은 쪽을 초과한다. 본 주 내에서 이루어진 보수는 제25137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바 대로 제25133항 및 그에 따른

규정에 정해진 급여 배정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c) (1)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는 제17041항 제(h)호에 따라 제(b)호 제(2)목, 제(3)목 및 제(4)목에 명시된 금액을 연단위로 조정한다.

(2) (1)목에 규정된 조정의 목적 상 제17041항 제(h)호는 "1988" 대신 "2012"로 대체함으로써 적용한다.

(d) 납세자의 매출, 재산 및 급여에는 패스스루 법인에서 해당 납세자가 갖는 비례적 또는 분배적 지분이 포함된다. 본 호의 목적 상 "패스스루 법인(pass-through entities)"은 파트너십 또는 "S" 기업을 의미한다.

제4항. 세입 및 과세법 제25128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5128. (a)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모든 사업 소득은 사업 소득을 특정 분수로 곱해서 본 주에 배당하며 이 분수에서 분자는 재산 요인에 급여 요인을 더하고 여기에 매출 요인의 두 배를 더한 수이며 분모는 제(b)호 또는 제(c)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이다.

(b) 배당하는 상거래 또는 사업이 한 가지 이상의 자격 충족 사업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금이 그 "총 사업 수입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 거래 또는 사업의 모든 사업 소득은 사업 소득을 특정 분수로 곱해 본 주에 배당하는데 이 분수에서 분자는 재산 요인에 급여 요인을 더하고 여기에 매출 요인을 더한 수이며 분모는 3이다.

(c) 본 항의 목적 상 "자격 충족 사업 활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농업 사업 활동.
- (2) 추출 사업 활동.
- (3) 저축 및 융자 활동.
- (4) 은행업 또는 금융 사업 활동.
- (d) 본 항의 목적 상:

(1) "총 사업 수입금"은 수입금이 제25137항의 운영으로 인해 매출 요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25120항 제(e)호 또는 제(f)호에 기술되어 있는 총 수입금을 의미한다(해당되는 경우 제25110항에 따라 제한되는 제25101항에 따라 소득과 배당 요인을 결합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로 구성된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 내의 매출 또는 기타 거래에서 나오는 총 수입금 제외).

(2) "농업 사업 활동"은 가축, 낙농류, 가금류, 과일, 모피 동물 또는 트럭 농장, 플랜테이션, 목장, 양식장 또는 방목지 등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 사업 활동"에는 농장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 털을 깎는 것, 먹이는 것, 돌보는 것, 훈련시키는 것, 관리하는 것, 농장에서 농작물 또는 원예작물을 미세조 상태로 취급, 건조, 포장, 등급 책정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작물 또는 원예작물을 추수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나 해당 농장의 소유주,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그렇게 취급되는 작물의 절반 이상을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추출 사업 활동"은 원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 원석의 생산, 정제 또는 가공과 관련한 활동을 의미한다.

(4) "저축 및 융자 활동"은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 융자 협회 또는 저축 은행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5) "은행 또는 금융 사업 활동"은 전국 은행들의 사업과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 자금 또는 이자부 자본 거래에 기인하는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6)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은 해당되는 경우 제25110항에 의해 제한되는 제25101항 및 제25120항에 따라 해당 급여, 재산 및 매출 요인 각각에 대해 동일한 분모를 사용하여 사업 소득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별개의 상거래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

(7) 제(c)호 제(4)목은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가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순소득의 균일한 배당을 위한 다주 조세 위원회 공식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식안을 채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채택된 공식과 동일한 발효일에 발효된다.

(8) 해당되는 경우 제25110항에 따라 제한되는 제25101항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저축 협회 또는 기업의 소득과 배당 요인이 의무적으로 결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다음 두 개 항목이 모두 적용된다:

(A) 그룹의 전체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의 "총 사업 수입금"과 관련하여 제(b)호의 50퍼센트 초과 테스트가 적용된다.

(B) 그룹의 전체 사업 소득이 해당되는 경우 제(a)호, 제(b)호 또는 제25128.5항 제(b)호, 제25128.5항 또는 제25128.7항에 따라 배당된다.

제5항. 세입 및 과세법 제25128.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5128.5. (a)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제 25128항 제(b)호에 명시된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을 제외하고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은 제25128항이 아닌 본 항에 의거해서 해당 소득을 배당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원래 시의 적절하게 제출한 신고에 대해 반복 불가한 연단위 선택을 할 수 있다.

(b)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제(a)호에 기술되어 있는 선택을 하는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의 모든 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 소득을 매출 요인으로 곱해 본 주에 배당한다.

(c)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는 제25113항에 따른 선택에 대해 정해진 규칙과 일관성을 갖는 규정을 포함하여 본 항에 따른 선택 결정과 관련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공포할 권한을 갖는다.

(d) 본 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3년 12월 1일자로 폐지된다.

제 6항. 제25128.7항이 다음과 같이 세입 및 과세법에 추가된다:

25128.7.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제25128항 제(b)호에

명시된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을 제외하고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의 모든 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 소득을 매출 요인으로 곱해 본 주에 배당한다.

제7항. 세입 및 과세법 제25136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5136. (a) 제25128.5항이 효력을 갖고 제25128.5항 제(a)호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 연도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와 2011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유형의 개인 재산 매출을 제외하고 매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주에 속한다:

(1) 소득 창출 활동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또는

(2) 소득 창출 활동이 캘리포니아주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수행되고 수행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해당 소득 창출 활동이 다른 어떤 주 보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더 많이 수행되는 경우.

(3) 제25128.5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011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로 본 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을 받는 일체 납세자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본 호가 적용되고 제(b)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b) 2011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1)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의 편익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2) 무형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그 고객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경우 그 매출은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3) 부동산의 판매, 리스, 임대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4) 유형 개인 자산의 임대, 리스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5) (A) 제25128.5항이 유효한 경우 제25128.5항 제(a)호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일체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제(a)호 대신 본 호를 적용한다.

(B) 제25128.5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본 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적용을 받는 일체 납세자에 대해 본 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a)호를 적용한다.

(C) 제(A)세목 또는 제(B)세목에도 불구하고 제23101항 제(b)호 제(2)목의 목적을 위해서는 본 호를 적용한다.

(c)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제(b)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바에 따라 그러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d) 본 항은 2013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대상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3년 12월 1일자로 폐지된다.

제8항. 제25136항이 세입 및 과세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25136. (a)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유형의 개인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제외한 매출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1)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의 편익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2) 무형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유가 증권의 경우 그 고객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경우 그 매출은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3) 부동산의 판매, 리스, 임대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4) 유형 개인 자산의 임대, 리스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b)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는 본 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바에 따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항. 제25136.1항이 세입 및 과세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25136.1. (a) 2013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제25128.7항에 따라 그 사업 소득을 할당 배당하는 유자격 납세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1) 제25137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조건 충족 매출로, 본 항의 적용이 아니라면 제25136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할당될 조건 충족 매출 금액의 50퍼센트를 할당한다. 나머지 50퍼센트는 캘리포니아주에 할당하지 않는다.

(2) 나머지 매출은 모두 제25136항에 따라 할당한다.

(b) 본 항의 목적 상:

(1) “유자격 납세자”는 본 항을 추가해 해당 법률의 발효일에 발효된 바,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18권 제25106.5항 제(b)호 제(10)목에 정의된 바에 따라 그 또한 유자격 그룹인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2) “유자격 그룹”은 본 항을 추가해 해당 법률의 발효일에 발효된 바,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18권 제25106.5항 제(b)호 제(3)목에 정의된 바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결합 보고 그룹을 의미한다:

(A) 해당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최소 투자 요건을 충족했다.

(B) 달력년 2006년도에 시작하는 결합 보고 그룹의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이 1개 이상의 케이블 시스템 운영으로부터 거둔 수입이 미국 네트워크 총 사업 수입의 50퍼센트를 초과했다.

(C) 제(B)세목의 요건 충족 목적 상, 아래의 규칙을 적용한다:

(i)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이 달력년 2006년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동일한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경우 해당 비포함 구성원의 총

사업 수입(GBR)은 해당 비포함 구성원이 마치 달력년 2006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달력년 2006년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한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총 사업 수입을 산정한다.

(ii) 총 사업 수입에는 유자격 파트너십의 총 사업 수입도 포함하나 구성원이 해당 파트너십에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케이블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본 항을 추가해 해당 법률의 발효일에 발효된 바, 공공유틸리티법 제5830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동영상, 케이블, 음성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총 사업 수입(Gross Business Receipts)”은 제 25120항 제(f)호 제(2)목에 정의되어 있는 총 사업 수입을 의미한다(해당되는 경우 제25110항의 한정을 받아,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의 매출 또는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총 수입은 제외).

(5) “최소 투자 요건”은 해당 과세 대상 연도의 시작을 포함하는 달력년 중, 결합 보고 그룹에 의한 이백 오십만 달러 (\$250,000,000) 이상의 조건 충족 지출을 의미한다.

(6) “조건 충족 지출”은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에 의하거나 그를 대신해 지불 또는 발생한 것으로 유형의 자산, 급여, 서비스, 프랜차이즈 수수료 또는 일체 무형의 자산 배포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으로 인정되는 여러 지출들의 일체 조합의 의미한다.

(A) 유형 자산이 아닌 것에 대한 지출은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해당 구성원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해당 구입 또는 지출의 편익을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으로 인정한다.

(B) 유형 자산에 대한 구입 또는 지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으로 인정한다.

(C) 조건 충족 지출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구입, 사용 또는 독립 외부 계약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재산 또는 서비스에 대해 결합 보고 그룹이 집행한 지출이 포함된다.

(D) 또한 조건 충족 지출에는 유자격 파트너십에 의한 지출도 포함되나 해당 구성원이 해당 파트너십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자격 파트너십”은 해당 파트너십의 소득 및 배당 요인들이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의 소득 및 배당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나 해당 구성원이 해당 파트너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조건 충족 매출”은 고객 구내 장비의 판매 또는 대여에서 발생하는 총 사업 수입을 제외하고 일체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사업 수입을 의미한다. “조건 충족 매출”에는 유자격 파트너십에 의한 자격 충족 매출이 포함되나 구성원이 해당 파트너십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c) 유자격 파트너십에 의한 조건 충족 매출과 관련한 본 항의 규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18권 제25137-1항 제(f)호 제(3)목에서 정하는 파트너십 규칙과 일치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발의안 제40호

2011년 8월 15일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에서
인증한 주 상원 선거구가 캘리포니아 헌법 21조 2항
(i)호에 따라 주민들에게 국민 투표로 제출됩니다.

법률안

FILED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State of California

AUG 15 2011

결의안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
주 상원 선거구 인증

2011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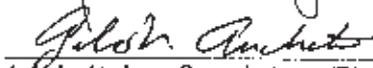
2011년 7월 29일,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위원회)는 참조된 주 상원 선거구(상원 선거구)를 예비선거 최종 상원 선거구로 게시하기로 승인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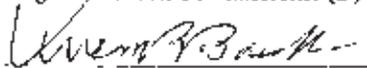
2011년 8월 15일, 캘리포니아주 헌법 XXI조 2(c) (5) 항에 따라 위원회는 crc_20110815_senate_certified_statewide.zip 및 보안 해시 알고리즘 (SHA-1) 번호 14cd4e126ddc5bdce946f67376574918f3082d6b로 식별되는 상원 선거구를 최종 선거구로 채택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헌법 XXI조 2(g) 항에 따라 위에서 SHA -1로 참조한 상원 선거구를 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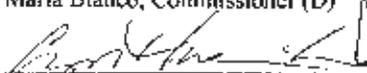
이를 추가 확인하고자 위원회 구성원은 이 의결에 서명을 첨부하는 바입니다.


Gabino Aguirre, Commissioner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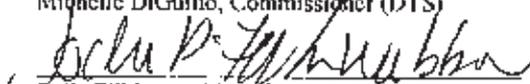

Angelo Anchetta, Commissioner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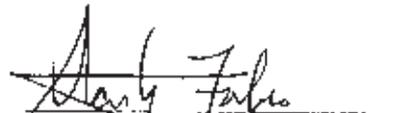

Vincent Barabba, Commissioner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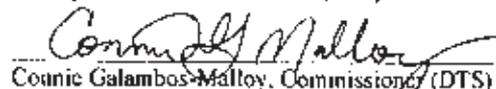

Maria Blanco, Commissioner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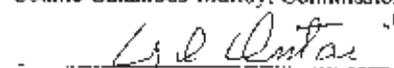

Cynthia Dai, Commissioner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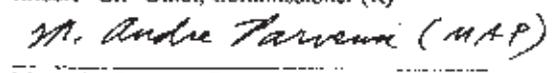

Michelle DiGiulio, Commissioner (D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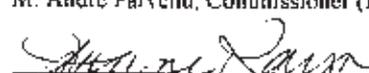

Jodie Filkins Webber, Commissioner (R)


Stanley Forbes, Commissioner (D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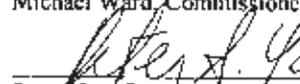

Connie Galambos-Malloy, Commissioner (D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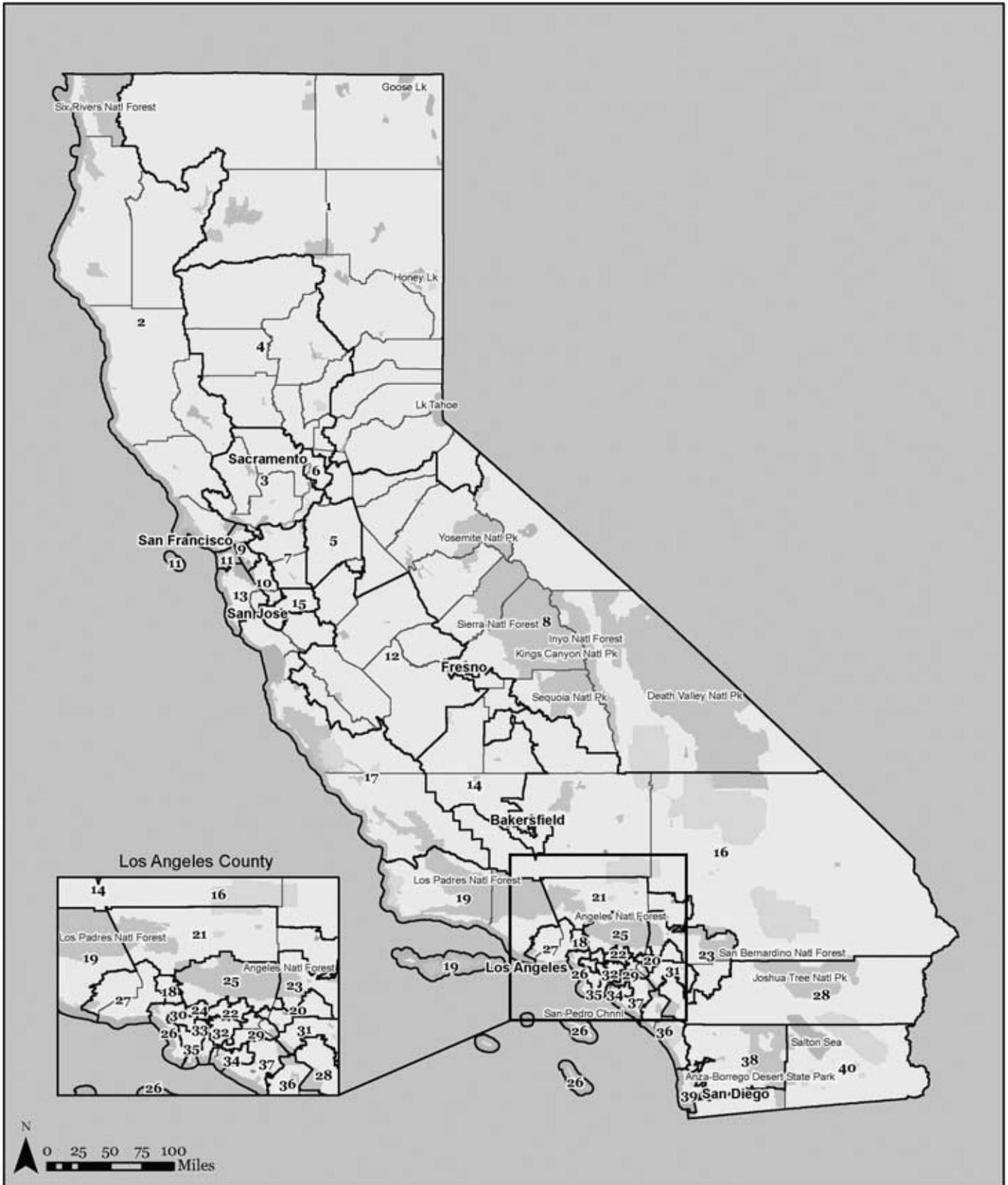

Gilbert "Gil" Ontai, Commissioner (R)


M. Andre Parvenu, Commissioner (DTS)


Jeanie Raya, Commissioner (D)


Michael Ward, Commissioner (R)


Peter Yao, Commissioner (R)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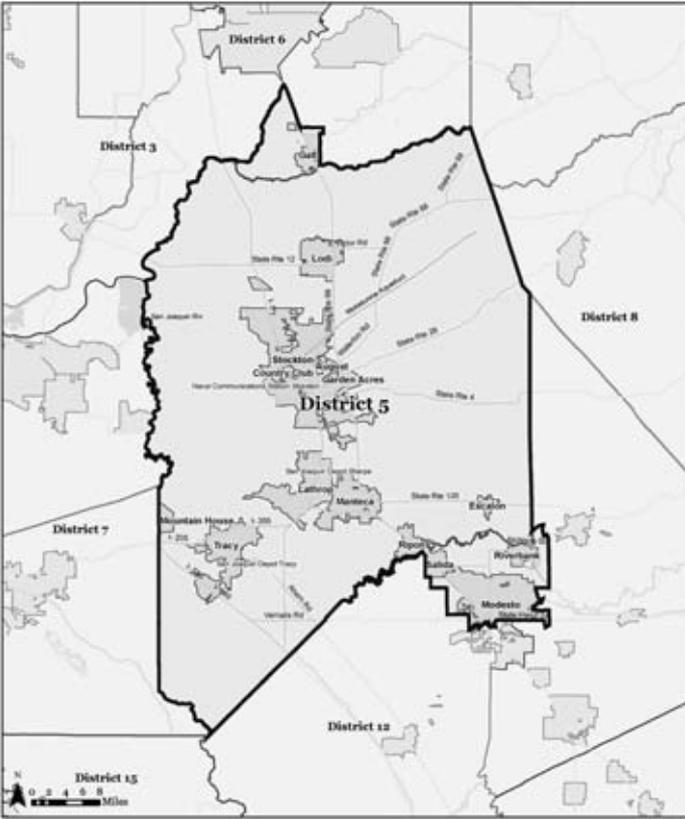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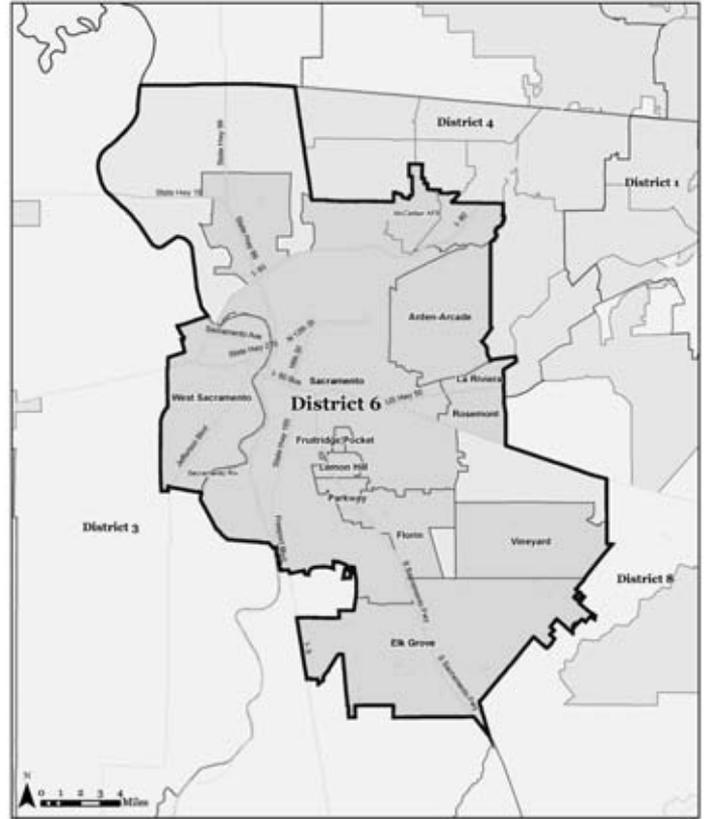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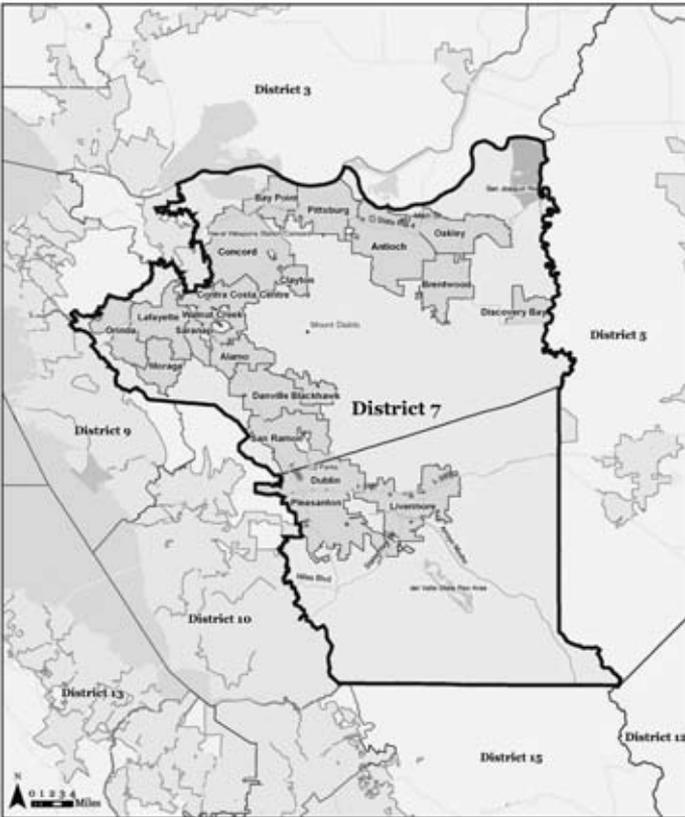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4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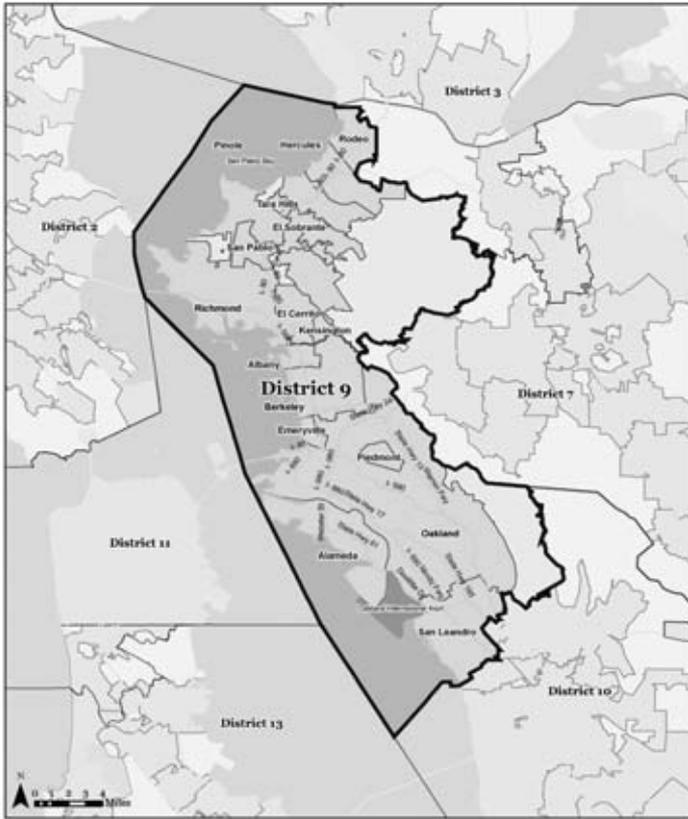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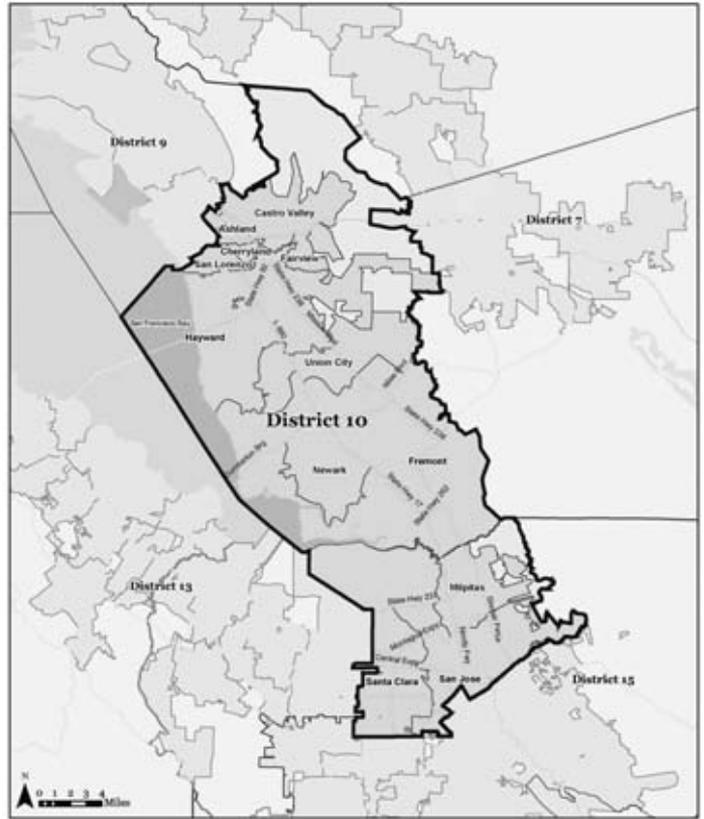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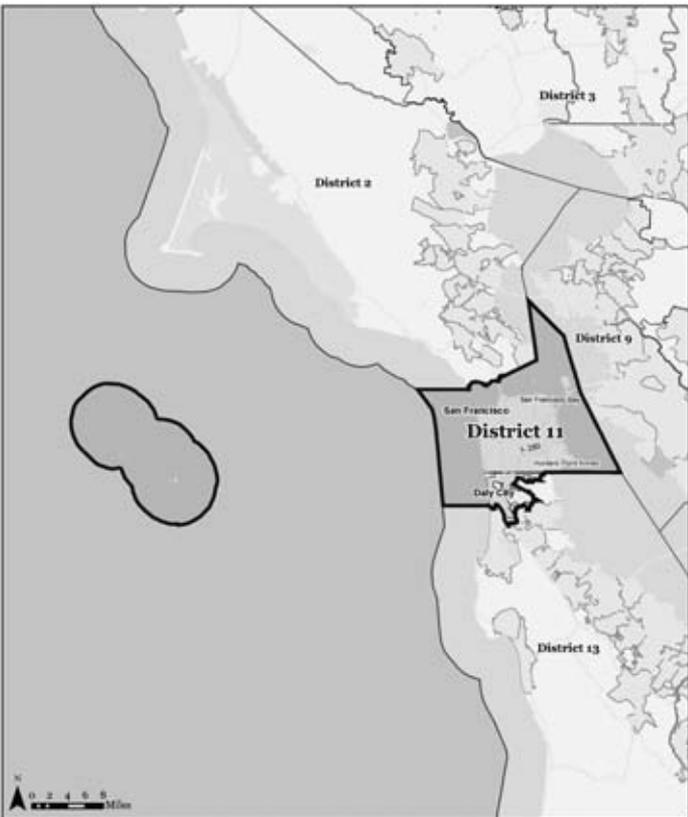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8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9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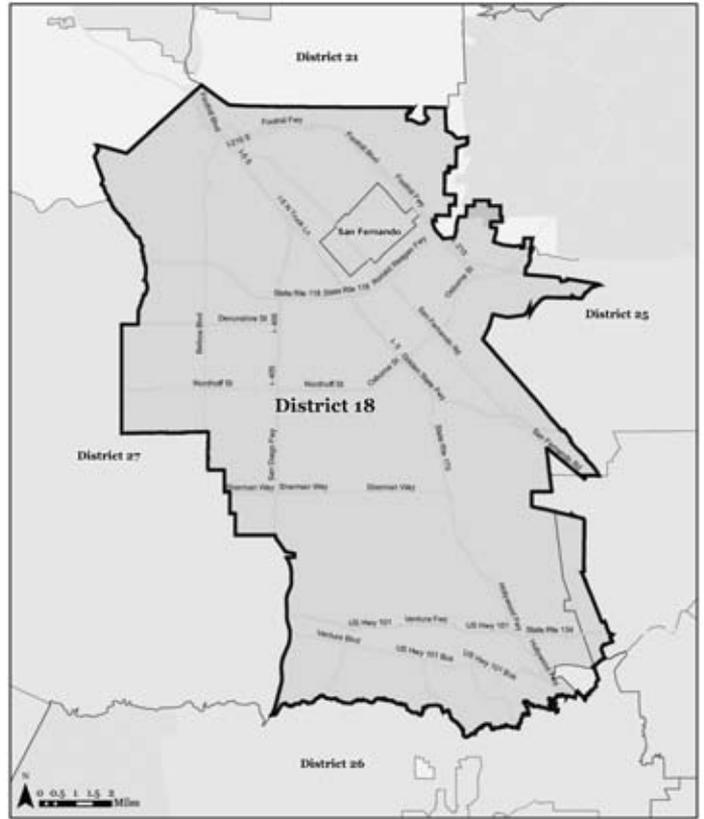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1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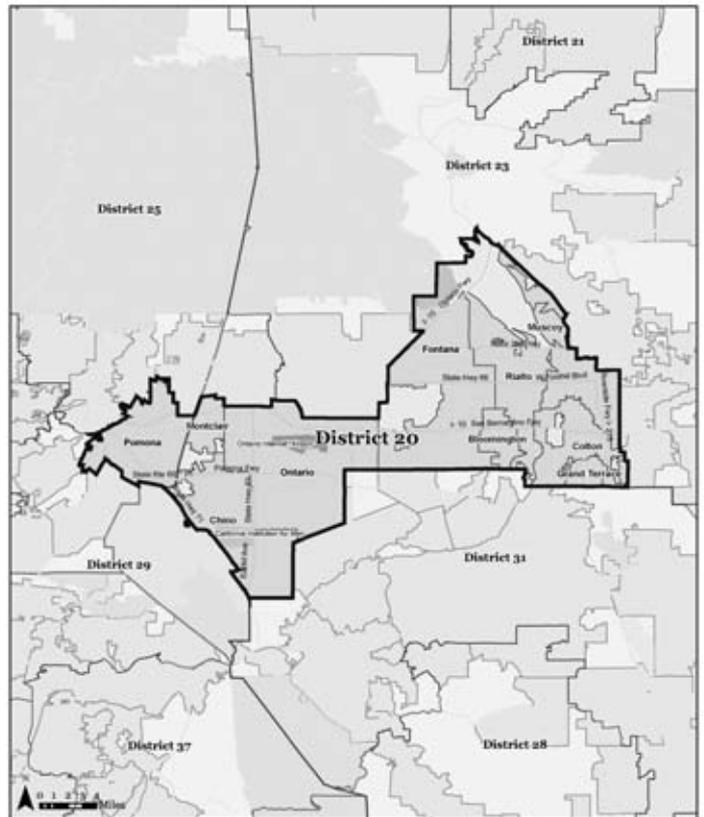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7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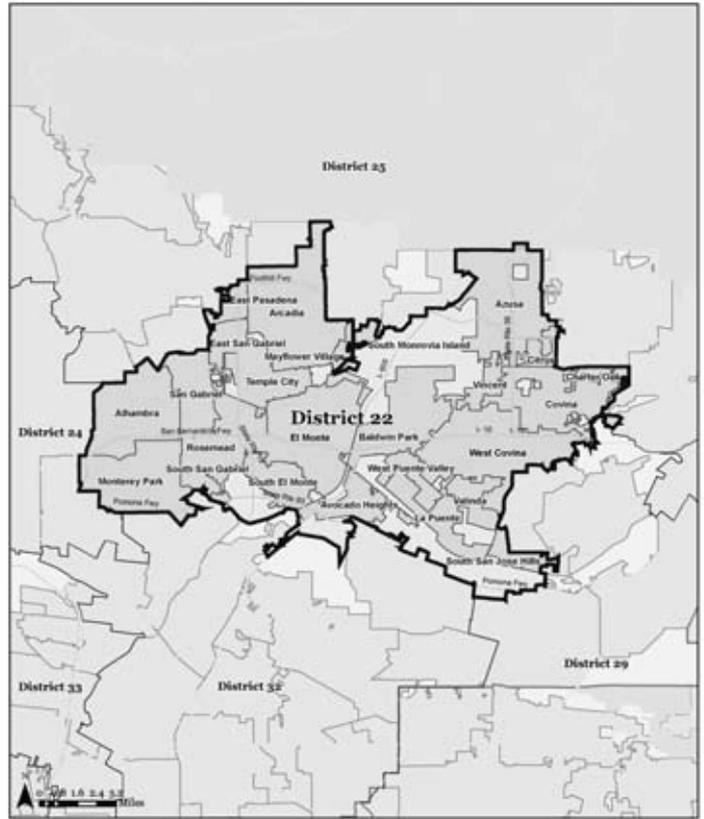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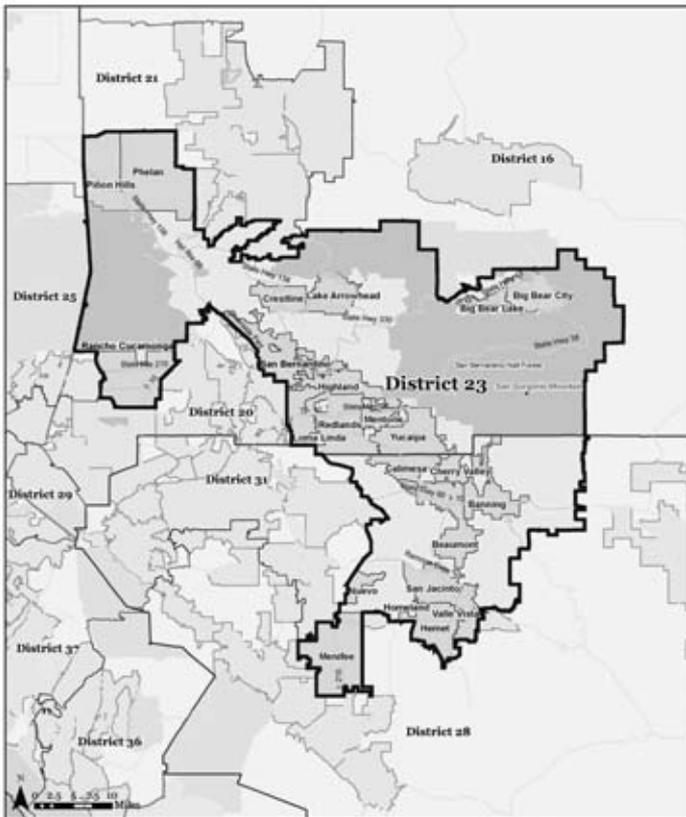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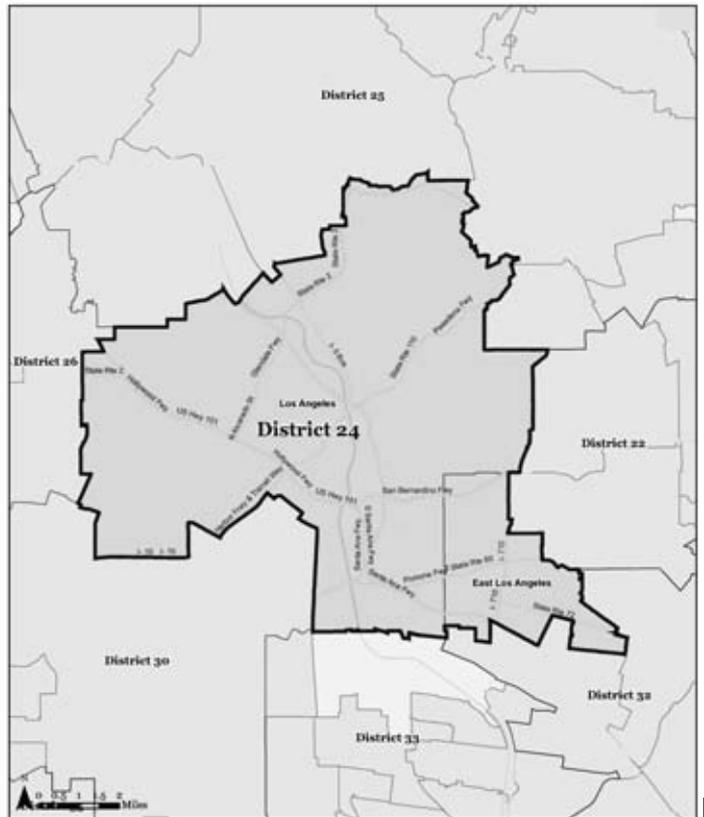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1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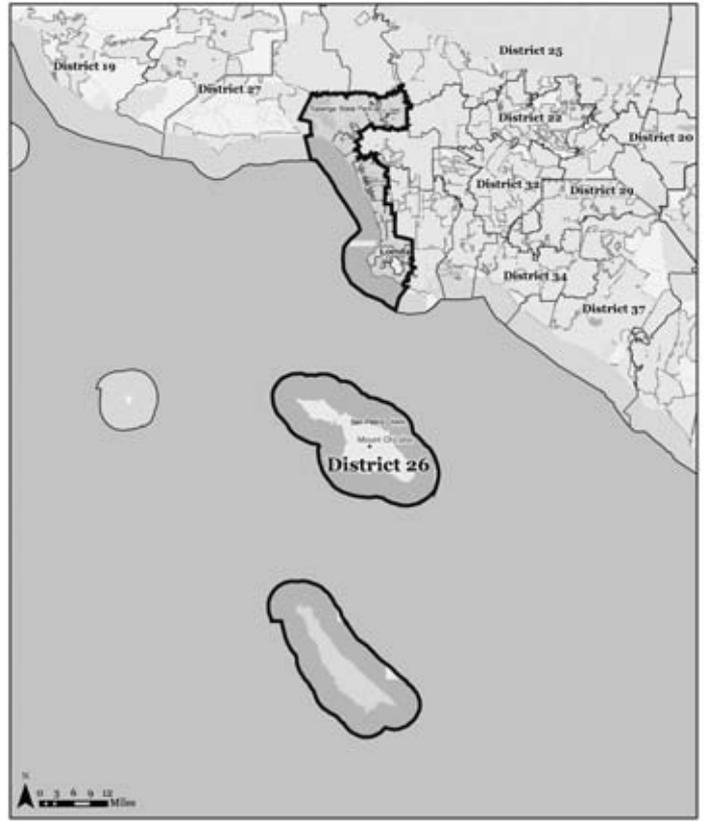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3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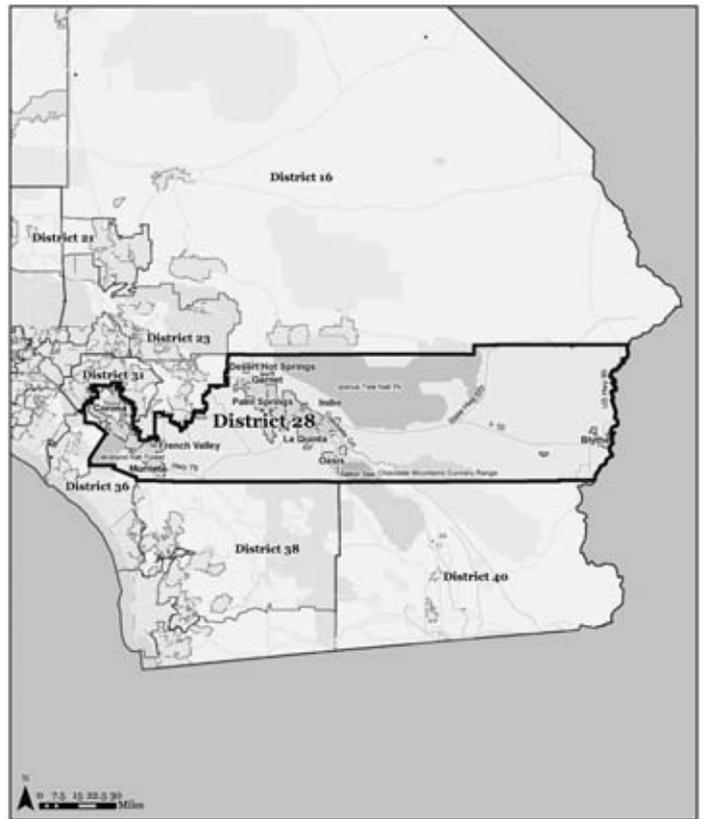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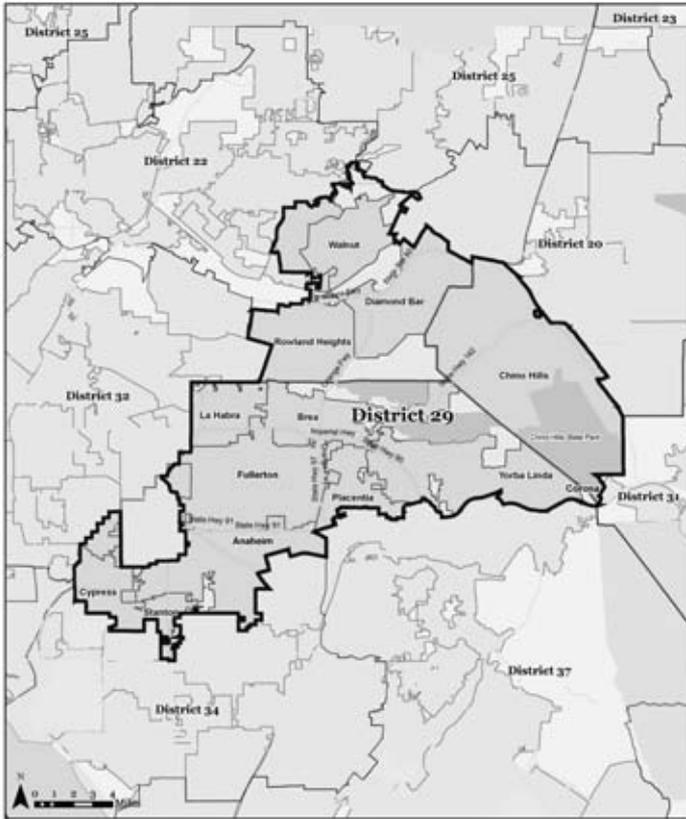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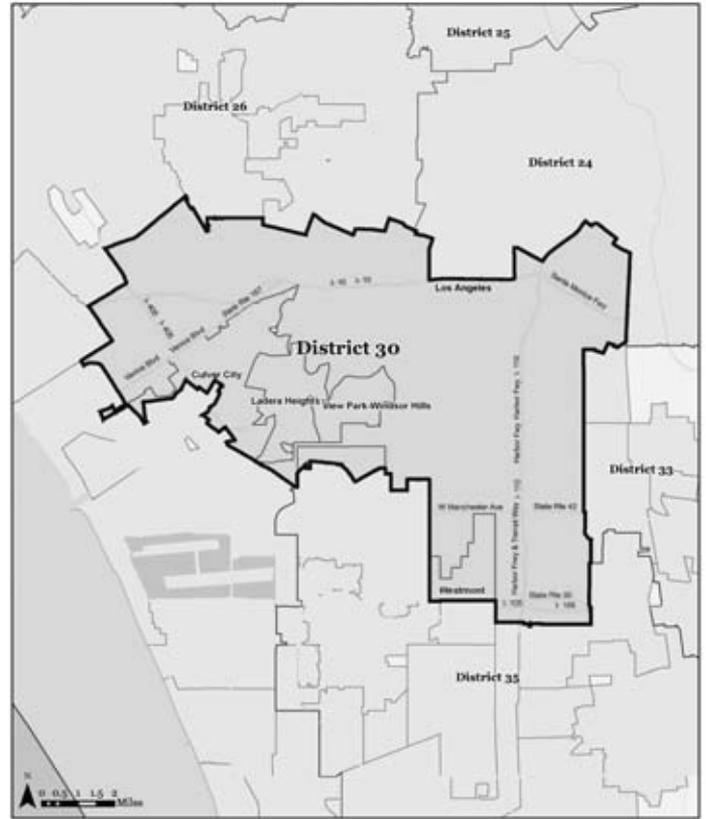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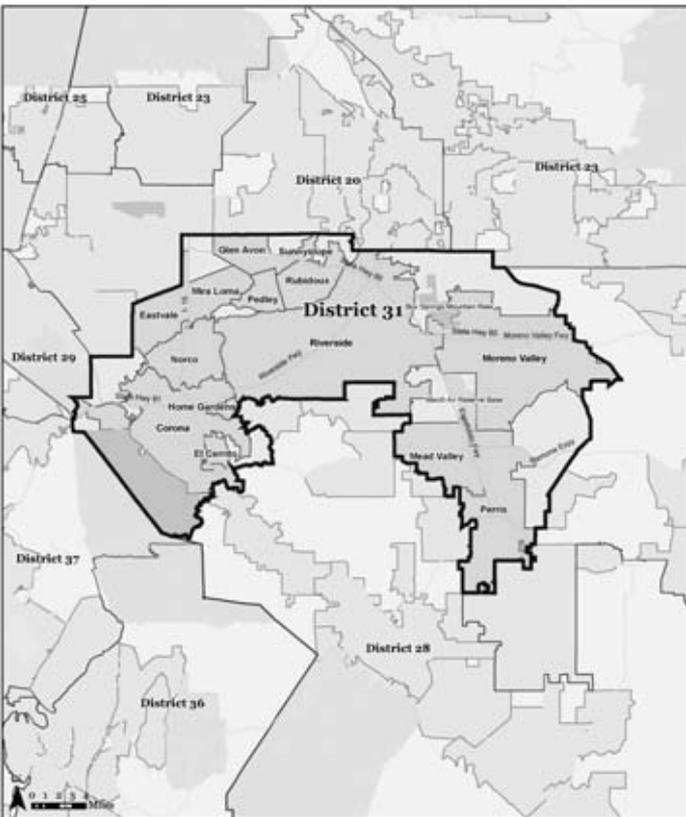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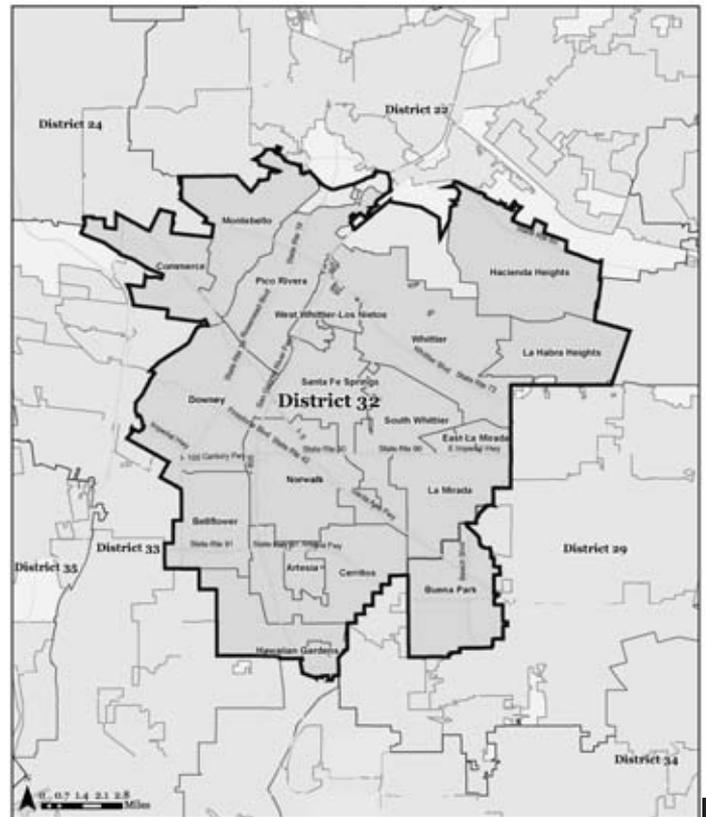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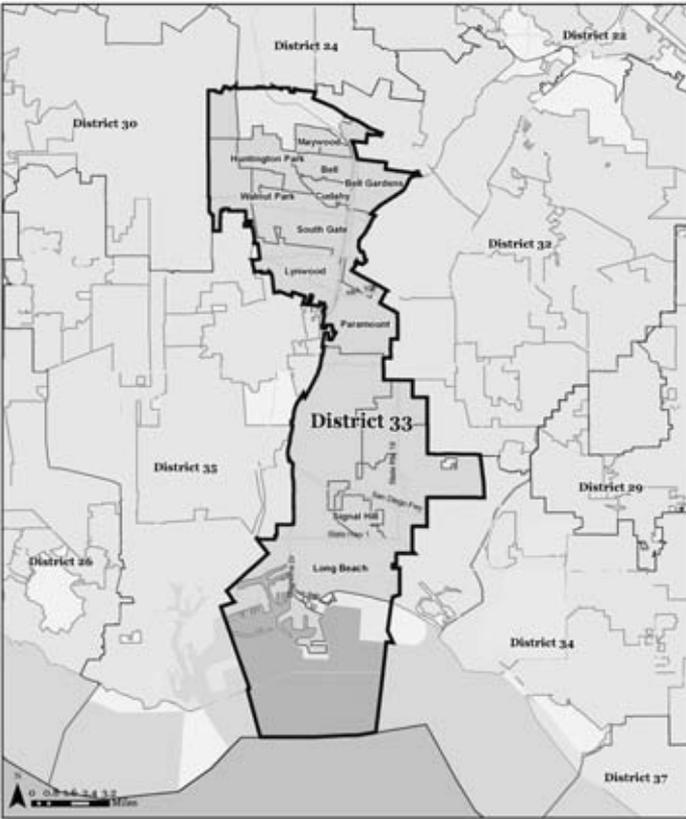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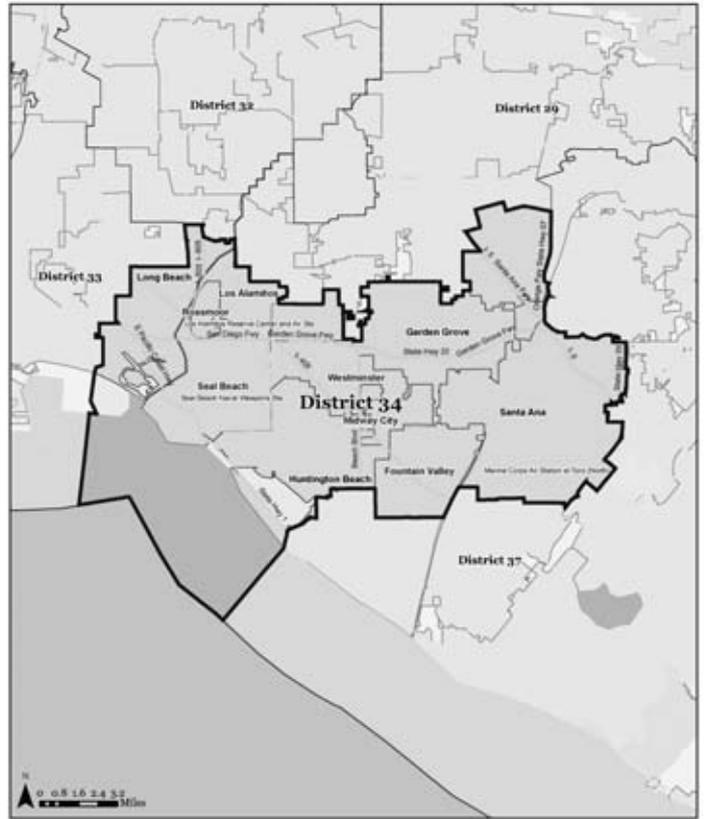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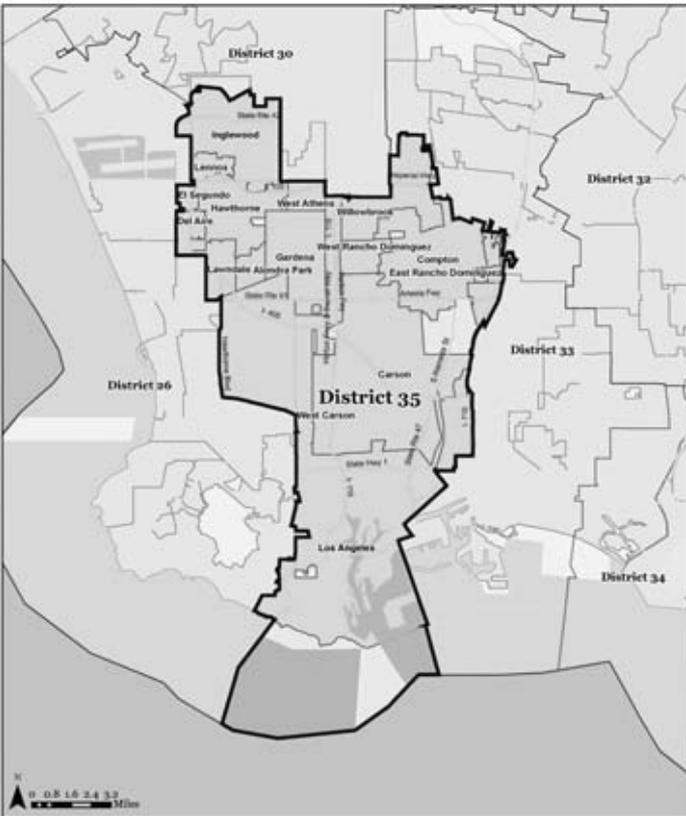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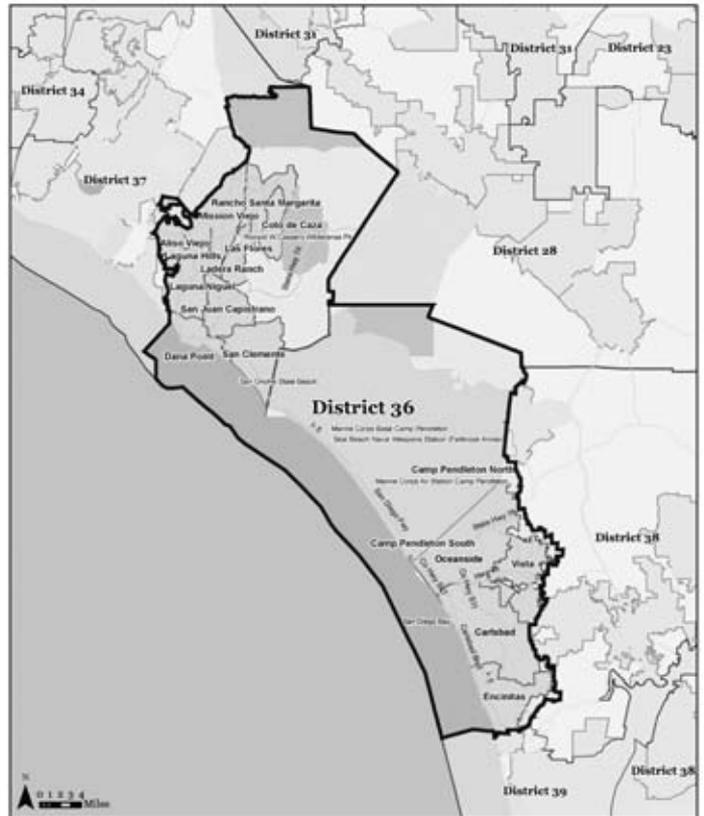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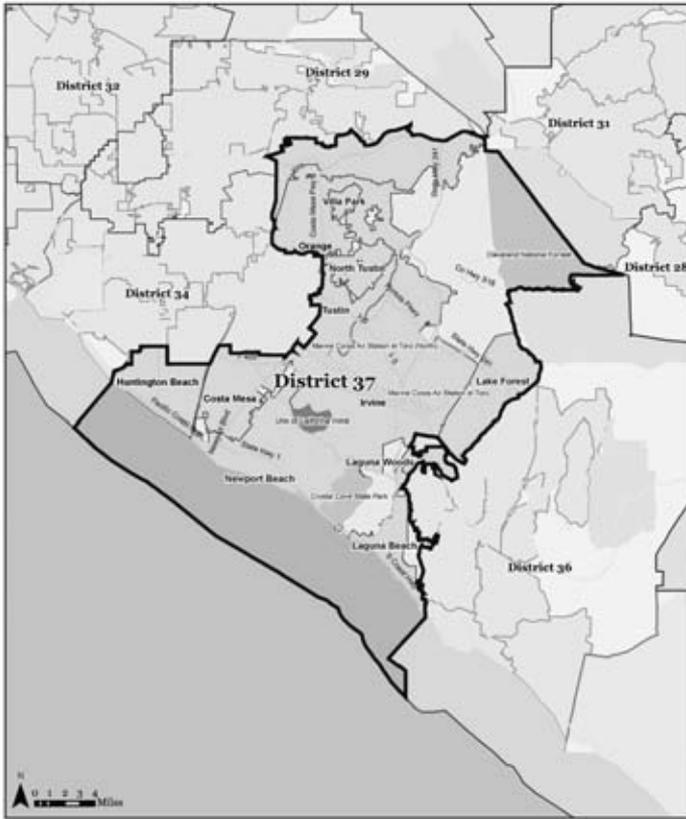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4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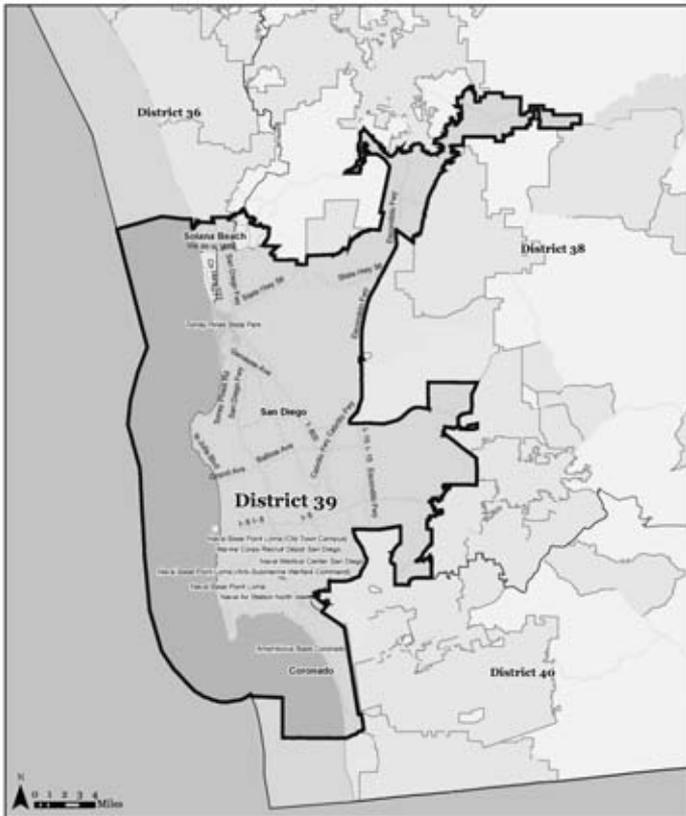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6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7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8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9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40

대형 인쇄본 및 음성 버전의 유권자 안내서

대형 인쇄본, 카세트 또는 CD 버전의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주문하려면, www.voterguide.sos.ca.gov/alt-versions로 이동하거나 주무장관실 수신자부담 유권자 핫라인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십시오.

다운로드 가능한 MP3 버전의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받으려면, www.voterguide.sos.ca.gov/audio로 이동하십시오.

돈도 벌고 변화도 이루어내 보십시오... 선거 당일에 투표 관리인으로 일해보십시오!

투표 관리인으로서 민주주의 도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의 소중한 봉사에 대한 대가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투표 관리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운티 선거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866) 575-1558로 전화하여 문의하십시오.

유권자 등록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 주소, 우편 주소, 이름을 변경하거나 정당 선호도를 변경 또는 선택하려는 유권자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참고: 2012년 10월 22일 이후 새 주소로 이사할 경우 이전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등록은 간단하며 무료입니다. 등록 양식은 온라인(www.sos.ca.gov) 및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카운티 정부 사무실 및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등록을 하려면 선거 당일에 미국 시민권 보유자로 18세 이상인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감옥이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거나(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확정된 "하급" 중죄로 1년 이상 복역 중이지 않고), 가석방 또는 석방 후 지역사회 감시 판결을 받은 상태이거나,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유예 중이거나,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무능력자로 판단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주 및 연방정부 유권자 신원증명 요건

대부분의 경우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투표하기 전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 등록 후 처음으로 투표하여 등록 카드에 운전 면허 번호, 캘리포니아주 신분증명서 번호 또는 소셜 세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자리수를 제시한 적이 없다면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우편 투표 용지와 함께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십시오. 다음은 인정되는 30여가지 이상의 신분증 목록 중 일부입니다. 주무장관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regs.htm에서 "Help America Vote Act Identification Standards"(미국민 투표 지원법 신분확인 기준)을 찾아 보십시오.

- 운전 면허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 여권
- 병역증
- 직원 신분증
- 학생증

유권자 기본 권리 선언

1. 유효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유효 등록 유권자란 미국 시민권자로, 만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며, 중죄의 유죄 판결로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가 아니며, 현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권자도 잠정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투표 마감 시간 이전에 투표소로 나와 줄을 서 있는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유권자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잘못 기입했다고 생각될 경우, 새로운 투표 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넣기 전에 잘못 기입했다고 생각될 경우 잘못된 투표 용지를 새 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유권자 역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 이전에 잘못 기입한 투표 용지를 선거관리원에게 반환할 경우 새 투표 용지를 요청하고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보조 없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유권자는 작성한 우편 투표 용지를 카운티 내 아무 선거구로나 반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유권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선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 만큼 소속 선거구에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거주민이 많을 경우 해당 언어의 선거 자료를 수령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9. 유권자는 선거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선거 절차를 감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유권자는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관리원에게 선거 절차에 관해 문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공무원을 소개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문의로 인해 직무 수행이 방해받을 경우 선거구 위원회나 선거관리원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유권자는 모든 불법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원이나 주무장관실에 신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생각되거나,
어떠한 부정선거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
주무장관실 유권자 비밀 보장 수신자부담 핫라인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 진술서의 정보는 투표 장소의 위치와 투표 용지에 표시된 사안 및 후보자 등과 같은 투표 절차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관리원이 사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선거, 학술, 언론, 정치 또는 정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직 입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기타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소셜 세큐리티 번호 또는 유권자 등록 카드에 표시된 서명은 위의 목적을 위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러한 정보의 의심되는 오용 사례를 보고하려면, 주무장관실 수신자부담 유권자 핫라인인 (866) 575-1558로 전화해 주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의 경우 비밀 유권자 신분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장관실의 "집에서 안전하게" 프로그램 수신자부담 전화번호인 (877) 322-5227로 연락하거나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총선
www.voterguide.sos.ca.gov

For additional copies of the Voter Information Guide in English, please contact your county elections office or call (800) 345-VOTE (8683). For TTY/TDD, call (800) 833-8683.

Para obtener copias adicionales de la Guía de Información para el Votante en español, póngase en contacto con la oficina electoral de su condado o llame al (800) 232-VOTA (8682).

如需索取額外的中文選民資訊指南，請與您的縣立選舉辦事處聯繫或致電(800) 339-2857。

हिन्दी में मतदाता जानकारी मार्गदर्शिका की अतिरिक्त प्रतियां प्राप्त करने के लिए, कृपया अपने काउंटी चुनाव कार्यालय से संपर्क करें या इस नंबर पर फ़ोन करें (888) 345-2692।

投票情報ガイドの日本語版をご希望の場合は、最寄の郡選挙事務所にお問い合わせになるか(800) 339-2865にお電話ください。

공식유권자 정보 안내서

잊지 말고 투표해 주십시오!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투표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투표 등록 마감일

សំរាប់សំណើបន្ថែម នៃព័ត៌មានណែនាំអ្នកបោះឆ្នោត ជាភាសាខ្មែរ សូមទាក់ទងការិយាល័យបោះឆ្នោត ខេត្តឆ្នាំរបស់អ្នក ឬទូរស័ព្ទ (888) 345-4917។

한국어로 된 유권자 정보 지침의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실로 연락하거나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866) 575-1558

Para sa mga karagdagang kopya ng Patnubay na Impormasyon Para sa Botante sa Tagalog, mangyaring makipag-ugnayan sa opisina sa mga halalan ng inyong county o tumawag sa (800) 339-2957.

สำหรับสำเนาเพิ่มเติมของคู่มือสำหรับผู้ออกเสียงเลือกตั้ง 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ณาติดต่อสำนักงานการเลือกตั้ง ประจำเขตมณฑลของคุณ หรือโทรศัพท์ถึง (855) 345-3933

Muốn có thêm Tập Hướng Dẫn Cử Tri bằng Việt Ngữ, xin liên lạc với văn phòng bầu cử quận của quý vị hoặc gọi số (800) 339-8163.

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에서는 유권자 가구 당 본 안내서를 1부만 배송합니다.

